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 2023-7
ISBN 979-11-92238-40-1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 개발 연구

심혜선, 김영일, 정하은



PASS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Daejeon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 2023-7
ISBN 979-11-92238-40-1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 개발 연구

2023. 12.

• 책임연구원

심혜선(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부 선임연구원)

• 공동연구원

김영일(명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정하은(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PASS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Daejeon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 개발 연구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종사자 137명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특성



- 가정폭력 70.1%
- 저소득층 가정 51.8%
- 한부모 가정 38.0%
- 재학대 38.0%
- 영유아 학대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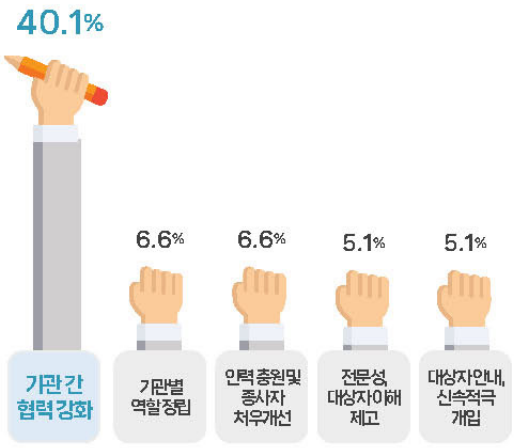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장점

	1순위	1+2순위
사례관리	19.7%	33.6%
정보 공유	18.2%	32.1%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	15.3%	35.8%
조기 발견	14.6%	20.4%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단점

	1순위	1+2순위
처리과정이 오래 걸림	24.1%	35.8%
정보 공유가 잘되지 않음	20.4%	43.1%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이 미흡함	19.7%	41.6%
사례관리가 잘되지 않음	10.2%	15.3%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보완해야 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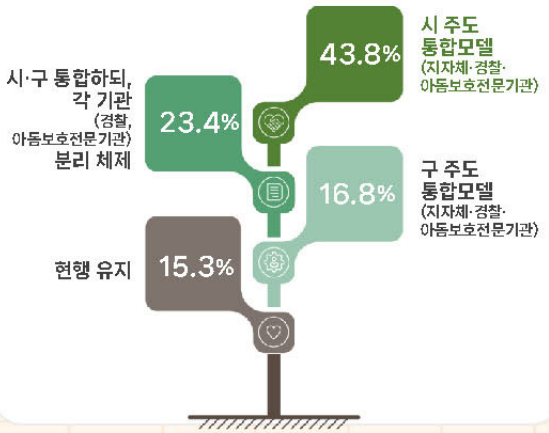
아동학대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1순위	1+2순위
학대행위자 법적 조치 강화	21.2%	33.6%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19.7%	27.0%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문서비스 강화 및 기반 확충	13.1%	22.6%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사회문화의 개선 (자녀 소유물 인식, 체벌 등)	10.9%	27.0%
아동학대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공권력 강화	8.0%	23.4%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

	1순위	1+2순위
TV/라디오 공익광고	39.4%	56.2%
SNS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18.2%	39.4%
학교/사회교육기관 교육	16.1%	29.9%
버스/지하철 광고	8.8%	23.4%

바람직한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모델방식



종사자 직장만족도

(5점 만점)

동료와의 의사소통	3.91점	고용 안정성	3.15점	업무내용	2.97점
상사와의 의사소통	3.58점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3.13점	교육지원	2.95점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3.34점	개인의 발전 전망	3.04점	근무시간	2.63점
관련기관 종사자와의 의사소통	3.15점	조직의 발전 전망	3.03점	복리후생제도	2.55점
슈퍼비전	3.15점	인사고과(인사평가)의 공정성	3.00점	임금(보수)	2.35점

보건복지부에 대한 요구사항

고용안정, 처우개선, 종사자 보호	명확한 매뉴얼, 동일한 지침 제공	아동학대 법령 개정	예산 지원 확대
15.3%	10.2%	8.8%	5.8%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요구사항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업무체계 명확화, 매뉴얼 마련	지역별 통일된 피드백 필요	의견수렴, 소통 노력
13.9%	8.0%	6.6%	4.4%

대전광역시에 대한 요구사항

지역시책 개발, 통합지침 마련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정보공유, 적극협조
12.4%	9.5%	8.0%	6.6%

자치구에 대한 요구사항

정확한 정보 공유, 소통 강화	연계 및 협력 강화	적극적 아동보호 및 지속적 사례관리	현장 이해, 전문성 강화
13.1%	13.1%	9.5%	8.0%

차 례

요 약 ····· i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5

1. 연구내용 ····· 5

2. 연구방법 ····· 6

제3절 연구추진체계 ····· 8

제2장 아동학대 현황 및 대응체계 ····· 9

제1절 아동학대의 정의 및 현황 ····· 11

1. 아동학대의 정의 ····· 11

2. 아동학대의 현황 ····· 12

제2절 아동학대 대응체계 법률 및 정책 ····· 16

1. 법률 및 조례 ····· 16

2. 지원정책 ····· 26

제3절 아동학대 대응체계 ····· 30

1.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체계 ····· 30

2. 대전광역시 ····· 37

3. 국내 사례 ····· 40

4. 국외 사례 ····· 50

제3장 설문조사 ····· 59

제1절 조사개요 ····· 61

1. 조사 목적 및 대상 ····· 61

2. 조사 내용 및 출처 ····· 61

3. 조사절차 ····· 63
4. 결과분석 및 유의점 ····· 63
제2절 조사결과 ····· 64
1. 조사대상자의 특성 ····· 64
2.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기능 및 역할 ····· 68
3.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연계 · 협력 ····· 104
4.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 130
5. 대응체계 종사자 교육 및 훈련 ····· 167
6. 대응체계 종사자 근무환경 ····· 177

제4장 초점집단면접 ····· 189
제1절 조사개요 ····· 191
1. 조사 절차 및 내용 ····· 191
2. 조사참여자 선정 및 분석 ····· 191
제2절 분석결과 ····· 194

제5장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 개발 ····· 217

제6장 결론 및 제언 ····· 229
제1절 결론 ····· 231
1. 아동학대 현황 및 대응체계 ····· 231
2. 설문조사 ····· 234
3. 초점집단면접 ····· 236
4.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 개발 ····· 238
제2절 제언 ····· 240
1.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 추진방향 ····· 240
2.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지원을 위한 방안 ····· 241

참고문헌 ····· 257
부 록 ····· 267

표 차례

〈표 1-1〉 연구방법 ····· 7
〈표 2-1〉 2022년 시·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 12
〈표 2-2〉 2022년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 13
〈표 2-3〉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현황 ····· 14
〈표 2-4〉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신고 처리결과(초기조치) ····· 15
〈표 2-5〉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원인 및 아동학대행위자 ····· 15
〈표 2-6〉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아동학대 현황 ····· 16
〈표 2-7〉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관련 구성항목 ····· 18
〈표 2-8〉 「아동학대처벌법」의 구성항목 ····· 21
〈표 2-9〉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조례 현황 ····· 23
〈표 2-10〉 대전광역시와 타광역자치단체 조례 구성항목 ····· 24
〈표 2-11〉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조례 구성항목 ····· 26
〈표 2-12〉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2023) ····· 28
〈표 2-13〉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추진계획(2023) ····· 29
〈표 2-14〉 정책 수립 및 대응체계 개선 주체 및 역할 ····· 31
〈표 2-15〉 아동학대 현장 대응 주체 및 역할 ····· 33
〈표 2-16〉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 전담조직 ····· 37
〈표 2-17〉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 38
〈표 2-18〉 대전광역시 새싹지킴이병원 현황 ····· 38
〈표 2-19〉 대전광역시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 ····· 39
〈표 2-20〉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 ····· 40
〈표 2-21〉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대응체계관련 기관별 역할 ····· 42
〈표 2-22〉 경기도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주요사업 ····· 45
〈표 2-23〉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계획(2023) ····· 49

〈표 3-1〉 조사내용 ····· 62
〈표 3-2〉 대응체계별 조사대상자 ····· 65
〈표 3-3〉 현 소속 및 직책 ····· 65
〈표 3-4〉 일반적 특성 ····· 67
〈표 3-5〉 중요도·수행도·난이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69
〈표 3-6〉 중요도·수행도·난이도: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71
〈표 3-7〉 중요도·수행도·난이도: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 · 청소년수사팀 ··· 73
〈표 3-8〉 중요도·수행도·난이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75
〈표 3-9〉 중요도·수행도·난이도: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 77
〈표 3-10〉 중요도·수행도·난이도: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 79
〈표 3-11〉 역할 수행 ····· 95
〈표 3-12〉 업무량 및 전문성 수준 ····· 97
〈표 3-13〉 업무의 주된 어려움 - 1순위 ····· 99
〈표 3-14〉 업무의 주된 어려움 - 1+2순위 ····· 100
〈표 3-15〉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 - 1순위 ····· 102
〈표 3-16〉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 - 1+2순위 ····· 103
〈표 3-17〉 대응체계별 연계 · 협력: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105
〈표 3-18〉 대응체계별 애로사항: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106
〈표 3-19〉 대응체계별 연계 · 협력: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108
〈표 3-20〉 대응체계별 애로사항: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109
〈표 3-21〉 대응체계별 연계 · 협력: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 여성청소년수사팀 ··· 110
〈표 3-22〉 대응체계별 애로사항: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 · 청소년수사팀 ··· 111
〈표 3-23〉 대응체계별 연계 · 협력: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113
〈표 3-24〉 대응체계별 애로사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114
〈표 3-25〉 대응체계별 연계 · 협력: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 116
〈표 3-26〉 대응체계별 애로사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 117
〈표 3-27〉 대응체계별 연계 · 협력: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 118
〈표 3-28〉 대응체계별 애로사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 119
〈표 3-29〉 협력 수준 ····· 121

〈표 3-30〉 협력 효과(1/2) ····· 123
〈표 3-31〉 협력 효과(2/2) ····· 124
〈표 3-32〉 다른 체계와의 연계 및 협력 장애요인 - 1순위 ····· 126
〈표 3-33〉 다른 체계와의 연계 및 협력 장애요인 - 1+2순위 ····· 127
〈표 3-34〉 원활한 협조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 1순위 ····· 129
〈표 3-35〉 원활한 협조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 1+2순위 ····· 129
〈표 3-36〉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특성 ····· 131
〈표 3-37〉 아동학대 대응체계 장점 - 1순위 ····· 133
〈표 3-38〉 아동학대 대응체계 장점 - 1+2순위 ····· 134
〈표 3-39〉 아동학대 대응체계 단점 - 1순위 ····· 136
〈표 3-40〉 아동학대 대응체계 단점 - 1+2순위 ····· 137
〈표 3-41〉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보완해야 할 점 ····· 139
〈표 3-42〉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 업무진행(1/2) ····· 141
〈표 3-43〉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 업무진행(2/2) ····· 142
〈표 3-44〉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업무분리 시 장점 ····· 146
〈표 3-45〉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업무분리 시 단점 ····· 148
〈표 3-46〉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업무분리 시 개선방안 ····· 150
〈표 3-47〉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 1순위 ····· 152
〈표 3-48〉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 1+2순위 ····· 153
〈표 3-49〉 아동학대 예방 가장 효과적인 홍보 - 1순위 ····· 155
〈표 3-50〉 아동학대 예방 가장 효과적인 홍보 - 1+2순위 ····· 156
〈표 3-51〉 바람직한 대응모델 방식 ····· 158
〈표 3-52〉 보건복지부에 바라는 점 ····· 160
〈표 3-53〉 아동권리보장원에 바라는 점 ····· 162
〈표 3-54〉 광역시 아동보호팀에 바라는 점 ····· 164
〈표 3-55〉 자치구 아동보호팀에 바라는 점 ····· 166
〈표 3-56〉 참여 횟수 - 필수 ····· 168
〈표 3-57〉 참여 횟수 - 권고 ····· 168
〈표 3-58〉 참여 시간 - 필수 ····· 170

〈표 3-59〉 참여 시간 - 권고 ····· 170
〈표 3-60〉 전문성 향상을 위해 참여한 활동 - 참여 여부 ····· 172
〈표 3-61〉 전문성 향상을 위해 참여한 활동 - 연간 활동 횟수/시간 ····· 173
〈표 3-62〉 교육 활성화 방안 - 1순위 ····· 175
〈표 3-63〉 교육 활성화 방안 - 1+2순위 ····· 176
〈표 3-64〉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 경험 ····· 178
〈표 3-65〉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 지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 ····· 178
〈표 3-66〉 종사자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1순위 ····· 180
〈표 3-67〉 종사자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1+2순위 ····· 181
〈표 3-68〉 업무 관련 스트레스 수준 ····· 183
〈표 3-69〉 업무상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 184
〈표 3-70〉 고충 또는 어려움 해결방식 ····· 185
〈표 3-71〉 직장만족도(1/2) ····· 187
〈표 3-72〉 직장만족도(2/2) ····· 188
〈표 4-1〉 조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193
〈표 4-2〉 초점집단면접 주제 분석결과 ····· 194
〈표 5-1〉 대전광역시 아동수 및 아동학대 건수 ····· 219
〈표 5-2〉 타시·도 컨트롤 타워 예시 ····· 224
〈표 5-3〉 대전광역시 컨트롤 타워 수립안 ····· 228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 8
[그림 2-1] 아동학대 대응체계 업무 흐름도 ····· 36
[그림 2-2] 서울특별시 대응기관 협력체계 ····· 41
[그림 2-3] 미국 뉴욕주 아동학대 신고 및 대응절차 ····· 53
[그림 3-1] 중요도·수행도·난이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68
[그림 3-2] 중요도·수행도·난이도: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70
[그림 3-3] 중요도·수행도·난이도: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 · 청소년수사팀 · 72
[그림 3-4] 중요도·수행도·난이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74
[그림 3-5] 중요도·수행도·난이도: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 76
[그림 3-6] 중요도·수행도·난이도: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 78
[그림 3-7]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 해석 모형 ····· 80
[그림 3-8]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81
[그림 3-9]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82
[그림 3-10]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 · 청소년수사팀 ·· 83
[그림 3-11]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84
[그림 3-12]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 85
[그림 3-13]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 86
[그림 3-14]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 해석 모형 ····· 87
[그림 3-15]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88
[그림 3-16]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89
[그림 3-17]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 · 청소년수사팀 ·· 90
[그림 3-18]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91
[그림 3-19]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 92
[그림 3-20]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 93
[그림 3-21] 역할 수행 ····· 94
[그림 3-22] 업무량 및 전문성 수준 ····· 96

[그림 3-23] 업무의 주된 어려움 ····· 98
[그림 3-24]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 ····· 101
[그림 3-25]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105
[그림 3-26]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108
[그림 3-27]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 110
[그림 3-28]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113
[그림 3-29]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 116
[그림 3-30]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 118
[그림 3-31] 협력 수준 ····· 120
[그림 3-32] 협력 효과 ····· 122
[그림 3-33] 다른 체계와의 연계 및 협력 장애요인 ····· 125
[그림 3-34] 원활한 협조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 128
[그림 3-35]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특성 ····· 130
[그림 3-36] 아동학대 대응체계 장점 ····· 132
[그림 3-37] 아동학대 대응체계 단점 ····· 135
[그림 3-38] 보완해야 할 점 ····· 138
[그림 3-39]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 업무진행 수준 ····· 140
[그림 3-40] 업무 진행이 적절하지 못한 이유 ····· 144
[그림 3-41]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업무분리 시 장점 ····· 145
[그림 3-42]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업무분리 시 단점 ····· 147
[그림 3-43]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업무분리 시 개선방안 ····· 149
[그림 3-44]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 151
[그림 3-4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 ····· 154
[그림 3-46] 바람직한 대응모델 방식 ····· 157
[그림 3-47] 보건복지부에 바라는 점 ····· 159
[그림 3-48] 아동권리보장원에 바라는 점 ····· 161
[그림 3-49] 광역시 아동보호팀에 바라는 점 ····· 163
[그림 3-50] 자치구 아동보호팀에 바라는 점 ····· 165
[그림 3-51] 직무관련 교육 참여 횟수 ····· 167

[그림 3-52] 직무관련 교육 참여 시간 ····· 169
[그림 3-53] 전문성 향상을 위해 참여한 활동, 연간 활동 횟수 및 시간 ····· 171
[그림 3-54] 교육 활성화 방안 ····· 174
[그림 3-55] 지난 3년간 업무상 질병, 사고, 폭력 경험 ····· 177
[그림 3-56] 종사자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179
[그림 3-57] 업무 스트레스 수준 및 주요 원인 ····· 182
[그림 3-58] 고충 또는 어려움 해결방식 ····· 185
[그림 3-59] 직장만족도 ····· 186
[그림 5-1] 현행 아동학대 사건 처리 흐름도 ····· 220
[그림 5-2] 아동보호전문기관 배치 현황 ····· 221
[그림 5-3] 제1안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 종합센터 ····· 225
[그림 5-4] 제2안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기능 확대 ····· 226
[그림 5-5] 제3안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 ····· 227
[그림 6-1] 아동학대 대응체계협의체 구성안 ····· 242
[그림 6-2] 아동학대 대응 정기 사례회의 ····· 244
[그림 6-3] 사례판단 세분화 및 지역연계 방안 예시 ····· 245

부록 차례

〈표 부록-1〉 역할 수행 - 항목별(1/4) ····· 269
〈표 부록-2〉 역할 수행 - 항목별(2/4) ····· 270
〈표 부록-3〉 역할 수행 - 항목별(3/4) ····· 271
〈표 부록-4〉 역할 수행 - 항목별(4/4) ····· 272
〈표 부록-5〉 협력 수준 - 항목별(1/8) ····· 273
〈표 부록-6〉 협력 수준 - 항목별(2/8) ····· 274
〈표 부록-7〉 협력 수준 - 항목별(3/8) ····· 275
〈표 부록-8〉 협력 수준 - 항목별(4/8) ····· 276
〈표 부록-9〉 협력 수준 - 항목별(5/8) ····· 277
〈표 부록-10〉 협력 수준 - 항목별(6/8) ····· 278
〈표 부록-11〉 협력 수준 - 항목별(7/8) ····· 279
〈표 부록-12〉 협력 수준 - 항목별(8/8) ····· 280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대전광역시는 2020년 아동학대예방 선도도시를 선포하고 아동학대예방 추진계획(2023년)을 통해 '아동학대 없는 세상 아동이 행복한 대전'이라는 비전 아래 아동학대 인식개선, 위기가구 조기 발굴,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민·관 협력 등 아동학대 공동대응 체계구축을 목표로 세부방안을 추진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야 함. 또한 공공화 이후 대응체계에서는 인력 충원과 전문성 문제, 소통이나 연계 및 협력 부족, 처우 개선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전광역시 대응체계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자 함.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전광역시의 특성이 반영된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한 모델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함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다양한 문헌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의 정의 및 현황, 관련 법률 및 정책,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 외 아동학대 대응체계 사례를 분석하였음. 설문조사에서는 대응체계 종사자 137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별 기능 및 역할, 연계·협력, 대전광역시 대응체계 특성, 종사자 교육 및 훈련, 근무환경 등을 파악하였음

○ 초점집단면접에서는 2회에 걸쳐 19명의 대응체계 종사자에게 대응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바람직한 대응체계 모델 등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주제 분석함. 대전광역시의 특성을 반영한 모델 개발에서는 앞서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에서 나온 결과들을 바탕으로 3개의 대전형 대응체계 모델안을 제시함

○ 연구의 전체적인 내용 및 방법을 검증하고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자문과 평가를 거쳤음

제2장 아동학대 현황 및 대응체계

제1절 아동학대의 정의 및 현황

○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아동학대와 관련한 신고접수는 총 1,178건이었으며, 이중 학대판단 605건으로 보고되었고 최근 5년간 대전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된 유형 중에는 중복 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신고 처리결과(초기조치)를 살펴보면, 전체 3,075명의 학대피해아동 중 대부분이(2,567건/83.5%) 원가정보호 조치를 받았으며, 학대행위자 조치는 전체 3,084건 중 지속관찰 1,615건(52.4%)이 가장 높은 비율임. 최근 5년간 신고 처리된 4,624건의 사례 중 대부분에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815건, 82.5%)로 나타남

제2절 아동학대 대응체계 법률 및 정책

○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제22조),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제22조의 4),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제29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제10조), 현장출동(제11조),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제12조), 임시조치의 청구(제14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제36조)을 규정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 모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최근 활발히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를 비교했을 때 대전광역시의 경우 실태조사, 신고체제 구축·운영,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

○ 우리나라 정부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토대로, 2020년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2021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현 정부는 2세 이하 학대위기 아동 조기개입 체계 강화, 신고접수 이후 학대 사례 판단 전 또는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 아동학대 신고의 활성화, 대응인력 전문성 향상 시스템 구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표준화 등의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는 2023년 ‘아동학대 없는 세상, 아동이 행복한 대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① 아동학대 인식개선, 올바른 양육법 공유로 학대 예방 ② 시민 모두 아동지킴이, 위기가구 조기 발굴 ③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④ 민·관 협력으로 아동학대 공동대응 체계구축의 4대 목표를 중심으로 5가지 세부추진방안을 시행함

제3절 아동학대 대응체계

○ 대전광역시는 5개 자치구별로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현재 아동학대전담공무원(30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19명)을 배치하였음. 각 자치구별로 아동학대예방경찰관(APO) 7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3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또한 광역형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은 충남대병원(1개소)이고 그 밖에 지역형 병원들이(12개소) 새싹지킴이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총 6개소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운영 중임

○ 국내 중 서울특별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기존의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예방센터’로 기능을 확대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노원구의 경우 상황별로 맞춤 지원을 하는 ‘아동보호 통합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초 지자체 최초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는 광역단위의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경기도 내 아동학대 대응인력 체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아동과 가정회복을 위한 지원, 지역사회기관 협력관계 구축, 연구정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경기도 아동보호 정책의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는 광역시 및 개별 자치구별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울산광역시는 ‘울산형 대응체계’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부터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강화까지 현장 대응력을 강화시키고 있음. 2023년에는 ‘사전발굴’, ‘인식개선’, ‘초기대응’, ‘분리보호’, ‘사후관리’ 등 단계 전과정을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국외 사례 중 미국은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APTA)」를 제정하고 ‘차등적 대응체계(Differential Response System)’를 도입하였음. 뉴욕주의 경우 아동보호 서비스 관련법은 사회보장서비스법(Social Services Law)이며, 2013년부터 CARES에 따라 뉴욕주의 중앙등록부(SCR)에 등록된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비(非)조사 아동 보호를 위한 대안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주는 Differential Response(DR)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아동학대 및 유관 서비스, 아동학대의 3가지 경로로 아동을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신고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독일은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이하 연방 가족부)'에서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소년청(Jugendamt)'이 담당하고 있음. 독일의 가정법원은 청소년청과 서로 상호 협조 하에 관련 사례를 처리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부모의 친권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 상실 등과 같은 조치할 수 있음

○ 일본은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되어 아동상담소 같은 외부기관과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일본의 경우 정부 역할보다 민간의 역할을 우선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신고의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제3장 설문조사

제1절 조사개요

○ 본 설문조사는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전형 대응체계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대응체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응체계별 기능 및 역할, 정책 및 서비스 요구 등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관련 주요 종사자 137명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본 조사는 2023년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온라인 웹/모바일 조사로 진행하였음.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기능 및 역할,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연계·협력,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대응체계 종사자 교육 및 훈련, 대응체계 종사자 근무환경 등으로 구성하였음

제2절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 특성

○ 본 설문조사는 자치구 아동보호팀(5개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명(16.8%), 아동보호전담요원 12명(8.8%), 시·구 경찰청과 경찰서(6개소)의 아동학대예방경찰관과 여성·청소년수사팀

18명(13.1%), 아동보호전문기관(3개소) 상담원 48명(35%),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명(2.9%),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명(23.4%)으로, 총 137명(100%)이 조사에 참여하였음

○ 성별로는 '여성'이 67.2%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31.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20대' 27.7%, '40대' 26.3% 순이며,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68.6%였음. 의료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사회복지사'가 89.8%로 가장 많았고 아동학대 분야 업무의 총 경력은 '1-5년'이 62.0%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1년 미만' 28.5%였음

2.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기능 및 역할

- 주요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 수행도, 난이도 비교

○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인식하는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4.61점), 수행도(4.59점), 난이도(4.52점)는 모두 '상담조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경우는 중요도(4.75점)는 '상담'이 가장 높았고 수행도(4.64점)와 난이도(4.00점)에서는 '사례점검'이 가장 높았음

○ 아동학대예방경찰관과 여성 · 청소년수사팀은 중요도(4.53점)와 수행도(4.56점)는 '신고접수'에서 가장 높고, 난이도(3.78점)에서는 '보호조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4.64점)와 수행도(4.61점)는 '상담 · 치료 · 교육'에서 가장 높았고, 난이도(3.79점)에서는 두 번째로 높았음. '가정복귀 지원'은 중요도와 수행도에 비해 난이도(3.90점)가 가장 높은 순위를 보임

○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5.00점)는 '피해아동 발견 및 신고', '피해아동 진료'에서 가장 높았고 수행도(4.00점)는 '행정 관련'에서 가장 높고, 난이도(2.75점)는 '수사 협조 및 의학적 자문'에서 높았음.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의 기능 및 역할 중요도(4.97점), 수행도(4.88점), 난이도(3.81점)는 모두 '생활지도'에서 가장 높았음

-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별 중요도-수행도 IPA분석

○ 중요도와 수행도를 바탕으로 IPA 분석을 한 결과, 높은 중요도에 비해 낮은 수행도를 나타낸 '자원과 노력 집중'이 필요한 영역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없는 것으로 나타남.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자원과 노력 집중' 영역에 1) 아동상담, 2) 개별보호 · 관리계획 수립 항목이

해당되었음

○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 · 청소년수사팀은 '자원과 노력 집중' 영역에 8) 피해자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9)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항목이 해당되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13) 아동학대예방사업(교육 및 홍보) 항목이었음

○ 전담의료기관의 의료사회복지사의 경우는 '자원과 노력 집중' 영역에 1) 피해아동 발견 및 신고, 2) 피해아동 진료, 4) 의료기관 연계 협력 항목이었고,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은 2) 심리안정지원(상담 및 프로그램) 항목이 해당되었음

-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별 중요도-난이도 IPA분석

○ 중요도와 난이도를 바탕으로 IPA 분석을 한 결과, 높은 중요도와 높은 난이도로 '큰 노력이 필요' 영역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3) 현장조사, 4)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 조사, 5)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한 상담 · 조사, 6)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 조사, 7) 아동학대 사례판단 항목이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1) 아동상담, 3) 양육상황 점검, 4) 주기적인 사례 점검, 5) 사례결정위원회 운영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예방경찰관과 여성 · 청소년수사팀의 '큰 노력 필요' 영역에는 1) 아동학대 신고접수(112), 3)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즉각분리), 4)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임시조치, 6)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 8) 피해자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항목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1) 피해아동 상담 · 치료 · 교육, 2) 피해아동의 가족 상담 · 치료 · 교육, 3) 아동학대행위자 상담 · 치료 · 교육, 6) 피해아동 및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 항목이 해당하였음

○ 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의 '큰 노력 필요' 영역에는 4) 의료기관 연계 · 협력 항목이 해당하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보육사는 2) 심리안정지원(상담 및 프로그램), 3) 생활지도 항목이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종사자 역할수행

○ 종사자의 역할수행(4점 만점)과 관련해 역할과다 2.77점, 역할불일치 2.59점, 과업갈등 2.32점, 역할모호성이 2.14점으로 나타남. 역할모호성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2.38점)이 가장 높았고 역할과다(3.06점), 역할불일치(2.73점), 과업갈등(2.48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높았음

○ 10점 만점에 업무량은 8.01점, 전문성은 6.83점으로 나타나 종사자들은 업무량 대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음. 업무의 주된 어려움으로 1순위(43.1%)와 1+2순위(51.1%) 모두에서 '인력 수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 1순위에서 '교육체계(보수교육 등) 강화'(30.7%)가 가장 높았고 이어 '사회적 인정체계 강화'(27.0%) 등 순이었음

3.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연계·협력

○ 모든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가 전반적인 연계 · 협력 수준(5점 만점)에 있어 보통수준인 3점 이상으로 연계 ·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향후 연계 · 협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5점 만점)도 모든 대응체계가 4점 이상으로 연계 ·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전반적인 협력 수준(4점 만점)은 2.91점으로 나타났음. '새로운 전문활동'의 경우 3.09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목표공유' 2.88점, '상호의존성' 2.84점, '협력과정 평가' 2.83점 순이었음

○ 종사자들이 인식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 효과(4점 만점)는 2.86점으로 나타났음.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 및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었다'(3.02점)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었다'(2.96점),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2.94점) 등의 순이었음

○ 다른 체계와의 연계 및 협력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1순위를 기준으로 '상대기관에 대한 이해 부족'(30.7%), '상대기관의 조직 간 협력에 대한 인식 부족'(23.4%), '협력을 담당할 인력 부족'(11.7%) 등의 순이었음. 전담의료기관의 경우 다른 체계와는 다르게 '연계기관 및 연계방법 정보 부족'(50.0%)이 높게 나타남

○ 다른 체계와의 원활한 협조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 1순위로 '상대직종 및 업무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 실시'(32.1%), '상호협력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 제공'(29.9%), '지역단위 단체 간 상호교류 기회의 확대'(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4.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 대응체계 종사자들이 인식한 타지역과 구분되는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특성으로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아동학대'(70.1%),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학대'(51.8%), '한부모 가정 아동학대'와 '재학대가 많은 편'(각 38.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대전광역시 대응체계의 장점은 1순위로 '사례관리'(19.7%), '정보 공유'(18.2%),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15.3%) 그리고 '조기발견'(14.6%) 순이었고 단점은 '처리과정이 오래 걸림'(24.1%), '정보 공유가 잘되지 않음'(20.4%),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이 미흡함'(19.7%) 등의 순으로 보고됨

○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기관 간 협력 강화'(40.1%), '기관별 역할 정립'과 '인력 충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각 6.6%), '전문성, 대상자 이해 제고'와 '대상자 안내, 신속 · 적극 개입'(각 5.1%) 등의 순으로 언급되었음

○ 아동학대 대응 업무진행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4점 만점)에 대해 모든 업무에서 보통 수준인 2.5점 이상으로 나타남. 그중 '신고접수'(3.12점), '사례관리'(2.96점)가 높게 나타났고 '종결 후 관리'(2.71점), '사례판단'(2.79점) 낮게 나타남

○ 아동학대 조사업무와 사례관리업무가 분리되었을 때의 장점으로는 '기관별 고유 전문성 향상'(27.0%), '사례관리에 집중, 서비스 질 향상'(22.6%)이 높게 나타났으며, 단점은 '소통 미흡, 협력 약화'(27.7%), '업무연속성 저하, 대상자 관리 약화'(22.6%) 등의 순으로 언급됨

○ 조사와 사례관리 업무 분리 시 개선방안으로는 '기관 간 협력모색(통합사례 회의 등)'(31.4%)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명확한 업무분담, 세부지침 마련' 7.3%, '조직단순화, 일원화' 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는, 1순위(21.2%)와 1+2순위(33.6%) 모두 '학대행위자 법적 조치 강화'로 나타났음. 이어서 1순위에서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19.7%),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문서비스 강화 및 기반 확충'(13.1%) 등의 순이었음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으로는 1순위(39.4%)와 1+2순위(56.2%) 모두에서 'TV/라디오 공익광고'라고 응답함. 이어 1순위에서는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18.2%), '학교/사회교육 기관 교육'(16.1%) 순임

○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람직한 대응 모델 방식을 조사한 결과, '시 주도 통합모델(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43.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시·구 통합하되, 각 기관(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분리 체제'(23.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보건복지부에 바라는 점으로 '고용안정, 처우개선, 종사자 보호'(15.3%)라고 언급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는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13.9%)이라고 하였음

○ 광역시 아동보호팀에는 '지역시책 개발, 통합지침 마련'(12.4%),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9.5%),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8.0%) 등의 순이었고 자치구 아동보호팀은 '정확한

정보 공유, 소통 강화'와 '연계 및 협력 강화'(13.1%), '적극적 아동보호 및 지속적 사례 관리'(9.5%) 등의 순으로 언급되었음

5. 대응체계 종사자 교육 및 훈련

○ 2022년에 참여한 직무관련 교육 참여 횟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횟수는 '필수 직무교육' 3.66회, '권고 직무교육' 4.06회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필수 직무교육'(26.3%)과 '권고 직무교육'(40.1%) 참여 횟수 모두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교육 참여 시간은 '필수 직무교육'이 평균 37.19시간이었고 '권고 직무교육'이 24.88시간이었음. 세부적으로 '필수 직무교육'(45.7%), '권고 직무교육'(58.6%) 모두 참여 시간이 '10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전문성 향상을 위해 참여한 활동으로는 '정부 부처 및 기관 주관 교육과정 참여'(63.5%), '민간 기관 주관 교육과정 참여'(45.3%),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참여'(42.3%) 등의 순이었음

○ 교육 활성화 방안으로는 1순위(40.9%)와 1+2순위(48.9%) 모두 '현장성을 반영한 교육주제 개발'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1순위에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업무량 조정)'(32.1%)이 그 뒤를 이었음

6. 대응체계 종사자 근무환경

○ 지난 3년간 업무상 질병, 사고 경험을 조사한 결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2%이고 지난 3년간 폭력 경험의 경우는 '직 · 간접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1.8%로 나타남

○ 종사자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1순위(21.9%)와 1+2순위(40.9%) 모두 '사건 발생 시 경찰서와 연계체계 구축'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1순위에서는 '트라우마 대처 방안 지원'(16.8%), '폭력예방 및 대응 매뉴얼 보급'(15.3%) 등의 순이었음

○ 업무 관련 스트레스 수준(10점 만점)은 7.63점으로, '6~10점(심하다)'가 86.8%로 나타남. 고충 또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은 '직장 동료에게 개인적으로 고충(어려움)을 의논'(72.3%), '무조건 참음'(43.1%), '관리자에게 개인적으로 의논'(32.1%)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직장만족도(5점 만점)에 대해 '동료와의 의사소통'(3.91점), '상사와의 의사소통'(3.58점),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3.34점) 등의 순으로 높았고 '임금(보수)'(2.35점), 복리후생제도'(2.55점), '근무시간'(2.63점)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남

제4장 초점집단면접

제1절 조사개요

○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역할과 기능 및 단계별 개선점을 알아보기 위해 대응체계로 활동하고 있는 공공과 민간 종사자인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함. 초점집단면접의 참여인원은 총 19명으로, 관리자 9명 1집단, 실무자10명 1집단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초점집단면접은 120분~180분 소요되었음

○ 면접 질문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 변화, 대응체계 단계별 역할과 기능, 대전형 모델 구축을 위한 제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주제 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함

제2절 분석결과

○ 아동학대 대응체계 업무 경험 분석 주요 결과

구분	주제
1) 대응체계 이후의 변화	공공성의 강화
	안정적 기반 마련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체계
2) 아동학대 발굴	아동학대 신고의 부담감
	아동학대 대응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3) 신고접수	반항심에 의한 아동 신고율 증가
	재학대 신고의 반복
4) 사례판단	동일한 목적, 다른 판단 기준
	재판단 프로세스의 부재
	임시조치의 증가
5) 보호조치	아동권리적, 아동친화적 접근 부족
	보호조치에서 아동정보 공유와 상세한 지침 필요
	아동 특성에 맞는 보호 필요
6) 사례관리	원활하지 않은 사례 모니터링 협조
	상담·교육 참여에 비자발적이고 거부적인 학대가정
	회복을 위한 가족 참여의 중요성
	심층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원 역량 강화 필요

구분	주제
7) 사례종결	공공연계회의를 통한 사례점검 및 종결
	원활한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노력과 시도
8) 대전형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위한 제언	대응방식의 일원화
	정기적이고 일원화된 소통체계 필요
	안정적 인력배치 및 전문성 강화
	재학대 개입 및 예방
	실효성 있는 학대 예방교육의 강화
	실질적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신고의무자 보호방안 강구

○ 주요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대전광역시 차원의 컨트롤 타워 기능 도입과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기적 소통체계 필요함

○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문성 구축을 위해 적정한 인력 지원과 안정적 배치가 요구되며, 반복되는 재학대에 대한 개입 및 실질적 예방책과 처벌기준 마련되어야 함. 또한 시민대상의 실효성 있는 학대 예방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유관 협력기관들 간의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필요. 특히 교육청과 학교 등 아동의 상시등원기관의 대응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며, 신고의무자의 개별 신고에 따른 노출위험과 부담감 완화를 위한 위원회나 협의체를 통한 신고 등 실질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제5장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 개발

○ 표준 대응체계 실시 이후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5개의 자치구에 3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는 2개 자치구와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임

○ 현행 구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첫째,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개 자치구와 업무협력에 따른 업무 분절 및 업무의 효율성이 감소되고 있음. 둘째, 자치구 개별 담당자 업무 의존도가 높아 공통 경험과 역량 축적에 한계가 있음 셋째,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소통체계가 부재함

○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대전광역시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구조에서 일관된 아동보호체계의 질적 향상, 효과성, 효율성이 담보되는 제도적 방안으로 광역시 차원의 컨트롤 타워 기능 도입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 제1안: 대전광역시 내에 아동학대 대응 종합센터 설치 방안. 이 형태는 통합적인 컨트롤 타워로 전체 대응 업무의 조정, 정리, 지원이 용이한 형태임. 1안은 대전광역시 전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며 자치구 단위의 칸막이 행정을 해소하므로 아동의 특성에 맞춘 보호 배치를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음.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함

○ 제2안: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기능 확대 방안.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에서 일관된 지침 지원을 하고, 유관 협력체계와 자문단 운영을 강화하며 일정부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방안. 별도 조례 제정이 필요 없고 1안 보다 빠르게 적용, 실시할 수 있으나 공무원 순환보직 등 인력변동이 잦을 경우 일관성 유지와 전문성 축적이 어려울 수 있음

○ 제3안: 대전광역시 내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컨트롤 타워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 대전광역시는 총괄적인 정책 방향 수립,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도·감독,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거점 및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별도 개소하거나, 현행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거점을 담당할 경우 추가 인력, 인프라 지원이 필요함

제6장 결론 및 제언

구분		내용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 추진방향		첫째, 아동권리적 및 친화적 대응 강화
		둘째,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
		셋째,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전문성 강화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지원을 위한 방안	1)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실화 차원	○ 정기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 협의체 구축 및 운영
		○ 사례회의 정례화: 공공↔민간 사례연계, 사례종결논의 시점
		○ 사례판단기준 세분화를 통한 예방기능 강화
		○ 피해아동의 욕구 및 의사 확인 절차 추가
		○ 아동특성에 맞는 보호배치
		○ 재학대 감소를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
		○ 대전광역시 특성이 적용된 대응체계 매뉴얼 개발
		○ 대응체계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평가 실시
		○ 안정적인 인력배치
	2)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강화 차원	○ '위원회'를 통한 신고로 신고의무자 보호 강화
		○ 아동학대예방 인식 개선 강화
	3) 종사자 역량 강화 및 근로환경 차원	○ 종사자 교육·훈련 강화
		○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제 1 장

서 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현장은 지난 2019년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을 전국 시·군·구에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즉각분리 제도의 도입 및 신속한 조사 협업체계를 마련했으며,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상향, 아동학대 대응 정보협의체 구성 등을 마련하였다.

이렇듯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등 아동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대응체계 현장의 인력 충원이나 전문성 문제, 대응체계 간 소통이나 연계 및 협력의 부족,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등의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김나영 외, 2021; 박명숙 외, 2021; 전민경, 임예슬, 2022; 조태준 외, 2021; 임수경, 송이은, 정도영, 2022).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응은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에서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한 법·제도·정책을 수립하고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시·도(아동학대담당부서)에서는 사업지역의 인력배치나 정원 조정, 조례개정 등을 지원하고 예산집행,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감독, 아동학대 관련 업무 및 운영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시·군·구(아동보호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판단, 보호계획 수립 등을 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경우 양육상황 점검, 사후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여성청소년과)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아동학대예방경찰관(Anti-abuse Police Officer, APO)은 아동학대의 조사를 지원하고 피해자를 모니터링 하는 등 등 사후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 및 교육과 가정복귀 프로그램, 가정기능 회복서비스, 치료 외 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신고, 진료, 수사 협조 및 의학적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이처럼 다양한 민·관에서 함께 현장 대응을 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

이러한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지자체별로 특성에 따라 운영 형태가 매우 다른 상황이다. 서울특별시는 기존의 아동복지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지원과 협력체계 유지 및 거점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2023), 부산광역시의 경우 민·관 거점 역할을 하는 공공형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아동보호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2023). 경기도는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운영으로, 현장 조사지원이나 사례관리 업무를 하지 않고 있으며(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2023), 수원특례시의 경우는 거점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를 설립하고 아동학대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특례시,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등이 한 건물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상황을 공유하고 개입하고 하고 있다(경인종합일보, 2023. 12. 6.).

대전광역시는 2020년 아동학대예방 선도도시를 선포하고 정부대책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2022년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1,178건이었고 이중 학대판단은 605건으로 나타났으며(대전광역시, 2023c), 인구 천 명 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3.00%로, 전국 평균 3.85%보다 낮고 가장 높은 울산광역시의 9.73%보다는 많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

현재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에서 30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19명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있으며, 경찰청과 6개 경찰서에는 7명의 아동학대예방경찰관(APO)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광역시 및 북부·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3개소)과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광역형 1개소, 지역형 12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6개소) 등이 일선 현장에서 아동학대 대응을 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올해 「2023년도 아동학대예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아동학대 없는 세상, 아동이 행복한 대전'이라는 비전 아래 아동학대 인식개선, 올바른 양육법 공유로 학대예방, 시민 모두 아동지킴이, 위기가구 조기 발굴,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그리고 민·관 협력으로 아동학대 공동대응 체계구축을 목표로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모니터링, 원가정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등 세부방안을 추진하였다(대전광역시, 2023a). 정부와 발맞춰 대전광역시도 현재 제도 및 대응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가 시행된 지 3년 되어가고 지난 10월부터는 아동학대 조사와 심층사례관리가 완전히 분리되는 시점에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대응체계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및 서비스 체계의 구축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이에 따라 현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해 점검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현행 대응체계가 피해아동의 실질적 보호와 지원에 충실한지 살펴보고 대전광역시 대응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및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에 근거해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응체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대전광역시의 특성이 반영된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한 모델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제1장 서론에서는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 개발과 관련된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추진체계 등을 제시하였다. 제2장 아동학대 현황 및 대응체계에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의 정의, 전국 및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현황,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는 우리나라와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 외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분석하였다.

제3장 설문조사결과에서는 조사개요 및 분석결과에 대해 제시하였다.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별 기능 및 역할, 연계 · 협력,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의 특성, 대응체계 종사자 교육 및 훈련, 그리고 대응체계 종사자 근무환경 등을 조사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양적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 하고자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대응체계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전광역시의 바람직한 모델 모형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 자문회의 등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광역시에 적합한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제시하였다. 마지막 제6장 결론 및 제언에서는 조사결과들을 바탕으로, 대전광역시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여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 추진방향과 운영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관련 국내 · 외 현황, 정책, 제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현황 및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정책 및 행정 자료 등을 수집하여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분석을 위해 관련 연구와 정책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였다.

2) 설문조사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대응체계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모바일/웹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IPA분석과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3) 초점집단면접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함께 대응체계 관련 종사자가 인식한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현장전문가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대응체계 실태와 개선방안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반영하였다.

4) 전문가 자문회의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관련 학계 및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연구 방향, 내용 및 방법, 분석

결과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조사표의 설문내용과 조사방법에 대해 자문을 받았으며,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와 정책 방향 및 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표 1-1〉 연구방법

구분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
조사대상	■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관련 종사자 -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관련 종사자 -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 초등학교 교육복지사
유효표본	■ 총 137명	■ 총 2회, 19명
조사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	■ 반구조화된 설문지
조사방법	■ 자기기입식 웹/모바일 설문조사	■ 대면면접
조사기간	■ 2023년 8월 7일 ~ 9월 7일	■ 2023년 8월 16일 ■ 2023년 8월 23일

제3절 연구추진체계

대전형 아동학대보호 및 대응체계 모델 개발 연구는 연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수행절차를 추진하였다.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제 2 장

아동학대 현황 및 대응체계

제2장 아동학대 현황 및 대응체계

본 장에서는 아동학대의 정의와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아동학대 관련 법체계를 분석하며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제도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 외 아동학대 대응체계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 및 정책제언을 도출한다.

제1절 아동학대의 정의 및 현황

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정의하고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제3조 제1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아동복지법」의 정의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아동학대 정의에 대해 ‘아동의 보호자와 신뢰 관계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생존, 발달 그리고 존엄성에 실재적·잠재적 해를 끼칠 수 있는 신체적, 감정적, 상업적이거나 다른 유형의 착취의 모든 형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유형을 물리적 학대, 성적 학대, 감정적·정서적 학대, 방임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조범근 외, 2017). 이러한 규정을 통해 유형의 학대행위(신체적 학대 및 성적 학대) 뿐만 아니라 무형의 학대행위(정서적 학대 및 유기, 방임) 또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개념 외에도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아동학대의 개념을 아동의 권리와 욕구 차원에서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김미숙 외, 2016).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법에 명확하게 정의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학대의 범위와 성격, 해석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사회적 관점에서는 더 광범위하게 아동학대를 인식하고 있어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 판단에 대한 어려움은 현장에서도 같은 사례지만 기관에

따라, 담당자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려 혼선과 갈등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사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2. 아동학대의 현황

1) 전국 아동학대 현황

(1) 시·도별 신고접수

2022년을 기준으로 시·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먼저 대전광역시의 경우 2022년 1,254건(2.8%)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접수는 경기도가 11,960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5,728건(12.9%), 인천광역시 3,157건(7.1%), 부산광역시 3,072건(6.9%) 순으로 높았다. 세종특별자치시 255건(0.6%)와 광주광역시 798건(1.8%), 제주특별자치도 822건(1.8%)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1〉 2022년 시·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단위: 건/%

시·도	아동학대 의심사례	
서울	5,728	12.9
부산	3,072	6.9
대구	1,800	4.0
인천	3,157	7.1
광주	798	1.8
대전	**1,254**	**2.8**
울산	2,130	4.8
세종	255	0.6
경기	11,960	26.9
강원	1,520	3.4
충북	1,254	2.8
충남	2,182	4.9
전북	2,153	4.8
전남	1,945	4.4
경북	2,122	4.8
경남	2,379	5.3
제주	822	1.8
총계	44,531	100.0

출처: 보건복지부(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2) 피해아동 발견율

2022년 추계 아동인구(0세~17세)는 7,256,021명이고 이중 아동학대 사례는 27,971건이었으며, 인구 천 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3.85%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212,407명의 아동인구 중 637건의 아동학대 사례가 있었으며, 피해아동 발견율은 3.00%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광역시의 발견율이 9.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전라남도 5.95%, 전라북도 5.55% 순이었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 1.97%, 광주광역시 2.28%, 서울특별시 2.61%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피해아동 발견율이 세종이나 광주광역시보다 비교적 높지만 울산광역시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았다.

〈표 2-2〉 2022년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단위: 명/건/%

지역	추계아동인구(0~17세)	아동학대 사례	피해아동 발견율 (인구 천 명 당)
서울	1,109,318	2,899	2.61
부산	412,283	1,726	4.19
대구	327,757	1,223	3.73
인천	424,827	2,216	5.22
광주	227,450	519	2.28
대전	**212,407**	**637**	**3.00**
울산	175,484	1,708	9.73
세종	85,619	169	1.97
경기	2,096,094	7,845	3.74
강원	199,549	982	4.9
충북	228,412	690	3.02
충남	319,155	1,209	3.79
전북	244,171	1,356	5.55
전남	242,667	1,444	5.95
경북	345,178	1,414	4.10
경남	492,196	1,510	3.07
제주	113,454	424	3.74
총계	7,256,021	27,971	3.85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2). 2022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2)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현황

2022년 기준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개월 입양아 아동학대 사망사건(2019년, 일명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며, 대전광역시도 마찬가지로 2020년에 신고접수 된 일반상담 수와 아동학대로 접수된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아동학대와 관련한 신고접수는 총 1,178건이었으며, 이중 학대판단 605건으로 전년 대비 신고접수는 522건 감소하였으며 학대판단은 499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근 5년간 대전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된 유형 중에는 중복 학대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 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현황

단위: 명/건

연도별	신고접수				아동학대유형					
	계	아동학대	일반상담	동일신고	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
2018	1,183	1,129	41	13	649	22	141	9	111	366
2019	1,362	1,214	117	31	891	135	198	20	82	456
2020	2,232	1,646	542	44	1,375	148	395	20	101	711
2021	1,700	1,614	50	36	1,104	151	335	13	86	519
2022	1,178	1,058	101	19	605	94	195	25	60	231
계	7,655	6,661	851	143	4,624	550	1,264	87	440	2,283

출처: 대전광역시(2023b). 2023년 아동학대대응 자치구 간담회 자료.

한편,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 처리결과(초기조치)는 다음과 같다. 전체 3,075명의 학대피해아동 중 대부분이 원가정보호(2,567건/ 83.5%)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분리보호된 아동의 수는 486명(15.8%)이고 기타 22명(0.7%)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전체 3,084건 중 지속관찰 1,615건(52.4%)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는 고발조치가 1,364명(44.2%), 분리 74명(2.4%), 기타 31명(1.0%)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2-4〉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신고 처리결과(초기조치)

단위: 명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조치				학대행위자 조치				
	계	원가정 보호	분리보호	기타	계	지속관찰	고발조치	분리	기타
2020	1,371	1,181	183	7	1,375	846	504	16	9
2021	1,099	903	192	4	1,104	528	554	4	18
2022	605	483	111	11	605	241	306	54	4
계	3,075	2,567	486	22	3,084	1,615	1,364	74	31

출처: 대전광역시(2023b). 2023년 아동학대대응 자치구 간담회 자료.

2022년 기준 최근 5년간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원인 및 아동학대행위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발생원인의 특징은 부모(양부모 포함)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률이 높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신고 처리된 4,624건의 사례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82.5%(3,815건)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학교 및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9.5%(441건), 대리양육자 3.7%(169건), 친인척 1.4%(65건), 기타 3.1%(143건) 순이었다.

〈표 2-5〉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원인 및 아동학대행위자

단위: 명/%

연도별	아동학대행위자와의 과계					
	계	부모 (양부모 포함)	대리양육자	친인척	교원, 보육, 시설	기타
2018	649	542(83.5%)	34(5.2%)	5(0.8%)	53(8.2%)	15(2.3%)
2019	891	663(74.4%)	28(3.1%)	8(0.9%)	155(17.4%)	37(4.2%)
2020	1,375	1,146(83.3%)	50(3.6%)	15(1.1%)	132(9.6%)	32(2.3%)
2021	1,104	937(84.9%)	47(4.3%)	8(0.7%)	72(6.5%)	40(3.6%)
2022	605	527(87.1%)	1(0.2%)	29(4.8%)	29(4.8%)	19(3.1%)
합계	4,624	3,815(82.5%)	169(3.7%)	65(1.4%)	441(9.5%)	143(3.1%)

출처: 대전광역시(2023b). 2023년 아동학대대응 자치구 간담회 자료.

마지막으로 2022년 기준 대전의 5개 자치구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22년을 기준으로, 신고접수는 서구 382건(32.4%), 중구 261건(22.2%), 동구 184건(15.6%), 대덕구 176건(14.9%), 유성구 175건(14.9%)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대판단은 총 637건으로 서구 213건(33.4%), 중구 118건(18.5%), 유성구 108건(17.0%), 대덕구 103건(16.2%), 동구 95건(14.9%)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고접수와 아동학대 발생비율 모두 5개 자치구 중 서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자치구별 아동학대 신고접수율과 비교하여 학대판단의 비율을 살펴보면, 유성구 61.7%(신고접수 175건/ 학대판단 108건), 대덕구 58.5%(신고접수 176건/ 학대판단 103건), 서구 55.8%(신고접수 382건/ 학대판단 213건), 동구 51.6%(신고접수 184건/ 학대판단 95건), 중구 45.2%(신고접수 261건/ 학대판단 118건) 순으로 확인된다.

〈표 2-6〉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아동학대 현황

단위: 건

구분	신고접수(아동학대, 일반상담, 동일신고)					학대판단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2019	190	258	519	231	167	95	151	384	159	104
2020	522	501	567	363	241	234	178	481	271	172
2021	237	387	523	351	232	156	264	270	290	168
2022	184	261	382	175	176	95	118	213	108	103

출처: 대전광역시(202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대책.

제2절 아동학대 대응체계 법률 및 정책

1. 법률 및 조례

1)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관련 법률은 아동학대에 대한 기본법인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처리, 신고, 피해아동의 보호 등에 대해 규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등 다양한 법률이 아동학대의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된다. 여기에서는 아동학대를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1) 아동복지법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아동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것은 「아동복지법」이며, 이 법은 아동의 권리 및 보호 등에 관하여 기본법적 지위에 있다. 아동학대에 있어 「아동복지법」은 기본법으로서, 타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특별법으로서의 법적 지위에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시대의 변화상에 따라 그 모습이 지속적으로 변해 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 30일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법제화한 「아동복리법」(법률 제912호)이 그 전신이었다. 이후 한국 사회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1980년대에는 사회적으로 핵가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계속된 경기 호황은 빈부 격차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종전의 아동복리법은 구호적 성격의 복지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동안의 경제·사회의 발전에 따라 발생한 사회적 복지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1981년 4월 13일 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법의 제명을 「아동복지법」으로 개칭하여 보호대상범위를 요구호아동 위주에서 전체아동으로 확대하고, 아동의 보호·육성책임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가 공동으로 지도록 하는 등 아동의 기본적 인격 및 특성과 능력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1990년대 한국 사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입 등으로 아동의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이룩하게 되었고, 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 안전에 대한 문제가 당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면서 2000년 1월 12일 전부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아동학대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아동복지법」은 4차례 일부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의 가중, 신고의무자 자격취득 교육과정 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내용 포함,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국가와 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및 실태조사, 신고체제구축 및 운영 의무화 등이 규정되었다.

「아동복지법」은 2011년 8월 4일 재차 전부개정을 통해 아동종합실태조사 시행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동행

및 현장 아동보호 강화 및 위험 요소 제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지원 및 학대 행위 재발 여부 확인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후에도 개정이 활발히 이루어져 아동학대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조기 발견체계 구축, 치료 및 취학 지원 등, 아동보호기관장 신분조회 범위 규정,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학대피해아동쉼터 법적 근거 마련,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및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아동학대 법률상담, 전담의료기관 치료 요청,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피해아동 즉시 분리제도 마련,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개정을 지속하여 지금의 「아동복지법」에 이르게 되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7장 75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에 대한 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치,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등 지원, 아동학대행위자 상담 교육 및 취업 제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표 2-7〉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관련 구성항목

조	주요 내용
3조(정의)	▪ 아동학대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방임하는 것(7호) ▪ 피해아동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8호)
5조(보호자 책무)	▪ 보호자는 신체적 고통,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 됨(2항)
10조의 2(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및 운영)	▪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 중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업무 수행 등(6호)
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 3년마다 아동학대 등 아동종합실태 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15조(보호조치)	▪ 보호대상아동 발견 및 의뢰시 보호조치 실시, 개별 보호·관리 계획 수립
15조의 2(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아동학대, 아동학대행위자의 시설 입소 및 퇴소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보유(2항 3호, 2항 13호)
16조(보호대상아동 퇴소조치)	▪ 가정복귀 신청시 보장원 또는 아동복지시설장, 의사 의견 청취 후 가정 복귀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교육, 심리치료 미참여시 복귀 불가)
16조의 2(보호대상아동 사후관리)	▪ 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이 가정복귀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방문 지도·관리
17조(금지행위)	▪ 아동 매매, 성적 학대, 신체학대, 정서 학대 등 10개 행위 금지
18조(친권상실 선고 청구)	▪ 친권 남용 및 아동학대 등 중대한 사유 발견 시 친권행사 제한 또는 상실 청구
21조(보조인 선임 등)	▪ 법원 심리 과정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리 보조인 선임 가능(피해아동 증인 신문시 동석 허가)
22조(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의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조치 시행, 긴급전화설치 ▪ 자치단체장의 피해아동 발견 및 보호 업무 수행,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 보장원의 아동학대 예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 수행

조	주요 내용
22조의 2 (학생등에 대한 학대예방 및 지원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조기 발견 체계 및 연계 체계구축, 학대 피해 학생의 안정적 적응 지원, 정보 공유 등
22조의 3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 피해아동 보호, 치료 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장의 협조 요청
22조의 4(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등)	▪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 및 보호 계획(가족, 악대행위자 대상 포함) 수립통보
22조의 5(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 보건복지부 내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
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 아동학대예방의 날 지정 및 학대예방주간 시행
24조(홍보영상 제작, 배포, 송출)	▪ 아동학대 예방 방지, 위반자 계도 등을 위한 교육 등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관련 내용 포함 및 결과 제출
26조의 2(아동학대 예방 교육 시행)	▪ 공공기관과 공공단체(학교, 공직유관단체 등)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및 제출
27조의 2(아동학대 통보)	▪ 사법경찰관리의 아동학대 의심 사유 발생 시 자치단체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통보 ▪ 자치단체장 또는 보장원장의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 시행
27조의 3 (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피해아동 인도 시 거부금지
28조(사후관리)	▪ 보장원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아동학대 종료 시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한 재발 여부 확인, 피해아동 및 보호자,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 제공
28조의 2(아동학대 정보의 관리 및 제공)	▪ 피해아동, 가족, 학대행위자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
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 보장원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가족 상담, 교육,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제공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 여비 등 실비 지급 가능 및 취학 지원
29조의 2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제공)	▪ 자치단체장, 보장원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심리치료 제공 및 행위자의 성실 참여
29조의 3(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판결로 집행종료 및 유예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기관 노무 제공 금지(10년 초과 금지)
29조의 4, 5(취업 제한 선고자 취업 점검확인/해임 요구)	▪ 취업 제한 명령 선고자의 기관 운영 및 노무 제공에 대한 점검 ▪ 위반자 해임 요구
29조의 6(아동학대 법률상담)	▪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및 소송비용 국가 부담
29조의 7(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의료기관의 조치 사항
29조의 8 (아동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 등)	▪ 아동 인권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요청
31조(아동 안전 교육)	▪ 아동복지시설, 학교 등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시행
45조(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 자치단체의 학대 아동 치료,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예방 담당 기관 1개소 이상 의무 설치,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설치기준, 운영, 직원자격, 배치기준
46조(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 피해아동, 가족 및 학대행위자 상담, 치료, 교육, 예방 교육, 홍보, 사후관리 등
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업무 내용 규정(2024.1.9.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3)에서 재구성. https://www.law.go.kr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2014년 1월 28일에 제정되었다. 「아동학대처벌법」 에 아동학대 치사죄 및 학대 중상해죄를 신설하여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였다. 또한 상습범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였고, 학대행위자가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인 아동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신고접수 후 현장 출동을 규정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은 2016년 개정(2016.5.29. 일부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불이익 조치자에 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따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 특례를 규정하여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2017년 개정(2017.12.19. 일부개정)에서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 및 치료위탁을 추가하고 상습 학대행위자로 보호처분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에 불응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 발생건수의 증가에도 행위자에 대한 통제, 피해아동보호의 부족함을 인지하여 2020년 개정(2020.3.24. 일부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장이 친권상실 청구, 범죄 신고접수, 현장 출동, 응급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접수 및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021년 양부모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처벌법」은 2021년 두 차례 개정하게 되는데(2021.1.26., 2021.3.16. 일부개정) 현장 출동, 현장 조사, 응급조치 등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여 가중 처벌하는 한편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보조인의 선정을 의무화하여 아동학대 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6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 및 정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범죄의 처리 절차, 아동보호 사건의 처리, 피해아동 보호명령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표 2-8〉 「아동학대처벌법」의 구성항목

조		주요 내용
1조(목적)		▪ 아동학대 범죄 처벌 및 피해아동보호 절차, 학대행위자 보호처분 규정
2조(정의)		▪ 아동학대, 아동학대 범죄,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아동보호 사건 등
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
아동학대 범죄 처벌	4조(아동학대 살해치사)	▪ 살해 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사망에 이르게 한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조(아동학대 중상해)	▪ 생명 위험 발생, 불구 또는 난치 질병에 이르게 한때 3년 이상 징역
	6조(상습범) 7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상습적 아동 범죄를 범한 경우 1/2까지 가중처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 1/2까지 가중처벌
	8조(형별, 수강명령 병과)	▪ 유죄판결 시 200시간 범위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9조(친권상실 청구)	▪ 중상해, 상습 아동 범죄시 검사는 친권상실 선고, 후견인 변경심판 청구
아동학대 범죄 처리절차	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와 절차)	▪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임의), 신고의무자 신고(강행) ▪ 사도, 사군구 또는 수사기관 즉시 조사 또는 수사 착수
	10조의 2, 3(불이익 금지, 신고자 보호조치)	▪ 아동학대 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금지 ▪ 신고자 등 보호(인적 사항 공개금지, 신변안전 조치 등)
	11조(현장 출동)	▪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장 출동, 조사 및 업무 방해금지 ▪ 피해아동, 신고자, 목격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위한 분리 조사
	12조(피해아동응급조치)	▪ 학대 피해 확인, 재학대 위험 급박현저한 경우 범죄행위 제지, 격리, 시설 및 의료기관 인도
	16조(피해아동변호사 선임 특례)	▪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며,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
	17조(증인신변안전)	▪ 생명, 신체 해를 입거나 염려 시 신변 요청
아동보호 사건	19조~22조(학대행위자 임시조치, 고지, 집행, 변경)	▪ 원활한 조사, 심리, 보호를 위해 학대행위자에게 퇴거, 접근금지, 친권 제한, 상담 및 교육, 구치소 유치 조치 가능
	25조(검사결정전 조사)	▪ 필요시 학대행위자 조사 요구 가능, 자료 제출 요구 가능
	26조(조건부 기소유예)	▪ 상담, 치료, 교육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27조(아동보호 사건처리)	▪ 사유를 고려하여 보호처분 가능
	28조(검사 송치) 29조(법원 송치)	▪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법원 송치 ▪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 시 법원 송치
	30조(송치시 아동학대행위자 처리)	▪ 송치 결정이 있는 경우 임시 조치 여부 결정, 인도와 결정은 구속기간 내 이루어져야 함
	35조(비밀엄수)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출판물 저작자와 발행인의 경우 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등 방송금지
	36조(보호처분결정) 38조(집행)	▪ 접근제한, 전기통신 접근제한, 친권 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 위탁 등 보호처분
피해아동 보호명령	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 판사 직권 또는 청구로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할 수 있음
	48~49조(보조인)	▪ 피해아동 및 행위자는 보조인 선임할 수 있음
	51조(피해아동보호명령기간)	▪ 1년을 초과할 수 없음(필요시 6개월 단위 연장)
	53조(이행실태조사)	▪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수시 조사
	5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학대 사건 조사, 사례관리, 법 절차 및 제도 등 교육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3)에서 재구성. https://www.law.go.kr

2)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 아동학대 관련 자치법규

대전광역시 및 5개 자치구(동구, 서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관련 자치법규를 살펴보면, 크게 자치법규명에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포함된 조례가 있고,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례의 조항 내에 아동학대 예방,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조례가 있다.

먼저,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포함된 자치법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또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로,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에서 모두 제정·시행하고 있다.

자치법규명에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례의 조항 내 아동학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도 제정되어 있다.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마다 조례제정상황은 다르지만, 대전광역시의 경우 「대전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가정 내 갈등 · 학대 · 폭력 ·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보육조례」에서는 보호자 또는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학대 및 권리침해에 대하여 보호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에서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이행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5개 자치구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마련하고 있는데, 5개 자치구 모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 학대 및 방임가정 아동을 이용 대상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서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덕구와 동구는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학대 등 고통스러운 사건 및 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주는 심리적 외상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덕구는 2019년 제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영유아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아동학대 신고율 및 발생률을 보이는 유성구의 경우 2017년 제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 조례」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대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 도모 및 학대 대응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성구는 「유성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마련하여 아동학대를 입소 대상으로 하여 기능, 비용지원과 자립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현황

대전광역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를 2016년 12월 30일에 제정하였다.

5개 자치구는 제정 시기는 다르지만 모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었는데, 서구가 2009년 6월에 최초로 제정하였고, 유성구가 2010년, 중구가 2017년, 대덕구와 동구가 2019년에 각각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 제정 이후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의 경우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구는 3회, 유성구는 2회, 대덕구는 1회의 일부개정을 실시하였으나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최근 활발히 개정이 이루어졌기에 이러한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9〉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조례 현황

구분	조례	제정시기	시행시기	개정시기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2016.12.30	2016.12.30	-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2019.6.21.	2019.6.21.	2021.7.30. (일부개정)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2019.12.31.	2019.12.31.	-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2009.6.26.	2009.6.26.	2018.10.8.(일부개정) 2018.12.24.(일부개정) 2020.8.3.(일부개정)
유성구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2010.2.18.	2010.2.18.	2020.10.12.(일부개정) 2021.11.16.(일부개정)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2017.11.8.	2017.11.8.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자치법규. https://www.law.go.kr

(2)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구성항목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의 항목이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5개 자치구의 조례가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구성항목을 살펴보았다.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의 조례를 비교하면, 대전광역시는 9개 조, 서울특별시는 14개 조, 광주광역시는 22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대전광역시는 2016년 제정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울특별시는 2016년 제정 이후 2021년에 3차례 일부개정을 하였으며 광주광역시는 2020년 3월에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과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사업비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관계 기관은 간의 협력체계 구축, 학대 피해아동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보 제공의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조례는 주민의 권리 의무와 벌칙에 관한 위임조례로 되어 있어 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의 조례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와 달리 규정되지 않은 조항이 존재한다. 「아동복지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의무에 따라 정책 수립, 연구·교육·홍보, 실태조사, 신고체제 구축·운영,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에는 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의 경우 실태조사, 신고체제 구축·운영,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표 2-10〉 대전광역시와 타광역자치단체 조례 구성항목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2016.12.30. 제정	2016.3.24. 제정 최근 개정 2021.12.30. 일부개정	2020.3.1. 제정
9조	14조	22조
1조(목적)	1조(목적)	1조(목적)
2조(정의)	2조(정의)	2조(정의)
	3조(적용범위)	3조(적용범위)
3조(책무)	4조(시장의 책무)	4조(시장의 책무)
	4조의2(보호자의 책무)	5조(보호자의 책무)
4조(예방계획수립·시행)	5조(예방계획수립시행)	6조(예방계획수립 등)
	9조(실태조사)	8조(실태조사)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5조(예방위원회 설치)	7조(예방위원회 설치)	9조(예방위원회 설치)
	11조의2(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15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11조의3(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16조(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11조의4(아동학대 위기징후 조기발견)	
		17조(사후관리 등)
6조(사업비지원)	13조(사업비지원)	18조(사업비지원)
	13조의2(지도감독)	
7조(교육 및 홍보)	8조(예방교육)	13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
	12조(아동학대 예방 행사, 홍보)	제7조(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8조(협력체계구축)	6조(협력체계구축)	19조(협력체계구축)
	6조의2(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14조(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
9조(정보제공)		
	10조(아동학대예방센터 설차운영)	10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11조(학대피해아동쉼터설차운영)	12조(학대피해아동쉼터설차운영)
		11조(긴급전화 설치 등)
	14조(비밀준수의 의무)	20조(비밀준수의 의무)
		21조(아동학대예방의날)
		22조(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자치법규. https://www.law.go.kr

5개 자치구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를 비교하여 보면, 5개 구 모두 목적, 책무, 예방계획수립, 위원회 설치, 협력체계구축, 사업비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5개 자치구 모두는 아니지만, 3개 자치구 이상이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의, 위원회 기능, 교육 및 홍보, 정보 제공,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자치구가 공통으로 제시되지 않은 구성항목은 대덕구와 서구의 실비보상과 관련된 조항, 서구와 유성구의 주민책무 규정, 대덕구의 아동학대 금지와 신고 의무, 서구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회 간사 등에 대한 규정이다.

〈표 2-11〉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조례 구성항목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15조	11조	17조	9조	11조
1조(목적)	1조(목적)	1조(목적)	1조(목적)	1조(목적)
2조(정의)	2조(정의)		2조(정의)	2조(정의)
3조(책무)	3조(책무)	3조(책무)	3조(책무)	3조(책무)
		4조(주민책무)	4조(주민책무)	
4조(아동학대금지)				
5조(아동학대 신고의무)				
6조(예방계획수립 등)	4조(예방계획수립 등)	12조(시행계획수립 등)	7조(시행계획수립)	4조(예방계획수립 등)
7조(위원회 설치)	6조(위원회 설치)	5조(위원회 설치)	5조(위원회 설치)	6조(위원회 설치)
		6조(위원회 구성)		
8조(위원회 기능)	7조(위원회 기능)	7조(위원회 기능)		7조(위원회 기능)
		8조(위원장 직무)		
		9조(회의)		
		10조(위원회 간사)		
9조(실비보상)		16조(실비보상)		
10조(협력체계구축)	5조(협력체계구축)	11조(협력체계구축)	6조(협력체계구축)	5조(협력체계구축)
11조(사업비 지원)	9조(예산지원)	13조(사업비 지원)	8조(사업비 지원)	9조(예산지원)
12조(교육 및 홍보)	8조(교육 및 홍보)		9조(교육 및 홍보)	8조(교육 및 홍보)
13조(정보제공)	10조(정보제공)	14조(정보제공)		10조(정보제공)
14조(비밀준수의무)	11조(비밀준수의무)	15조(비밀준수의무)		11조(비밀준수의무)
15조(시행규칙)		17조(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자치법규. https://www.law.go.kr

2. 지원정책

1) 중앙정부 지원정책

우리나라 정부는 아동보호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2018년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비롯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했으며, 2020년 7월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즉각분리제도의 법제화',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쉼터 확충' 등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해왔다(보건복지부, 2021). 그러나 16개월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2019)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이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현장 대응단계별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2021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총 4개 분야로, 구체적인 내용은 ① 초기대응의 전문성 및 이행력 강화, ② 대응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을 개선함, ③ 즉각 분리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함, ④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인식을 개선함, ⑤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입양 지원을 활성화를 포함한다.

현 윤석열 정부는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약자 복지 강화' 등의 국정비전을 설정하고 아동복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표방하며 향후 5년간 추진할 아동복지 정책의 청사진으로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관계부처 합동, 2023b).

아동학대와 관련해, 사망사건의 발생비율은 높지만 학대피해 발견율이 낮은 만 2세 이하 학대위기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체계를 강화하기 최근 1년간 병원 미방문 또는 필수 예방접종 미실시 영유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강화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3b). 아동학대 신고접수 이후 학대 사례판단 전 또는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양육방법 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좋은이웃들' 등의 지역 내 아동학대 감시인력의 양성도 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b).

한편, 변화된 아동 대응체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학습이 가능하게 하고, 모든 시·군·구에 조사인력을 2인 이상 확보를 추진하며 전담공무원 1인 지역은 업무대행자 지정, 권역별 합동 대응 등의 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3b). 아울러 기존의 아동학대 조사업무에서 2023년 10월부터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업무가 전환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b).

마지막으로 2023년 기준 11개소가 선정된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피해아동 보호 및 신체적·심리적 회복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b). 정부는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성장과 발달의 기회를 제공하고, 두텁고 촘촘한 아동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2-12〉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2023)

목표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	
전략	위기아동 조기 발굴 및 개입으로 중대사건 발생 방지 대응인력 전문성 및 기관 간 협업 강화로 서비스 품질 제고	
추진과제	〈예방〉 위기아동 발굴체계 내실화	■ 촘촘한 발굴 추진 ■ 조기개입체계 구축 및 신고 활성화
	〈대응〉 전문성 제고 등으로 아동 안전 강화	■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성 제고 ■ 아동안전 중심의 대응체계 보완
	〈사후관리〉 체계적인 보호지원으로 재학대 방지	■ 학대피해아동 회복지원 서비스 강화 ■ 사망사건 분석 체계화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3b).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2) 대전광역시 지원정책

대전광역시는 올해 '아동학대 없는 세상, 아동이 행복한 대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① 아동학대 인식개선과 올바른 양육법 공유로 학대 예방, ② 시민 모두 아동지킴이와 위기가구 조기 발굴, ③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과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④ 민·관 협력으로 아동학대 공동대응 체계구축의 4대 목표를 중심으로 5가지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대전광역시, 2023a).

먼저, 아동학대 예방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①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사업, ② 아동학대 예방 및 올바른 양육 홍보물 제작·배포, ③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의 주요사업으로는 아동수당과 부모교육을 연계하여 비대면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부모교육 관련 정보를 담은 리플릿을 제공하였다. 또한 광역시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부모교육을 진행하였고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동권리 컨퍼런스'를 연 2회 개최하여 아동권익 증진을 위한 양육문화 및 체벌 없는 자녀양육 인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다음으로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모니터링을 위해 ① e아동행복시스템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발굴, ②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미실시 아동의 안전확보를 위한 생애초기 영유아 특화 건강 확인 및 지원, ③ 유치원·초·중학교·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전수 조사 실시, ④ 시설아동의 인권 강화를 위해 아동 양육시설 인권보호관 운영 및

인권실태조사, ⑤ 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 사후 모니터링, ⑥ 학대피해 조기발견 및 적극 보호를 위해 재학대 우려 아동 대상 유관기관(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APO),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점검을 연 2회 시행하였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원가정의 아동보호 및 양육 기능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서비스, ② 보호 대상 아동 사례관리 및 피해아동·가족·학대행위자 상담·치료와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시범 사업) 실시, ③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거점 심리치료 지원팀을 별도 신설하여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심리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정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④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새싹지킴이 병원' 운영하여 광역시 단위의 거점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한 전문성을 제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① 민·관 실무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하고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전담경찰관(APO), 아동보호전담기관, 자치경찰위원회 등 유관기관 워크샵을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 발생의 예방 및 아동학대 관련 인식개선,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활성화를 도모하여 아동학대예방 선도도시(2020.09 선포)에 걸맞는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표 2-13〉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추진계획(2023)

분야	세부 추진방안
아동학대예방 인식개선	①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사업 ② 아동학대 예방 및 올바른 양육 홍보물 제작·배포 ③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모니터링	① e아동행복시스템으로 위기아동 발굴 ② 생애초기 영유아 특화 건강 확인 및 지원 ③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전수조사 실시 ④ 아동양육시설 인권보호관 운영 및 인권실태조사 ⑤ 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 사후 모니터링 ⑥ 재학대 우려아동 유관기관 합동점검
원가정 기능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서비스 ② 피해아동·가족·학대행위자 상담·치료 ③ 거점 심리치료 가정회복 프로그램 ④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새싹지킴이병원" 운영
민·관 협력체계로 아동학대 예방 강화	① 민·관 실무협의체 운영 내실화 ② 유관기관 워크샵 개최
기타	대전형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모델 마련

출처: 대전광역시(2023a). 2023년도 아동학대예방 추진계획.

제3절 아동학대 대응체계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및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국내 사례에서는 비교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되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를 선별하여 개별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아동학대 관련 대응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외 사례는 아동학대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우리와 법체계가 유사한 독일, 일본을 선별하여 각국의 아동학대 관련 법률과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개별 국가에서 어떠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검토하며, 지역사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방법 등을 탐색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모델 마련을 위해 주는 시사점을 모색한다.

1.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체계

정부는 아동학대 현장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별 업무의 역할을 명문화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평가를 통해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a).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대응과에서는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한 법·제도·정책 수립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아동학대 관련 예산지원 및 실적을 총괄 관리한다. 그뿐만 아니라,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를 지원하고 지자체 아동학대 대응사업을 평가하며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하여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법무부의 여성아동인권과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법·제도·정책 마련 및 개선을 주요 역할로 삼고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학대행위자 교육·교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게 교육을 수행하며 각 검찰청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를 지원 및 총괄한다.

교육부의 교육복지정책과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를 주요업무로 삼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개발·보급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미인정 결석, 예비소집 등을 활용하여 아동의 소재안전 파악을 통한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학대피해아동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상담·관찰과 비밀전학 제도 개선 및 학생생활기록부 안내 등 피해 학생의 취학 및 학습을 위한 후속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여성

가족부의 권익지원과에서는 성폭력 대응과 관련한 법·제도·정책 마련 및 개선을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운영 및 지침·매뉴얼 마련, 예산지원 및 실적을 관리하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자립지원과에서는 위기청소년 상담·상담·보호 등 지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을 담당한다.

경찰청의 아동청소년과와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서는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한 법·제도·정책 마련 및 개선을 기본으로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 지도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예방본부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하고,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복지안전본부에서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통합유지관리, 개선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관련 통계정보를 제공 및 관리하고 있으며,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보안체계를 점검·구축하고 있다.

〈표 2-14〉 정책 수립 및 대응체계 개선 주체 및 역할

주체	업무역할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한 법·제도·정책 수립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총괄 ■ 예산지원 및 실적 총괄 관리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지원 ■ 지자체 아동학대 대응 사업 평가 ■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운영(아동권리보장원 위탁)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법·제도·정책 마련 및 개선 ■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학대행위자 교육·교화 지원체계 마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교육 ■ 각 검찰청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및 총괄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아동학대 예방관련 교육 및 홍보 안내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개발·보급 - 미인정결석, 예비소집 등 ■ 소재안전 파악을 통한 아동학대 조기 발견 ■ 피해아동의 학습권 보호조치 운영, 상담·관찰 등 피해학생 후속 지원 ■ 비밀전학 제도 개선 및 학생생활기록부 안내를 통한 피해학생의 취학지원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청소년자립지원과)	■ 성폭력 대응과 관련한 법·제도·정책 마련 및 개선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및 지침·매뉴얼 마련, 예산 지원 및 실적관리 *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 위기청소년 상담·상담·보호 등 지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한 법·제도·정책 마련 및 개선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지원 ■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 운영 ■ 아동학대 관련 예산 운영 ■ 아동학대예방 홍보 및 교육 지원, 아동학대사건 수사 지도

주체	업무역할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안전본부)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통합유지관리, 개선 ■ 아동학대 관련 통계정보 제공 및 관리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보안체계 점검·구축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3a). 2023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p.4.

이와 같은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현장전문가들의 주요 업무 및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관계부처 합동, 2023a). 먼저, 시·도 아동학대 담당부서는 사업 지역 인력배치 및 정원 조정, 조례개정 등을 지원하고 사업계획 검토 및 조정, 예산 집행,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관리·감독,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한다. 시·군·구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피해아동·아동학대행위자 등을 조사 및 상담하며 아동학대 사례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의 4가지 유형으로 판단한다. 또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통보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해아동 사례관리 지도·감독 등 업무수행 한다.

그 다음으로 경찰의 '112종합상황실'은 신고접수 시 학대피해아동의 안전 및 긴급 상황 여부를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학대와 관련하여 최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한다. 이를 학대예방경찰관(APO)에 통보하여 지역경찰 및 여성·청소년수사팀 출동을 지령한다. 이때 112 신고전화 또는 APO 시스템상 아동학대 재발 이력을 확인하며, 재발 이력 확인 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령을 내린다. '지역경찰'은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여 행위자 제지 등과 같은 초동조치를 수행하고, 신고사항 이외의 추가적인 정보 확인 등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이와 같은 현장상황을 여성·청소년수사팀 등에 공유한다. 이때 3급지 경찰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는데, 가정폭력 수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접수관서에서 가정폭력과 병합 수사를 수행한다. '학대예방경찰관(APO)'은 경찰서에서 아동학대 정책업무를 담당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전수합동조사, 피해아동 보호, 사후관리 등을 실시한다. 긴급한 피해아동 보호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찰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함께 현장 출동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정보 공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서의 '여성·청소년수사(강력)팀'의 경우, 24시간 교대 근무하며 아동학대 수사를 전담한다. 이들은 지역경찰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 현장 출동 및

아동학대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데, 평일 주간은 학대예방경찰관(APO)이, 야간 및 휴일은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에게 동행출동 요청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도 경찰청의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만10세 미만 및 아동학대 살해·치사 등 중요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여 수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의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재학대 위험 감소 시까지 전문적 사례관리 업무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가 변경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부칙 제 3조 제 3항에 근거하여 지자체 실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체제 안착 시기인 2023년 9월 30일까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보완하였고 10월 1일부터는 아동학대 조사 업무와 심층사례관리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처벌법」제 11조 제 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현장출동 시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하는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아동학대 사건 대응 시 협업의 강화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계획으로, 아동학대 조사와 관련한 업무수행 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공동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긴밀한 협력체계 아래 유기적인 협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협력하여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a)

〈표 2-15〉 아동학대 현장 대응 주체 및 역할

주체	업무역할
시·도 (아동학대 담당부서)	■ 사업지역 인력배차정원 조정, 조례개정 등 지원 ■ 사업계획 검토·조정 및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 ■ 아동학대 관련 업무 및 운영 지원
시·군·구 (아동보호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 아동학대 사례판단(신체적·정서적 등) ■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의 지도·감독 ■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역량 강화
	〈아동보호전담요원〉 ■ 보호대상 아동(학대피해아동 제외) 상담, 아동사정, 개별보호계획수립 등 ■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분리보호 중인 보호대상 아동(학대피해아동 포함) 양육상황 점검

주체	업무역할
시·도 경찰청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 아동학대 신고접수(112) 및 지자체에 관련 사실 통보 ■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동행출동 및 현장조사 ■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 ■ 유관기관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10세미만 아동은 시·도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서 아동학대 사건 수사 전담
아동보호전문기관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 위한 상담·치료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아동정보시스템 정보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간의 연계 ■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 가정복귀절차 실시, 사후관리 ■ 법원의 상담위탁 명령 수행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 피해아동 발견 및 신고 ■ 피해아동 진료 ■ 수사 협조 및 의학적 자문 ■ 의료기관 연계 협력
해바라기센터	■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의료지원체계 운영 ■ 사건 조사, 수사 및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와 연계망 구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폭력·학대 등 피해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 학대 정황 의심 시, 경찰청 등 유관기관 신고 ■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연계된 위기청소년 상담 등 지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 장애인학대(장애아동 포함)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3a). 2023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p.5~6.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사건의 개입을 위한 업무 흐름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24시간 신고전화 112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데 이때 접수된 사례는 '아동학대의심사례' 또는 '일반상담'으로 분류한다. '일반상담'으로 접수될 경우, 통합전산망에 기록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타기관에 연계되지만, '아동학대의심사례'로 분류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 진행한다.

조사는 학대 발생지 및 관련 장소 내 조사를 수행하는데, 이때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뿐만 아니라 신고자와 보육 및 교육기관 종사자, 목격자, 이웃 등 관련인 조사를 수행한다. 이와 같은 조사를 통해 학대 혐의판단 및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을 학대행위자(가해자) 수사를 담당하며, 담당 공무원은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업무를 담당한다.

신고 및 접수된 사건이 아동학대 대응인력을 통해 아동학대 사례로 분류될 경우, 피해아동에게는 응급조치와 보호 명령 조치가 이루어진다. 먼저, 응급조치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의 범죄 행위의 제지하고 피해아동 격리 및 보호시설·의료기관으로 인도한다. 피해아동 보호명령 조치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퇴거 등 격리 및 접근제한, 전기통신 제한을 하고,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필요 시 행위자의 친권을 정지, 아동보호를 위해 치료 및 가정위탁, 후견인 권한 제한 및 정지하고 새로운 보조인 및 후견인을 선임한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는, 가장 먼저 행위를 제지하고, 임시조치 이후 필요한 경우 고소·고발을 진행한다. 임시조치의 종류로는 퇴거 등 격리와 접근금지, 전기통신 금지가 있으며, 친권 또는 후견인 행사 제한 및 정지,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 위탁, 구치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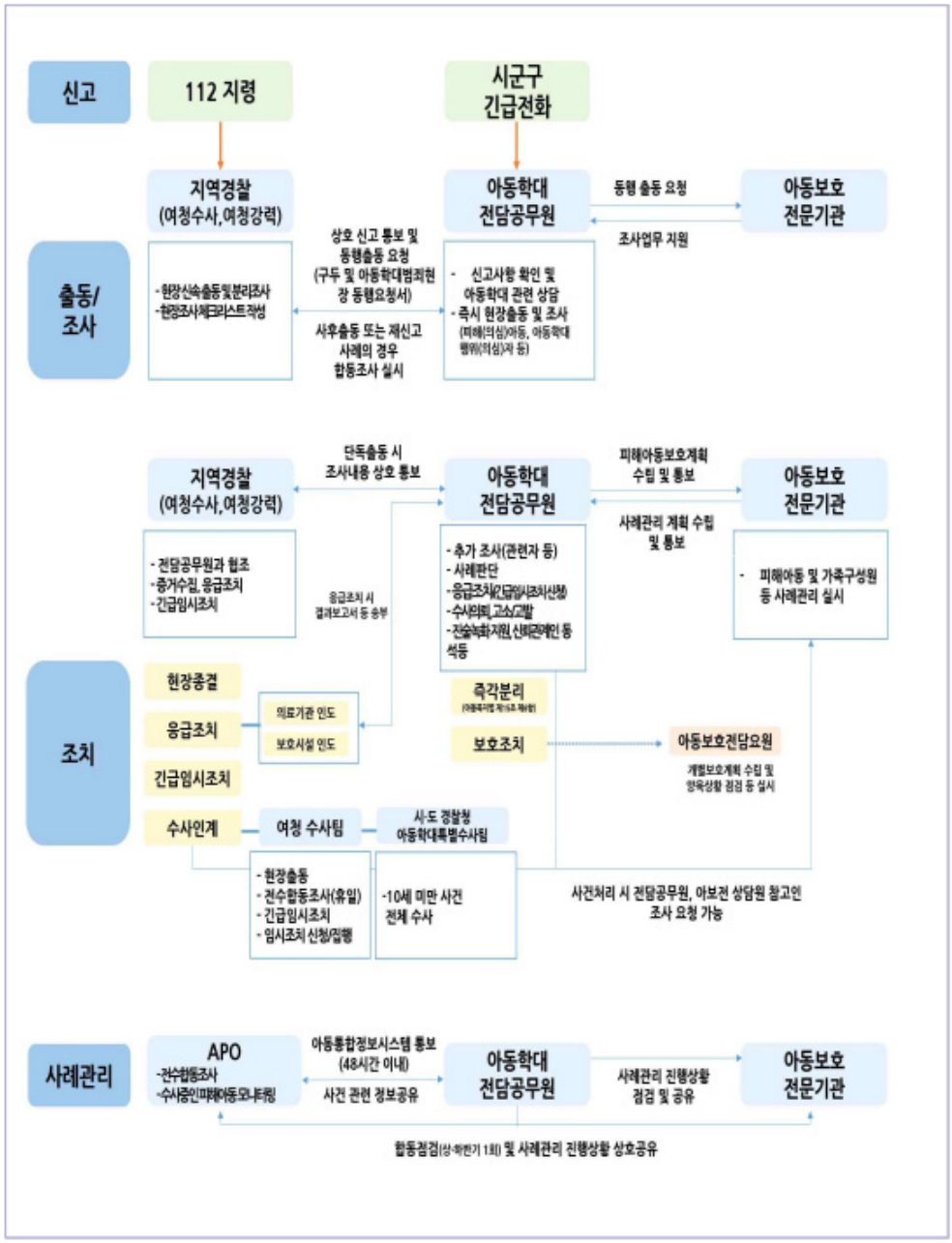
정부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지자체 중심의 아동보호와 아동학대 조사의 공공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추진하였다. 아동보호를 위한 공공성 강화는 공적 체계를 통해 아동보호와 관련한 정책을 집행 및 운영함으로써 아동학대 조사와 개입의 분리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 및 다체계 간 협력(경찰,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한 아동보호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내손안에서울, 2021. 5. 12.).

아동보호와 아동학대 조사의 공공화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대변되는 공공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인 민간의 역할이 재분장되었는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시·군·구 배치되어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한 전반적 업무수행(신고, 조사, 사례판단, 보호계획 수립 및 조치 등)을 담당한다.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 지원하며, 재학대 위험 소멸 시까지 심층적·전문적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데, 사례관리를 위한 초기면접부터 사례관리 계획 수립 및 개입, 점검,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를 위한 종결 전 모니터링 및 사례종결 등의 사례관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업무에는 상담 및 의료지원, 심리치료, 학습지원, 수사 및 증거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이 포함되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에는 보호처분 및 임시조치 등의 결과 상담, 아동학대 및 아동양육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가정지원(경제 및 가사지원) 등이 포함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이뿐만 아니라, 학대피해 가족을 위한 지원도 수행할 수 있는데, 상담 및 가족치료, 가정 지원(경제 및 가사지원), 원가정복귀를 위한 가족기능 강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례관리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을 보호하고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사후관리 연계기관을 결정하고,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2).

[그림 2-1] 아동학대 대응체계 업무 흐름도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3a). 2023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p.44.

2.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도 정부와 발맞춰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아동학대 조사의 공공화를 추진하며 광역시 단위로 아동학대 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자치구별로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였다.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복지국 아동보육과에서 아동학대대응 종합계획과 아동학대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학대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개 자치구에서도 아동복지과 등의 아동보호팀에서 학대피해 신고 접수, 상담 및 현장조사, 학대피해아동 보호 결정 및 사례관리,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등의 아동학대 업무를 맡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총 30명이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19명으로 집계되었다(대전광역시 2023a).

〈표 2-16〉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 전담조직

단위: 명

구분	아동학대전담공무원(A) (최초 배치 시기)	아동보호전담요원(B)	아동보호팀(A+B)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2 (2022.09)	-	2
동구 여성아동과	5 (2021.03)	4	9
중구 여성가족과	6 (2021.09)	4	10
서구 아동복지과	7 (2020.10)	5	12
유성구 가족복지과	5 (2021.09)	3	8
대덕구 가족친화과	5 (2021.09)	3	8
계	30	19	49

출처: 대전광역시(2023a). 2023년도 아동학대예방 추진계획.

한편, 아동학대예방경찰관(APO)은 아동학대 사건 수사, 피해자 지원 업무,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 경찰관으로,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유성서의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경찰서에 각각 1명씩 배치되어 총 7명의 아동학대예방경찰관(APO)이 있다.

또한 피해아동과 가족 및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재 대전광역시에 3개소가 있다. 기존의 대전광역시아동보호기관은 동구와 중구를,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3년 4월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소

하여 대덕구와 유성구를 관할하고 있다(대전광역시, 2023a). 학대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023년부터 심리지원팀을 피해아동, 피해아동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다(대전광역시, 2023a).

〈표 2-17〉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구분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일	2000. 10. 23.	2019. 10. 4.	2023. 3. 23.
소재지	중구	서구	유성구
관할지역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규모	780.2㎡(지상4층)	221.14㎡	393.08㎡
종사자	24명	19명	18명
위탁기간	2021. 7. 1. ~ 2026. 6. 30.	2019. 10. 4. ~ 2024. 10. 3.	2023. 2. 1. ~ 2028. 1. 31.
위탁기관	(사)굿네이버스	(사)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출처: 대전광역시(2023c). 내부자료.

대전광역시는 또한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적 개입을 위해 2023년 3월부터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병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대전광역시, 2023a). 광역시 거점(광역형) 충남대학교병원을 비롯해 각 자치구에 총 12개의 새싹지킴이병원이 있다. 충남대학교병원은 교육·세미나·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기관 협업체계와 응급콜 체계를 구축하여 24시간 응급의료지원이 가능하며, 아동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난도 학대사례의 진료 및 자문 제공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지역의 새싹지킴이병원에서는 학대사례 진료 및 자문을 주요업무로 삼고 교육·세미나·간담회 참석을 통해 의료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대전광역시, 2023a).

〈표 2-18〉 대전광역시 새싹지킴이병원 현황

구분	대상	역할
(광역) 새싹지킴이병원	■ 충남대학교병원(거점) ■ 건양대학교병원(지정)	■ 충남대학교병원(거점) - 아동보호위원회 구성 - 24시간 응급의료지원(응급콜 체계구축) - 고난도 학대사례진료 및 자문 - 의료기관 협업체계 구축(교육·세미나·간담회 개최)

구분	대상	역할
(지역) 새싹지킴이병원	■ (동구) 대전한국병원 ■ (중구) 대전성모병원, 대전선병원 ■ (서구) 을지대학교병원, 탄방엠블병원 ■ (대덕구)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 (유성구) 대전코젤병원, 봉키병원, 엠블병원, 유성선병원, 코젤병원	■ 학대사례 진료 및 자문 ■ 의료기관 협업체계 구축 협력 (교육세미나간담회 참석)

출처: 대전광역시(2023b). 2023년 아동학대 대응 자치구 간담회 자료.

원가정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기존의 4개소에서 2개소를 추가로 개설하여 총 6개소의 쉼터가 있으며, 즉각 분리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의 건립을 추진 중이나(2024년도 설치예정) 추진 중인 일시보호시설의 경우 학대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요보호아동 전체를 대상 한다(대전광역시, 2023a).

〈표 2-19〉 대전광역시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

연번	시설명	개소일	소재지 (비공개시설)	아동정원	종사자
1	좋은이웃쉼터	2005. 1. 19.	중구	7명(여)	7명
2	기쁜우리아동쉼터	2017. 12. 7.	서구	7명(남)	7명
3	대전민들레쉼터	2015. 12. 17.	유성구	7명(남)	7명
4	대전민들레플러스쉼터	2019. 11. 2.	대덕구	7명(여)	7명
5	대전희망쉼터	2022. 5. 2.	대덕구	7명(남)	7명
6	푸르니쉼터	2022. 12. 1.	동구	7명(여)	7명

출처: 대전광역시(2023c). 내부자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는 2022년부터 피해아동 중복진술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장비를 완비하였으며, 민·관실무협의체, 아동학대 대응 실무자 회의 및 간담회를 연 4회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다(대전광역시, 2023a). 또한 '아동학대, 예방이 먼저입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연 2회(6월, 9월) 아동학대 컨퍼런스, 부모교육 등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11월 19일인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행사 및 영화제, 전시회를 개최하여 대전광역시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3. 국내 사례

1)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서울특별시는 아동학대 피해 대응으로 위해 예방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2019년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종합 계획」을 발표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수행 전담인력으로 '아동 인권전문가'를 지정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류임량, 2023). 이 계획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에서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확립을 위해 아동 인권전문가 지정이 이루어졌다.

〈표 2-20〉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

분야	주요 추진과제
추진체계 강화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① (시) 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센터 확대 운영 ② (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 ③ (경찰) 경찰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④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대응 : 아동중심의 신속한 대응과 보호조치 강화	⑤ (신고) 아동학대 신고체계 개선 ⑥ (조사) 전담공무원·경찰 신속한 합동조사 ⑦ (판단) 객관적인 아동학대 판단시스템 구축 ⑧ (조치)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 ⑨ (회복) 가족기능 회복지원 ⑩ (재학대예방) 사례관리 철저로 재발 방지
예방 :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⑪ 예비부모와 신고의무자 예방교육 강화 ⑫ 시민참여형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전개 ⑬ 복지사각지대 아동 전수조사 정례화 ⑭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출처: 내손안에서울(2021). "제 2의 정인이 없도록…" https://mediahub.seoul.go.kr

입양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서울특별시는 서울경찰청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다(내손안에서울, 2021. 5. 12.). 이를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부터 학대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 피해아동 보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경찰청과 함께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22). 서울특별시는 '신고 즉시 안전조치, 두 번 다시 학대받지 않는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삼고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의 보호까지 단계별 대응시스템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아동 중심의 신속한 대응과 보호조치 강화',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3대 분야, 14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림 2-2] 서울특별시 대응기관 협력체계



출처: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2023). 주요사업내용. https://child.seoul.go.kr/archives/320

먼저, 피해아동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아동학대 현장 대응시스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였다. 그동안 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지목되었던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서울을 8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야간·주말·응급 상황 등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으로 8개 병원(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보훈병원, 경찰병원, 보라매병원, 이대 서울병원, 적십자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내손안의서울, 2021. 5. 12.). 전담의료기관은 주말 및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지원체제로 운영되며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치료, 보호시설 입소를 위한 건강검진, 전문의료인의 의학적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 상담 등을 One-Stop으로 지원한다. 서울특별시의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서울특별시, 2022), 공무원, 경찰,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아동학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학대사례를 판단하는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 회의'를 구축하여 자치구별로 운영하고 있다(내손안에서울, 2021. 5. 12.).

〈표 2-21〉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대응체계관련 기관별 역할

주체	업무역할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5개)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 아동학대 사례판단(신체적·정신적 등) ■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의 종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등에 대한 사례관리의 지도·감독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역량 강화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역량 강화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양육시설 종사자 등) ■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캠페인 ■ 아동학대 전담인력 합동연수 ■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 전문위원 인력풀 구축 및 운영 ■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 협력회의 ■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 심리서비스 제공 ■ 아동보호전문기관,쉼터 임상심리치료인력 역량 강화 지원 ■ 아동양육시설 임상심리상담원 역량 강화지원 ■ 학대피해아동 심리평가 및 치료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9개)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교육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 ■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아동학대 대응 전담의료기관 (44개)	■ 광역 전담의료기관 - 통합진료 및 다학제적 논의를 통한 수사 자문과 의학적 소견 발급 -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표준 진료 및 서식 등에 대한 개발 지원 ■ (지역 전담의료기관) - 야간·공휴일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의료 지원(ONE-STOP) - 상담, 신체·정신적 치료/검사 및 검진

출처: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2023). 주요사업내용. https://child.seoul.go.kr/archives/320

둘째, 서울특별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였다. 기존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예방센터'로 기능을 확대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으며,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를 하기 위한 보호시설은 2021년 8개소에서 2022년 10개소로 확충하고 2023년 12개소까지 확충할 것을 목표로 세웠다(내손안에서울, 2021. 5. 12.; 서울특별시, 2022). 또한, 아동학대 신고 시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나가도록 공공성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전담인력과 보호시설을 확충해 전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2020년 58명에서 2021년 79명, 2022년 97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아동학대 신고 증가와 야간·휴일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는 앞으로 인력을 191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응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24시간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용 차량 지원, 녹취록 장비 지원, 자치구와 경찰의 합동교육, 아동학대 대응인력별 맞춤형 직무교육 강화, 수당 현실화,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이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있다(내손안에서울, 2021. 5. 12.; 서울특별시, 2022).

셋째, 서울특별시는 아동학대 위험 아동의 조기발견 및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시-경찰 합동 전수조사를 연 1회로 정례화하고 신고 활성화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학대행위자가 신고 사실을 알게 되어 보복을 당할까 우려해 신고를 꺼려왔던 점을 고려하여 신고자의 철저한 신변 보호(신고자 인적사항 가명처리 등)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임신·출산·입양 초기 부모에게 부모교육(예비부모 포함)을 제공하고 양육·교육기관, 아동복지센터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하였다(내손안에서울, 2021. 5. 12.).

이처럼 서울특별시는 아동학대를 가정 내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기존의 아동학대 대응현장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 위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사와 피해아동보호, 학대재발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직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구축한 '아동보호통합체계'란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조사부터 사례관리, 보호조치, 이후의 자립지원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영유아부터 보호종료 아동(자립준비청년)에 이르기까지 상황별로 맞춤 지원하는 시스템을 뜻한다(노원복지샘, 2023). 이와 같은 통합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원구는 2018년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노원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직영으로 시작한 2018년 당시에는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를 8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권역별로 관리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지속적인 관리가 쉽지 않았다. 학대 사실을 조사하는 공무원과 사실 확인 후 사례관리를 하는 민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노원복지샘,

2023; 지역연합신문, 2018. 3. 13.). 노원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아동학대 조사의 전문성과 사례관리의 공공성 및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병원 등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학대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노원복지샘, 2023; 서울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2023).

또한, 노원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유아(0~7세) 전용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설립해 전액 구비로 운영하고 있다. 영유아의 경우 의사표현능력의 한계로 즉시 격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돌봄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일반 쉼터에서는 보호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노원구는 7세 이하의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전용 쉼터를 조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즉시 분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문적 심리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노원복지샘, 2023).

노원구는 또한 학대피해아동의 건강한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해, 긴급상황 발생 시 친권자 등이 동행하지 않아도 우선 진료가 가능하도록 '전담의료기관과 협약체계 구축'하고 '아동학대 관련 전담팀 운영',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운영'의 세 가지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시정일보, 2023. 1. 13.). 먼저, '전담의료기관 협약체계 구축'을 위해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을지대학교병원과 노원경찰서는 학대피해아동 발견, 신고, 응급조치 및 진료, 수사협조, 의학적 자문 등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전담의료기관과 협약체계 구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노원구청이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피해예방은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전담팀'에서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학대전담공무원과 노원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담당자가 매주 3회 이상 소통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는 월 1회, 대면 회의로 운영되고 있다.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 등을 결정한다. 이와 관련한 '아동학대 판단회의'도 월 1회, 대면으로 소통하며 학대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구청, 노원경찰서, 북부교육지원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5개 기관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통해 학대 피해, 위기의심 아동의 정보 공유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시정일보, 2023. 1. 13.).

한편, 노원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관 제도(2023. 7.)를 도입했으며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회의 정례화, 적극적인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전개 등의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노원복지샘, 2023). 노원구의 '아동보호통합체계'는

공적 돌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강화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 사례로 꼽히며, 협력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촘촘한 아동대상 보호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3) 경기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는 경기지역 시군 18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되는 학대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2년 수원 장안구에 광역단위의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였다(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2023). 이처럼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광역단위의 거점기관이 생긴 것은 경기도의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군 아동학대 예방 정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현장실무자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경기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경기도 내 아동학대 대응인력체계 지원, 아동과 가정회복을 위한 지원(정신건강지원), 지역사회기관 협력관계 구축, 연구정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경기도 아동보호 정책의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표 2-22〉 경기도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주요사업

주요사업	업무역할
아동학대대응 전문인력 양성	■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 강화 교육 ■ 신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지원
민·관 아동보호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 아동학대 대응인력 길라잡이 발간 ■ 학대피해아동 가정 지원 ■ 아동학대 대응인력 지원
광역단위 아동보호체계 구축	■ 아동학대예방 합동 연찬회 ■ 아동학대 대응인력 합동 워크숍, 세미나 ■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팀장회의 ■ 아동학대예방 네트워크 운영 ■ 아동학대예방 홍보
정책제언을 통한 제도개선	■ 아동학대 현황 통계관리 ■ 경기도 연차보고서 발간 ■ 아동학대 대응체계 정책제언 ■ 직원전문교육 및 양성
고난도 심리서비스 품질강화	■ 고난이도 사례에 대한 심리서비스 제공 ■ 심리치료 컨설팅 ■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워크숍 및 간담회 ■ 전문가 사례회의 ■ 심리서비스 현황조사 및 분석

출처: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2023). 부서안내, https://gccpa.co.kr/sub/sub02_02.php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는 경기도 내 4곳(김포, 양주, 오산, 포천)의 신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초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매뉴얼 표준 업무 지침서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에게 긴급의료비(최대 120만원) 및 종합심리평가와 미술 등을 활용한 심리치료 지원, 법무법인과의 협약을 통한 법률자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정상적인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2023).

한편 경기도는 아동학대 예방과 발생 시,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와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남부경찰청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우선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대학 11곳의 유아교육과 보육복지과 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소개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예비 보육교사 교직 인성교육 등을 진행하고 1만 136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의 설치 운영 및 실태 점검을 진행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즉시 신고와 보고를 통해 경찰 등과 원활하게 공조하도록 지도하였다(동아일보, 2023. 5. 11.).

경기도는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전문성 강화, 공공 및 보육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전담의료기관의 적극인 추진 등 도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광주광역시 '조례를 통한 처벌 강화'

광주광역시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2020. 3. 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 이뿐만 아니라 광주시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0. 11.)하여 '아동의 안전'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실종·유괴, 약물 오남용, 재난,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상태로 정의하였다(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 각 자치구역시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10월 시행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2020년 12월 제정된 「광주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2021년 9월에 마련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2021년 12월 제정된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2022년 5월 공표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직접 명시하고 있다(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 북구의 경우 2017년 9월 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시설 종사자의 아동 인권 존중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모니터링단의 모집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

한편, 광주광역시는 2020년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의 감소(최근 3년간 광주시 연간 평균 아동학대 신고 건수 1,029건, 2020년 860건)를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이후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한 아동학대 발견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였다(광주광역시, 2021). 광주광역시는 강화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학대 신속 대응시스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전문성 강화', '즉각분리제를 대비한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충' 등을 목표로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광주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이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우선 신고자의 혼선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경찰(112)이나 '아이지킴콜' 앱을 활용해 신고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아닌 아동학대 관련 상담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도록 신고접수와 상담 채널을 분리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이후 출동은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함께 수행하며 현장조사 거부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법적제재를 강화하였다.

광주시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즉각분리제' 에 대비하여 전담공무원 숫자를 지속하여 확충하고 보호시설과 가정형 보호의 확대 등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황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광주광역시, 2021; 2022). 특히 자치구마다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치료·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여 기존 동구와 서구 2곳에서 운영되던 쉼터를 5곳으로 확충하였다. 이와 함께 가정과 같은 여건에서 보호받는 위탁가정 아동 320여 명(250세대)에게 2022년부터 양육수당을 20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며, 2세 이하의 경계선 지능 아동 등 위기 아동을 위한 전문위탁가정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는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빅데이터 시스템(e아동행복지원)을 활용하여 아동의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가정을 예측하여 자치구의 직원이 분기별로 방문 조사하고, 위기아동은 드림스타트 사업이나 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하고 있으며,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 경찰 및 전문기관과 함께 가정을 방문하는 합동 점검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5) 울산광역시 '울산형 아동학대 대응체계'

울산광역시의 전체 자치구(4개 구, 1개 군)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먼저 울산시의 경우 2019년 11월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3).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에는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설치 사업비 지원,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 홍보,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울산의 5개 구·군 중 13세 미만 아동의 수는 적은 편에 해당하지만,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울산시 중구는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2023년 2월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표하였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2020년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도입 이후 공적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1년 울산시에서는 '울산형 대응체계'를 발표하였다(이윤정, 2021). 울산형 대응체계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요계획을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구축', '위기아동 신속 대응체계 구축', '아동학대 보호체계 강화', '맞춤형 교육 등 사전예방 강화' 등 4개 영역으로 나누고 아동학대 예방부터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강화까지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울산시는 아동학대 조사를 내실화하고 울산형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여전히 아동학대와 관련한 중대 사건과 집단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더욱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올해 '2023년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울산광역시, 2023). 울산시의 2023년 아동학대 예방계획은 '사전발굴', '인식개선', '초기대응', '분리보호', '사후관리' 등 5개 단계, 12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전 과정에서 관계기관(울산시청 및 5개 구·군, 울산교육청, 울산경찰청, 울산대학교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울산광역시, 2022).

단계별 주요사업을 보면, '사전발굴'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빅데이터 시스템(e아동행복지원)을 통한 위기아동 조사의 내실화와 만 3세 가정양육 아동의 소재파악,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식개선' 단계에서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생활 밀착형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이 시민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초기대응' 단계의 경우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한 신속 대응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아동보호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아동학대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였다. 특히

울산시가 5개 구·군, 교육청, 경찰청, 대학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아동보호 전담기구를 구성한 뒤부터 지역 아동학대 건수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성과를 보여 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이 주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울산광역시, 2022). '분리보호' 단계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이전과 추가 개소, 장애피해아동쉼터 신규 확충, 아동보호 인프라 운영 내실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의 치료·회복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심층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재학대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유관기관 합동 점검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표 2-23〉 울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계획(2023)

단계	사업내용
사전발굴	■ e아동행복지원사업(보건복지부 빅데이터 시스템_ 위기아동 조사 ■ 만3세 가정양육 아동 소재·안전 확인 전수 조사
인식개선	■ 수요자 중심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 교육 ■ 생활밀착형 아동학대 예방 홍보
초기대응	■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한 신속 대응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 유관기관 협력 증진
분리보호	■ 학대피해아동쉼터 이전, 추가 개소 ■ 장애피해아동쉼터 신규 확충 ■ 아동보호 인프라 운영 내실화
사후관리	■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의 치료·회복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심층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재학대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유관기관 합동 점검

출처: 울산광역시(2023). 2023년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시행.

이처럼 울산광역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시정 추진과 함께 아동학대와 관련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국외 사례

1) 미국

(1) 아동학대 관련 법률

미국의 아동복지와 관련한 정책은 수정헌법 제10조에 의하여 각 주의 보호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방 차원의 개입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그러나 'Mary Ellen Wilson' 사건과 같은 몇 차례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동학대에 관한 연방 차원의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연방국 내 아동국(Children's Bureau)이 설치되어 본격적으로 아동학대 감소를 위한 법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Jalongo, 2006).

미국의 대표적인 연방법으로는 2016년 개정 및 재승인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이 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례를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성적 학대, 유기 및 방임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규정하였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3a).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전국정보센터(National Clearinghouse)를 구축하고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보조 활동을 규정하여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아동학대 및 방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아동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피해아동의 지원 및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24시간 신고접수가 가능하며, 24시간 이내에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현장답사와 이동 분리, 가정위탁 등의 업무에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즉각적으로 대처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유정원, 2021).

미국의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APTA)은 아동학대를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아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아동의 연령 및 성적 학대와 관련 여부, 아동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 정도, 행위자의 범죄 기록 등을 고려하여 판결한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부분의 판결은 보호관찰 또는 5년의 징역형이 포함될 수 있으며 부모의 법적 권리 상실, 아동학대범죄 기록 등이 남는다(이세화 외, 2020). 즉,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ATA)은 아동보호에 관한 미국 정부의 개입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아동보호 책임이 미국 연방정부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박언하, 2018).

(2) 차등적 대응체계(Differential Response System)

기존의 미국 아동보호체계는 단일한 방식으로 아동보호서비스 워커(CPS Worker)에 의해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지면 조사, 조치, 서비스 제공 등의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단일한 보호체계 내에서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하였다(이주연, 2016). 그러나 이와 같이 일관된 대응체계에 따를 경우, 개별적인 상황에서 적절한 아동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차등적 대응체계(Differential Response System)'가 도입되었다. 차등적 대응체계는 일부 주(미주리주, 플로리다주)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된 제도로, 현재는 다수의 주 또는 지역 단위로 차등적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3b).

미국은 주(State)별로 법 제정과 명칭 사용이 자유로워 미국의 차등적 대응체계(Differential Response System)는 미국 내에서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다(다양한 대응체계(Multiple Response System: MRS), 대안적 대응체계(Alternative Response System: ARS), 가족사정 대응체계(Family Assessment Response System: FARS), 이중 트랙(Dual Track), 다양한 트랙(Multi Track) 등; 이주연, 2016). 명칭은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차등적 대응체계가 전통적인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 CPS)의 대응과는 다르며, 대응방식이 단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차등적 대응방식은 전체 신고, 접수 사례를 ① 조사(Investigation) 트랙과 ② 비조사(Non-investigation) 트랙(가족사정; Family Assessment)으로 이분하여 차등화 된 트랙을 따르게 한다.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① 조사 트랙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절차를 적용하고, 심각하지 않은 사례(저위험이나 중위험 사례)의 경우 ② 비조사 트랙의 대안적 방식(가족사정)의 절차를 적용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응방식을 차등화한 체계이다.

서비스 흐름을 살펴보면, 차등적 대응체계의 조사 트랙은 아동보호 워커에 의한 접수조사-조치(서비스 제공) 절차를 그대로 따르지만, 대안적 방식(비조사 트랙)은 접수 → 욕구 사정(Assessment) → 서비스 제공의 절차로 진행된다. 즉, 대안적 방식은 미국의 아동보호 서비스에서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스크리닝·조사'(Screening/ Investigation) 대신 가족 지원을 위한 '욕구 사정'을 실시하고 학대가정에 대한 '(적대적) 조치'보다는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에 초점을 둔다. 트랙별로 의뢰되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조사 트랙으로 넘겨지는 사건들은 대부분 아동이 심각한 학대를 받았거나 당장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례들로, 심각한 신체학대 및 성학대 등 사법기관 개입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과 함께 일부 장애아동의 시설 내 학대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사법기관의 법리적 해석을 위해 학대 판정을 위한 법의학적 증거 수집

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차별성을 두어 엄격하게 조사한다. ② 비조사 트랙으로 넘겨지는 사건들은 대부분 저위험 혹은 중위험 사례들이다.

차등적 대응체계는 미국의 주별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요소들이 있다. 먼저, 아동보호체계 내에 2개 이상의 다양한 대응방식이 존재하며 이를 활용해야 한다. 어떠한 대응방식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주요기준은 '아동에 가해지는 즉각적인 위험의 존재 여부와 수준' 및 '사법기관의 개입 필요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대응방식이 이미 결정된 사례이더라도 필요하면 적절한 대응방식으로 재분류하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 또한 각 주 정부에서는 차등적 대응방식이 법령, 정책 및 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비조사 트랙 운영상의 주요 특징으로는 의뢰된 가족은 아동안전이 확보되는 한 제공되는 서비스를 거부할 자유가 있고 정식으로 학대사례로 판정을 받지 않으며, 학대행위자 또한 주 정부의 중앙기록상 아동학대 범죄자로 등록되지 않는다. 이러한 공통적 요소를 제외하면,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CATA) 등 연방법령이 차등적 대응체계의 방식과 특성 등을 규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주 정부나 지역의 필요대로 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미국은 이러한 차등적 대응체계의 도입을 통해 아동보호 워커의 업무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 대응체계의 워커들에 비해 장기 근무하겠다는 비율이 5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이영우, 장수연, 2022).

(3) 뉴욕주 CARES(Collaborative Assessment, Response, Engagement & Support; NYC Children, 2023)

미국의 뉴욕주는 아동보호서비스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서비스법(Social Services Law)에서 아동학대(Child Abuse) 및 방임(Neglect)을 포함하는 아동 부당취급(Child Maltreatment)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있다(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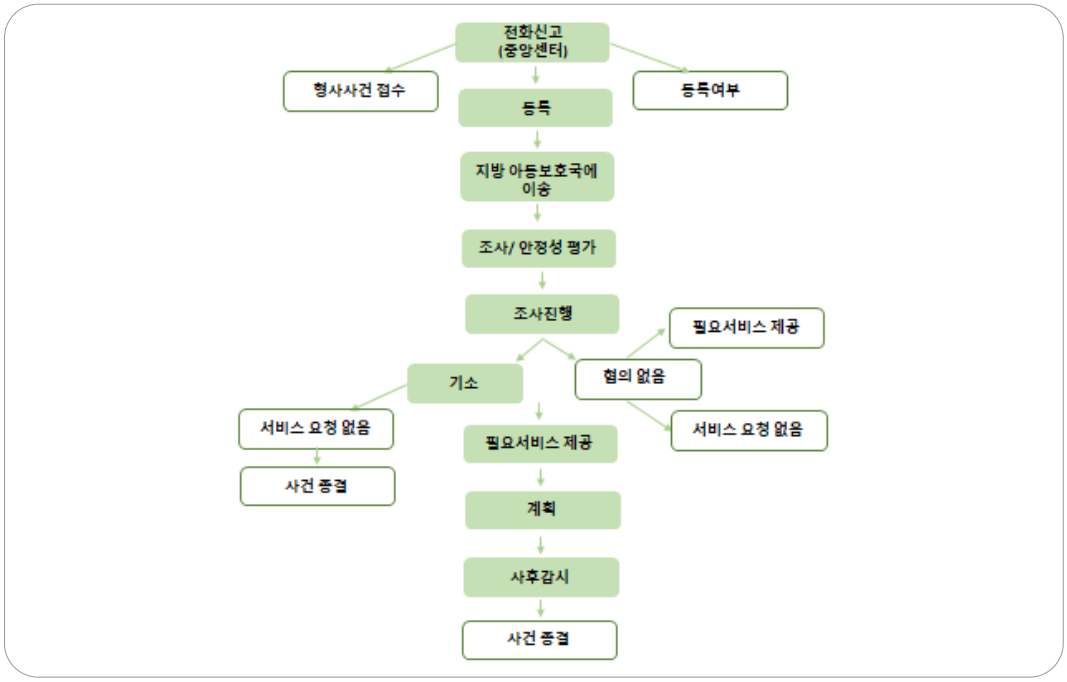
뉴욕주의 차등적 대응체계인 CARES(Collaborative Assessment, Response, Engagement & Support)는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주 전체의 중앙등록부(Statewide Central Register of Child Abuse and Maltreatment; SCR)에 따라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비조사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한 대안적인 대응체계로 2013년 시작되었다. FAR(Family Assessment Response)이라고도 알려진 CARES 접근방식은 사회복지사가 아동에게 즉각적인 위험이 없고 심각한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가족과 협력하여 아동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자녀를 돌보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공식 및 공식 지원을 파악하는 데 가족을 참여시켜 궁극적으로 아동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대안적인 접근 방식이다(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2023).

CARES 접근방식은 가족 중심이며, 가족의 주도로 진행되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참여는 자율이다. 이는 가족강점을 기반으로 가족을 강화하고 지원하며 향후 아동학대나 방임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양육 교육 참여, 보육계획 세우기, 스트레스 관리,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찾기,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자원 찾기 등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연계한다. 뉴욕주의 경우, 아동학대 보호 프로그램을 네트워크의 형태(Promising practices network & Rand Corporation)로 제공하고 있는데, 개별 프로그램은 약 36개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가족 지원, 부모교육, 건강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특수한 보호 대상자(3개월 미만 아동, 10대 미혼모 등)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이 발달되어 있다(Rand, 2023).

CARES는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임했을 수 있다는 조사나 결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아동학대와 관련한 조사 접근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SCR에 신고한 사람이 제기한 주장에 대해 조사나 판단을 하지 않으며, 취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CARES의 참여기록은 비공개되지만 아동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발생할 경우, 즉시 아동보호서비스의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그림 2-3] 미국 뉴욕주 아동학대 신고 및 대응절차



출처: NYC Children. (2023). Cares. https://www.nyc.gov/site/acs/child-welfare/cares.page 재구성

(4) 캘리포니아주의 차등적 대응체계(Differential Response;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3)

캘리포니아주의 차등적 대응체계(Differential Response; DR)는 아동복지서비스 기관이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에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차등적 대응체계(DR)는 각 가정의 고유한 강점과 요구사항을 인식하고 이를 획일화된 접근 방식이 아닌 개별화된 방식으로 해결하는 안전, 위험 및 보호 능력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캘리포니아주의 차등적 대응체계는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다양한 대응과 서비스를 아우르는 유연성이 특징이며, 가족의 참여를 강조한다. 캘리포니아주의 차등적 대응체계(DR)는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새로운 징후에 대해 더 빠르고 의미 있는 대응 방안을 제공하므로 아동학대와 관련한 가정 내 어려움이 확대되고 아동학대 위험으로 인한 아동의 분리조치가 필요하기 전에 가족을 돕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캘리포니아주의 차등적 대응체계(DR)에 의뢰하는 경로는 지역사회, 아동학대 및 유관 서비스, 아동학대의 3가지가 있다. 먼저 지역사회로 의뢰하는 경우는 아동학대로 아동복지서비스 기관에 의뢰되었으나 아동학대 또는 방임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 가족에게 문제가 있다는 징후로 여기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담, 양육교육 또는 필요한 자원 연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및 유관서비스로 의뢰되어 아동학대 또는 방임 정도가 저위험이나 중위험 사례로(Abuse and Neglect at Low to Moderate Risk) 판정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팀워크를 형성하여 가족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학제적 접근방식으로 가족에게 개입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는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미국의 전통적인 아동보호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입이 이루어진다(김미숙 외, 2016).

2) 독일

(1)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와 청소년청(Jugendamt)

독일정부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은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이하 연방가족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아동학대, 방임 및 성적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의학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연방가족부의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전문의에게 익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23). 특히 독일 연방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나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김아름, 박은영, 김재선, 2017).

아동·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입법은 포괄적인 차원에서 연방가족부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실행과 정책의 수행 등에 관해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청(Jugendamt)'이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청이라는 명칭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으나('청소년분과(Fachbereich Jugendamtes)', '아동과 청소년, 가족청(Amt für Kinder, Jugend und Familie)' 등) 그 역할과 기능은 유사하다(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4) 이뿐만 아니라 청소년청의 조직은 청소년지원위원회(Jugendhilfeausschuss)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소년청의 구체적인 업무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놀이, 스포츠 등의 청소년 사업 및 청소년 사회사업, ② 일반적인 상담 및 가족 지원, ③ 파트너십, 별거, 이혼 등에 관한 자문, ④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집 아동의 보육, ⑤ 교육지원, 정신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 및 청년 대상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아동학대 관련 대응절차

독일은 아동학대에 관한 책임을 공적영역이 우선하고 있다. 중요한 특징은 예방에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고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점이다. 아동학대에 대해 독일은 형법, 민법, 아동·청소년 원조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1차적 책임은 아동복지국에 있다. 아동복지국은 아동의 복지에 위험성이 있다면 가정에 개입하여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아동을 보호·양육하는데 필요한 역량과 환경을 갖춘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박상식·김두상, 2017). 또한 아동복지국은 사전예방을 방지체계에 포함하여 구축하고 있으며, 경찰 출동 전에 긴박한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누구든지 가정법원에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다는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이 아닌 아동을 단독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독일의 가정법원은 아동학대 사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청소년청과 서로 상호협조 하에 관련 사례를 처리하고 있다(김아름, 박은영, 김재선, 2017). 독일의 가정법원은 직권개입을 통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모의 친권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 상실 등과 같은 조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독일 민법 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할 수 있다

(김아름, 박은영, 김재선, 2017).

한편 청소년청은 사례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아동을 직접 부모로부터 분리(격리)시키거나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물리적 수단(물리력을 활용한 제압, 문 강제 개방 등)을 활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하기 전이라도 아동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소년청의 물리력 사용이 허용된다.

3) 일본

(1) 아동학대 관련 법률 및 정책

일본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법률은 「아동복지법」으로, 이 법률에는 아동복지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비롯해 아동복지 행정 및 사업 전반에 걸친 기본원칙들이 규정되어 있다. 일본의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예방 및 개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유야마 아쓰시, 2020) 1990년대 이후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아동복지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아동학대방지법」이 제정되어 2000년 11월에부터 시행되었다(성윤희, 양승미, 2021).

「아동학대방지법」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개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아동상담소 같은 외부기관과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성윤희, 양승미, 2021). 이후 「아동학대방지법」은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의무를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고 교사, 의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노력 의무를 주었으며, 무엇보다 아동상담소에 강제집행권을 부여하였다(박상식, 김두상, 2017). 일본의 법에서는 아동상담소장이 보호 등의 통고를 받거나 송치를 받은 아동,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후생노동성령에 의거 보고해야 하며, 그 보고 시까지 아동에게 일시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적정한 자에게 위탁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백승흠, 2015).

일본의 아동학대는 피해사실이 가시화되기 쉽지 않고 타인이 문제상황에 개입하기 어려운 사적 공간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厚生労働省, 2022a),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개입, 가해자에 대한 처벌, 사후 대책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어 2022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일본의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재정비와 학대의 배경이 되는 육아기관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의 강화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다(厚生労働省,

2022b). 핵심내용은 ①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 절차에 사법심사 도입, ② 어린이 가정복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증 신설, ③ 아동의 의견 청취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④ 아동상담소 기능 강화 및 일시보호소 환경 정비, ⑤ 육아가구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 강화 및 사업 확충, ⑥ 아동 성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범죄경력증명서 도입, ⑦ 아동보호시설 자립지원 대상 아동 연령 제한 철폐 등을 포함한다.

일본은 더 나아가 2022년 「어린이 기본법」과 「어린이 가정청 설치법」 등 관련 법률이 추가로 제정되었으며, 2023년 '어린이 가정청'이라는 정부기관의 신설로 이어졌다. '어린이 가정청'은 일본의 후생노동성의 어린이 가정국, 내각부의 아동정책 관련 사무부서를 이관하여 만들어졌으며, 저출산 및 아동 빈곤, 아동학대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THE SANKEI, 2022. 12. 20.) 일본에서도 저출산 및 아동학대 등의 아동과 관련한 사회문제가 심각해지자 아동 정책을 전담할 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어린이 가정청'은 총리대신의 직속기관으로서 각 부처에 어린이 정책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고권을 갖게 되어 일본 내 아동 관련 정책에 있어 강력한 권한을 가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구혜경, 2022).

(2) 아동학대 신고절차

일본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해 정부의 역할보다는 민간의 역할을 우선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신고 의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라 요보호아동을 발견한 자는 시정촌, 도도부현에 설치된 복지사무소 또는 아동상담소에 신고해야 한다. 아동상담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각 광역지자체(도도부현) 및 특별지자체(정령지정도시)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아동복지전문기관으로, 2022년 기준 전국에 21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복지타임즈, 2023. 5. 11.).

현장조사나 일시보호 등의 학대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권한은 아동상담소장에게 부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례는 시정촌이나 복지사무소를 경유하여 아동상담소에 송치된다(김미숙 외, 2016). 다만, 아동상담소에서 수리한 사례 중 아동상담소의 면접과 조사에 근거하여 안전 면에서 긴급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례이면서, 아동 및 임산부 복지에 관한 정보 제공, 조사 및 지도(의학적, 심리학적, 교육학적, 사회학적 및 정신보건 판정이 필요한 경우 제외), 기타의 지원(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것 제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례는 다시 시정촌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정촌에 의한 재정지원 정책은 ① 아동상담소 설치준비 등에 관한 보조직원의 배치, ② 아동상담소의 업무를 배우는 동안의 대체직원의 배치 등에 대해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도운용 면에서의 지원책은 ① 아동상담소 설치를 위한 매뉴얼 작성, ② 아동복지사의 임용자격 요건의 재검토 등을 마련하고 있다(下山憲治, 2017).

일본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부모와 아동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과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가 불충분하다는 점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배상균, 2017). 이에 「아동복지법」 개정(2016)을 통해 아동이 가정복귀 후 아동상담소가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추적조사와 부모-아동 간 관계회복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아동이 가정복귀 후 아동상담소는 민간시설에 조언과 상담을 지원하며,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의 안전 확인 및 보호자와의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가정위탁 제도의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가정위탁인 등록자 수를 확산시키고 아동과의 매칭, 위탁가정 방문 지원, 아동의 자립지원에 이르기까지 아동상담소의 업무로 규정하였다(배상균, 2017).

제 3 장

설문조사

제3장 설문조사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및 대상

본 조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실태 파악을 통해 대전광역시 특성이 반영된 대응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조사의 대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 관련 주요 종사자는 다음과 같다. 자치구 아동보호팀(5개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경찰청 및 경찰서(6개서)의 아동학대예방경찰관(APO)과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접수하고 수사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 아동보호전문기관(3개관)의 상담원,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5개관)의 의료사회복지사, 학대피해아동쉼터(6개소)의 보육사이다.

2. 조사 내용 및 출처

본 조사의 주요내용은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별 기능 및 역할,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의 특성, 대응체계 종사자 교육 및 훈련, 대응체계 종사자 근무환경, 그리고 일반적 사항의 6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관련 세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내용은 공동연구진과 학계 및 현장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각 영역별 출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별 주요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 수행도, 난이도와 연계·협력 수준, 종사자 교육 및 훈련은 양수진, 김빛여울, 심혜선(2021)의 연구를 참고하여 2023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관계부처 합동, 2023a) 등을 토대로 구성하고 각 대응체계별 종사자에게 여러 차례 확인 작업을 거쳐 구성하였다.

역할수행과 관련해서는 역할모호성은 Rizzo, House와 Lirtzman(1970)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안혜경(2022)이 수정·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역할과다는 Beehr, Walsh와 Taber(1976) 연구의

문항을 수정한 최가영(2000)과 김진수(2006)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을 보완하였으며, 역할불일치는 Woerkom와 Sanders(2010), Rosenberg와 Stern(1971) 그리고 Yi, Lee와 Dubinsky(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안혜경(2022)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과업갈등은 Jehn과 Mannix(2001)가 제시한 문항들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조수연(2007)이 개발한 문항에서 수정하였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별 종사자 간 협력 수준 관련 문항은 상호의존성, 새로운 전문활동, 목표공유, 협력과정 평가로 구성되며, Bronstein(2002)과 김소향(2019)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대응체계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협력효과 문항은 기존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 연구를 바탕으로 원성구(2011)가 보완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대응체계 종사자 근무환경과 관련된 문항은 류주연, 권소일, 정희수, 김기수(2022)의 연구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종사자에 맞게 수정·보완 하였다. 그 밖의 문항들은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실태 파악 및 모델 개발을 위해 연구진이 작성하였다.

〈표 3-1〉 조사내용

구분	세부 조사내용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별 기능 및 역할	▪ 대응체계별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 대응체계별 기능 및 역할의 수행도 ▪ 대응체계별 기능 및 역할의 난이도, 대응체계 종사자로서의 역할 수행 ▪ 업무량 및 전문성 수준, 업무의 주된 어려움 ▪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 대응체계별 연계여부, 대응체계별 전반적인 연계·협력 수준 ▪ 대응체계별 향후 연계·협력 강화 필요성 ▪ 대응체계별 연계 시 애로사항 ▪ 대응체계 협력 수준, 대응체계 협력 효과 ▪ 다른 체계와의 연계 및 협력 장애요인 ▪ 다른 체계와의 협조 및 협력 활성화 방안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 아동학대 특성 ▪ 아동학대 대응체계 장점, 아동학대 대응체계 단점, 보완해야 할 점 ▪ 아동학대 대응 업무진행 수준, 업무진행이 적절하지 못한 이유 ▪ 조사 및 사례관리 업무 분리 시 장점, 단점 ▪ 조사 및 사례관리 업무 분리 시 개선방안 ▪ 아동학대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방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방안 ▪ 바람직한 대응모델 방식 ▪ 요구사항 -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보장원 - 대전광역시 아동보호팀 - 자치구 아동보호팀

구분	세부 조사내용
대응체계 종사자 교육 및 훈련	▪ 직무관련 교육 참여 횟수(필수/권고) ▪ 직무관련 교육 참여 시간(필수/권고) ▪ 전문성 향상을 위해 참여한 활동 ▪ 교육 활성화 방안
대응체계 종사자 근무환경 관련	▪ 지난 3년간 업무상 질병, 사고 경험 ▪ 지난 3년간 대상자 관련 폭력 경험 ▪ 종사자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업무 스트레스 수준, 업무상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 업무 시 고충 또는 어려움 해결방식 ▪ 직장 만족도
일반적 사항	▪ 성별, 연령, 최종학력 ▪ 전공분야, 소지자격 ▪ 현 소속(직책) ▪ 현 직장 근무 경력, 아동학대 분야 업무 총 경력

3. 조사절차

본 설문조사는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대전광역시의 협조를 얻어 자치구(5개구)와 경찰청 및 경찰서(6개서), 아동보호전문기관(3개소),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5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6개소)에 본 설문조사를 홍보하고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공문을 발송하였다.

각 대응체계별 담당자를 선정해 조사기관에서 연구 목적 및 내용, 참여방법 등 참여동의를 포함한 URL를 발송하고 담당자가 각 소속 종사자들에게 URL를 발송해 참여동의를 받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웹/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는 2023년 8월 7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참여에 동의한 대응체계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조사는 2023년 8월 22일부터 9월 7일까지 총 17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4. 결과분석 및 유의사항

본 설문조사의 자료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체계별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 수행도, 난이도를 분석하기 위해 IPA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최종 분석 대상은 총 137명(100%)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48명(35.0%)이 조사에 참여해 상대적으로 다른 대응체계에 비해 참여비율이 높고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의 경우는 4명(2.9%)으로 참여비율이 낮다. 따라서 각 조사항목별 전체결과 해석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특정 문항에서 데이터 클리닝에 의해 결측값이 발생한 경우, 해당문항의 사례 수와 전체 사례수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부 결과표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사용하여 전체 합계가 100.0%에서 ±0.1%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복수응답의 경우는 전체 합이 100.0%를 넘길 수 있다. 응답 사례수가 30명 미만이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움에 따라 해석 시 고려해야 한다.

제2절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1) 대응체계별 조사대상자

본 설문조사는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관련 종사자를 설문조사하였다.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대전광역시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총 28명인데(광역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명 제외), 이 중 23명(82.1%)이 응답하였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총 19명 중 12명(63.2%)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대전광역시 아동보호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2명)의 경우 아동학대대응 종합계획,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등 전반적인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사건조사는 하고 있지 않아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제외하였다.

아동학대예방경찰관(APO)의 경우 총 7명 중 6명(85.7%)이, 아동학대 수사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찰관 30명 중 12명(40%)이 참여해, 총 18명이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재 3개 기관에 관장, 팀장, 상담원 5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 48명(87.3%)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의 경우 현재 시 거점 충남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자치구에 12개 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대표적인 병원 5곳을 추천받아 의료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중 4명(80%)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6곳에서는 원장, 보육사, 치료사가 총 42명

근무 중이고 이 중 32명(76.2%)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이번 대전형 아동학대 대응체계 모델 개발 연구에 대응체계별 종사자 총 137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대응체계별 현재 소속별 직책을 조사한 결과, 자치구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65.7%, '아동보호전담요원'이 34.3%였다. 경찰청 및 경찰서의 아동학대예방경찰관은 '경위'와 '경사'가 각 33.3%, '경감'과 '경장'이 각 16.7%였고 여성·청소년수사팀의 경우는 '경사'가 33.3%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경위' 25.0%, '경장'과 '순경'이 각 16.7%, '경감'이 8.3%를 차지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담원' 72.9%, '팀장'이 20.8%, '관장'이 6.3%였으며,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은 '의료사회복지사' 75.0%, '팀장'이 25.0%였다. 마지막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보육사' 78.1%였고 '원장'이 18.8%, '치료사'가 3.1% 순이었다.

〈표 3-2〉 대응체계별 조사대상자

단위 명/%

대응체계	N	%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16.8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8.8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13.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35.0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2.9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23.4
합계	**137**	**100.0**

〈표 3-3〉 현 소속 및 직책

단위 명, %

구분			N	%
자치구 아동보호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65.7
		아동보호전담요원	12	34.3
		합계	35	100.0
경찰청 및 경찰서	아동학대예방 경찰관	경감(팀장)	1	5.6
		경위	2	11.1
		경사	2	11.1
		경장	1	5.6

구분			N	%
	여성청소년 수사팀	경감(팀장)	1	5.6
		경위	3	16.6
		경사	4	22.2
		경장	2	11.1
		순경	2	11.1
		합계	18	100.0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3	6.3
		팀장	10	20.8
		상담원	35	72.9
		합계	48	100.0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팀장	1	25.0
		의료사회복지사	3	75.0
		합계	4	100.0
학대피해아동쉼터		원장	6	18.8
		보육사	25	78.1
		치료사	1	3.1
		합계	32	100.0

Base=전체 137명

2) 일반적 특성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종사자 137명의 성별을 조사한 결과, '남성'이 32.8%, '여성'은 67.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1.4%로 가장 높고, 이어서 '20대' 27.7%, '40대' 26.3%, '50대 이상' 14.6% 순이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68.6%로 가장 높고, 이어서 '대학원 석사 졸업' 19.0%, '2~3년제 대학 졸업' 8.8%, '고등학교 졸업' 2.9%, '대학원 박사 졸업' 0.7% 순으로 나타났다.

소지자격을 조사한 결과, 의료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사회복지사'가 89.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보육교사' 22.6%,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아동상담사 등 '상담 관련 자격'이 19.7%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에 대해 현 직장 근무 경력을 조사한 결과, '1년-3년 미만'과 '5년 이상'이 각 31.4%로 가장 높고, 이어 '1년 미만' 20.4%, '3년-5년 미만' 16.8% 순이었다. 아동학대 분야 업무 총 경력은 '1년-3년 미만'이 40.9%로 가장 높고, 이어 '1년 미만' 28.5%, '3년-5년 미만' 18.2%, '5년 이상' 12.4% 순으로 나타났다.

〈표 3-4〉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분		N	%
전체		**137**	**100.0**
성별	남성	45	32.8
	여성	92	67.2
연령	20대	38	27.7
	30대	43	31.4
	40대	36	26.3
	50대 이상	20	14.6
학력	고등학교 졸업	4	2.9
	2~3년제 대학 졸업	12	8.8
	4년제 대학 졸업	94	68.6
	대학원 석사 졸업	26	19.0
	대학원 박사 졸업	1	0.7
소지 자격증	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	123	89.8
	보육교사	31	22.6
	정교사	9	6.6
	건강가정사	8	5.8
	간호조무사	4	2.9
	상담사 관련	27	19.7
	지도사 관련	9	6.6
	기타	14	10.2
현 직장 근무경력	1년 미만	28	20.4
	1년-3년 미만	43	31.4
	3년-5년 미만	23	16.8
	5년 이상	43	31.4
아동학대 분야 업무 총 경력	1년 미만	39	28.5
	1년-3년 미만	56	40.9
	3년-5년 미만	25	18.2
	5년 이상	17	12.4

Base=전체 137명

2.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기능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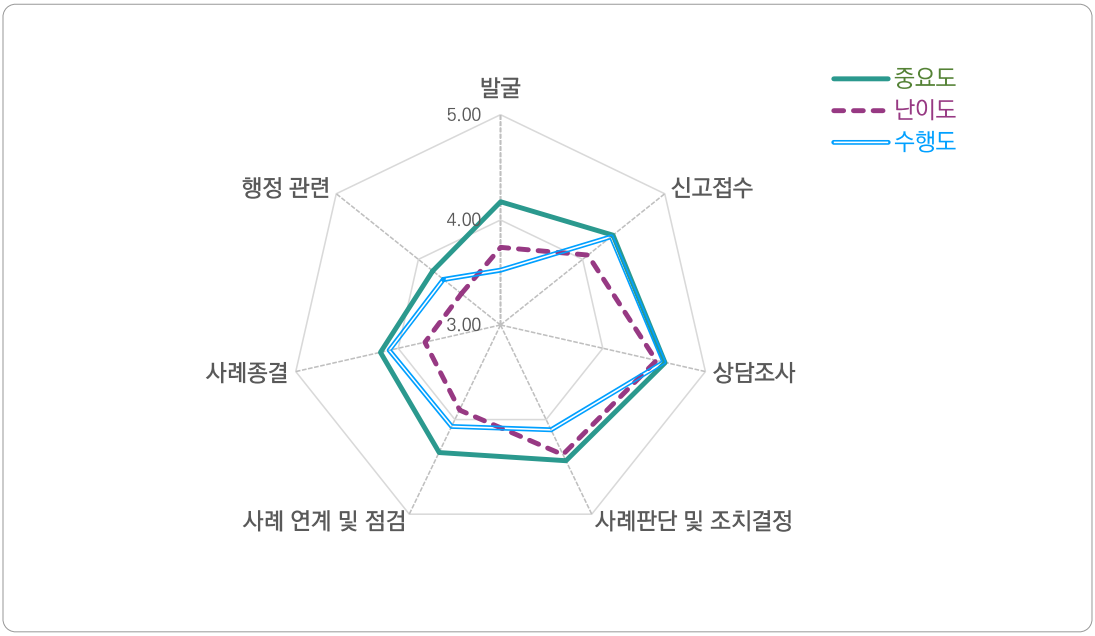
1) 주요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수행도·난이도 비교

(1)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인식하는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 수행도, 난이도는 모두 '상담·조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담·조사'의 중요도는 4.61점이고 수행도 4.59점, 그리고 난이도가 4.52점이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인식하는 두 번째로 중요하고 어려운 기능 및 역할은 '사례판단 및 조치결정'으로 4.43점과 4.37점이었으며, 수행도는 '신고접수' 4.35점으로 나타났다. '상담·조사'의 경우 중요도와 수행도, 그리고 난이도에서도 높게 나타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고 '사례판단 및 조치결정'은 중요도와 난이도는 높은데, 수행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어려움을 줄여주면서 수행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굴'과 '사례 연계 및 점검'은 중요도가 높은 반면 수행도가 낮게 나타나 수행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 3-1] 중요도·수행도·난이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단위: 점/5점 평균



Base=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명

〈표 3-5〉 중요도·수행도·난이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단위: 점/5점 평균

표 범주	항목	중요도		수행도		난이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발굴	1. 위기아동가정 발굴	4.17	0.94	3.52	0.95	3.74	0.81
신고접수		4.37	0.79	4.35	0.79	4.07	0.70
	2. 아동학대 신고접수	4.22	1.00	4.13	1.10	3.78	0.80
	3. 현장조사	4.52	0.79	4.57	0.59	4.35	0.71
상담·조사		4.61	0.61	4.59	0.60	4.52	0.60
	4.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4.70	0.56	4.61	0.58	4.43	0.73
	5.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한 상담·조사	4.57	0.66	4.61	0.58	4.39	0.72
	6.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4.57	0.73	4.57	0.66	4.74	0.54
사례판단 및 조치결정		4.43	0.59	4.11	0.64	4.37	0.66
	7. 아동학대 사례판단	4.61	0.78	4.57	0.59	4.35	0.78
	8. 응급보호(즉각분리)	4.26	0.81	3.65	0.93	4.39	0.78
사례 연계 및 점검		4.35	0.72	4.07	0.62	3.90	0.90
	9.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4.43	0.84	4.43	0.59	4.00	0.90
	10.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4.30	0.93	4.39	0.66	3.70	1.11
	11. 아동보호 전문기관 사례관리 지도·감독	4.30	0.88	3.39	1.12	4.00	1.04
사례종결	12. 피해아동, 가족 및 학대행위자 사례관리 종결	4.17	0.83	4.09	0.85	3.74	0.86
행정 관련		3.83	0.81	3.70	0.72	3.48	0.75
	13.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예방사업 정보처리	3.96	1.07	3.96	0.71	3.52	0.79
	14. 행정 관련(실적관리, 재무회계관리, 인력관리 등)	3.70	0.82	3.43	0.90	3.43	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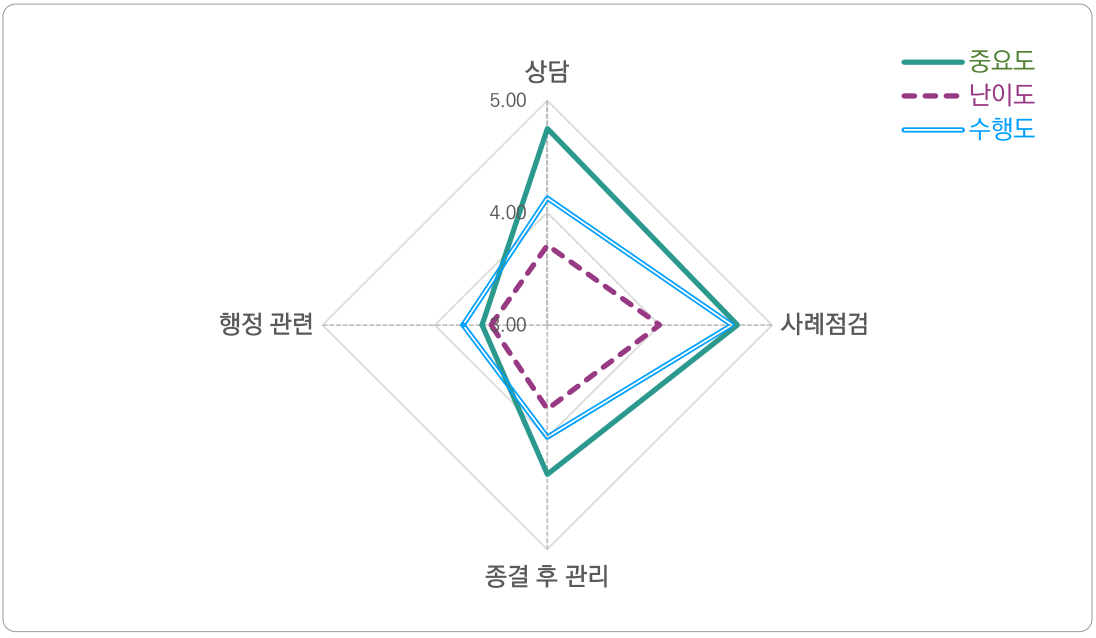
Base=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명

(2)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인식하는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는 '상담'이 4.75점으로 가장 높았고 수행도와 난이도에서는 '사례점검'이 4.64점과 4.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담'의 경우 중요도는 높았지만 수행도에서는 두 번째(4.13점)였고 난이도에서는 '사례점검'(4.00점), '종결 후 관리'(3.75점)에 이어 세 번째(3.71점)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담'과 '종결 후 관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높은데, 수행도가 낮게 나타나 수행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림 3-2] 중요도·수행도·난이도: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단위: 점/5점 평균



Base=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명

〈표 3-6〉 중요도·수행도·난이도: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단위: 점/5점 평균

표 범주	항목	중요도		수행도		난이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상담		4.75	0.5	4.13	0.68	3.71	0.45
	1. 아동상담	4.83	0.39	4.25	0.75	3.92	0.67
	2. 개별보호 · 관리계획 수립	4.67	0.65	4.00	0.74	3.50	0.52
사례점검		4.69	0.36	4.64	0.48	4.00	0.28
	3. 양육상황 점검	4.92	0.29	4.75	0.45	3.92	0.51
	4. 주기적인 사례점검	4.50	0.67	4.50	0.67	4.17	0.58
	5.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4.67	0.49	4.67	0.49	3.92	0.51
종결 후 관리	6. 사후 모니터링	4.33	0.98	4.00	1.04	3.75	0.87
행정 관련	7. 행정 관련(실적관리, 재무회계관리, 인력관리 등)	3.58	1.08	3.75	0.75	3.50	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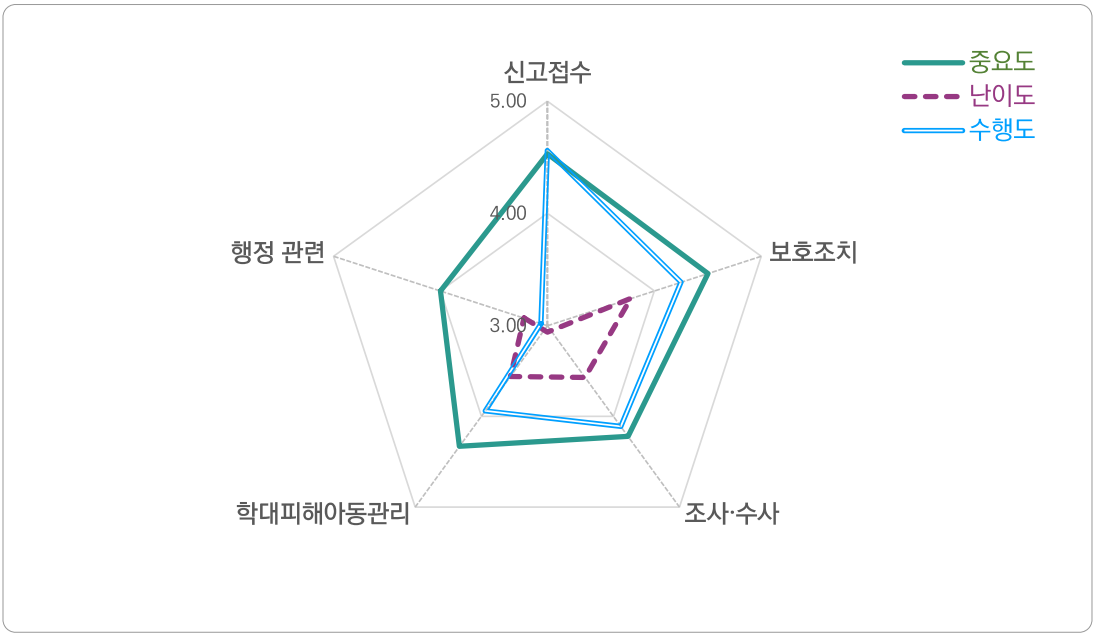
Base=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명

(3)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 · 청소년수사팀

경찰청/경찰서의 아동학대예방경찰관과 여성 · 청소년수사팀에서 인식하는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와 수행도는 '신고접수'에서 각 4.53점, 4.56점으로 가장 높고, 난이도에서는 '보호조치'에서 3.7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호조치'는 두 번째로 높은 중요도와 수행도를 보이면서 난이도가 가장 높아 난이도를 낮출 필요가 있으며, '학대피해아동관리'의 경우는 중요도가 높은 편인 반면, 수행도가 다소 낮아 수행도를 높여야 한다.

[그림 3-3] 중요도·수행도·난이도: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 · 청소년수사팀

단위: 점/5점 평균



Base=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 · 청소년수사팀 18명

〈표 3-7〉 중요도·수행도·난이도: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 · 청소년수사팀

단위: 점/5점 평균

표 범주	항목	중요도		수행도		난이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신고접수		4.53	0.65	4.56	0.62	2.94	1.00
	1. 아동학대 신고접수(112)	4.67	0.69	4.61	0.78	3.78	1.52
	2. 자자체에 관련사실 통보	4.39	0.85	4.50	0.71	2.11	1.02
보호조치		4.50	0.66	4.25	0.71	3.78	1.09
	3.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즉각분리)	4.56	0.62	4.44	0.78	3.89	1.18
	4.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임시조치	4.44	0.78	4.06	0.87	3.67	1.08
조사 · 수사		4.22	0.82	4.11	0.68	3.57	0.99
	5.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동행출동 및 현장조사	4.33	1.03	3.94	1.06	3.39	1.24
	6.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	4.44	0.86	4.67	0.59	4.06	1.06
	7. 아동학대 신고사건 전수합동 조사	3.89	1.08	3.72	1.18	3.28	1.07
학대피해아동 관리	8. 피해자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4.33	0.77	3.94	1.11	3.56	1.20
행정 관련		4.00	0.84	3.06	0.91	3.22	0.83
	9.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4.50	0.79	3.50	1.10	3.28	1.02
	10. 행정 관련(실적관리, 재무회계관리, 인력관리 등)	3.50	1.29	2.61	0.92	3.17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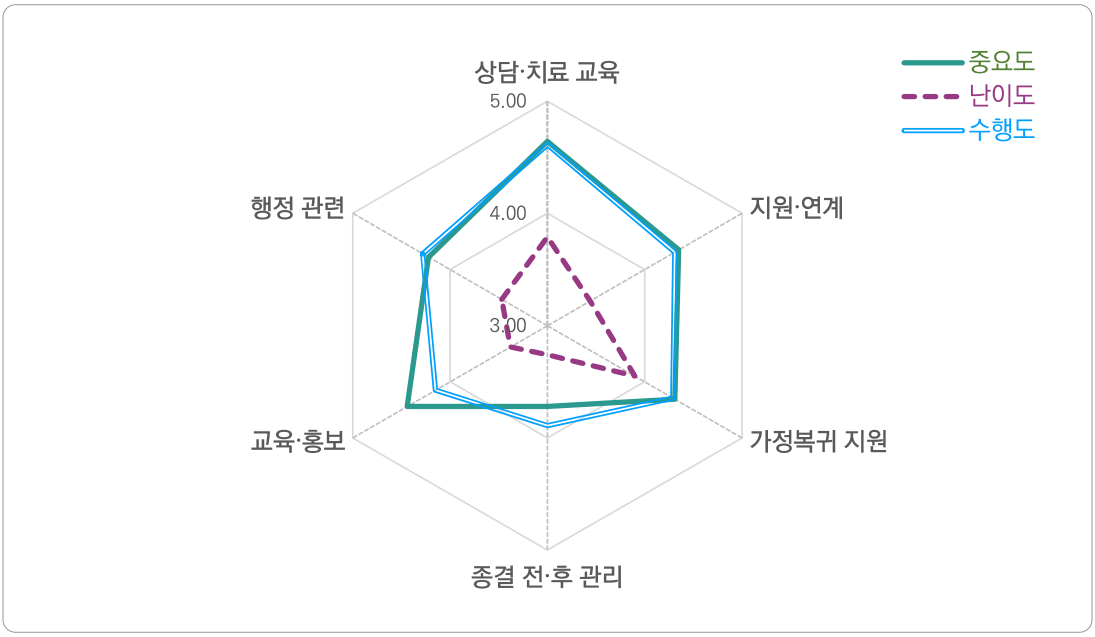
Base=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 · 청소년수사팀 18명

(4)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인식하는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와 수행도는 '상담 · 치료 · 교육'에서 각 4.64점, 4.61점으로 가장 높고, 난이도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3.79점으로 나타났다. '가정복귀 지원'은 중요도와 수행도에 비해 난이도가 3.90점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교육 · 홍보'의 경우 중요도는 두 번째인데(4.44점), 비교적 수행도(4.15점)와 난이도(3.38점)는 낮았다. '행정'도 중요도(4.22점)과 수행도(4.28점)에 비해 세 번째로 난이도(3.47점)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담 · 치료 · 교육'과 '가정복귀 지원'은 중요도와 수행도도 높으면서 난이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난이도를 낮추는 방안이 요구된다. '교육 · 홍보'의 경우는 중요도에 비해 수행도가 낮은 편으로 수행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림 3-4] 중요도·수행도·난이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단위: 점/5점 평균



Base=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명

〈표 3-8〉 중요도·수행도·난이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단위: 점/5점 평균

표 범주	항목	중요도		수행도		난이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상담 · 치료 · 교육		4.64	0.40	4.61	0.45	3.79	0.63
	1.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 치료 · 교육	4.81	0.45	4.65	0.56	3.73	0.79
	2.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한 상담 · 치료 · 교육	4.56	0.65	4.35	0.89	3.79	0.68
	3.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 치료 · 교육	4.83	0.38	4.73	0.49	4.25	0.70
	4. 법원의 상담위탁 명령 수행	4.35	0.76	4.71	0.50	3.40	1.03
지원 · 연계		4.35	0.58	4.31	0.61	3.44	0.79
	5. 아동학대예방 · 피해아동보호 관련 기관 연계	4.52	0.65	4.33	0.72	3.27	1.01
	6. 피해아동 및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	4.69	0.59	4.40	0.76	3.58	1.03
	7.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치료 외)	4.40	0.71	4.48	0.74	3.54	1.05
	8. 관련 사업(서포터즈 사업, 방문똑똑마음톡톡사업 등)	4.02	0.89	3.98	1.14	3.40	0.84
	9. 공공연계회의, 통합사례회의, 자문회의	4.15	0.71	4.35	0.76	3.42	0.96
가정복귀 지원	10.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 가정복귀절차 실시	4.31	0.93	4.29	0.74	3.90	0.78
종결 전 · 후 관리		3.72	0.99	3.89	0.78	3.26	0.79
	11. 종결 전 관리	3.96	1.01	4.42	0.71	3.29	0.97
	12. 종결 후 관리	3.48	1.09	3.35	1.16	3.23	0.86
교육 · 홍보	13. 아동학대예방사업(교육 및 홍보)	4.44	0.74	4.15	0.77	3.38	0.79
행정 관련		4.22	0.76	4.28	0.67	3.47	0.77
	14. 아동정보시스템 정보입력에 필요한 자료 제공	4.40	0.79	4.35	0.70	3.44	0.94
	15. 행정 관련(실적관리, 재무회계관리, 인력관리 등)	4.04	1.01	4.21	0.90	3.50	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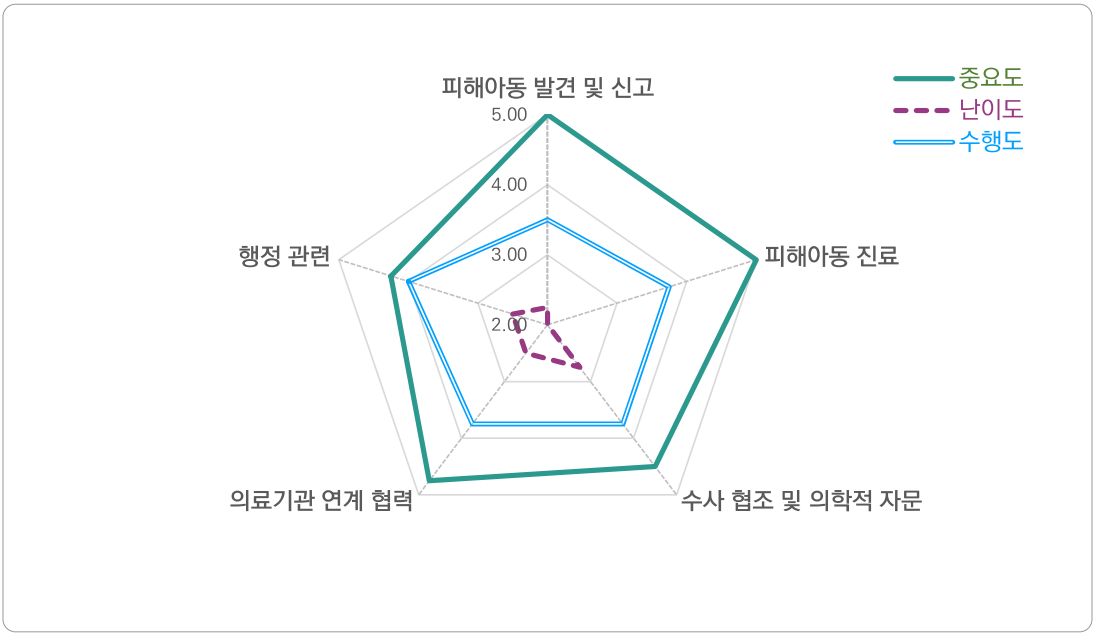
Base=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명

(5)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는 '피해아동 발견 및 신고', '피해아동 진료'에서 각 5.00점으로 가장 높았다. 수행도는 '행정 관련'에서 4.00점으로 가장 높고, 난이도는 '수사 협조 및 의학적 자문'에서 2.7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사 협조 및 의학적 자문'은 중요도와 수행도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낮은데,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중요도는 높은데, 수행도가 낮아 수행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 3-5] 중요도·수행도·난이도: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단위: 점/5점 평균



Base=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명

〈표 3-9〉 중요도·수행도·난이도: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단위: 점/5점 평균

표 범주	항목	중요도		수행도		난이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피해아동 발견 및 신고	1. 피해아동 발견 및 신고	5.00	0.00	3.50	1.29	2.25	1.50
피해아동 진료	2. 피해아동 진료	5.00	0.00	3.75	0.96	2.00	0.82
수사 협조 및 의학적 자문	3. 수사 협조 및 의학적 자문	4.50	0.58	3.75	0.96	2.75	1.71
의료기관 연계 협력	4. 의료기관 연계 협력	4.75	0.50	3.75	0.96	2.50	1.29
행정 관련	5. 행정 관련(실적관리, 재무회계관리, 인력관리 등)	4.25	0.50	4.00	0.82	2.50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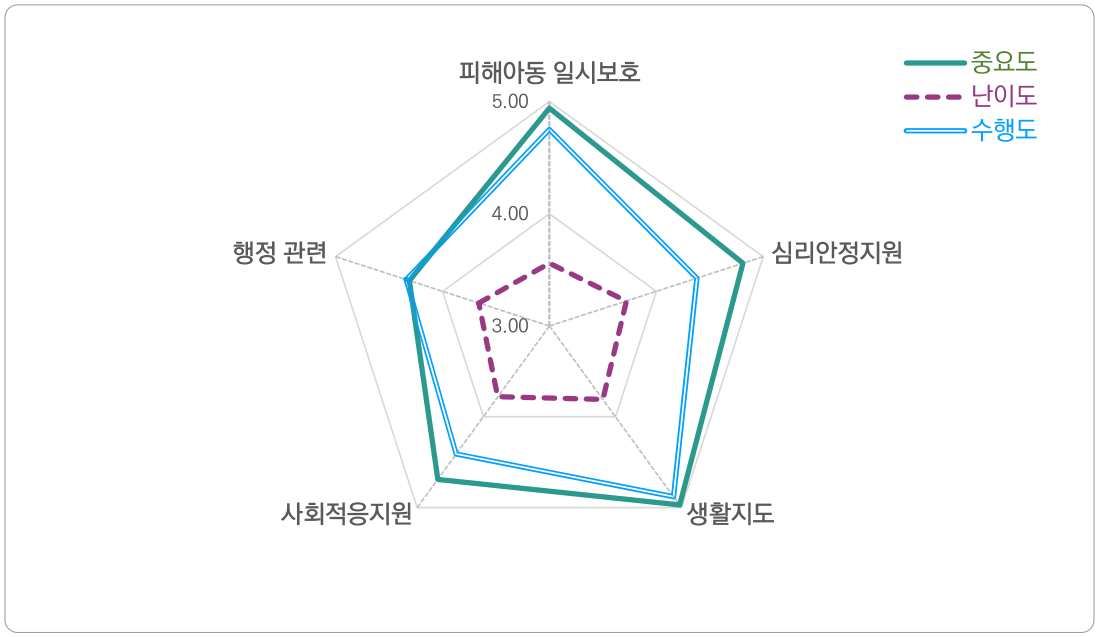
Base=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명

(6)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와 치료사가 인식하는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 수행도, 난이도는 모두 '생활지도'에서 가장 높고, 중요도 4.97점, 수행도 4.88점, 난이도 3.81점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인식하는 중요도와 수행도는 일시보호로 각각 4.94점, 4.75점이었으나 난이도는 가장 낮았다(3.56점). 사회적응지원의 경우 난이도는 두 번째(3.78점)로 높았으나 중요도(4.69점)와 수행도(4.41점)는 난이도에 비해 순위가 낮았다. '생활지도'의 경우 중요도, 수행도, 난이도가 가장 높아 난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심리안정지원'의 경우 중요도는 높은데, 수행도가 낮아 수행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림 3-6] 중요도·수행도·난이도: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단위: 점/5점 평균



Base=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명

〈표 3-10〉 중요도·수행도·난이도: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단위: 점/5점 평균

표 범주	항목	중요도		수행도		난이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피해아동 일시보호	1. 피해아동 일시보호(숙식 및 생활지원)	4.94	0.25	4.75	0.51	3.56	1.19
심리안정지원	2. 심리안정지원(상담 및 프로그램)	4.81	0.54	4.38	0.75	3.72	1.05
생활지도	3. 생활지도	4.97	0.18	4.88	0.42	3.81	1.15
사회적응지원	4. 사회적응지원	4.69	0.69	4.41	0.80	3.78	1.13
행정 관련	5. 행정 관련(실적관리, 재무회계관리, 인력관리 등)	4.31	0.97	4.34	0.94	3.66	1.15

Base=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명

2)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

(1)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결과해석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은 Martilla와 James(1977)의 마케팅 분석 기법으로, 중요도와 수행도를 교차분석하여 직무영역을 4개 분면으로 나누고, 이를 통해 관리자가 직무에서의 개선 순위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Martilla & James, 1977; 김혜정 외, 2022). IPA분석은 마케팅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나 최근에는 사회복지조직에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김경희, 김유나, 이태인, 2023; 김혜정 외, 2022; 양수진, 김빛여울, 심혜선, 2021; 정선욱, 김은영, 2020)

본 조사의 중요도-수행도 IPA분석에서도 업무 영역을 사분면으로 나누어서 각 분면에 필요한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제1사분면은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은 상태로, 현재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영역에 해당된다. 제2사분면은 낮은 중요도에 비해 높은 수행도를 보이는 영역으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과잉 상태로 볼 수 있어 이 영역에 투입된 자원을 다른 영역에 투입해야 한다.

제3사분면은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아 현재 이상의 노력을 지양해야 하는 저순위 상태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제4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지만 낮은 수행도를 나타내는 영역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수행을 많이 못하고 있어 자원과 노력을 집중해야 하며, 중요한 만큼 수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양수진, 김빛여울, 심혜선, 2021; 조성심 외, 2016; 주린, 조환기, 조선배, 2015).

[그림 3-7]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 해석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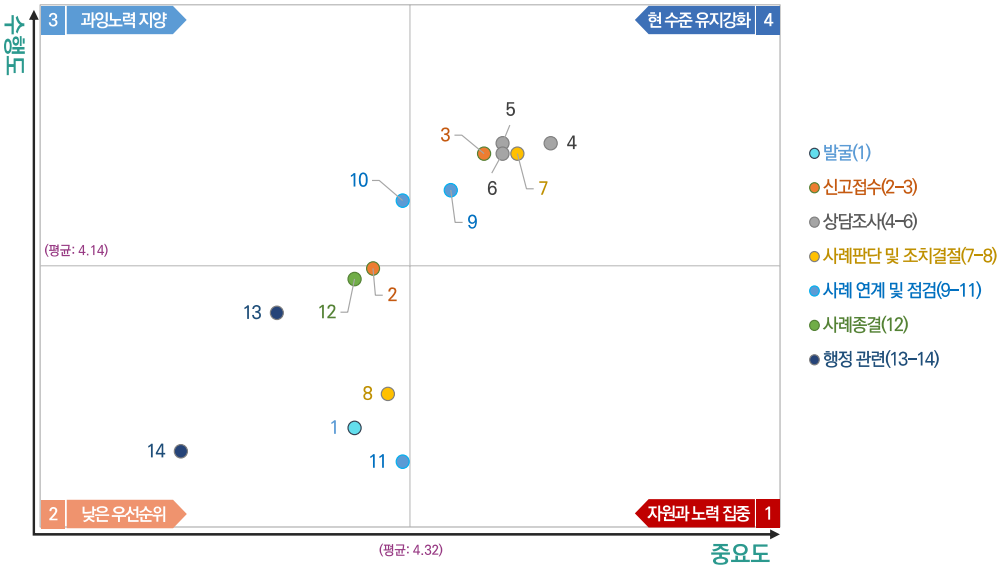


(2) 분석결과: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동학대 대응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와 수행도를 바탕으로 IP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원과 노력 집중'이 필요한 영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수준 유지강화' 영역은 3) 현장조사, 4)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5)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한 상담·조사, 6)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7) 아동학대 사례판단, 9)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항목이 해당되며 현재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8]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단위: 점/5점 평균



1	자원과 노력 집중	
2	낮은 우선순위	1) 위기아동가정 발굴, 2) 아동학대 신고접수, 8) 응급보호(즉각분리), 11)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지도·감독, 12) 피해아동, 가족, 및 학대행위자 사례관리 종결, 13)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예방사업 정보 처리, 14) 행정 관련(실적관리, 재무회계관리, 인력관리 등)
3	과잉 노력 지양	10)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4	현 수준 유지 강화	3) 현장조사, 4)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5)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한 상담·조사, 6)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7) 아동학대 사례판단, 9)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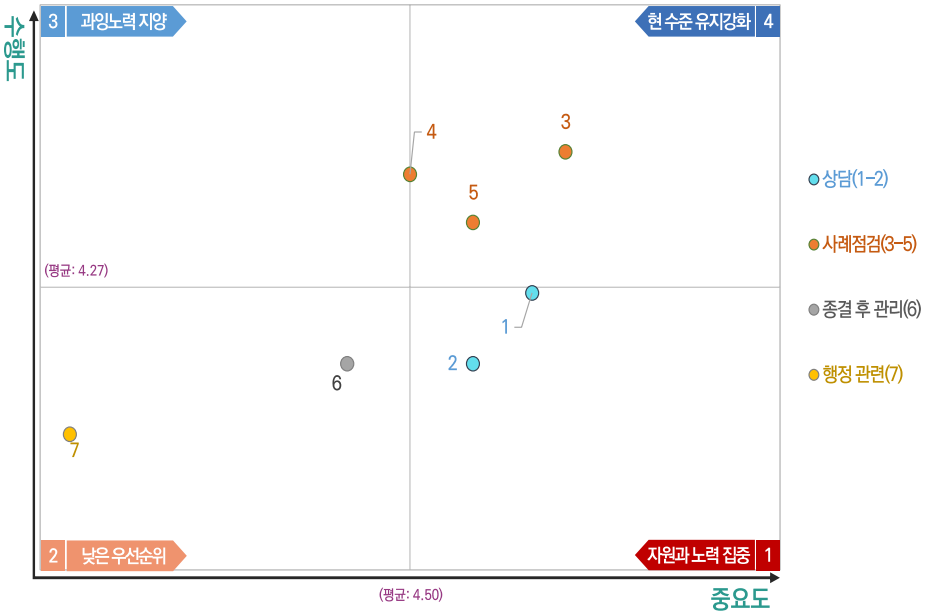
Base=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명

(3) 분석결과: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대상으로 기능 및 역할의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원과 노력 집중' 영역에 1) 아동상담, 2)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항목이 해당되며 현재보다 향상되도록 관리가 필요한 개선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영역인 '현 수준 유지강화'에는 3) 양육상황 점검, 4) 주기적인 사례점검, 5)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항목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우선순위' 영역에는 6) 사후모니터링과 7) 행정관련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단위: 점/5점 평균



1	자원과 노력 집중	1) 아동상담, 2)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2	낮은 우선순위	6) 사후 모니터링, 7) 행정 관련(실적관리, 재무회계관리, 인력관리 등)
3	과잉 노력 지양	
4	현 수준 유지 강화	3) 양육상황 점검, 4) 주기적인 사례점검, 5)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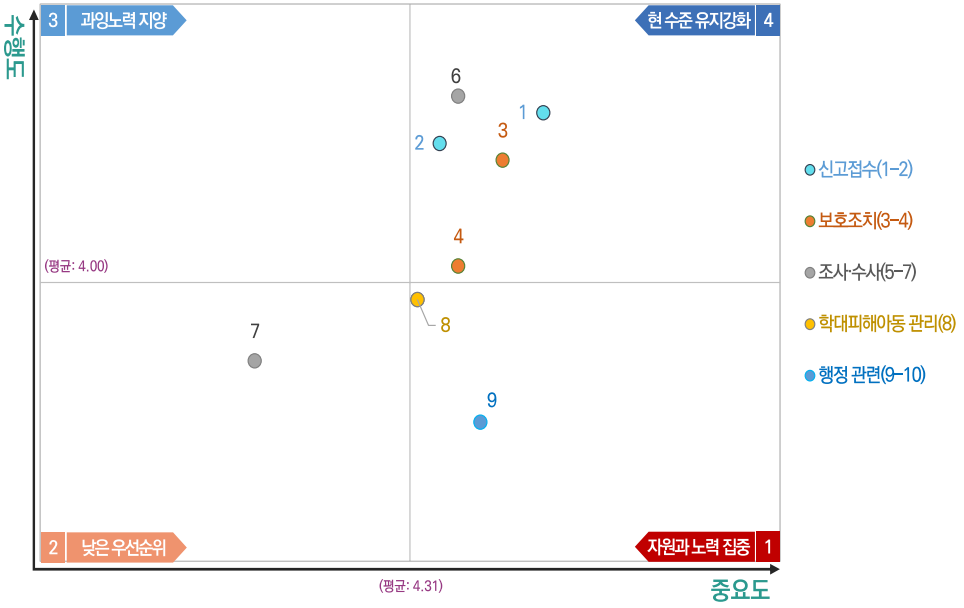
Base=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명

(4) 분석결과: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 · 청소년수사팀

경찰청/경찰서의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 · 청소년수사팀을 대상으로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원과 노력 집중' 영역에 8) 피해자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9)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항목이 해당되며 현재보다 향상되도록 관리가 필요한 개선항목으로 분석되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현 수준 유지강화' 영역에는 1) 아동학대 신고접수(112), 2) 지자체에 관련사실 통보, 3)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즉각분리), 4)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임시조치, 6)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 항목이 해당되었다.

[그림 3-10]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단위: 점/5점 평균



1	자원과 노력 집중	8) 피해자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9)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2	낮은 우선순위	7) 아동학대 신고사건 전수합동 조사
3	과잉 노력 지양	
4	현 수준 유지 강화	1) 아동학대 신고접수(112), 2) 지자체에 관련사실 통보, 3)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즉각분리), 4)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임시조치, 6)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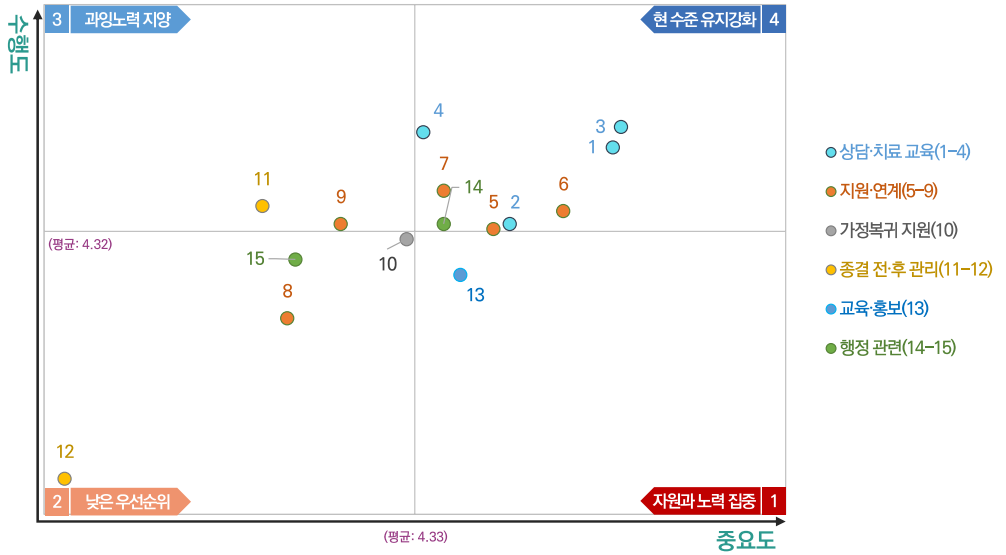
Base=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 · 청소년수사팀 18명

(5) 분석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원과 노력 집중' 영역에 13) 아동학대예방사업(교육 및 홍보) 항목이 해당되며 현재보다 향상되도록 관리가 필요한 개선항목으로 분석되었다. '현 수준 유지강화' 영역에는 1)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치료와 교육, 2) 피해아동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와 교육, 3)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와 교육, 4) 법원의 상담위탁 명령 수행, 5) 아동학대 예방·피해아동보호 관련 기관 연계, 6) 피해아동 및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 7) 사례관리 서비스(치료 외), 14) 아동정보시스템 정보입력에 필요한 자료 제공이었다.

[그림 3-11]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단위: 점/5점 평균



1	자원과 노력 집중	13) 아동학대예방사업(교육 및 홍보)
2	낮은 우선순위	8) 관련 사업(서포터즈사업, 방문똑똑마음톡톡사업 등), 10)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 가정복귀절차 실시, 12) 종결 후 관리, 15) 행정 관련(실적관리, 재무회계관리, 인력관리 등)
3	과잉 노력 지양	9) 공공연계회의, 통합사례회의, 자문회의, 11) 종결 전 관리
4	현 수준 유지 강화	1)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치료 교육, 2)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 교육, 3)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 교육, 4) 법원의 상담위탁 명령 수행, 5)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 관련 기관 연계, 6) 피해아동 및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 7)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치료 외), 14) 아동정보시스템 정보입력에 필요한 자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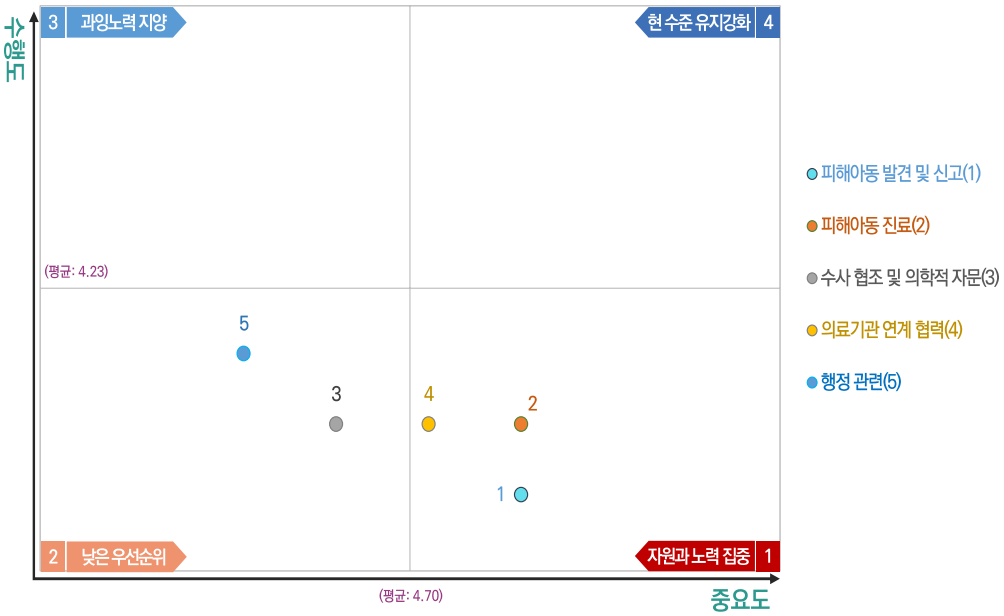
Base=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명

(6) 분석결과: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원과 노력 집중' 영역에 1) 피해아동 발견 및 신고, 2) 피해아동 진료, 4) 의료기관 연계 협력 항목이 해당되며 현재보다 향상되도록 관리가 필요한 개선 항목으로 분석되었다.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낮아 현재 이상의 노력을 지양해야 하는 '저순위 상태'는 3) 수사협조 및 의학적 자문과 5) 행정관련으로 나타났다.

[그림 3-12]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단위: 점/5점 평균



1	자원과 노력 집중	1) 피해아동 발견 및 신고, 2) 피해아동 진료, 4) 의료기관 연계 협력
2	낮은 우선순위	3) 수사 협조 및 의학적 자문, 5) 행정 관련(실적관리, 재무회계관리, 인력관리 등)
3	과잉 노력 지양	
4	현 수준 유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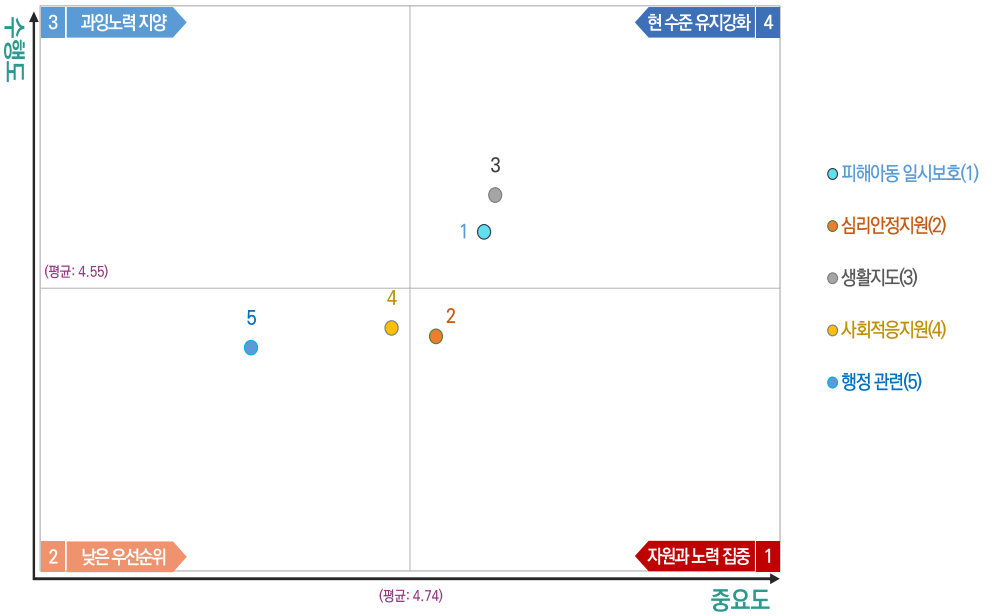
Base=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명

(7) 분석결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을 대상으로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원과 노력 집중' 영역에 2) 심리안정지원(상담 및 프로그램) 항목이 해당되며 현재보다 향상되도록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현 수준 유지강화' 영역에는 1) 피해아동 일시보호(숙식 및 생활지원), 3) 생활지도 항목이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낮은 우선순위' 영역은 4) 사회적응 지원과 5) 행정 관련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 중요도-수행도 IPA 분석: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단위: 점/5점 평균



1	자원과 노력 집중	2) 심리안정지원(상담 및 프로그램)
2	낮은 우선순위	4) 사회적응지원, 5) 행정 관련(실적관리, 재무회계관리, 인력관리 등)
3	과잉 노력 지양	
4	현 수준 유지 강화	1) 피해아동 일시보호(숙식 및 생활지원), 3) 생활지도

Base=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명

3)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

(1)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결과해석

중요도와 난이도에 대한 IPA 분석은 중요도와 수행도의 IPA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제1사분면은 중요도와 난이도가 모두 높은 영역으로, 역량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개선이 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사분면은 중요도는 낮으나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영역으로, 현재는 전략적 중요도는 낮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택적인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워 우선순위 선정에서는 다소 밀리게 된다.

제3사분면은 중요도와 난이도가 모두 낮아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는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략적 중요도가 높지 않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과제를 추진, 적응하기 쉬운 영역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중요도는 높지만 난이도가 낮은 제4사분면은 전략적 중요도가 높고 난이도가 비교적 어렵지 않아 바로 추진이 가능한 영역으로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양수진, 김빛여울, 심혜선, 2021; 이을지, 주호선, 2016; 주린, 조환기, 조선배, 2015).

[그림 3-14]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 해석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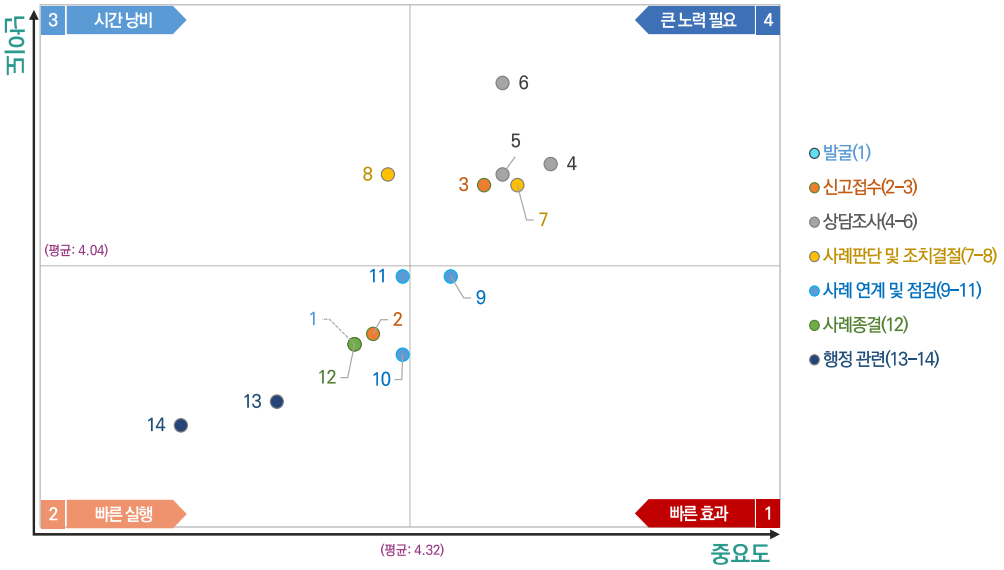


(2) 분석결과: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큰 노력 필요' 영역은 3) 현장조사, 4)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5)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한 상담·조사, 6)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조사, 7) 아동학대 사례판단 항목이 해당되며, 중요도도 높고 난이도가 높아 역량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빠른 효과' 영역에 9)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항목이 해당되며 중요도 대비 난이도가 낮아 과제를 추진하고 적용하는 것이 비교적 쉬워 현재 상태를 지속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5]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단위: 점/5점 평균



1	빠른 효과	9)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2	빠른 실행	1) 위기아동가정 발굴, 2) 아동학대 신고접수, 10)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11)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지도·감독, 12) 피해아동, 가족, 및 학대행위자 사례관리 종결, 13)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예방사업 정보 처리, 14) 행정 관련(실적관리, 재무회계관리, 인력관리 등)
3	시간 낭비	8) 응급보호(즉각분리)
4	큰 노력 필요	3) 현장조사, 4)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5)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한 상담·조사, 6)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7) 아동학대 사례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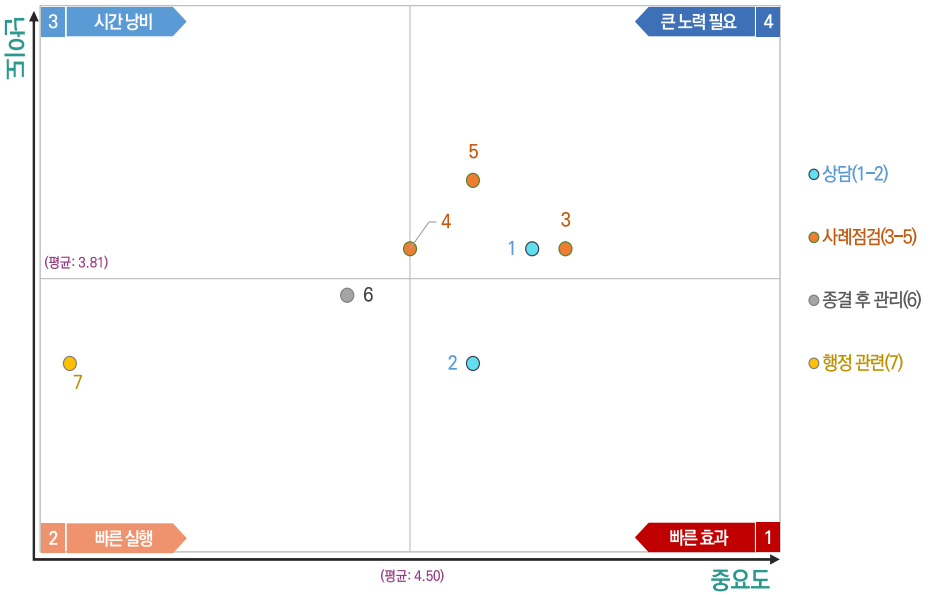
Base=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명

(3) 분석결과: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대상으로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큰 노력 필요' 영역은 1) 아동상담, 3) 양육상황 점검, 4) 주기적인 사례점검, 5) 사례결정위원회 운영이 해당되며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아 집중적으로 역량을 개발해서 개선해야 하는 '큰 노력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빠른 효과' 영역에 2)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항목이 해당되며 중요도에 비해 과제를 추진하고 적용하는 것이 쉬워 현재상태를 유지해도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낮은 중요도와 낮은 난이도에 해당되는 '빠른 실행' 영역에는 6) 사후 모니터링과 7) 행정 관련으로 나타났다.

[그림 3-16]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단위: 점/5점 평균



1	빠른 효과	2)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2	빠른 실행	6) 사후 모니터링, 7) 행정 관련(실적관리, 재무회계관리, 인력관리 등)
3	시간 낭비	
4	큰 노력 필요	1) 아동상담, 3) 양육상황 점검, 4) 주기적인 사례점검, 5)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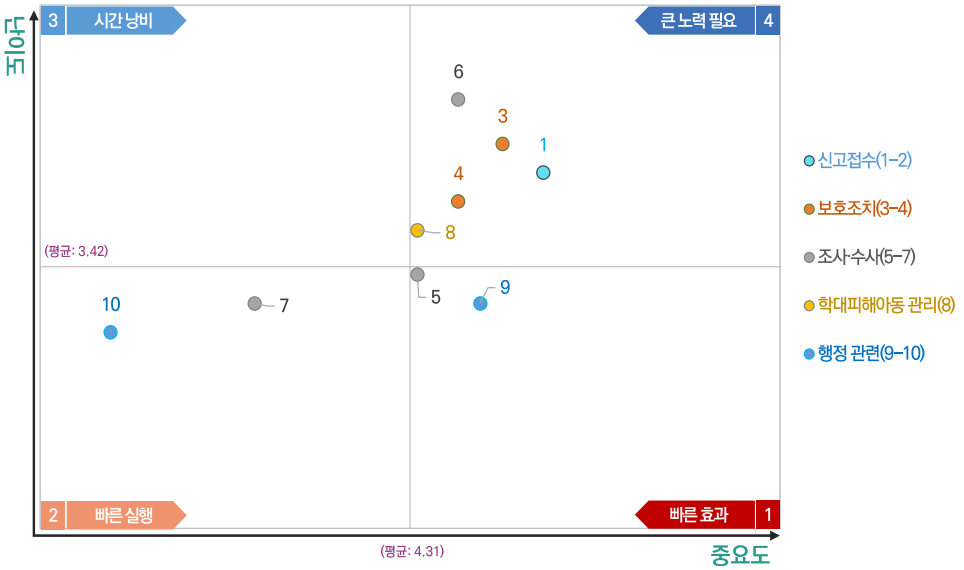
Base=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명

(4) 분석결과: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 · 청소년수사팀

경찰청/경찰서의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 · 청소년수사팀을 대상으로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집중적으로 역량을 개발해야 하는 '큰 노력 필요' 영역에는 1) 아동학대 신고접수(112), 3)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즉각분리), 4)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임시조치, 6)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 8) 피해자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항목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과제를 추진 및 적용하는 것이 쉬운 '빠른 효과' 영역에 5)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동행출동 및 현장조사, 9)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항목이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7]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단위: 점/5점 평균



1	빠른 효과	5)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동행출동 및 현장조사, 9)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2	빠른 실행	7) 아동학대 신고사건 전수합동 조사, 10) 행정 관련(실적관리, 재무회계관리, 인력관리 등)
3	시간 낭비	
4	큰 노력 필요	1) 아동학대 신고접수(112), 3)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즉각분리), 4)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임시조치, 6)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 8) 피해자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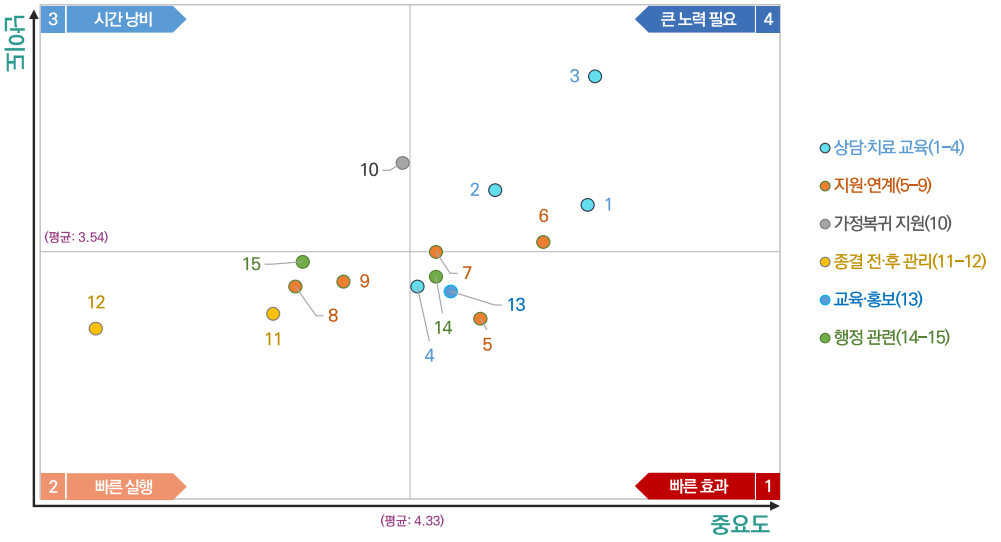
Base=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 · 청소년수사팀 18명

(5) 분석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역량을 개발해서 개선해야 하는 '큰 노력 필요' 영역에는 1)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치료·교육, 2)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교육, 3)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교육, 6) 피해아동 및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 항목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효과' 영역에 4) 법원의 상담위탁 명령 수행, 5)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 관련 기관 연계, 7)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치료 외), 13) 아동학대예방사업(교육 및 홍보), 14) 아동정보시스템 정보 입력에 필요한 자료 제공 항목이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18]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단위: 점/5점 평균



1	빠른 효과	4) 법원의 상담위탁 명령 수행, 5)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 관련 기관 연계, 7)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치료 외), 13) 아동학대예방사업(교육 및 홍보), 14) 아동정보시스템 정보입력에 필요한 자료 제공
2	빠른 실행	8) 관련사업(서포터즈사업, 방문똑똑마음톡톡사업 등), 9) 공공연계회의, 통합사례회의, 자문회의, 11) 종결 전 관리, 12) 종결 후 관리, 15) 행정 관련(실적관리, 재무회계관리, 인력관리 등)
3	시간 낭비	10)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 가정복귀절차 실시
4	큰 노력 필요	1)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치료 교육, 2)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 교육, 3)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 교육, 6) 피해아동 및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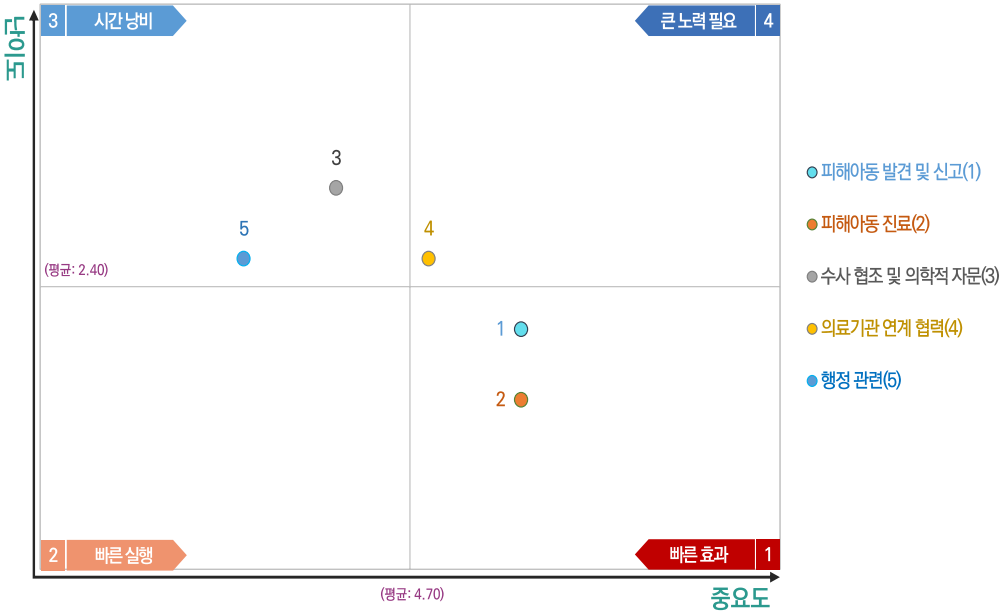
Base=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명

(6) 분석결과: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역량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개선해야 할 '큰 노력 필요' 영역에는 4) 의료기관 연계·협력 항목이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빠른 효과' 영역에 1) 피해아동 발견 및 신고, 2) 피해아동 진료 항목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중요도와 높은 난이도에 해당하는 '시간 낭비' 영역은 3) 수사 협조 및 의학적 자문과 5) 행정 관련으로 선택적 역량 개발이 요구된다.

[그림 3-19]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단위: 점/5점 평균



1	빠른 효과	1) 피해아동 발견 및 신고, 2) 피해아동 진료
2	빠른 실행	
3	시간 낭비	3) 수사 협조 및 의학적 자문, 5) 행정 관련(실적관리, 재무회계관리, 인력관리 등)
4	큰 노력 필요	4) 의료기관 연계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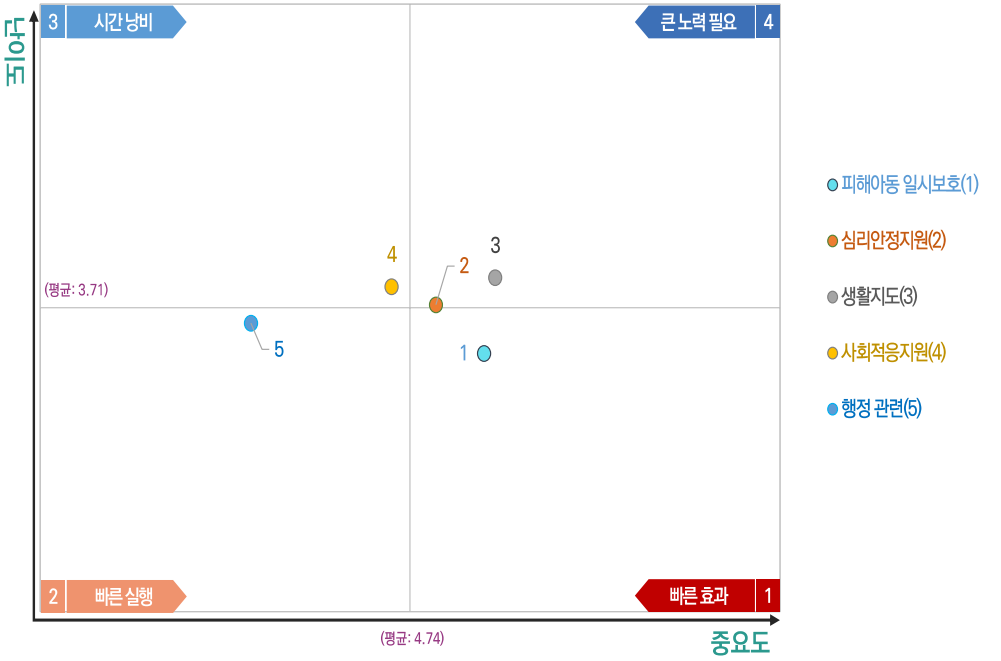
Base=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명

(7) 분석결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을 대상으로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역량 개발에 집중해서 개선해야 할 '큰 노력 필요' 영역에는 2) 심리안정지원(상담 및 프로그램), 3) 생활지도 항목이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빠른 효과' 영역에 1) 피해아동 일시보호(숙식 및 생활지원) 항목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실행' 영역은 5) 행정 관련이었으며, '시간 낭비' 영역은 4) 사회적응지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3-20]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단위: 점/5점 평균



1	빠른 효과	1) 피해아동 일시보호(숙식 및 생활지원)
2	빠른 실행	5) 행정 관련(실적관리, 재무회계관리, 인력관리 등)
3	시간 낭비	4) 사회적응지원
4	큰 노력 필요	2) 심리안정지원(상담 및 프로그램), 3) 생활지도

Base=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명

4)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종사자로서의 역할수행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종사자의 역할수행과 관련해 역할모호성과 역할과다, 역할불일치, 과업갈등을 조사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조사한 결과, 역할과다(2.77점)와 역할불일치(2.59점)가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어 과업갈등 2.32점, 역할모호성이 2.14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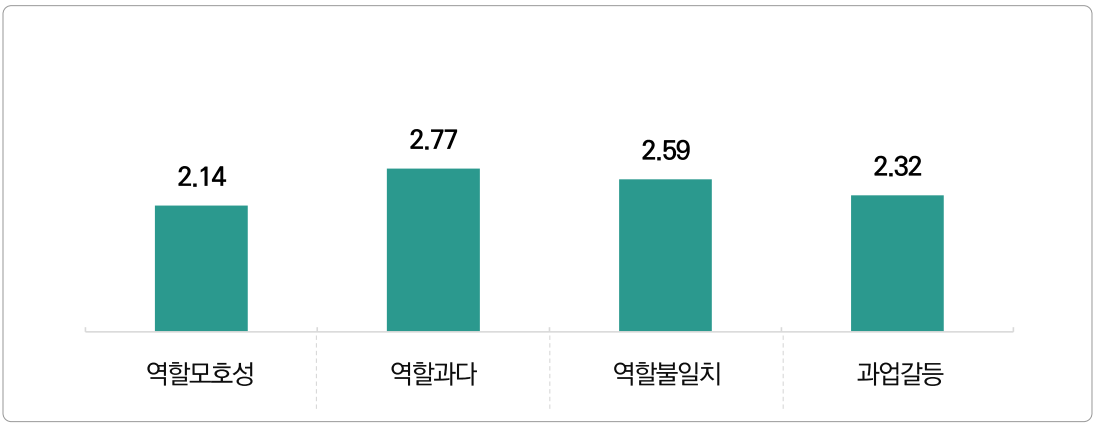
역할모호성은 업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업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경험하는 것으로(Churchill, Ford, Hartley, & Walker Jr, 1985), 역할모호성의 경우 자치구 아동보호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2.3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역할과다는 활용가능한 자원에 비해서 요구되는 업무가 많은 경우로(Rizzo, House, & Lirtzman, 197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평균 3.06점으로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불일치는 기대하는 역할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역할규정이 불확실하여 역할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정도를 침해받거나 역할 범위가 모호할 때 역할에 대한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안혜경, 2022; Etgar, 1979; Oliver & Brief, 1978; Yi, Lee, & Dubinsky, 2010). 역할불일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2.7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과업갈등은 과업의 내용이나 수행절차 및 실행방법에서 생각이나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나타나는 충돌로(안혜경, 2022),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2.48점)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보다 과업갈등이 높았다.

[그림 3-21] 역할 수행

단위: 점/4점 평균



Base=전체 137명

〈표 3-11〉 역할 수행

단위: 점/4점 평균

구분		사례수	역할모호성		역할과다		역할불일치		과업갈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7)	2.14	0.74	2.77	0.70	2.59	0.58	2.32	0.68
대응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2.38	0.81	2.67	0.56	2.67	0.53	2.39	0.69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2.19	0.69	2.67	0.71	2.56	0.51	2.07	0.73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2.16	1.03	2.78	0.86	2.47	0.73	2.30	0.82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2.02	0.61	3.06	0.64	2.73	0.53	2.48	0.65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1.75	0.88	2.21	0.82	2.13	0.75	1.92	0.65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2.17	0.67	2.51	0.64	2.45	0.58	2.16	0.55

Base=전체 137명

5) 업무량 및 전문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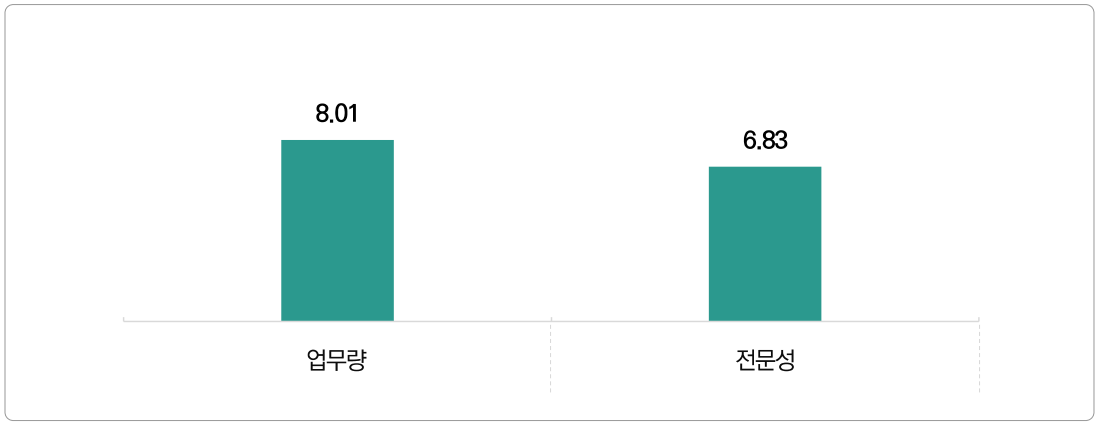
대응체계별 종사자들이 인식한 현재 업무량과 전문성 수준을 조사한 결과, 10점 평균 기준으로 업무량은 8.01점, 전문성은 6.83점으로 나타나 종사자들은 업무량 대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응체계별로 살펴봤을 때,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의 의료사회복지사들이 업무량(8.75점)과 전문성(8.75점)에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업무량의 경우 전담의료기관 다음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업무량(8.65점)이 많았고 아동학대예방경찰관과 여성 · 청소년수사팀(8.17점), 아동보호전담요원(7.92점), 아동학대전담공무원(7.87점), 그리고 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7.0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성도 전담의료기관 다음으로, 아동학대예방경찰관과 여성 · 청소년수사팀(7.50점), 아동보호전담요원(7.17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6.65점), 아동학대전담공무원(6.61점),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6.53점)의 순이었다.

[그림 3-22] 업무량 및 전문성 수준

단위: 점/10점 평균



Base=전체 137명

〈표 3-12〉 업무량 및 전문성 수준

단위: 점/10점 평균

구분		사례수	업무량		전문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7)	8.01	1.68	6.83	2.12
대응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7.87	1.32	6.61	2.76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7.92	1.51	7.17	2.08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8.17	1.82	7.50	2.23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8.65	1.25	6.65	1.59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8.75	0.96	8.75	1.5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7.03	2.10	6.53	2.24

Base=전체 137명

6) 업무의 주된 어려움

담당하는 업무의 주된 어려움의 이유를 조사한 결과, 1순위와 1+2순위 모두에서 '인력 수 부족'이 43.1%와 51.1%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1순위는 '대상자의 비협조' 13.1%, '근무형태(당직근무, 교대근무 등)' 10.9%, '인력의 전문성 미흡' 8.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주된 어려움으로는 '인력 수 부족'과 '대상자 비협조'가(26.1%)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근무형태'(21.7%) 등의 순이었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인력의 전문성 미흡'과 '민원 응대'(25.0%), '담당자 간 업무 이해 미흡'과 '지역 민간기관의 협조 미흡'(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예방경찰관과 여성청소년수사팀(61.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68.8%), 그리고 의료사회복지사(100%)의 경우는 '인력 수 부족'를 1순위로 뽑았다. 마지막으로 쉼터 보육사는 당직, 교대근무 등의 '근무형태'(28.1%)를 주된 어려움으로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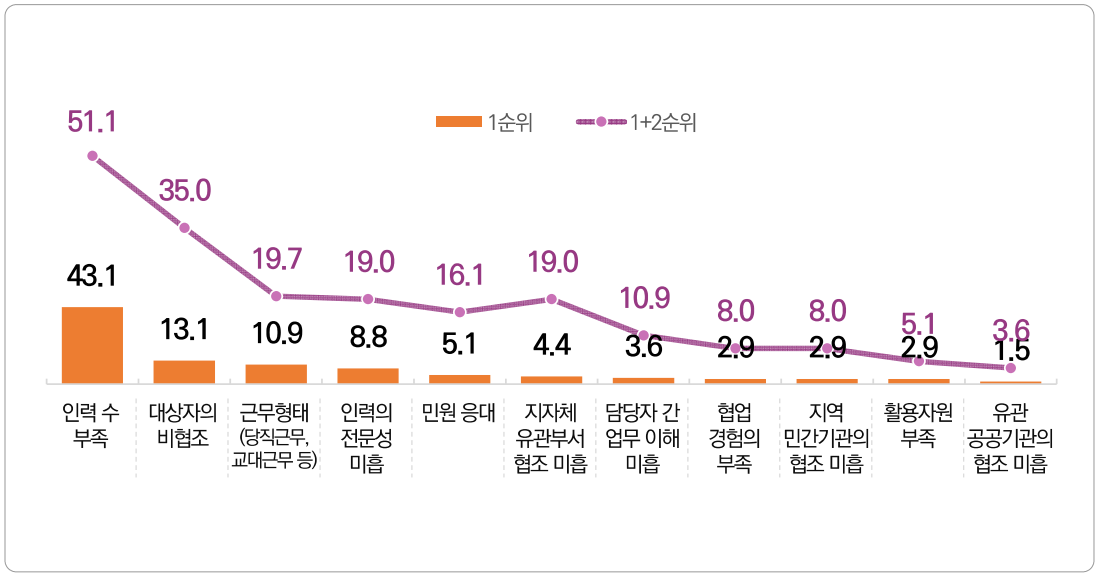
1+2순위는 '인력 수 부족'(51.1%) 다음으로 '대상자의 비협조'(35.0%), '근무형태'(19.7%), '인력의 전문성 미흡'과 '지자체 유관부서 협조 미흡'(19.0%), '민원 응대'(16.1%) 등의 순이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1+2순위 어려움은 '대상자의 비협조'(47.8%), '근무형태'(43.5%), '인력 수 부족'(39.1%) 등의 순이었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인력의 전문성 미흡'과 '민원 응대'(41.7%), '담당자 간 업무 이해 미흡'(33.3%) 순으로 높았다.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은 '인력 수 부족'(61.1%), '대상자 비협조'(38.9%) 순이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인력 수 부족'(77.1%), '대상자의 비협조'(52.1%)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육사는 '근무형태'(40.6%), '협업 경험의 부족'(25.0%), '지자체 유관부서 협조 미흡'(21.9%)이였다.

[그림 3-23] 업무의 주된 어려움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기타 미제시

〈표 3-13〉 업무의 주된 어려움 - 1순위

단위: %

구분		사례수	인력 수 부족	대상자의 비협조	근무형태 (당직, 교대근무 등)	인력의 전문성 미흡	민원 응대	지자체 유관부서 협조 미흡	담당자 간 업무 이해 미흡	협업 경험의 부족	지역 민간기관의 협조 미흡	활용 자원 부족	유관 공공기관의 협조 미흡
전체		(137)	43.1	13.1	10.9	8.8	5.1	4.4	3.6	2.9	2.9	2.9	1.5
대응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26.1	26.1	21.7	13.0	8.7	0.0	0.0	0.0	0.0	0.0	4.3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8.3	0.0	0.0	25.0	25.0	0.0	16.7	0.0	16.7	8.3	0.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61.1	11.1	5.6	0.0	5.6	5.6	0.0	5.6	0.0	5.6	0.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68.8	16.7	0.0	8.3	0.0	4.2	2.1	0.0	0.0	0.0	0.0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12.5	6.3	28.1	6.3	3.1	9.4	6.3	9.4	6.3	6.3	3.1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기타 미제시

〈표 3-14〉 업무의 주된 어려움 – 1+2순위

복수응답 / 단위: %

구분		사례수	인력 수 부족	대상자의 비협조	근무형태 (당직, 교대근무 등)	인력의 전문성 미흡	지자체 유관부서 협조 미흡	민원 응대	담당자 간 업무 이해 미흡	협업 경험의 부족	지역 민간기관의 협조 미흡	활용자원 부족	유관 공공기관의 협조 미흡
전체		(137)	51.1	35.0	19.7	19.0	19.0	16.1	10.9	8.0	8.0	5.1	3.6
대응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39.1	47.8	43.5	26.1	0.0	13.0	0.0	4.3	17.4	4.3	4.3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8.3	16.7	0.0	41.7	8.3	41.7	33.3	0.0	25.0	8.3	8.3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61.1	38.9	16.7	11.1	11.1	22.2	16.7	5.6	5.6	5.6	5.6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77.1	52.1	0.0	12.5	31.3	18.8	6.3	2.1	0.0	0.0	0.0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100.0	0.0	25.0	25.0	25.0	0.0	0.0	0.0	0.0	0.0	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25.0	9.4	40.6	18.8	21.9	3.1	15.6	25.0	9.4	12.5	6.3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기타 미제시

7)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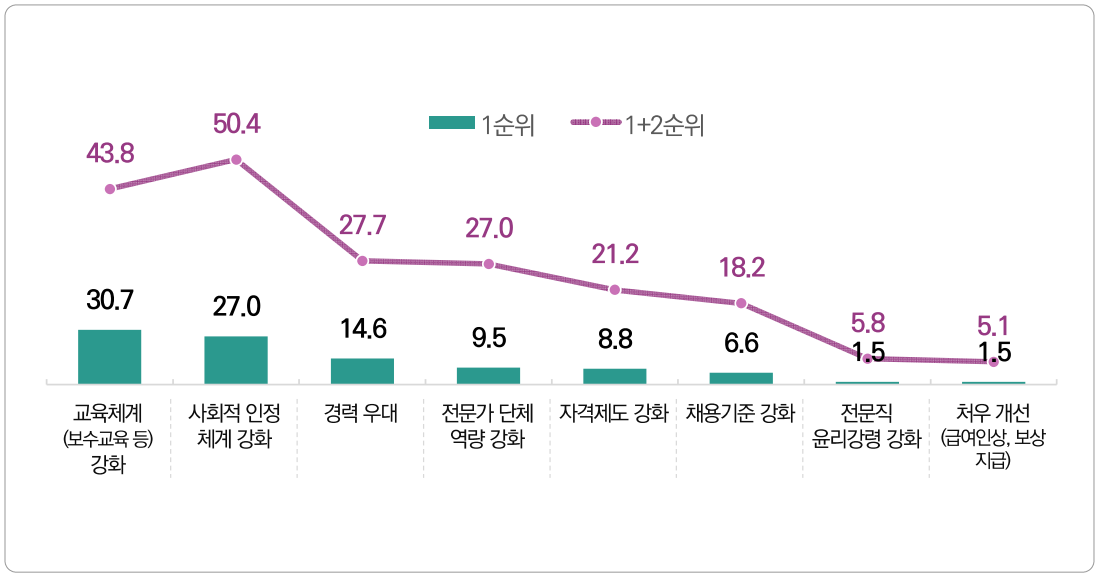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1순위에서 '교육체계(보수교육 등) 강화'가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사회적 인정체계 강화' 27.0%, '경력 우대' 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1+2순위에서는 1순위와 다르게 '사회적 인정체계 강화'가 50.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교육체계(보수교육 등) 강화' 43.8%, '경력우대' 27.7%, '전문가 단체 역량 강화' 27.0%, '자격제도 강화' 21.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응체계별로 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회적 인정체계 강화' 비율이 비교적 낮은 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경우 '사회적 인정체계 강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4]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

단위: %



Base=전체 137명

〈표 3-15〉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 - 1순위

단위: %

구분		사례수	교육체계 (보수교육 등) 강화	사회적 인정 체계 강화	경력 우대	전문가 단체 역량 강화	자격제도 강화	채용기준 강화	전문직 윤리강령 강화	처우 개선 (급여인상, 보상 지급)	계
전체		(137)	30.7	27.0	14.6	9.5	8.8	6.6	1.5	1.5	100.0
대응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34.8	4.3	8.7	21.7	13.0	17.4	0.0	0.0	100.0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41.7	8.3	16.7	0.0	8.3	25.0	0.0	0.0	100.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38.9	22.2	33.3	5.6	0.0	0.0	0.0	0.0	100.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20.8	39.6	14.6	6.3	12.5	2.1	0.0	4.2	100.0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50.0	50.0	0.0	0.0	0.0	0.0	0.0	0.0	10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31.3	31.3	9.4	12.5	6.3	3.1	6.3	0.0	100.0

Base=전체 137명

〈표 3-16〉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 - 1+2순위

복수응답 / 단위: %

구분		사례수	사회적 인정 체계 강화	교육체계 (보수교육 등) 강화	경력 우대	전문가 단체 역량 강화	자격제도 강화	채용기준 강화	전문직 윤리강령 강화	처우 개선 (급여인상, 보상 지급)
전체		(137)	50.4	43.8	27.7	27.0	21.2	18.2	5.8	5.1
대응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21.7	56.5	34.8	26.1	34.8	26.1	0.0	0.0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25.0	58.3	25.0	16.7	25.0	41.7	8.3	0.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61.1	44.4	50.0	33.3	5.6	0.0	0.0	5.6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64.6	35.4	27.1	29.2	16.7	16.7	0.0	8.3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50.0	50.0	0.0	0.0	75.0	25.0	0.0	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53.1	40.6	15.6	28.1	18.8	15.6	21.9	6.3

Base=전체 137명

3.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연계 · 협력

1) 대응체계별 연계여부/전반적인 연계 · 협력 수준/향후 연계협력 강화 필요성/애로사항

(1)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대응체계별 연계 여부는 '경찰청/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 응답자 모두 연계를 하고 있었고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과 '시교육청/교육지원청'은 78.3%, 52.2%가 연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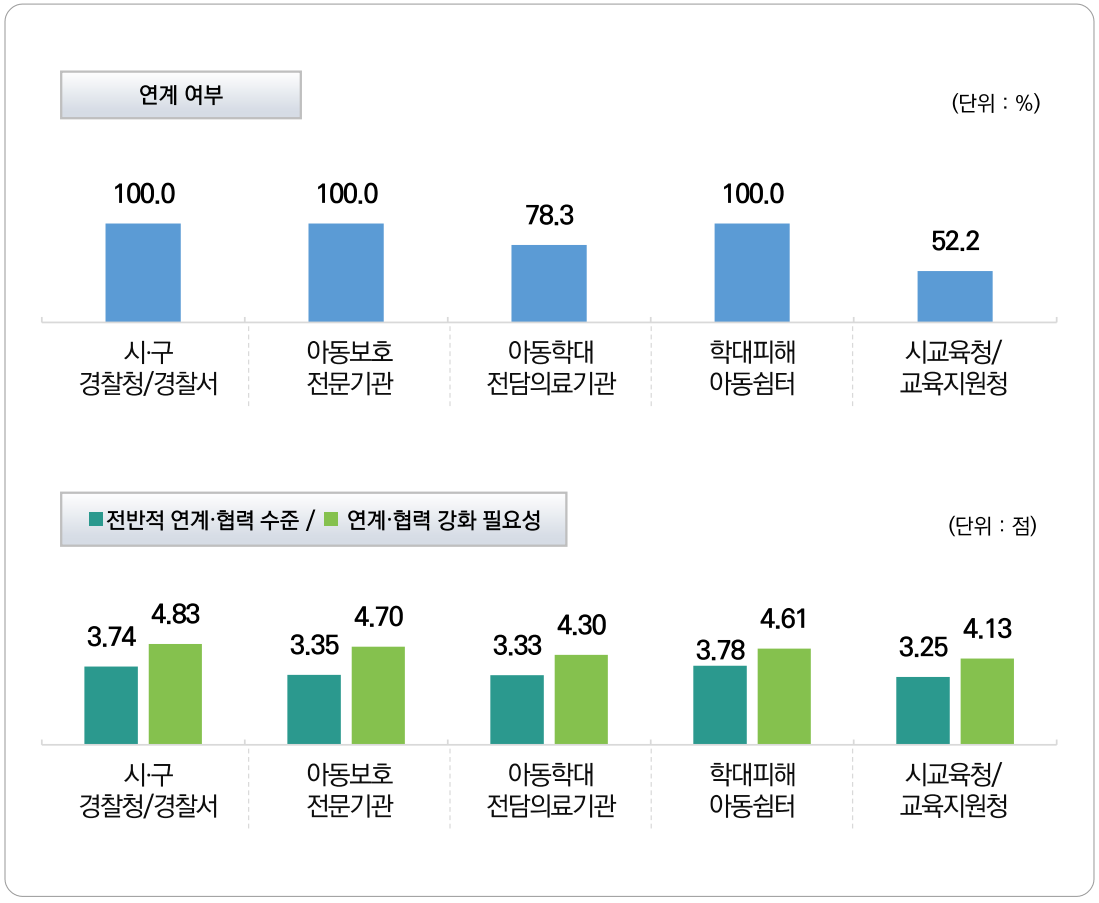
전반적 연계 · 협력 수준에 있어 모든 대응체계가 보통수준인 3점 이상으로 연계 ·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중 '학대피해아동쉼터'가 3.78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경찰청/경찰서' 3.74점, '아동보호전문기관' 3.3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계 · 협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으로는 모든 대응체계가 4점 이상으로 연계 ·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경찰청/경찰서'가 4.83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가 4.70점, '학대피해아동쉼터' 4.61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연계 시 애로사항으로는 경찰청/경찰서에 대해 '부정확한 사건 통보(오인신고, 허위신고, 정보부족)' 30.4%,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 '사례관리 적극성 미흡' 34.8%,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에 대해 '연락체계망, 기관별 역할 공유 필요' 17.4%,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입소거부, 보호하기 쉬운 아동만 입소허용' 26.1%, 시교육청/교육지원청에 대해 '정보 공유 비협조, 협업 부족' 30.4% 등이 언급되었다.

[그림 3-25]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단위: %/점/5점 평균



Base=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명

〈표 3-17〉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단위: %/점/5점 평균

표 범주	시·구 경찰청/경찰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연계여부(%)	100.0	-	100.0	-	78.3	-	100.0	-	52.2	-
전반적 연계·협력 수준	3.74	0.75	3.35	0.83	3.33	1.03	3.78	0.74	3.25	1.22
연계·협력 강화 필요성	4.83	0.49	4.70	0.63	4.30	0.82	4.61	0.66	4.13	0.97

Base=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명
*연계여부(%)는 '있다' 응답만 표시

〈표 3-18〉 대응체계별 애로사항: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단위: %

경찰청/경찰서	
부정확한 사건 통보 (오인신고, 허위신고, 정보부족)	30.4
협동 조사 필요	17.4
신속 집행 및 통보 필요	13.0
기타	8.7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적극성 미흡	34.8
사례관리 전문성 부족	21.7
이해관계 충돌, 소통 어려움	21.7
기타	8.7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연락체계망, 기관별 역할 공유 필요	17.4
진단, 소견 등 정보 공유	8.7
민원 염려(서류발급에 대한 근거 법률 미약)	4.3
복잡한 절차	4.3
중앙차원에서 신고의무자 교육 필요	4.3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거부, 보호하기 쉬운 아동만 입소허용	26.1
기타	13.0
시교육청/교육지원청	
정보 공유 비협조, 협업부족	30.4
지자체 개입 꺼림	4.3
피해아동 신속한 학습지원	4.3
쉼터 가까운 학교에서 학대피해아동을 받는 것을 곤란해함	4.3
학대처리 담당 직원 채용 필요	4.3

Base=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명
주) 무응답 미제시

(2)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대응체계별 연계여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응답자 모두 연계하고 있었고 '경찰청/경찰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각 91.7%가 연계하고 있었다. 반면,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83.3%)과 '시교육청/교육지원청'(66.7%)이 타 대응체계에 비해 낮게 연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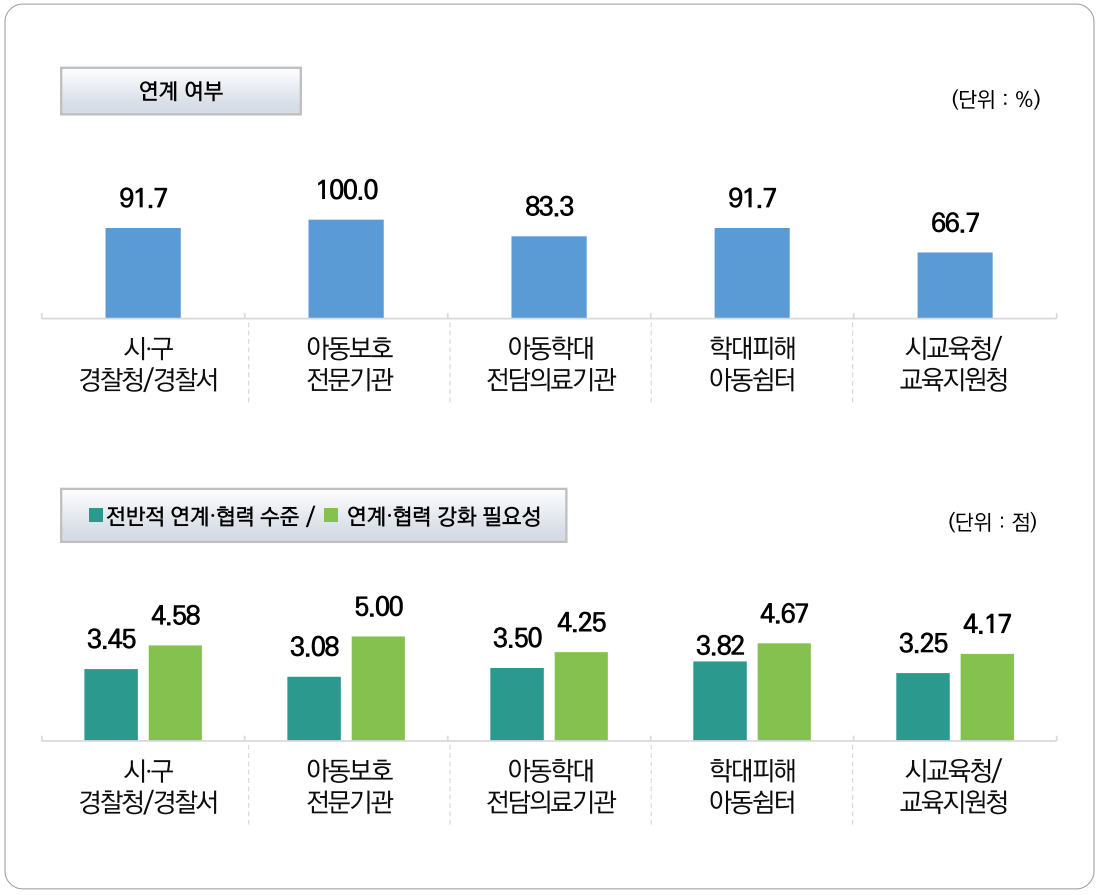
전반적 연계·협력 수준에 있어 모든 대응체계가 보통 수준인 3점 이상으로 연계·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대피해아동쉼터'가 3.82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3.50점, '경찰청/경찰서' 3.4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계·협력 강화 필요성은 모든 대응체계가 4점 이상으로 향후 연계·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가 5.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학대피해아동쉼터' 4.67점, '경찰청/경찰서' 4.5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전반적인 연계·협력 수준은 다른 체계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연계·협력 강화 필요성은 가장 높은 체계였다.

한편, 연계 시 애로사항으로는 경찰청/경찰서에 대해 '일부 비협조적 태도'(25.0%),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업무 협조 및 정보 공유 필요'(41.7%),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은 '아동 건강상태 확인 및 소견 등 협조 필요'(16.7)%,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 '비협조적 태도, 전문성 결여', '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입소거부'(각 8.3%)로 나타났다. 시교육청/교육지원청에 대해 '사건 정보 공유 부족', '보호아동 교육서비스 신속 지원 필요', '교육청과 학교 간 고유업무에 따른 담당자 확인 어려움' 각 8.3% 등이 언급되었다.

[그림 3-26]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단위: %/점/5점 평균



Base=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명

〈표 3-19〉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단위: %/점/5점 평균

표 범주	시·구 경찰청/경찰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연계여부(%)	91.7	-	100.0	-	83.3	-	91.7	-	66.7	-
전반적 연계협력 수준	3.45	0.82	3.08	1.08	3.50	0.97	3.82	0.87	3.25	0.89
연계·협력 강화 필요성	4.58	0.67	5.00	0.00	4.25	0.87	4.67	0.65	4.17	0.83

Base=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명
*연계여부(%)는 '있다' 응답만 표시

〈표 3-20〉 대응체계별 애로사항: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단위: %

경찰청/경찰서	
일부 비협조적 태도	25.0
업무 숙지 필요	16.7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협조 및 정보 공유 필요	41.7
담당자 변경이 잦음	16.7
적극적이고 신속한 사례 개입 및 관리 필요	16.7
기타	16.7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아동 건강상태 확인 및 소견 등 협조 필요	16.7
학대피해아동쉼터	
비협조적 태도, 전문성 결여	8.3
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입소 거부	8.3
시교육청/교육지원청	
사건 정보 공유 부족	8.3
보호아동 교육서비스 신속 지원 필요	8.3
교육청과 학교 간 고유업무에 따른 담당자 확인 어려움	8.3

Base=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명
주) 무응답 미제시

(3)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과 여성청소년수사팀의 대응체계별 연계 여부는 응답자의 94.4%가 '자치구 아동보호팀'과 연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88.9%, '학대피해아동쉼터' 7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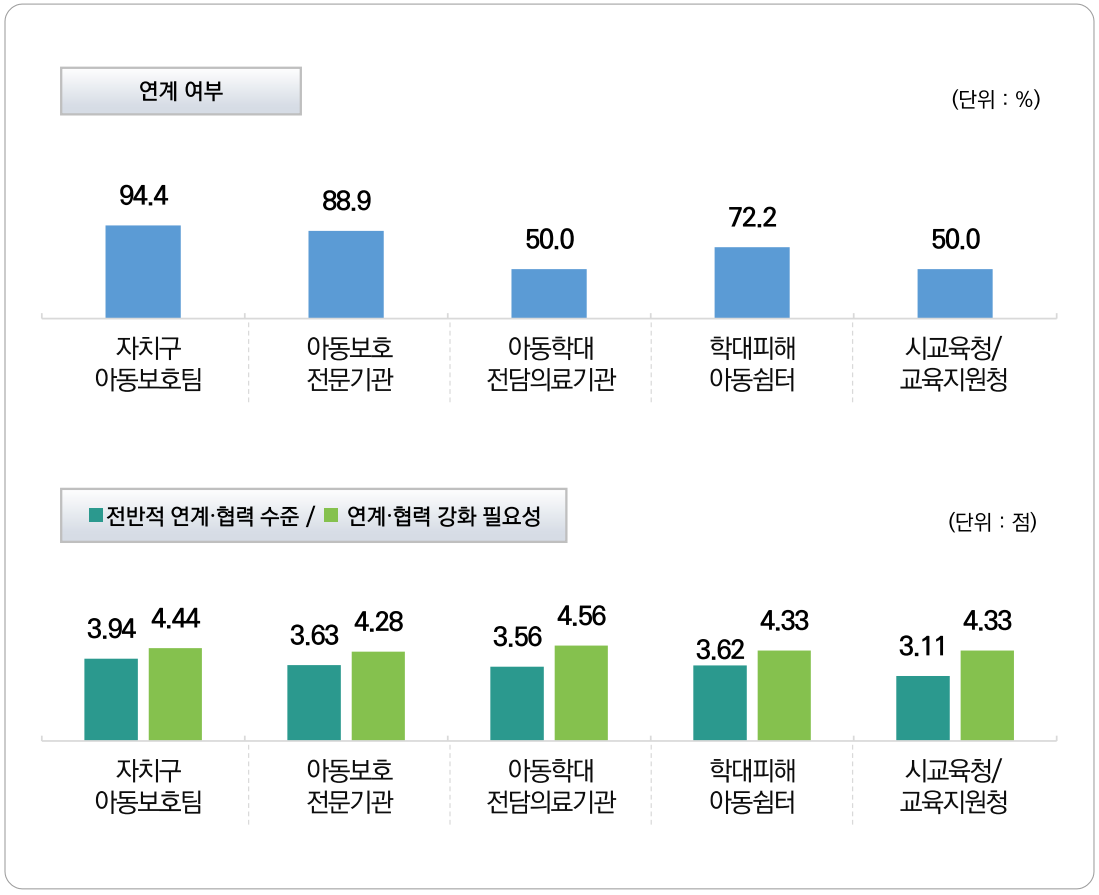
전반적 연계·협력 수준에 있어 모든 대응체계가 보통수준인 3점 이상으로 연계·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자치구 아동보호팀'이 3.94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3.63점, '학대피해아동쉼터' 3.6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계·협력 강화 필요성은 모든 대응체계가 4점 이상으로 연계·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적으로는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연계가 4.56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자치구 아동보호팀' 4.44점, '학대피해아동쉼터', '시교육청/교육지원청' 각 4.3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의 경우 전반적인 연계·협력 수준은 다소 낮은 편이나 연계·협력 강화 필요성에서는 가장 높았다.

한편, 연계 시 애로사항으로는 자치구 아동보호팀에 대해 '신속 대응 필요(24시간 출동)' 22.2%,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 '소극적 대응' 11.1%,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에 대해 '연계 가능한 의료기관 부족' 16.7%,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 '쉼터 및 쉼터 수용인원 부족' 16.7%, 그리고 시교육청/교육지원청에 대해 '적극적 대응 필요' 27.8% 등이 언급되었다.

[그림 3-27]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단위: %/점/5점 평균



Base=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 · 청소년수사팀 18명

〈표 3-21〉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단위: %/점/5점 평균

표 범주	자치구 아동보호팀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학대피해 아동쉼터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연계여부(%)	94.4	-	88.9	-	50.0	-	72.2	-	50.0	-
전반적 연계협력 수준	3.94	1.09	3.63	1.31	3.56	1.01	3.62	0.96	3.11	0.93
연계·협력 강화 필요성	4.44	1.10	4.28	1.32	4.56	0.70	4.33	1.08	4.33	0.84

Base=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 · 청소년수사팀 18명
*연계여부(%)는 '있다' 응답만 표시

〈표 3-22〉 대응체계별 애로사항: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단위: %

자치구 아동보호팀	
신속대응 필요(24시간 출동)	22.2
업무이해도 제고 필요	11.1
야간, 휴일에도 현장출동 인원 최소 2명 필요	5.6
피해자 재정지원 강화 및 지원절차 간소화	5.6
응급아동에 대한 구청의 가정복귀 임의판단	5.6
즉각분리 절대 미실시	5.6
학대행위자 조사 시 입장차	5.6
아동보호전문기관	
소극적 대응	11.1
동행요청을 거부할 때가 있음	5.6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이해 제고 필요	5.6
피해아동 보호가 아닌 신고 자체를 우선시 함	5.6
학대여부 판단 시 입장차	5.6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연계 가능한 의료기관 부족	16.7
학대피해아동쉼터	
쉼터 및 쉼터 수용인원 부족	16.7
시교육청/교육지원청	
적극적 대응 필요	27.8
아동 생활지도 업무도 경찰에 전가	5.6

Base=경찰청/경찰서(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18명
주) 무응답 미제시

(4)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대응체계별 연계는 '자치구 아동보호팀'의 경우 모든 응답자가 연계를 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경찰청/경찰서'와 '지역 사회서비스기관'이 각 97.9%, '학대피해아동쉼터'가 80.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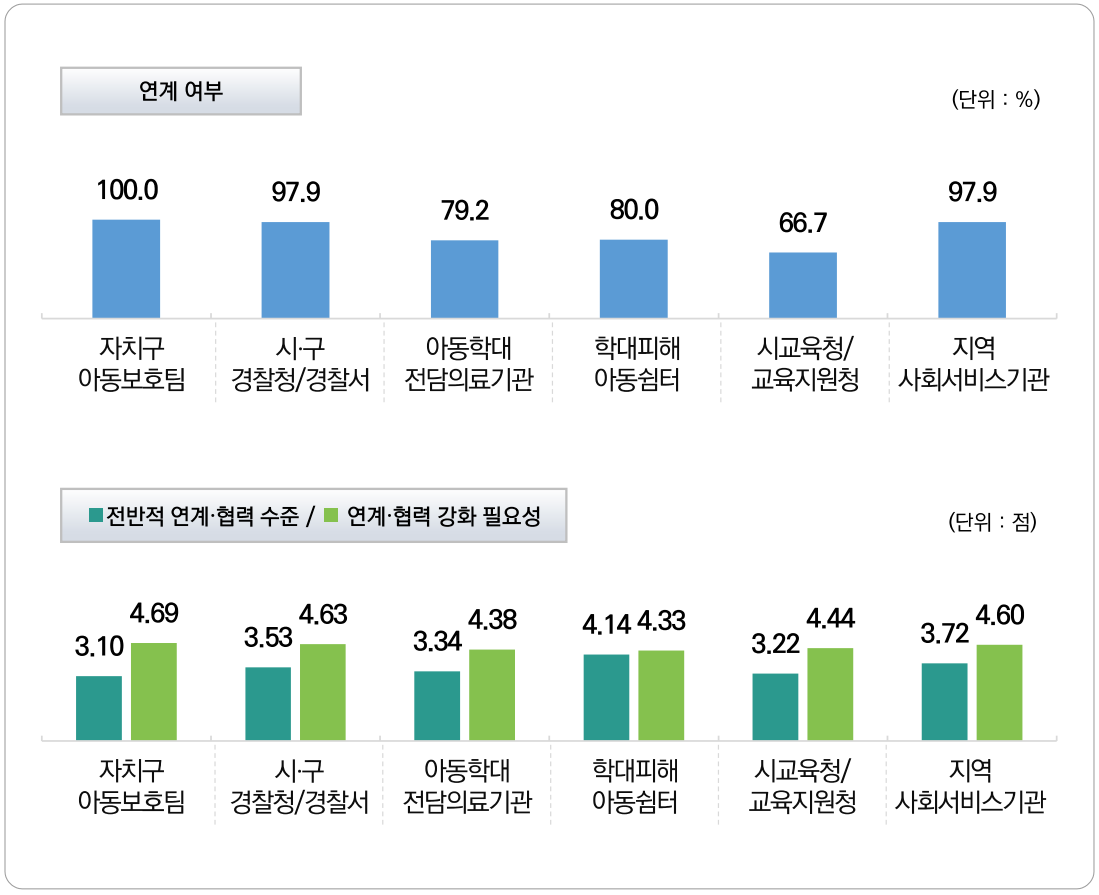
한편, 전반적 연계·협력 수준에 있어 모든 대응체계가 3점 이상으로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대피해아동쉼터'가 4.14점으로 가장 높았고, '지역 사회서비스기관' 3.72점, '경찰청/경찰서' 3.5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계·협력 강화 필요성은 모든 대응체계가 4점 이상으로 향후 연계·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자치구 아동보호팀'이 4.69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경찰청/경찰서' 4.63점, '지역 사회서비스기관' 4.6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아동보호팀'의 경우 전반적인 연계·협력 수준은 다소 낮은 편이나 연계·협력의 필요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 시 애로사항으로는 자치구 아동보호팀에 대해 '적극적 협조 및 사례대응 필요'(18.8%)라고 응답하였으며, 경찰청/경찰서에 대해 '협조 및 정보 공유 필요' 18.8%,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에 대해 '연계 및 활용 정도 낮음' 10.4%,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해 '인계가 어려우나 협력 가능함'과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필요'가 각 4.4%, 시교육청/교육지원청에 대해 '교육청 및 교육기관의 협조 필요' 16.7% 등이 언급되었다.

[그림 3-28]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단위: %/점/5점 평균



Base=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명/ 학대피해아동쉼터 문항 45명

〈표 3-23〉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단위: %/점/5점 평균

표 범주	자치구 아동보호팀		시·구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학대피해 아동쉼터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역 사회서비스 기관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연계여부(%)	100.0	-	97.9	-	79.2	-	80.0	-	66.7	-	97.9	-
전반적 연계·협력 수준	3.10	0.83	3.53	0.78	3.34	0.75	4.14	0.72	3.22	0.79	3.72	0.68
연계·협력 강화 필요성	4.69	0.66	4.63	0.61	4.38	0.73	4.33	0.88	4.44	0.65	4.60	0.61

Base=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명 / 학대피해아동쉼터 문항 45명

〈표 3-24〉 대응체계별 애로사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단위: %

자치구 아동보호팀	
적극적 협조 및 사례대응 필요	18.8
협력기관으로의 존중, 상호업무 이해 필요	16.7
잦은 인력변동으로 인해 업무전문성 낮음	12.5
아동학대 판단 및 사례개입 의견 차이	10.4
담당하지 않는 업무 책임전가	6.3
업무 수행주체 및 업무경계 구분 필요	6.3
조사자료 부족	6.3
담당 주무관의 현장 동행 필요	4.2
기타	2.1
경찰청/경찰서	
협조 및 정보 공유 필요	18.8
적극 대응 필요	8.3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기준 및 의견 차이	4.2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업무이해 제고 필요	4.2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연계 및 활용 정도 낮음	10.4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특별/우선 서비스 연계 및 정보 공유의 어려움	6.3
상호 업무이해 부족	4.2
접근성이 낮음	4.2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소통 어려움	2.1
적극적 협조 필요	2.1
학대피해아동 병원비 지원 필요	2.1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계가 어려우나, 협력 가능함	4.4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필요	4.4
쉼터별 편차가 큼(아동수당 등)	2.2
아동인솔 시 소통 필요	2.2
시교육청/교육지원청	
교육청 및 교육기관의 협조 필요	16.7
기관 안내 및 대상 가정의 협조요청 필요	10.4
아동 모니터링이 어려움	2.1
잦은 담당자 변경으로 업무이해도 부족	2.1
사례관리 협업체계 수립 필요	2.1
역할 맡기기를 부담스러워 함	2.1
지역사회서비스기관	
대상자가 거부 시 개입 불가	8.3
연계부족, 대상자 특성에 따른 연계 필요	6.3
담당자 연결 어려움, 정보 공유 미흡	4.2
기관별 지원서비스 내용 공유 필요	2.1
사례연계 시 우선순위 필요	2.1
지역기관의 개입수준이 낮음	2.1

Base=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명/ 학대피해아동쉼터 문항 45명
주) 무응답 미제시

(5)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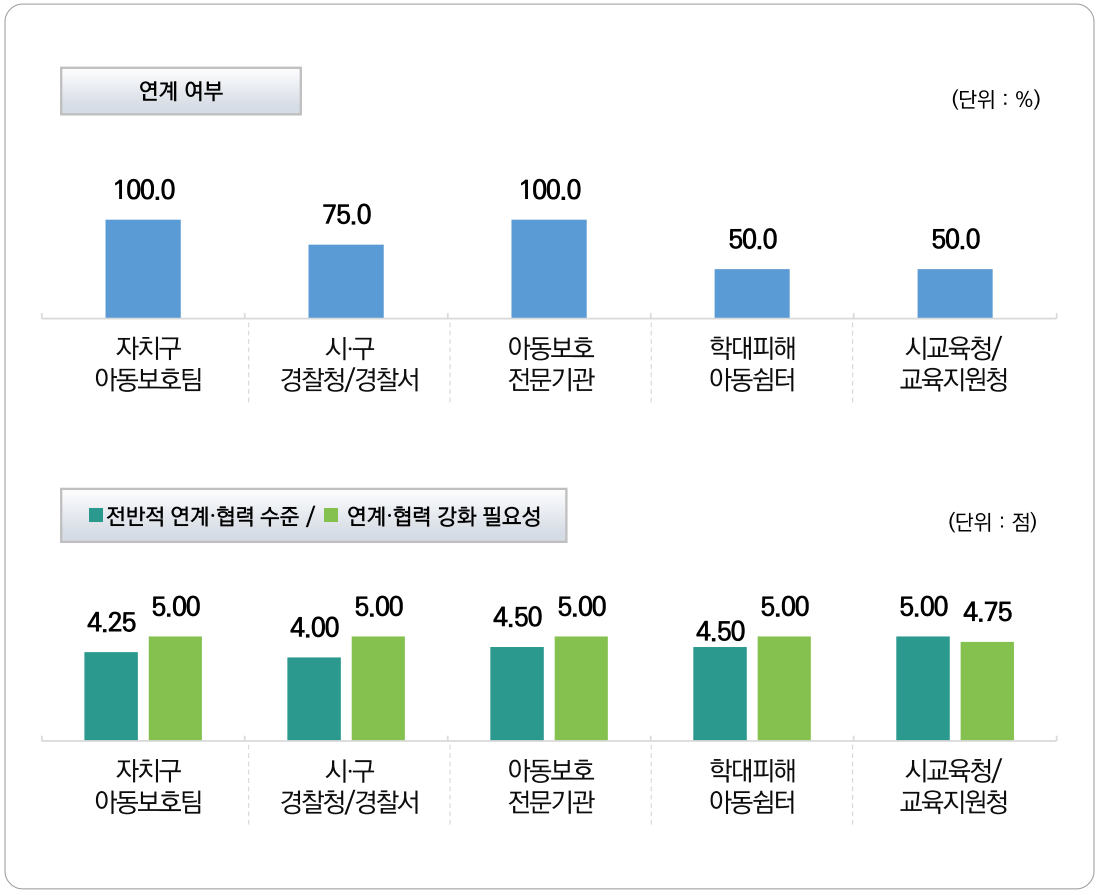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의 대응체계별 연계 여부는 '자치구 아동보호팀'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는 응답자 모두 연계를 하고 있다고 하였고 '경찰청/경찰서'는 75.0%,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시교육청/교육지원청'은 각각 50.0%로 연계하고 있었다.

전반적 연계·협력 수준에 있어 모든 대응체계가 4점 이상으로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교육청/교육지원청'이 5.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가 각 4.5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연계·협력 강화 필요성은 대부분의 대응체계가 5.00점으로 나타나 향후 연계·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한편, 연계 시 애로사항으로는 자치구 아동보호팀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역할 차이 불분명', '전담인력 부족'이 각 25.0%, 경찰청/경찰서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 시 학대 발생지역에서 아동개입 어려움', '경위 파악 시 경찰관이 다수 방문하여 직원 이목이 집중됨' 각 25.0%,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가 예상되는 아동의 경우 사례관리 및 개입 방안 필요' 25.0%로 나타났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는 '학대피해아동의 원활한 입소 필요' 25.0%, 시교육청/교육지원청에 대해 '학대예상아동에 대한 개입 및 관리 시 자치구 아동보호팀과 연계 필요' 25.0% 등이 언급되었다.

[그림 3-29]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단위: %/점/5점 평균



Base=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명

〈표 3-25〉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단위: %/점/5점 평균

표 범주	자치구 아동보호팀		시·구 경찰청/경찰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대피해 아동쉼터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연계여부(%)	100.0	-	75.0	-	100.0	-	50.0	-	50.0	-
전반적 연계·협력 수준	4.25	0.50	4.00	1.00	4.50	0.58	4.50	0.71	5.00	0.00
연계·협력 강화 필요성	5.00	0.00	5.00	0.00	5.00	0.00	5.00	0.00	4.75	0.50

Base=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명
*연계여부(%)는 '있다' 응답만 표시

〈표 3-26〉 대응체계별 애로사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단위: %

자치구 아동보호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역할 차이 불분명	25.0
전담인력 부족	25.0
경찰청/경찰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시, 학대발생지역에서 아동개입 어려움	25.0
경위 파악 시 경찰관이 다수 방문하여 직원 이목이 집중됨	25.0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예상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및 개입 방안 필요	25.0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아동의 원활한 입소 필요	25.0
시교육청/교육지원청	
학대예상 아동에 대해 개입 시 시·구 아동보호팀과 연계 필요	25.0

Base=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명

(6)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의 대응체계별 연계 여부는 '자치구 아동보호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모두 연계하고 있다고 하였고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53.1%, '시교육청/교육지원청' 37.5%로 타 대응체계에 비해 연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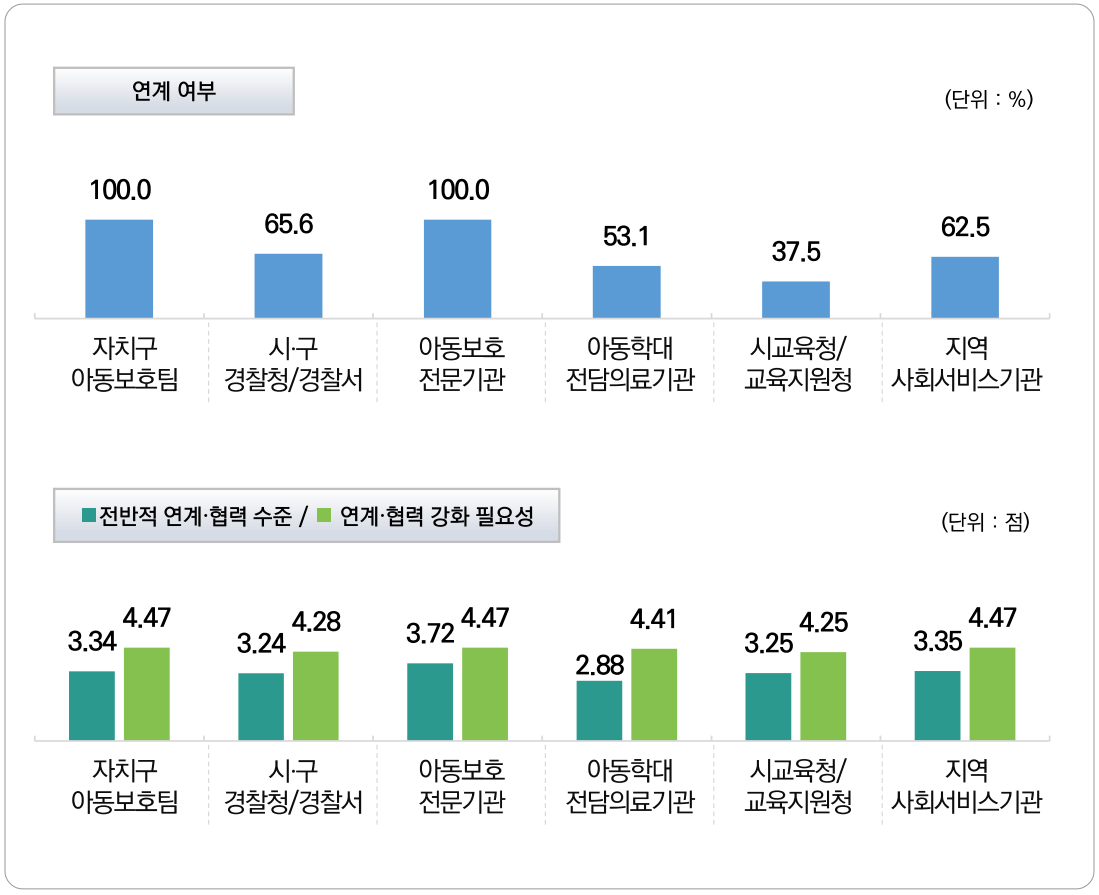
전반적인 연계·협력 수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3.72점으로 가장 높고, 이어서 '지역 사회서비스기관' 3.35점, '자치구 아동보호팀' 3.34점, '시교육청/교육지원청' 3.2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은 2.88점으로 타 대응체계에 비해 연계·협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계·협력 강화 필요성은 모든 대응체계가 4점 이상으로 연계·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자치구 아동보호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사회서비스 기관'이 각 4.4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4.4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응체계별 애로사항으로는 자치구 아동보호팀은 '입소 아동 정보, 진행상황 공유 미흡'이 25.0%, 경찰청/경찰서에 대해서는 '협력관계 강화 필요' 12.5%,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소통 부족, 정보 공유 미흡'이 31.3%였다.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의 경우는 '실질적 연계 미흡' 21.9%, 시교육청/교육지원청은 '적극 협조, 연계 강화 필요'가 15.6%, 지역 사회서비스기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연계 부족'이 18.8%로 나타났다.

[그림 3-30]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단위: %/점/5점 평균



Base=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명

〈표 3-27〉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단위: %/점/5점 평균

표 범주	자치구 아동보호팀		경찰청/경찰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역 사회서비스 기관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비율/ 평균	표준 편차
연계여부(%)	100.0	-	65.6	-	100.0	-	53.1	-	37.5	-	62.5	-
전반적 연계·협력 수준	3.34	0.90	3.24	0.94	3.72	0.81	2.88	0.93	3.25	0.97	3.35	0.81
연계·협력 강화 필요성	4.47	0.80	4.28	0.89	4.47	0.80	4.41	0.87	4.25	0.84	4.47	0.76

Base=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명

〈표 3-28〉 대응체계별 애로사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단위: %

자치구 아동보호팀	
입소 아동 정보, 진행상황 공유 미흡	25.0
소통 및 협력 부족, 연계 미흡	15.6
사설 상황 고려 필요	12.5
보호아동에 대한 이해 제고 필요	12.5
사례결정회의에 쉼터담당자 참여 필요	9.4
담당자 휴가 시 업무대행이 잘 되지 않음	3.1
경찰청/경찰서	
협력관계 강화 필요	12.5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이해 부족	9.4
아동 정보 공유 필요	6.3
학대자에 대한 피해아동 접근금지 강화 필요	3.1
아동보호전문기관	
소통부족, 정보 공유 미흡	31.3
대상자에 대한 안내 및 체계적 진행 미흡	6.3
쉼터 의견 반영 필요	6.3
기관별 쉼터에 대한 인식 상이 (일부의 경우 하위기관으로 인식)	6.3
보다 신속한 조치 필요	6.3
아동에 대한 관심 필요	6.3
대응체계 변경 후 담당 업무 및 권한 불명확	3.1
전문의료기관 치료 대상자 구분 필요	3.1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실질적 연계 미흡	21.9
학대피해아동 우선 진료 필요	12.5
학대피해쉼터에 대한 이해 부족	6.3
진료 관련 서류 발급 제한 문제	3.1
쉼터와의 거리	3.1
시교육청/교육지원청	
적극협조, 연계 강화 필요	15.6
학교와의 연계필요(비밀전학, 정보제공 등)	6.3
근거리 학습지원 신청 간소화 필요	3.1
학대피해아동 및 보호체계, 쉼터 이해 부족	3.1
지역사회서비스기관	
지역사회 연계 부족	18.8
대체인력 지원 확대 필요	6.3
비공개 쉼터 특성상 기관연계 어려움	6.3
종사자 소진예방 협조 필요	3.1
단기보호, 비수급자, 관내아동이 아닌 경우 서비스 수급에 제약 발생	3.1

Base=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명
주) 무응답 미제시

2) 협력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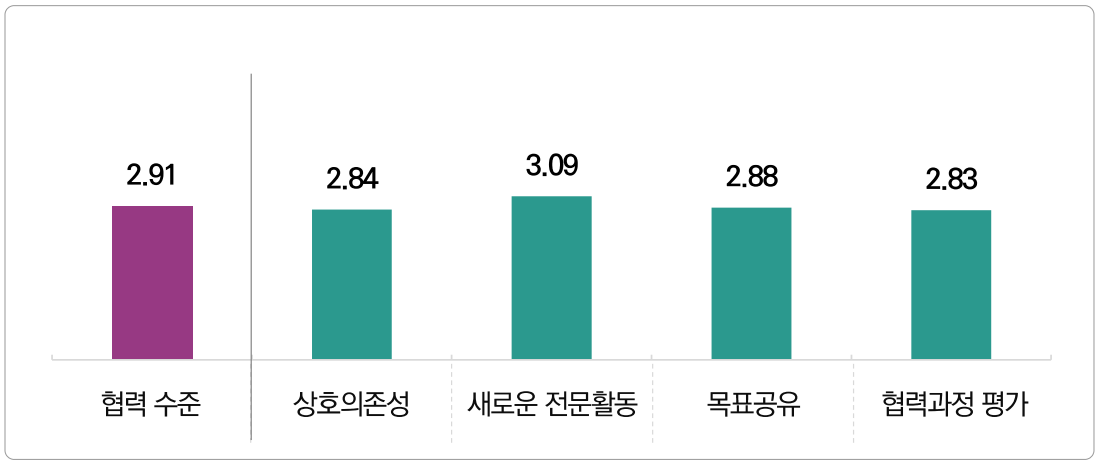
협력 수준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각 전문직 간의 협동 정도와 과정으로, 전문가들 사이에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류미령, 2016). 본 조사에서는 협력 수준의 5가지 하위영역(상호의존성, 새로운 전문활동, 유연성, 목표공유, 협력과정 평가) 중 대응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유연성을 제외한 4가지 하위영역에 대해 살펴보았다(김미주, 2004; 최경일, 노혜련, 2008; Bronstein, 2002). 아동학대 대응체계별 종사자 간 협력 수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협력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응체계 간의 전반적인 협력 수준은 2.91점으로 나타났다. 모든 하위 영역이 2.00점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새로운 전문활동'의 경우 3.09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목표공유' 2.88점, '상호의존성' 2.84점, '협력과정 평가' 2.83점 순이었다.

대응체계별로는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3.16점)에서 종사자 간 협력 수준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자치구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2.81점)과 아동보호전담요원(2.82점)은 전체 대응체계 평균인 2.91점 보다 낮게 협력 수준을 인식하였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상호의존성(2.73점)과 새로운 전문활동(2.94점), 목표공유(2.78점)에서 다른 대응체계보다 낮게 인식하였고 협력과정 평가(2.68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 정도를 보였다.

[그림 3-31] 협력 수준

단위: 점/4점 평균



Base=전체 137명

〈표 3-29〉 협력 수준

단위: 점/4점 평균

구분		사례수	협력 수준		하위 영역							
					상호의존성		새로운 전문활동		목표공유		협력과정 평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7)	2.91	0.32	2.84	0.32	3.09	0.38	2.88	0.44	2.83	0.37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2.81	0.24	2.73	0.27	2.94	0.36	2.78	0.33	2.79	0.28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2.82	0.18	2.82	0.24	2.98	0.30	2.81	0.33	2.68	0.25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2.97	0.48	2.89	0.47	3.10	0.50	3.01	0.55	2.88	0.5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2.93	0.26	2.87	0.22	3.14	0.33	2.90	0.41	2.82	0.32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3.16	0.53	3.20	0.49	3.25	0.55	3.03	0.66	3.16	0.51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2.92	0.36	2.82	0.35	3.12	0.39	2.88	0.48	2.84	0.40

Base=전체 13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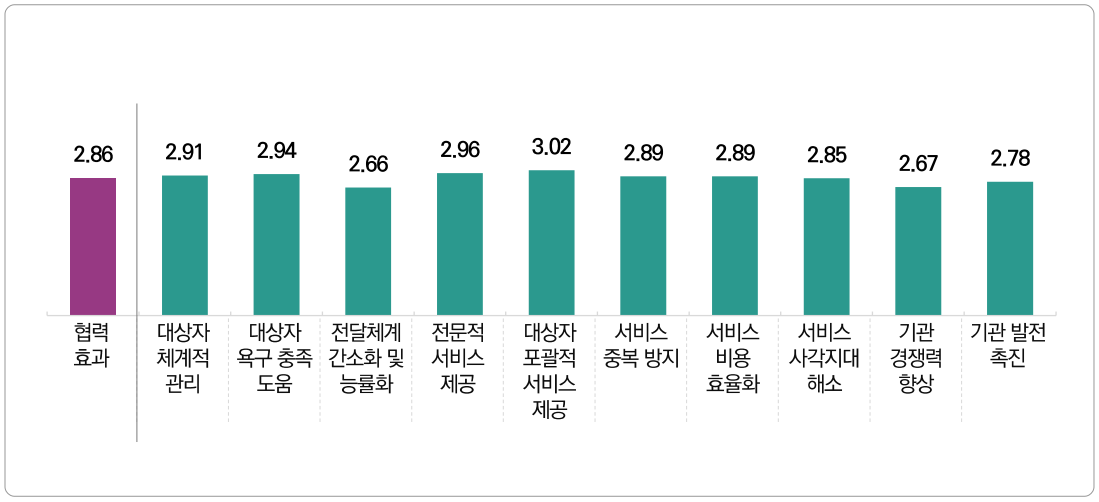
3) 협력 효과

협력 효과는 협력을 통해서 대상자의 서비스 질의 확보와 전문가 만족, 조직의 성과가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류미령, 2016). 협력 효과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협력 효과가 높은 것이다.

조사결과, 종사자들이 인식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 효과는 2.86점으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에서 2.5점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 및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었다'가 3.02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었다' 2.96점,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가 2.94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응체계 종사자들이 협력 효과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는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는 '서비스 비용 효율화에 도움이 되었다'(2.91점)고 하였고 의료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3.50점)고 보고하였다.

[그림 3-32] 협력 효과

단위: 점/4점 평균



Base=전체 137명

〈표 3-30〉 협력 효과(1/2)

단위: 점/4점 평균

구분		사례수	협력 효과		항목별									
					대상자 체계적 관리		대상자 욕구 충족 도움		전달체계 간소화 및 능률화		전문적 서비스제공		대상자 포괄적 서비스제공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7)	2.86	0.44	2.91	0.53	2.94	0.50	2.66	0.69	2.96	0.49	3.02	0.49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2.81	0.44	2.87	0.55	2.78	0.52	2.70	0.63	2.83	0.58	2.83	0.65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2.84	0.32	3.00	0.00	3.00	0.00	2.67	0.49	2.92	0.29	3.00	0.43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18)	2.91	0.54	2.89	0.68	2.83	0.62	2.78	0.73	3.11	0.58	3.11	0.5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2.80	0.45	2.85	0.55	2.96	0.50	2.52	0.77	2.92	0.50	3.00	0.41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3.13	0.70	3.00	0.82	3.00	0.82	3.00	0.82	3.00	0.82	3.25	0.96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2.92	0.40	2.97	0.47	3.06	0.44	2.75	0.62	3.06	0.35	3.13	0.34

Base=전체 137명

〈표 3-31〉 협력 효과(2/2)

단위: 점/4점 평균

구분		사례수	협력 효과		항목별									
					서비스 중복 방지		서비스 비용 효율화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기관 경쟁력 향상		기관 발전 촉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7)	2.86	0.44	2.89	0.55	2.89	0.56	2.85	0.54	2.67	0.68	2.78	0.63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2.81	0.44	2.87	0.46	2.91	0.51	2.78	0.52	2.74	0.54	2.78	0.52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2.84	0.32	2.83	0.58	2.92	0.67	2.83	0.39	2.58	0.67	2.67	0.65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18)	2.91	0.54	3.00	0.69	3.06	0.64	3.00	0.59	2.56	0.92	2.78	0.8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2.80	0.45	2.83	0.56	2.77	0.59	2.79	0.54	2.63	0.70	2.77	0.59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3.13	0.70	3.25	0.50	3.25	0.50	3.50	0.58	3.00	0.82	3.00	0.82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2.92	0.40	2.91	0.53	2.91	0.47	2.81	0.54	2.75	0.57	2.81	0.59

Base=전체 13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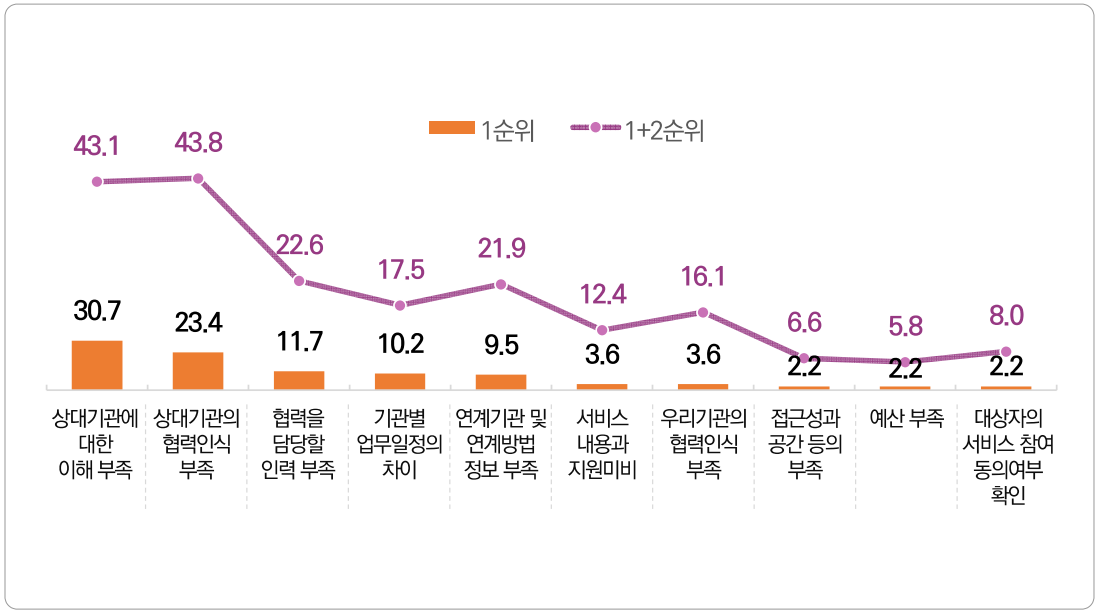
4) 다른 체계와의 연계 및 협력에서의 장애요인

다른 체계(기관)와의 연계 및 협력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1순위를 기준으로 '상대기관에 대한 이해 부족'이 30.7%로 가장 높고, 이어서 '상대기관의 조직 간 협력에 대한 인식 부족'이 23.4%였으며, 그 다음으로 '협력을 담당할 인력 부족'이 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의 경우 다른 체계와는 다르게 '연계기관 및 연계방법 정보 부족'이 50.0%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1+2순위에서는 1순위와 다르게 '상대기관의 조직 간 협력에 대한 인식 부족'이 43.8%로 가장 높고, 이어서 '상대기관에 대한 이해 부족' 43.1%, '협력을 담당할 인력의 부족'이 22.6%, '연계기관 및 연계방법에 대한 정보부족' 21.9% 순으로 답하였다.

[그림 3-33] 다른 체계와의 연계 및 협력 장애요인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기타 미제시

〈표 3-32〉 다른 체계와의 연계 및 협력 장애요인 - 1순위

단위 %

구분		사례수	상대 기관에 대한 이해부족	상대 기관의 협력인식 부족	협력을 담당할 인력부족	기관별 업무일정의 차이	연계 기관 및 연계방법 정보 부족	서비스 내용과 지원미비	우리 기관의 협력인식 부족	접근성과 공간 등의 부족	예산 부족	대상자의 서비스 참여 동의여부 확인
전체		(137)	30.7	23.4	11.7	10.2	9.5	3.6	3.6	2.2	2.2	2.2
대응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43.5	17.4	4.3	4.3	17.4	4.3	0.0	8.7	0.0	0.0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8.3	41.7	25.0	16.7	0.0	8.3	0.0	0.0	0.0	0.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 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27.8	11.1	27.8	16.7	11.1	5.6	0.0	0.0	0.0	0.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37.5	22.9	10.4	6.3	6.3	0.0	8.3	0.0	2.1	4.2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0.0	0.0	25.0	0.0	50.0	0.0	25.0	0.0	0.0	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25.0	31.3	3.1	15.6	6.3	6.3	0.0	3.1	6.3	3.1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기타 미제시

〈표 3-33〉 다른 체계와의 연계 및 협력 장애요인 - 1+2순위

복수응답 / 단위: %

구분		사례수	상대기관의 협력 인식 부족	상대기관에 대한 이해 부족	협력을 담당할 인력 부족	연계 기관 및 연계방법 정보부족	기관별 업무일정의 차이	우리 기관의 협력인식 부족	서비스 내용과 지원미비	대상자의 서비스 참여 동의여부 확인	접근성과 공간 등의 부족	예산 부족
전체		(137)	43.8	43.1	22.6	21.9	17.5	16.1	12.4	8.0	6.6	5.8
대응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39.1	43.5	21.7	21.7	8.7	17.4	26.1	0.0	17.4	0.0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41.7	8.3	41.7	8.3	25.0	16.7	33.3	8.3	0.0	16.7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 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38.9	50.0	38.9	27.8	16.7	5.6	5.6	5.6	5.6	5.6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47.9	56.3	18.8	18.8	10.4	16.7	6.3	14.6	2.1	4.2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25.0	0.0	50.0	75.0	25.0	25.0	0.0	0.0	0.0	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46.9	37.5	9.4	21.9	31.3	18.8	9.4	6.3	9.4	9.4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기타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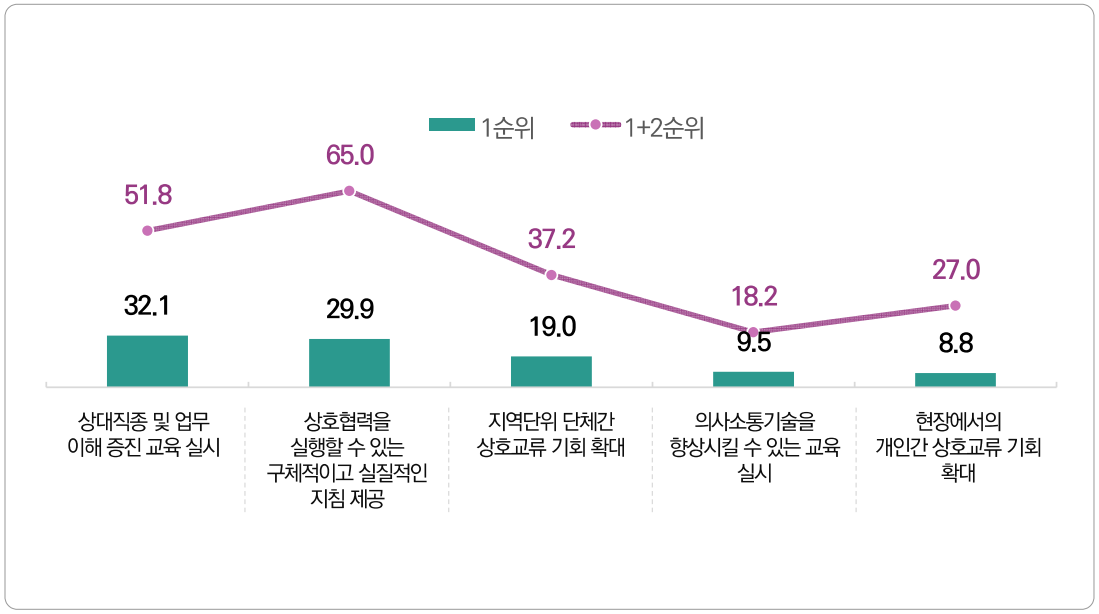
5) 다른 체계와의 원활한 협조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다른 체계(기관)와의 원활한 협조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1순위를 기준으로 '상대직종 및 업무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 실시'가 32.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상호협력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 제공' 29.9%, '지역단위 단체 간 상호교류 기회의 확대'가 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1+2순위에서는 1순위와 다르게 '상호협력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 제공'이 65.0%로 가장 높고, '상대직종 및 업무이해 증진 교육 실시' 51.8%, '지역단위 단체 간 상호교류 기회 확대' 3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34] 원활한 협조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기타 미제시

〈표 3-34〉 원활한 협조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 1순위

단위: %

구분		사례수	상대직종 및 업무 이해 증진 교육 실시	상호협력을 위한 구체적, 실질적인 지침 제공	지역단위 단체간 상호 교류 기회 확대	의사소통 기술 향상시키는 교육 실시	현장에서의 개인간 상호 교류 기회 확대
전체		(137)	32.1	29.9	19.0	9.5	8.8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21.7	47.8	17.4	13.0	0.0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16.7	50.0	33.3	0.0	0.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33.3	38.9	5.6	5.6	16.7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35.4	18.8	25.0	8.3	10.4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50.0	50.0	0.0	0.0	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37.5	18.8	15.6	15.6	12.5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기타 미제시

〈표 3-35〉 원활한 협조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 1+2순위

복수응답 / 단위: %

구분		사례수	상호협력을 위한 구체적, 실질적인 지침 제공	상대직종 및 업무이해 증진교육 실시	지역단위 단체간 상호교류 기회확대	현장에서의 개인간 상호교류 기회확대	의사소통 기술 향상시키는 교육 실시
전체		(137)	65.0	51.8	37.2	27.0	18.2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65.2	43.5	47.8	21.7	21.7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83.3	58.3	50.0	8.3	0.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72.2	44.4	27.8	38.9	16.7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52.1	54.2	39.6	35.4	16.7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100.0	75.0	0.0	25.0	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68.8	53.1	31.3	18.8	28.1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기타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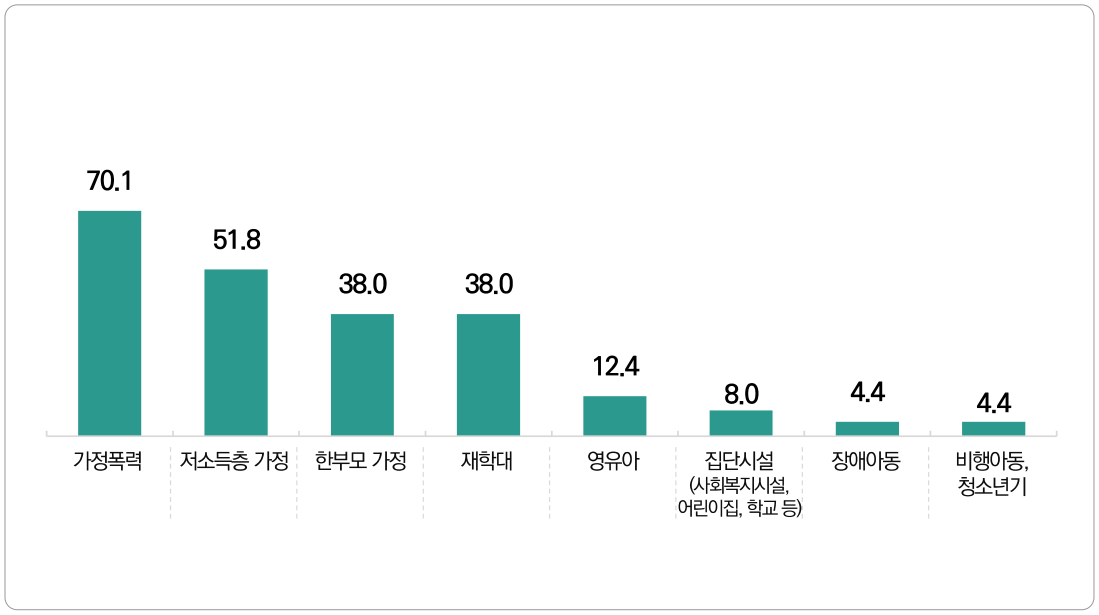
4.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1)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특성

종사자가 인식한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특성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과 관련된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는 편'이 70.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저소득층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는 편' 51.8%, '한부모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는 편', '재학대가 많은 편'이 각 38.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5]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특성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무응답 미제시

〈표 3-36〉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특성

단위: %

구분		사례수	가정폭력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	재학대	영유아	집단시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학교 등)	장애아동	비행아동 청소년기
전체		(137)	70.1	51.8	38.0	38.0	12.4	8.0	4.4	4.4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82.6	21.7	17.4	39.1	13.0	4.3	0.0	4.3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75.0	66.7	16.7	58.3	0.0	8.3	8.3	0.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55.6	88.9	44.4	22.2	16.7	16.7	5.6	0.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89.6	41.7	31.3	41.7	4.2	10.4	4.2	10.4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0.0	50.0	25.0	0.0	75.0	0.0	25.0	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46.9	62.5	68.8	37.5	18.8	3.1	3.1	0.0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무응답 미제시

2)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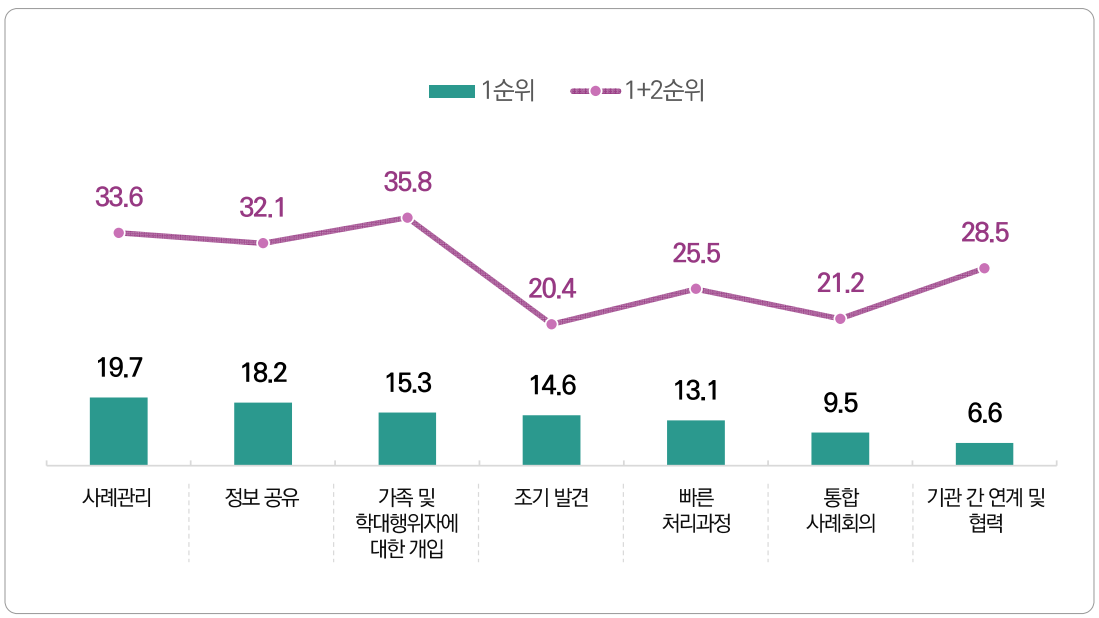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의 장점을 조사한 결과, 1순위에서 '사례관리'라고 응답한 비율이 19.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정보 공유' 18.2%,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 15.3%, 그리고 '조기발견'이 14.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1+2순위에서는 1순위와 다르게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사례관리' 33.6%, '정보 공유' 32.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응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순위에 '정보 공유'(34.8%)를, 1+2순위에는 '기관 간 연계 및 협력'(52.2%)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1순위와 1+2순위 모두 '빠른 처리과정'과 '통합사례회의'(25%/41.7%)라고 응답하였다. 학대예방경찰관 및 수사팀은 1순위와 1+2순위 모두 '정보 공유'(38.9%/55.6%)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사례관리'(37.5%/52.1%)를,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는 1순위 '가족 및 학대행위자 개입'(31.3%), 1+2순위 '조기발견'(46.9%)이라고 하였다.

[그림 3-36] 아동학대 대응체계 장점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무응답 미제시

〈표 3-37〉 아동학대 대응체계 장점 - 1순위

단위: %

구분		사례수	사례관리	정보 공유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	조기 발견	빠른 처리과정	통합사례 회의	기관 간 연계 및 협력
전체		(137)	19.7	18.2	15.3	14.6	13.1	9.5	6.6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4.3	34.8	4.3	13.0	21.7	4.3	13.0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0.0	8.3	16.7	8.3	25.0	25.0	8.3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11.1	38.9	11.1	11.1	11.1	11.1	5.6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37.5	14.6	12.5	10.4	6.3	14.6	2.1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25.0	0.0	0.0	0.0	50.0	0.0	25.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15.6	6.3	31.3	28.1	9.4	0.0	6.3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무응답 미제시

〈표 3-38〉 아동학대 대응체계 장점 - 1+2순위

복수응답 / 단위: %

구분		사례수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	사례관리	정보 공유	기관 간 연계 및 협력	빠른 처리과정	통합사례 회의	조기 발견
전체		(137)	35.8	33.6	32.1	28.5	25.5	21.2	20.4
대응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21.7	8.7	47.8	52.2	34.8	17.4	13.0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33.3	16.7	16.7	25.0	41.7	41.7	16.7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27.8	38.9	55.6	33.3	16.7	16.7	11.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47.9	52.1	31.3	16.7	8.3	29.2	12.5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0.0	50.0	0.0	50.0	50.0	50.0	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37.5	25.0	18.8	25.0	40.6	3.1	46.9

Base=전체 137명
주) 1순위 기준 1% 미만, 무응답 미제시

3)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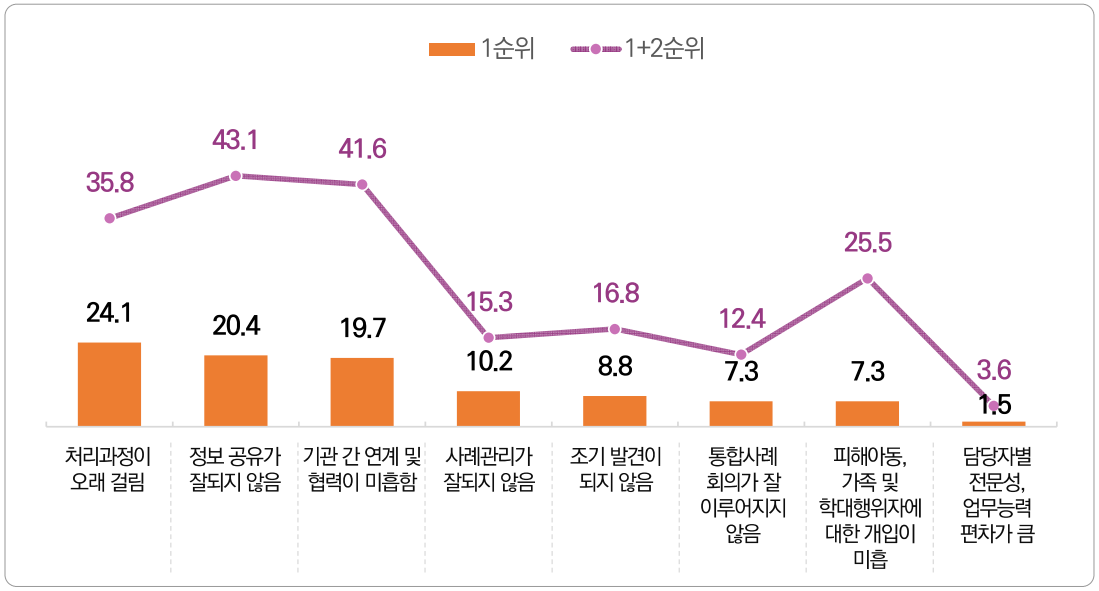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의 단점을 조사한 결과, 1순위에서 '처리과정이 오래 걸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정보 공유가 잘되지 않음' 20.4%,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이 미흡함' 19.7% 등의 순으로 높게 보고되었다. '정보 공유'(18.2%)의 경우 대전광역시 대응체계의 장점으로 두 번째 높은 순위였다.

한편, 1+2순위에서는 1순위와 다르게 '정보 공유가 잘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기관 간 연계·협력이 미흡함' 41.6%, '처리과정이 오래 걸림' 35.8%, 그리고 '피해아동,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 미흡'이 25.5% 등의 순이었다.

대응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순위와 1+2순위 모두 '사례관리가 잘되지 않음'(43.5%/56.5%)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기관 간 연계·협력이 미흡함'(41.7%/58.3%),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는 '정보 공유가 잘되지 않음'(40.6%/65.6%)이라고 응답하였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경우는 단점 1순위는 '정보 공유와 사례관리가 안됨'(각 25.0%)이었고 학대예방경찰관 등은 '통합사례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27.8%)이였고 1+2순위는 전담요원은 '정보 공유가 되지 않음'(50.0%), 학대예방경찰관 등은 '기관 간 연계·협력이 미흡'(38.9%)로 나타났다.

[그림 3-37] 아동학대 대응체계 단점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무응답 미제시

〈표 3-39〉 아동학대 대응체계 단점 - 1순위

단위: %

구분		사례수	처리과정이 오래 걸림	정보 공유가 잘 되지 않음	기관간연계 및 협력이 미흡함	사례관리가 잘되지 않음	조기발견이 되지 않음	통합사례 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피해아동, 가족 및 학대행위자 개입 미흡	담당자별 전문성, 업무능력 편차가 큼
전체		(137)	24.1	20.4	19.7	10.2	8.8	7.3	7.3	1.5
대응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13.0	17.4	4.3	43.5	8.7	0.0	8.7	4.3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16.7	25.0	8.3	25.0	16.7	8.3	0.0	0.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11.1	11.1	16.7	0.0	16.7	27.8	11.1	0.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41.7	10.4	29.2	2.1	6.3	4.2	6.3	0.0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0.0	25.0	25.0	0.0	0.0	25.0	25.0	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18.8	40.6	21.9	0.0	6.3	3.1	6.3	3.1

Base=전체 137명
주) 무응답 미제시

〈표 3-40〉 아동학대 대응체계 단점 - 1+2순위

복수응답 / 단위: %

구분		사례수	정보 공유가 잘 되지 않음	기관간연계 및 협력이 미흡함	처리과정이 오래 걸림	피해아동, 가족 및 학대행위자 개입 미흡	조기발견이 되지 않음	사례관리가 잘되지 않음	통합사례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담당자별 전문성, 업무능력 편차가 큼
전체		(137)	43.1	41.6	35.8	25.5	16.8	15.3	12.4	3.6
대응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21.7	17.4	17.4	43.5	17.4	56.5	4.3	13.0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50.0	41.7	16.7	33.3	16.7	33.3	8.3	0.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 수사팀	(18)	22.2	38.9	33.3	33.3	22.2	0.0	38.9	0.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43.8	58.3	56.3	10.4	16.7	4.2	4.2	2.1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50.0	50.0	0.0	25.0	25.0	0.0	25.0	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65.6	34.4	31.3	28.1	12.5	6.3	15.6	3.1

Base=전체 137명
주) 기타, 무응답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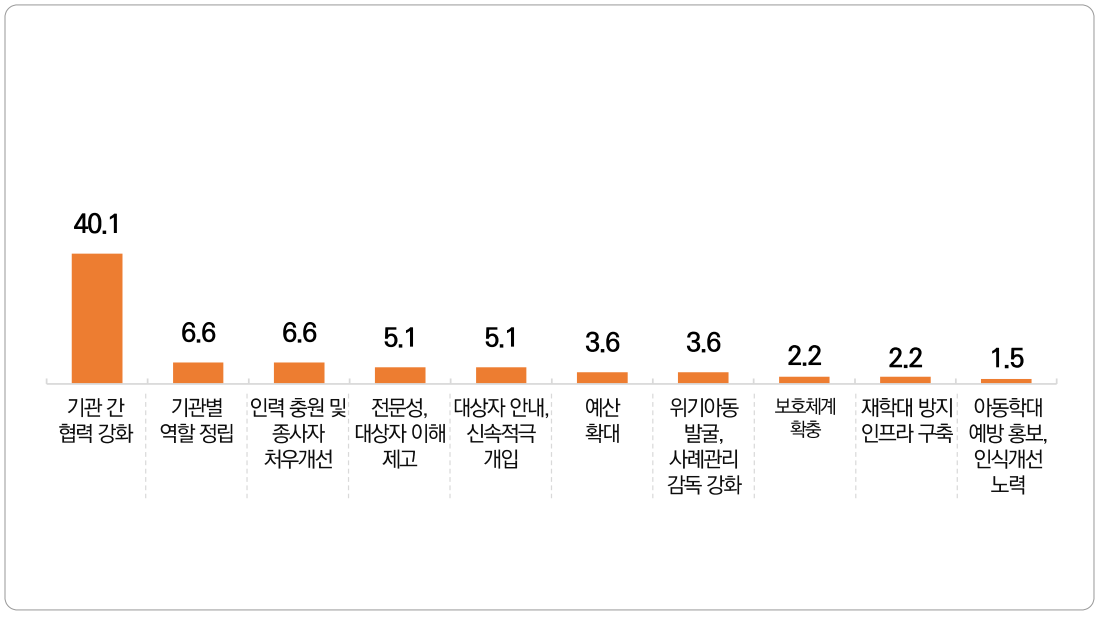
4)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보완해야 할 점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가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주관식으로 조사한 결과, '기관 간 협력 강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40.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기관별 역할 정립'과 '인력 충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각 6.6%, '전문성, 대상자 이해 제고'와 '대상자 안내, 신속 · 적극 개입' 각 5.1% 등의 순으로 언급되었다.

대응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기관 간 협력 강화'(30.4%)를,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기관 간 협력 강화'와 '위기아동 발굴 및 사례관리 감독 강화', '보호체계 확충'(각 16.7%)을 보완해야 한다고 하였다. 학대예방경찰관과 수사팀(22.2%),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43.8%), 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75.0%), 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56.3%) 모두 '기관 간 협력 강화'를 대전광역시 대응체계가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3-38] 보완해야 할 점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기타, 무응답 미제시

〈표 3-41〉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보완해야 할 점

단위 %

구분		사례수	기관 간 협력강화	기관별 역할정립	인력충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전문성, 대상자 이해제고	대상자 안내, 신속·적극 개입	예산 확대	위기아동 발굴, 사례관리 감독강화	보호체계 확충	재학대 방지 인프라 구축	아동학대 예방홍보 인식개선 노력
전체		(137)	40.1	6.6	6.6	5.1	5.1	3.6	3.6	2.2	2.2	1.5
대응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30.4	13.0	0.0	13.0	8.7	4.3	8.7	0.0	0.0	4.3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16.7	0.0	0.0	8.3	0.0	0.0	16.7	16.7	0.0	8.3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22.2	11.1	5.6	0.0	5.6	5.6	0.0	5.6	0.0	0.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43.8	6.3	14.6	2.1	6.3	4.2	0.0	0.0	0.0	0.0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75.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56.3	3.1	3.1	6.3	3.1	3.1	3.1	0.0	9.4	0.0

Base=전체 137명
주) 기타, 무응답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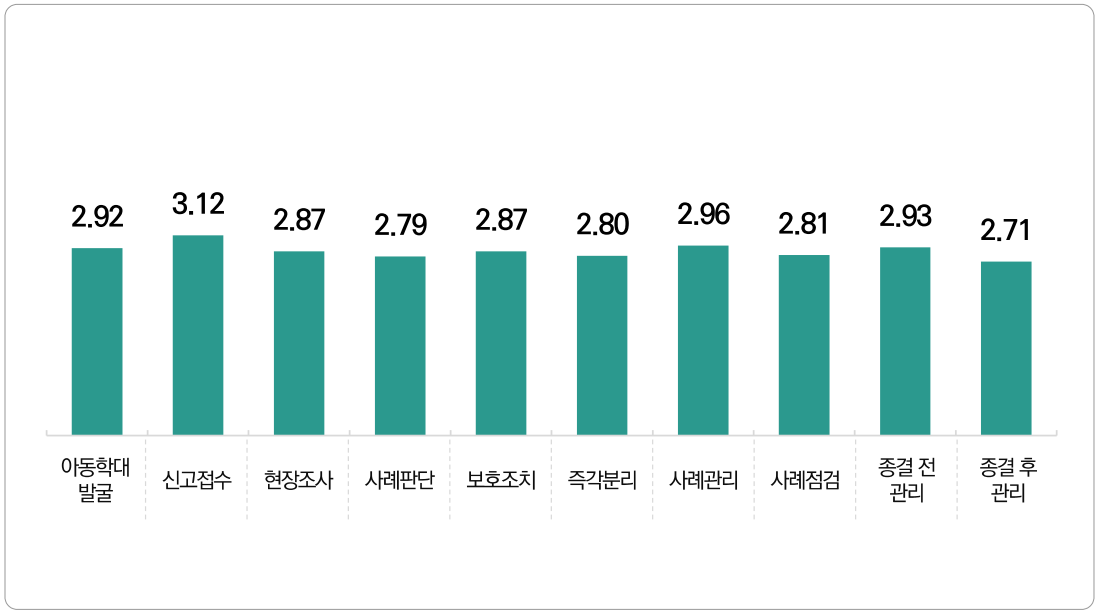
5)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 업무진행 수준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 업무진행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든 업무에서 보통 수준인 2.5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중 '신고접수'가 3.12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사례관리' 2.96점, '종결 전 관리' 2.93점, '아동학대 발굴' 2.92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종결 후 관리'가 2.71점으로 가장 낮았고, 이어서 '사례판단' 2.79점, '즉각분리' 2.80점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응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신고접수'(3.13점/3.09점)가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종결 후 관리'(2.61점/2.66점)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경우는 '현장조사'(3.25점)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아동학대예방경찰관과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신고접수'(3.33점)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사례판단'(2.83점)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경우는 '사례관리'(3.19점)가 잘 수행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즉각분리'(2.48점)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림 3-39]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 업무진행 수준

단위: 점/4점 평균



Base=전체 137명

〈표 3-42〉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 업무진행(1/2)

단위: 점/4점 평균

구분		사례수	아동학대 발굴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판단		보호조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7)	2.92	0.56	3.12	0.52	2.87	0.69	2.79	0.64	2.87	0.65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2.83	0.58	3.13	0.55	3.04	0.71	3.09	0.60	3.04	0.56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2.92	0.51	3.08	0.29	3.25	0.45	3.17	0.39	3.17	0.58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3.00	0.69	3.33	0.77	3.06	0.80	2.83	0.71	3.22	0.55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2.96	0.54	3.06	0.52	2.50	0.68	2.52	0.62	2.54	0.62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3.25	0.50	3.25	0.50	3.25	0.50	3.25	0.50	3.25	0.5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2.84	0.51	3.09	0.39	3.00	0.51	2.75	0.57	2.88	0.66

Base=전체 137명

〈표 3-43〉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 업무진행(2/2)

단위: 점/4점 평균

구분		사례수	즉각분리		사례관리		사례점검		종결 전 관리		종결 후 관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7)	2.80	0.67	2.96	0.62	2.81	0.62	2.93	0.60	2.71	0.68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3.00	0.52	2.70	0.76	2.65	0.65	2.74	0.62	2.61	0.58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3.00	0.43	2.58	0.79	2.75	0.75	2.58	0.79	2.58	0.79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3.17	0.79	3.11	0.58	2.89	0.76	3.11	0.58	2.94	0.73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2.48	0.62	3.19	0.49	2.90	0.59	3.13	0.49	2.69	0.75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3.00	0.82	3.25	0.50	3.25	0.50	3.25	0.50	3.25	0.5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2.81	0.64	2.81	0.47	2.72	0.52	2.75	0.57	2.66	0.55

Base=전체 137명

6)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 업무 진행이 적절하지 못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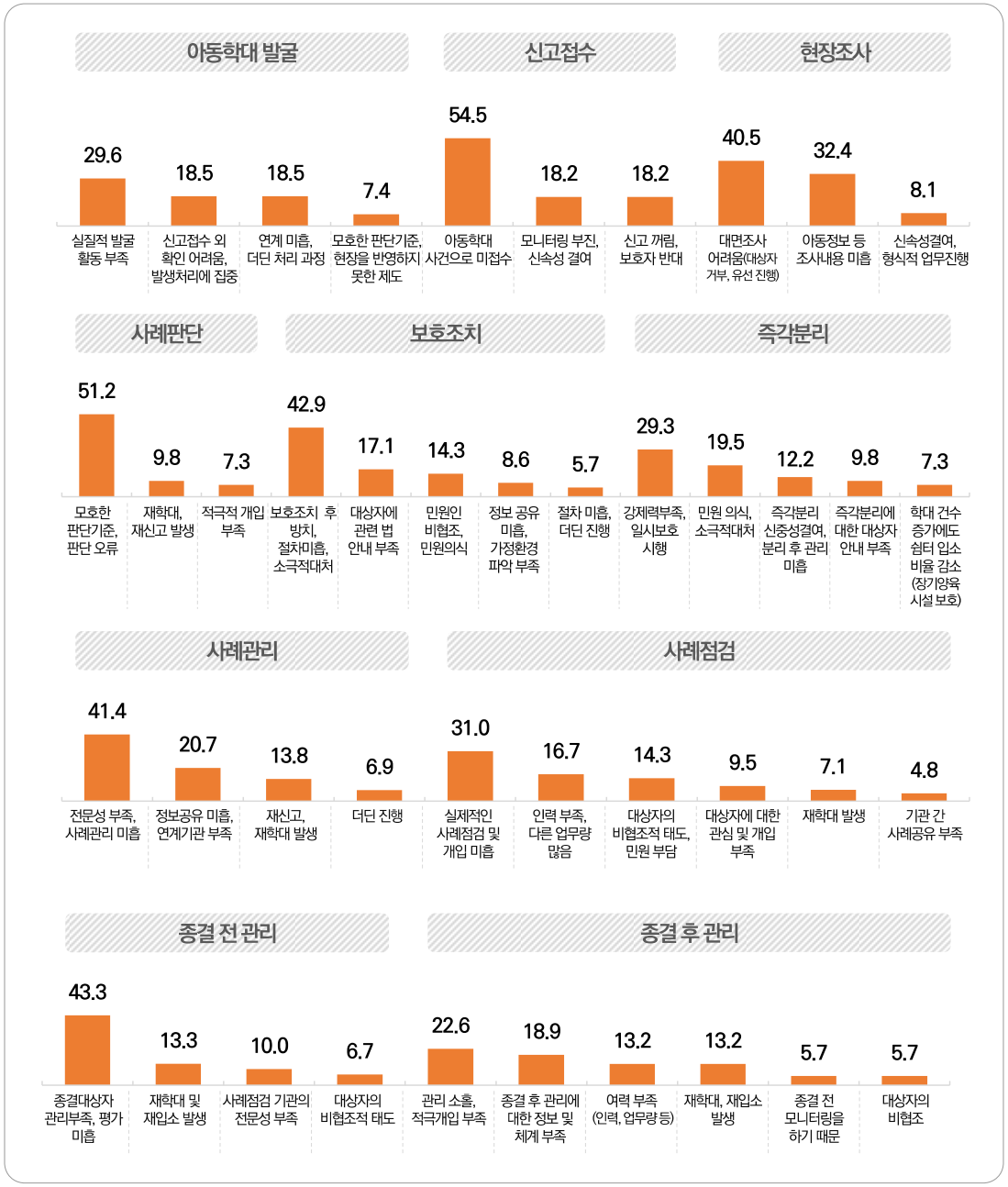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 업무진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업무 진행이 적절하지 못한 이유'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아동학대 발굴 업무에서는 '실질적인 발굴활동 부족'(29.6%)이라고 하였으며, 신고접수 업무에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미접수'(54.5%), 현장조사 업무에서 '대면조사 어려움(대상자 거부, 유선 진행)'(40.5%)과 '아동정보 등 조사내용 미흡'(32.4%)이라고 응답하였다.

사례판단 업무의 경우 '모호한 판단기준, 판단 오류'(51.2%), 보호조치 업무에서는 '보호조치 후 방치, 절차미흡, 소극적 대처'(42.9%)를, 즉각분리 업무에서 '강제력 부족, 일시보호 시행'(29.3%), '민원 의식, 소극적 대처'(19.5%) 등이 언급되었다. 사례관리 업무에서는 '전문성 부족, 사례관리 미흡'(41.4%), 사례점검 업무에서 '실제적인 사례점검 및 개입 미흡'(31.0%)이라고 하였다.

종결 전 관리 업무에서는 '종결대상자 관리 부족, 평가 미흡'(43.3%)으로 답하였으며, 종결 후 관리 업무에서 '관리 소홀, 적극적 개입 부족'(22.6%), '종결 후 관리에 대한 정보 및 체계 부족'(18.9%)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5개 업무(아동학대 발굴, 신고접수, 현장조사, 보호조치, 사례관리)에서 '신속성 결여'와 '더딘 진행'이 언급되어 응답자들은 신속한 업무 진행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40] 업무 진행이 적절하지 못한 이유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문13에서 각 업무진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적절하지 못한 이유에 응답함
기타, 무응답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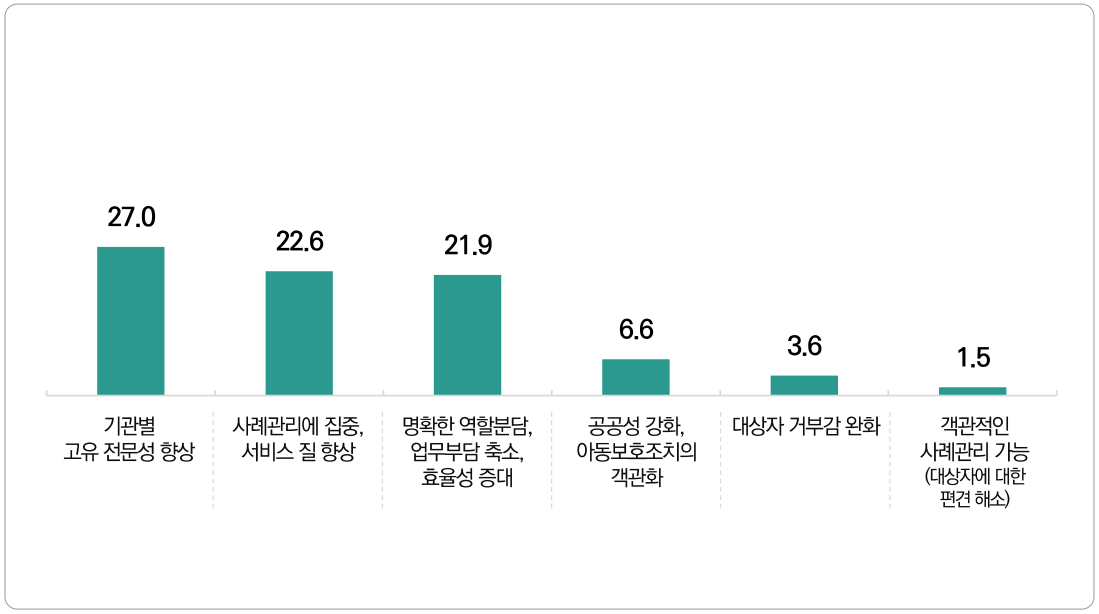
7)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업무분리 시 장점

아동학대 조사업무와 사례관리업무가 분리되었을 때의 장점을 조사한 결과, '기관별 고유 전문성 향상'이라고 언급한 비율이 27.0%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사례관리에 집중, 서비스 질 향상' 22.6%, '명확한 역할분담, 업무부담 축소, 효율성 증대' 21.9% 등의 순으로 언급되었다.

대응체계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기관별 고유 전문성 향상'(26.1%)을 가장 큰 장점으로 보았고 그 다음으로는 사례관리 집중, 서비스 질 향상과 명확한 역할분담·업무부담 축소, 효율성 증대(각 17.4%)로 보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는 '사례관리 집중, 서비스 질 향상'(31.3%)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였고 다음으로 명확한 역할분담·업무부담 축소, 효율성 증대(20.8%)라고 답하였다.

[그림 3-41]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업무분리 시 장점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무응답 미제시

〈표 3-44〉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업무분리 시 장점

단위: %

구분		사례수	기관별 고유 전문성 향상	사례관리집중, 서비스질 향상	명확한 역할분담, 업무부담 축소, 효율성 증대	공공성 강화, 아동보호조치의 객관화	대상자 거부감 완화	객관적인 사례관리 가능 (대상자에 대한 편견 해소)
전체		(137)	27.0	22.6	21.9	6.6	3.6	1.5
대응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26.1	17.4	17.4	13.0	0.0	0.0
	자치구아동보호전담요원	(12)	50.0	8.3	41.7	0.0	0.0	0.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33.3	5.6	16.7	5.6	0.0	5.6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14.6	31.3	20.8	8.3	10.4	0.0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50.0	50.0	0.0	0.0	0.0	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31.3	25.0	25.0	3.1	0.0	3.1

Base=전체 137명
주) 무응답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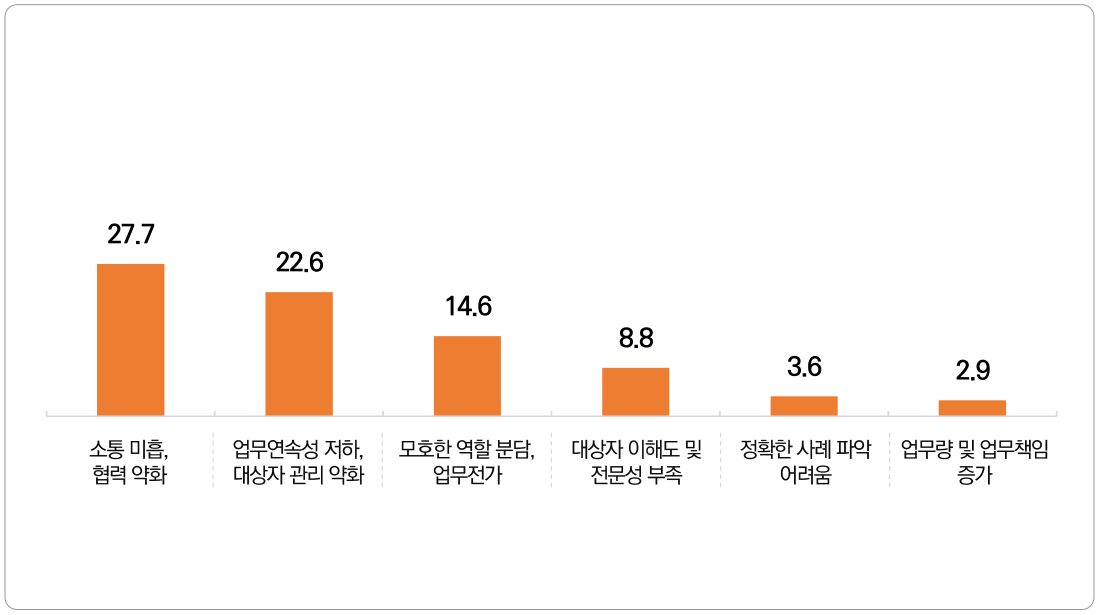
8)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업무분리 시 단점

아동학대 조사업무와 사례관리업무가 분리되었을 때의 단점을 조사한 결과, '소통 미흡, 협력 약화'라고 언급한 비율이 27.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업무연속성 저하, 대상자 관리 약화' 22.6%, '모호한 역할분담, 업무전가' 14.6% 등의 순으로 언급되었다.

대응체계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소통 미흡, 협력 약화'(30.4%)를 업무분리 시 가장 큰 단점으로 보았고 다음으로, '업무연속성 저하 및 대상자 관리 약화'와 '모호한 역할 분담, 업무 전가'가 각 17.4%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소통 미흡, 협력 약화'와 '업무연속성 저하 및 대상자 관리 약화'(각 22.9%)를 가장 큰 단점으로 보았고 다음으로는 '모호한 역할 분담, 업무전가'(20.8%) 순이었다.

[그림 3-42]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업무분리 시 단점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기타, 무응답 미제시

〈표 3-45〉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업무분리 시 단점

단위: %

구분		사례수	소통 미흡, 협력 약화	업무연속성 저하, 대상자 관리 약화	모호한 역할분담, 업무전가	대상자 이해도 및 전문성 부족	정확한 사례 파악 어려움	업무량 및 업무책임 증가
전체		(137)	27.7	22.6	14.6	8.8	3.6	2.9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30.4	17.4	17.4	13.0	0.0	8.7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25.0	25.0	8.3	16.7	0.0	8.3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5.6	33.3	5.6	5.6	5.6	0.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22.9	22.9	20.8	4.2	6.3	2.1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75.0	25.0	25.0	0.0	0.0	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40.6	18.8	9.4	12.5	3.1	0.0

Base=전체 137명
주) 기타, 무응답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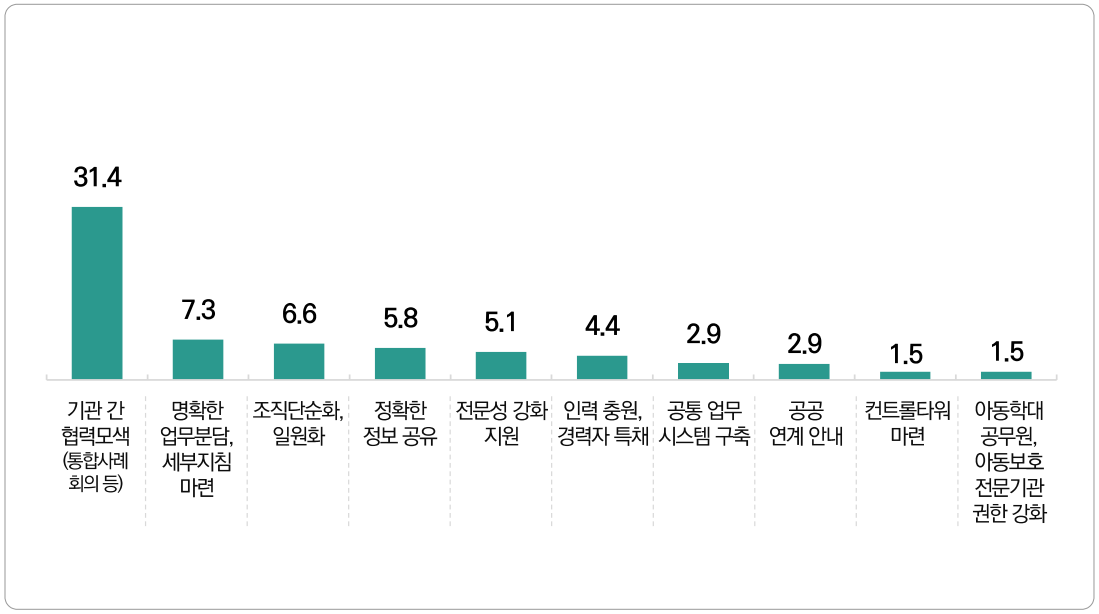
9)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업무분리 시 개선방안

아동학대 조사업무와 사례관리업무가 분리되었을 때의 개선방안을 조사한 결과, '기관 간 협력모색(통합사례 회의 등)'이라고 언급한 비율이 31.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명확한 업무분담, 세부지침 마련' 7.3%, '조직단순화, 일원화' 6.6%, '정확한 정보 공유' 5.8% 등의 순으로 언급되었다.

대응체계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기관 간 협력모색'(30.4%), '조직단순화, 일원화'(17.4%), '명확한 업무분담, 세부지침 마련'(13.0%) 순이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기관 간 협력모색'(25.0%)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정확한 정보 공유'(10.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43]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업무분리 시 개선방안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기타, 무응답 미제시

〈표 3-46〉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 업무분리 시 개선방안

단위: %

구분		사례수	기관 간 협력모색	명확한 업무분담, 세부지침 마련	조직 단순화, 일원화	정확한 정보 공유	전문성 강화지원	인력충원, 경력자 특채	공통업무 시스템 구축	공공 연계 안내	컨트롤 타워 마련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권한 강화
전체		(137)	31.4	7.3	6.6	5.8	5.1	4.4	2.9	2.9	1.5	1.5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30.4	13.0	17.4	4.3	8.7	0.0	0.0	0.0	0.0	4.3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33.3	16.7	8.3	0.0	8.3	0.0	0.0	8.3	0.0	0.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27.8	5.6	0.0	0.0	0.0	11.1	0.0	0.0	0.0	5.6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25.0	2.1	4.2	10.4	6.3	6.3	6.3	6.3	2.1	0.0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75.0	0.0	0.0	0.0	0.0	0.0	25.0	0.0	0.0	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37.5	9.4	6.3	6.3	3.1	3.1	0.0	0.0	3.1	0.0

Base=전체 137명
주) 기타, 무응답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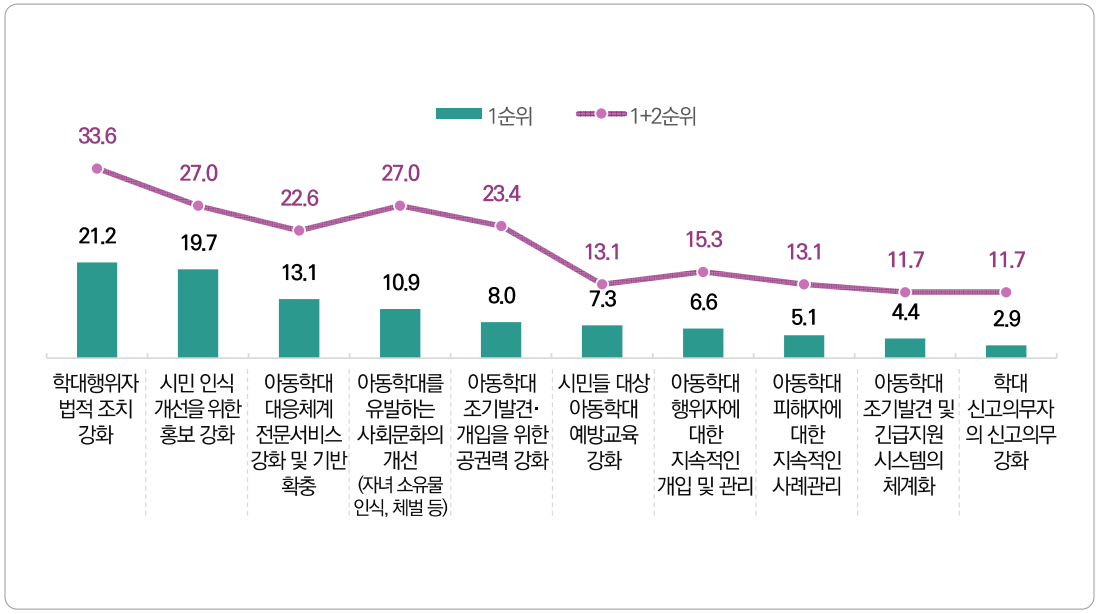
10)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아동학대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조사한 결과, 1순위와 1+2순위 모두에서 '학대행위자 법적 조치 강화'가 각 21.2%,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1순위에서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19.7%,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문서비스 강화 및 기반 확충' 13.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1+2순위에서는 '학대행위자 법적 조치 강화'에 이어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와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사회문화의 개선(자녀 소유물 인식, 체벌 등)'이 각 27.0%, '아동학대 조기발견 · 개입을 위한 공권력 강화' 23.4%,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문서비스 강화 및 기반 확충' 22.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44]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단위 : %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무응답 미제시

〈표 3-47〉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 1순위

단위 %

구분		사례수	학대 행위자 법적 조치 강화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문 서비스 강화 및 기반 확충	아동 학대를 유발하는 사회 문화의 개선(자녀 소유물 인식, 체벌 등)	아동학대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공권력 강화	시민들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 및 관리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긴급지원 시스템의 체계화	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강화
전체		(137)	21.2	19.7	13.1	10.9	8.0	7.3	6.6	5.1	4.4	2.9
대응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8.7	21.7	17.4	8.7	13.0	8.7	4.3	8.7	4.3	0.0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25.0	33.3	16.7	0.0	8.3	0.0	8.3	8.3	0.0	0.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16.7	22.2	5.6	38.9	0.0	5.6	5.6	0.0	5.6	0.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27.1	14.6	14.6	8.3	10.4	6.3	8.3	0.0	4.2	6.3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25.0	25.0	25.0	0.0	0.0	25.0	0.0	0.0	0.0	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21.9	18.8	9.4	6.3	6.3	9.4	6.3	12.5	6.3	3.1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기타 미제시

〈표 3-48〉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 1+2순위

복수응답 / 단위 %

구분		사례수	학대행위자 법적 조치 강화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사회문화의 개선 (자녀 소유물 인식, 체벌 등)	아동학대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공권력 강화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문 서비스 강화 및 기반 확충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 및 관리	시민들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긴급지원 시스템의 체계화	학대신고 의무자의 신고의무 강화
전체		(137)	33.6	27.0	27.0	23.4	22.6	15.3	13.1	13.1	11.7	11.7
대응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17.4	30.4	26.1	39.1	30.4	13.0	8.7	13.0	8.7	8.7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50.0	33.3	25.0	16.7	16.7	8.3	0.0	16.7	16.7	8.3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22.2	33.3	50.0	27.8	11.1	16.7	11.1	11.1	5.6	11.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41.7	27.1	27.1	22.9	25.0	10.4	20.8	0.0	12.5	12.5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50.0	25.0	25.0	25.0	25.0	0.0	25.0	0.0	0.0	25.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31.3	18.8	15.6	12.5	21.9	28.1	9.4	34.4	15.6	12.5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무응답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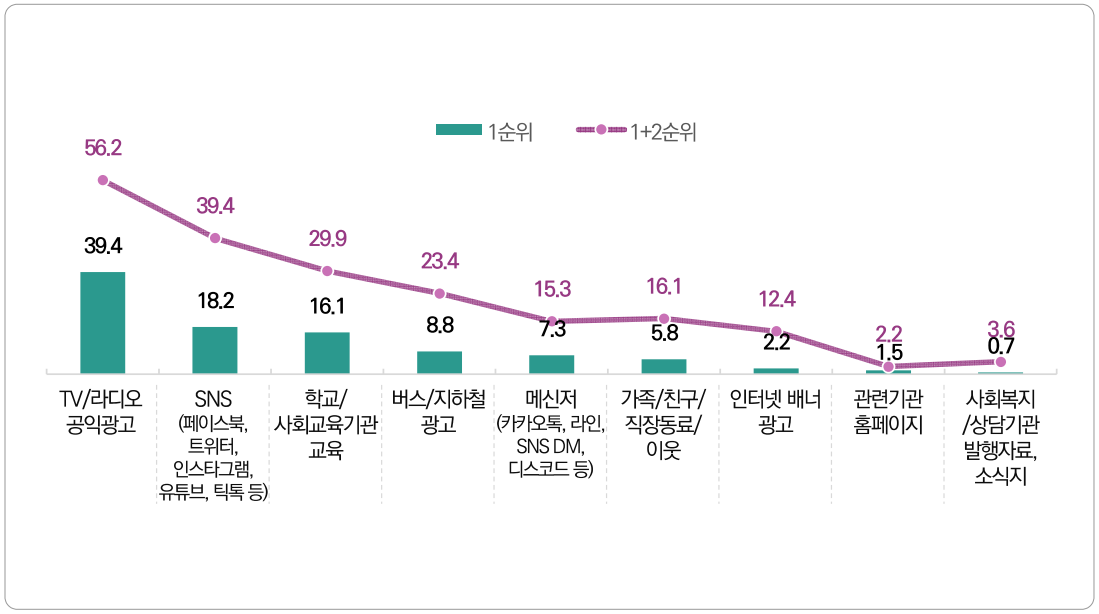
11)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1순위와 1+2순위 모두에서 'TV/라디오 공익광고'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 39.4%, 5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1순위에서는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18.2%, '학교/사회교육 기관 교육' 16.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1+2순위에서도 1순위와 마찬가지로 'TV/라디오 공익광고'에 이어서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39.4%, '학교/사회교육 기관 교육' 29.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4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홍보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미제시

〈표 3-49〉 아동학대 예방 가장 효과적인 홍보 - 1순위

단위: %

구분		사례수	TV/라디오 공익광고	SNS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학교/사회교육기관 교육	버스/지하철 광고	메신저 (카카오톡, 라인, SNS DM, 디스코드 등)	가족/친구/직장동료/이웃	인터넷 배너 광고	관련기관 홈페이지	사회복지/상담기관 발행자료, 소식지
전체		(137)	39.4	18.2	16.1	8.8	7.3	5.8	2.2	1.5	0.7
대응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47.8	13.0	8.7	4.3	4.3	4.3	13.0	4.3	0.0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41.7	16.7	8.3	25.0	8.3	0.0	0.0	0.0	0.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33.3	16.7	11.1	11.1	16.7	11.1	0.0	0.0	0.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33.3	25.0	22.9	6.3	6.3	6.3	0.0	0.0	0.0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0.0	25.0	25.0	25.0	25.0	0.0	0.0	0.0	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50.0	12.5	15.6	6.3	3.1	6.3	0.0	3.1	3.1

Base=전체 137명

〈표 3-50〉 아동학대 예방 가장 효과적인 홍보 - 1+2순위

복수응답 / 단위: %

구분		사례수	TV/라디오 공익광고	SNS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학교/사회 교육기관 교육	버스/ 지하철 광고	가족/친구/ 직장동료/ 이웃	메신저 (카카오톡, 라인, SNS DM, 디스코드 등)	인터넷 배너 광고	사회복지 /상담기관 발행자료, 소식지	관련기관 홈페이지
전체		(137)	56.2	39.4	29.9	23.4	16.1	15.3	12.4	3.6	2.2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73.9	21.7	17.4	13.0	13.0	13.0	39.1	0.0	4.3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66.7	58.3	8.3	41.7	0.0	8.3	16.7	0.0	0.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38.9	33.3	22.2	22.2	27.8	33.3	11.1	5.6	5.6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43.8	47.9	41.7	20.8	20.8	14.6	6.3	2.1	0.0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75.0	25.0	50.0	25.0	0.0	25.0	0.0	0.0	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65.6	37.5	31.3	28.1	12.5	9.4	3.1	9.4	3.1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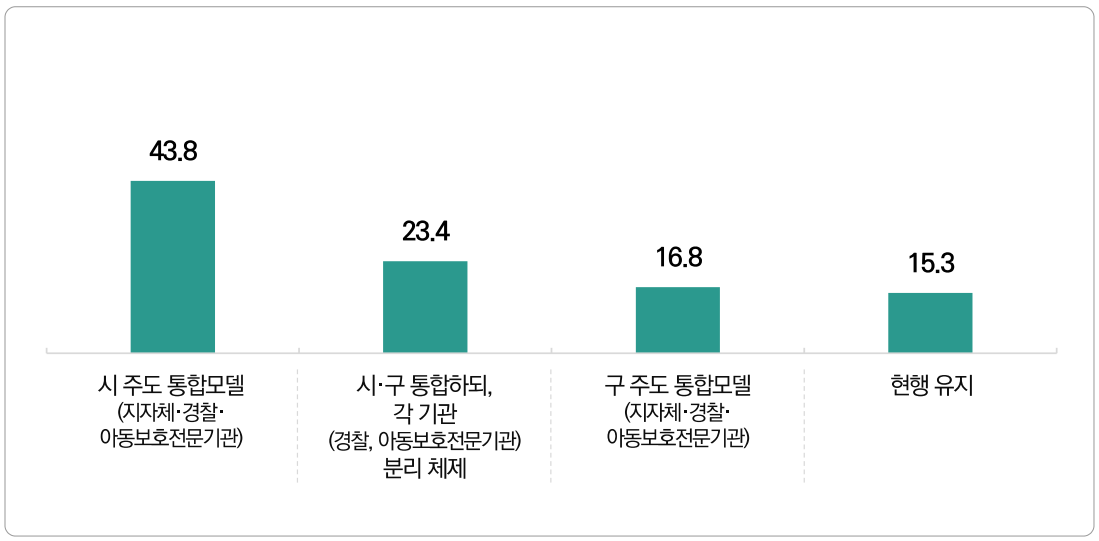
12)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모델 방식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람직한 대응 모델 방식을 조사한 결과, '시 주도 통합모델(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 43.8%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시·구 통합하되, 각 기관(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분리 체제' 23.4%, '구 주도 통합모델(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16.8%, 현행 유지 15.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응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시 주도 통합모델'이 56.5%로 가장 선호한 반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구 주도 통합모델'이 41.7%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예방경찰관과 여성수사팀은 '시 주도 통합모델'과 '구 주도 통합모델'이 각 27.8%로 같게 나타났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경우는 '시 주도 통합모델'이 41.7%로 높게 보고되었다. 전담의료기관의 의료사회복지사(75.0%)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보육사(50.0%)도 '시 주도 통합모델'이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모델 방식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3-46] 바람직한 대응모델 방식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기타 미제시

〈표 3-51〉 바람직한 대응모델 방식

단위: %

구분		사례수	시 주도 통합모델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시·구 통합하되 각 기관(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분리 체제)	구 주도 통합모델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현행 유지
전체		(137)	43.8	23.4	16.8	15.3
대응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56.5	13.0	26.1	4.3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25.0	16.7	41.7	16.7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27.8	22.2	27.8	16.7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41.7	29.2	10.4	18.8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75.0	0.0	0.0	25.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50.0	28.1	6.3	15.6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기타 미제시

13) 요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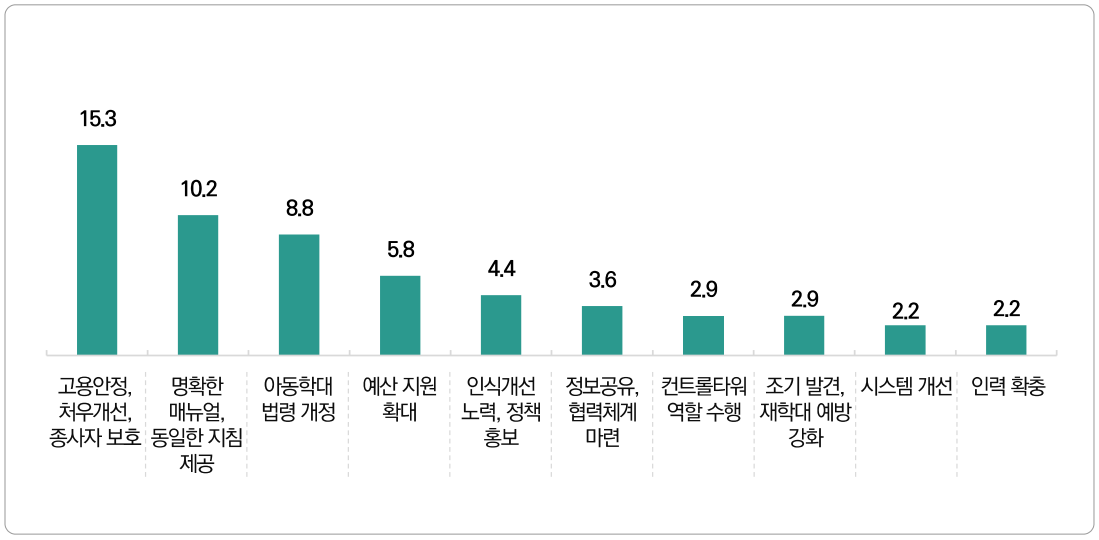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정책 수립 및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바라는 점으로 '고용안정, 처우개선, 종사자 보호'라고 언급한 비율이 15.3%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명확한 매뉴얼, 동일한 지침 제공' 10.2%, '아동학대 법령 개정' 8.8%, '예산 지원 확대' 5.8% 등의 순으로 언급되었다.

대응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고용안정, 처우개선, 종사자 보호', '아동학대 법령 개정'(각 21.7%), 시스템 개선(13.0%)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명확한 매뉴얼, 동일한 지침 제공'(33.3%), '고용안정, 처우개선, 종사자 보호', '아동학대 법령 개정'(각 25.0%)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아동학대예방경찰관 및 여청수사팀은 '명확한 매뉴얼과 동일한 지침 제공'(11.1%)이라고 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고용안전, 처우개선, 종사자 보호'(20.8%)라고 보고하였다. 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의 경우는 '인식개선 노력, 정책 홍보'(50.0%), 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은 '조기 발견, 재학대 예방 강화'(12.5%)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7] 보건복지부에 바라는 점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무응답 미제시

〈표 3-52〉 보건복지부에 바라는 점

단위: %

구분		사례수	고용안정 처우개선 종사자 보호	명확한 매뉴얼, 동일한 지침제공	아동학대 법령개정	예산 지원확대	인식개선 노력, 정책홍보	정보 공유협력 체계 마련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조기 발견, 재학대 예방 강화	시스템 개선	인력 확충
전체		(137)	15.3	10.2	8.8	5.8	4.4	3.6	2.9	2.9	2.2	2.2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21.7	13.0	21.7	4.3	0.0	4.3	4.3	0.0	13.0	0.0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25.0	33.3	25.0	0.0	8.3	0.0	0.0	0.0	0.0	0.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0.0	11.1	0.0	5.6	0.0	5.6	0.0	0.0	0.0	5.6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20.8	4.2	6.3	6.3	4.2	0.0	2.1	0.0	0.0	4.2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0.0	0.0	25.0	25.0	50.0	0.0	0.0	0.0	0.0	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9.4	9.4	0.0	6.3	3.1	9.4	6.3	12.5	0.0	0.0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무응답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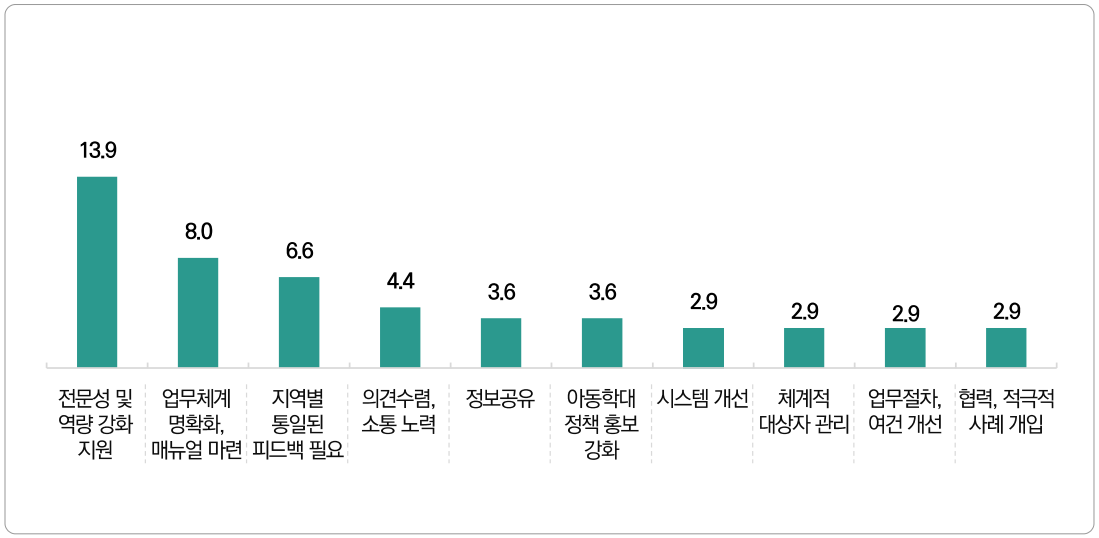
(2)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정책 수립 및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 바라는 점으로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이라고 언급한 비율이 13.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업무체계 명확화, 매뉴얼 마련' 8.0%, '지역별 통일된 피드백 필요' 6.6%, '의견수렴, 소통 노력' 4.4% 등의 순으로 언급되었다.

대응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17.4%)과 '업무체계 명확화, 매뉴얼 마련', '지역별 통일된 피드백 필요'(각 13.0%)를 원하였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경우는 '업무체계 명확화, 매뉴얼 마련'과 '지역별 통일된 피드백'(각 25.0%)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대예방경찰관은 '정보 공유'(11.1%)를, 상담원(12.5%)과 의료사회복지사(50.0%) 그리고 보육사 등(15.6%)은 모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을 높은 비율로 아동권리보장원에 요구하였다.

[그림 3-48] 아동권리보장원에 바라는 점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기타, 무응답 미제시

〈표 3-53〉 아동권리보장원에 바라는 점

단위: %

구분		사례수	전문성 및 역량 강화지원	업무체계 명확화, 매뉴얼 마련	지역별 통일된 피드백 필요	의견수렴 소통노력	정보 공유	아동학대 정책홍보 강화	시스템 개선	체계적 대상자 관리	업무절차, 여건 개선	협력, 적극적 사례 개입
전체		(137)	13.9	8.0	6.6	4.4	3.6	3.6	2.9	2.9	2.9	2.9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17.4	13.0	13.0	4.3	4.3	8.7	0.0	4.3	4.3	0.0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8.3	25.0	25.0	8.3	0.0	0.0	0.0	0.0	0.0	0.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5.6	0.0	0.0	0.0	11.1	0.0	0.0	0.0	5.6	5.6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12.5	8.3	6.3	6.3	0.0	2.1	6.3	0.0	4.2	2.1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50.0	0.0	0.0	0.0	0.0	25.0	0.0	25.0	0.0	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15.6	3.1	0.0	3.1	6.3	3.1	3.1	6.3	0.0	6.3

Base=전체 137명
주) 기타, 무응답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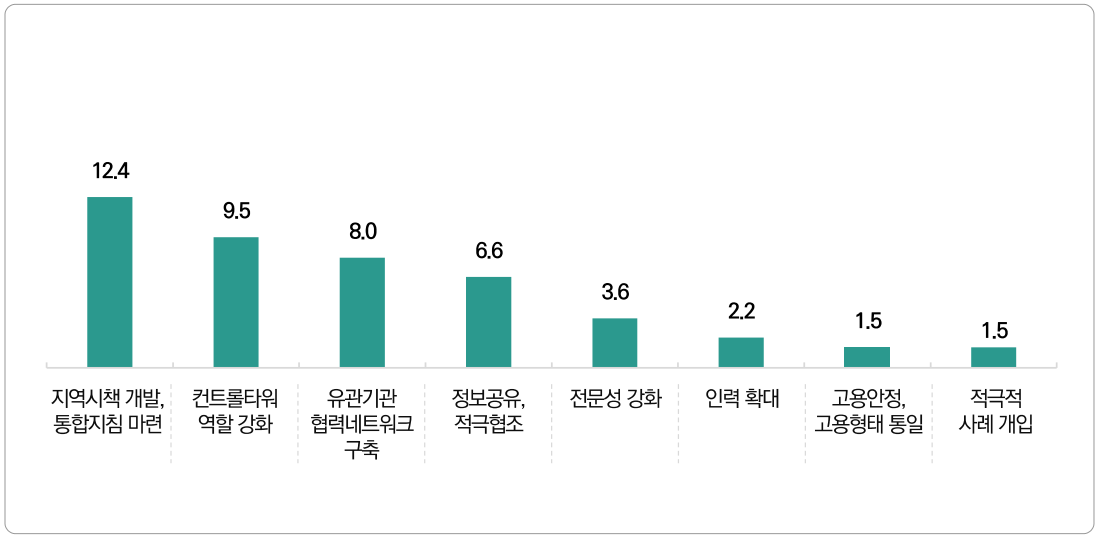
(3) 광역시 아동보호팀

아동학대 정책 수립 및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시 아동보호팀에 바라는 점으로 '지역시책 개발, 통합지침 마련'이라고 언급한 비율이 12.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9.5%,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8.0%, '정보 공유, 적극협조' 6.6% 등의 순으로 언급되었다.

대응체계별로 살펴보면, 시 아동보호팀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26.1%), '지역시책 개발, 통합지침 마련'(17.4%) 순이었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지역시책 개발, 통합지침 마련',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고용안정, 고용형태 통일'(각 16.7%)을 원하였다. 아동학대예방경찰관 등은 '지역시책 개발, 통합지침 마련'과 '정보 공유, 적극 협조'(각 11.1%)를 언급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경우는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12.5%)를 높게 응답하였다. 전담의료기관의 의료사회복지사는 '전문성 강화'(50.0%)를, 피해아동쉼터의 보육사 등은 '지역시책 개발, 통합지침 마련'(18.8%)과 '정보 공유, 적극 협조'(12.5%) 순으로 언급하였다.

[그림 3-49] 광역시 아동보호팀에 바라는 점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무응답 미제시

〈표 3-54〉 광역시 아동보호팀에 바라는 점

단위: %

구분		사례수	지역시책 개발, 통합지침 마련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정보 공유, 적극협조	전문성 강화	인력 확대	고용안정, 고용형태 통일	적극적 사례 개입
전체		(137)	12.4	9.5	8.0	6.6	3.6	2.2	1.5	1.5
대응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17.4	26.1	8.7	0.0	0.0	4.3	0.0	0.0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16.7	0.0	16.7	8.3	8.3	0.0	16.7	0.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11.1	0.0	0.0	11.1	0.0	5.6	0.0	5.6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6.3	12.5	6.3	4.2	2.1	2.1	0.0	0.0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0.0	0.0	25.0	0.0	50.0	0.0	0.0	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18.8	3.1	9.4	12.5	3.1	0.0	0.0	3.1

Base=전체 137명
주) 무응답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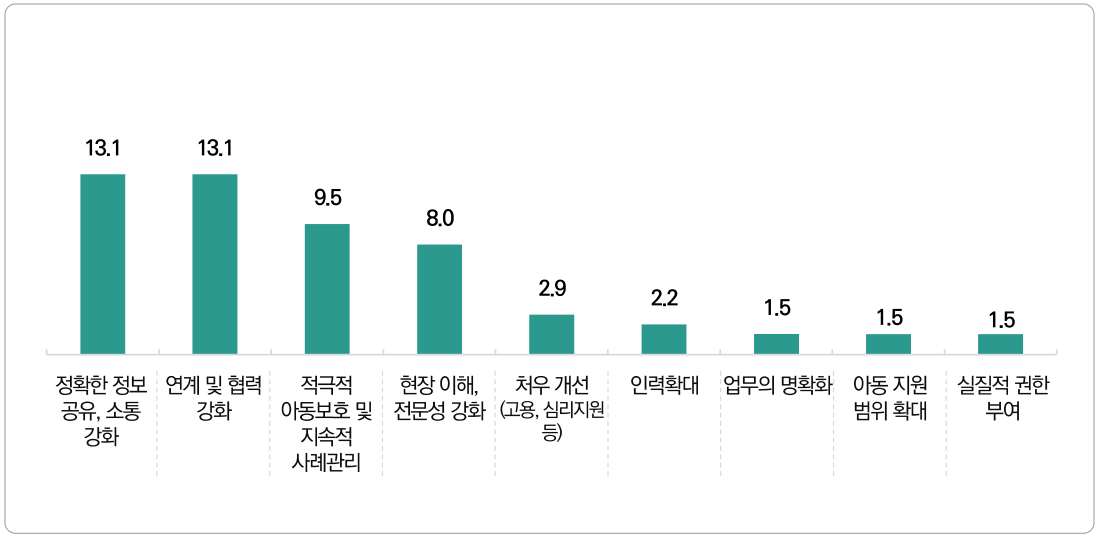
(4) 자치구 아동보호팀

아동학대 정책 수립 및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구 아동보호팀에 바라는 점으로 '정확한 정보 공유, 소통 강화', '연계 및 협력 강화'라고 언급한 비율이 각 13.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적극적 아동보호 및 지속적 사례관리' 9.5%, '현장 이해, 전문성 강화' 8.0% 등의 순으로 언급되었다.

대응체계별로 살펴보면, 구 아동보호팀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현장 이해, 전문성 강화'와 '인력확대'(각 13.0%)를,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정확한 정보 공유, 소통 강화', '현장 이해, 전문성 강화', 그리고 '처우 개선(고용, 심리지원 등)'(각 16.7%)을 원하였다. 학대예방경찰관 및 여청수사대는 '적극적 아동보호 및 지속적 사례관리'(16.7%)와 '정확한 정보 공유, 소통 강화'(11.1%)로 응답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연계 및 협력 강화'(25.0%)와 '정확한 정보 공유, 소통 강화'(12.5%)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의 경우는 '현장 이해, 전문성 강화'(50.0%), '적극적 아동보호 및 지속적 사례관리'(25.0%)를, 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은 '정확한 정보 공유, 소통 강화'(21.9%)와 '연계 및 협력 강화', '적극적 아동보호 및 지속적 사례관리'(각 15.6%) 등으로 답하였다.

[그림 3-50] 자치구 아동보호팀에 바라는 점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무응답 미제시

〈표 3-55〉 자치구 아동보호팀에 바라는 점

단위: %

구분		사례수	정확한 정보 공유, 소통 강화	연계 및 협력 강화	적극적 아동보호 및 지속적 사례관리	현장 이해, 전문성 강화	처우 개선 (고용, 심리지원 등)	인력확대	업무의 명확화	아동 지원 범위 확대	실질적 권한 부여
전체		(137)	13.1	13.1	9.5	8.0	2.9	2.2	1.5	1.5	1.5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4.3	4.3	0.0	13.0	8.7	13.0	0.0	0.0	4.3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16.7	0.0	0.0	16.7	16.7	0.0	0.0	0.0	0.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11.1	0.0	16.7	5.6	0.0	0.0	0.0	0.0	0.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12.5	25.0	8.3	6.3	0.0	0.0	4.2	0.0	0.0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0.0	0.0	25.0	50.0	0.0	0.0	0.0	25.0	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21.9	15.6	15.6	0.0	0.0	0.0	0.0	3.1	3.1

Base=전체 137명
주) 무응답 미제시

5. 대응체계 종사자 교육 및 훈련

1) 직무관련 교육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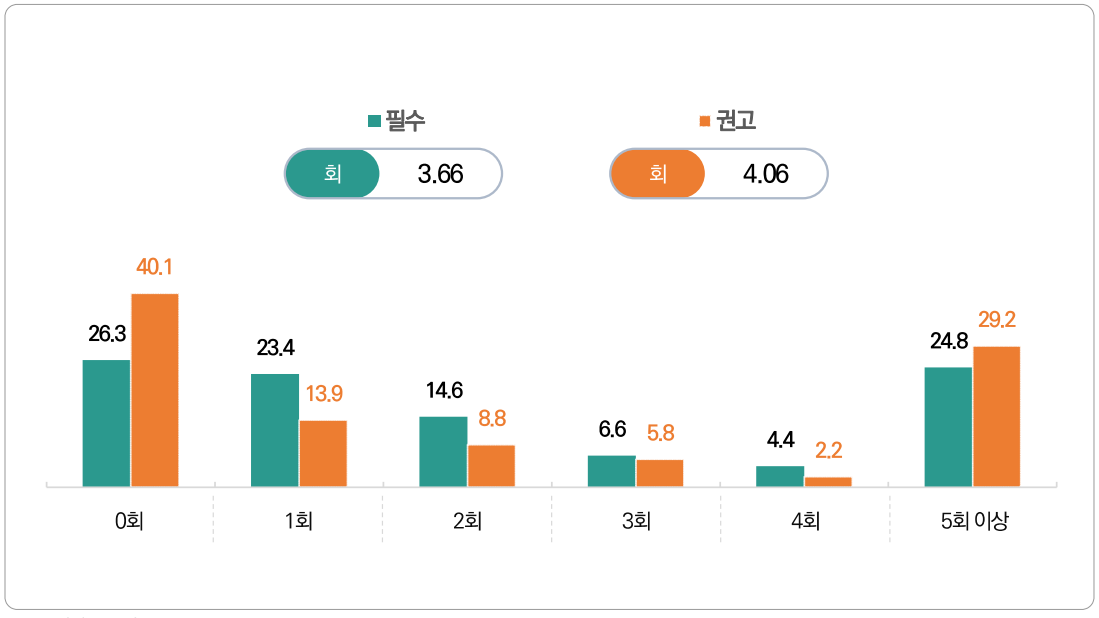
(1) 참여 횟수

2022년에 참여한 직무관련 교육 참여 횟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횟수는 '필수 직무교육' 3.66회, '권고 직무교육' 4.06회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필수 직무교육' 참여 횟수는 평균 3.66회로 나타났으며,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26.3%)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5회 이상'(24.8%), '1회'(2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고 직무교육' 참여 횟수는 필수보다 많은 평균 4.06회였으며,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40.1%)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5회 이상' 29.2%, '1회' 13.9% 등의 순이었다. 이는 코로나시기를 감안하고 이직 및 순환보직 등 인사적인 요인, 업무량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51] 직무관련 교육 참여 횟수

단위: 회/%



Base=전체 137명

〈표 3-56〉 참여 횟수 - 필수

단위: %/회

구분		사례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계	평균
전체		(137)	26.3	23.4	14.6	6.6	4.4	24.8	100.0	3.66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43.5	13.0	30.4	8.7	0.0	4.3	100.0	1.43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25.0	50.0	8.3	0.0	0.0	16.7	100.0	4.17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27.8	27.8	16.7	5.6	0.0	22.2	100.0	3.0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25.0	18.8	12.5	6.3	6.3	31.3	100.0	4.13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0.0	75.0	0.0	0.0	0.0	25.0	100.0	2.75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18.8	18.8	9.4	9.4	9.4	34.4	100.0	4.84

Base=전체 137명

〈표 3-57〉 참여 횟수 - 권고

단위: %/회

구분		사례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계	평균
전체		(137)	40.1	13.9	8.8	5.8	2.2	29.2	100.0	4.06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52.2	30.4	8.7	4.3	0.0	4.3	100.0	1.04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66.7	16.7	8.3	0.0	0.0	8.3	100.0	1.17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50.0	11.1	11.1	5.6	0.0	22.2	100.0	2.83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33.3	6.3	2.1	8.3	2.1	47.9	100.0	7.00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25.0	25.0	25.0	0.0	0.0	25.0	100.0	2.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28.1	12.5	15.6	6.3	6.3	31.3	100.0	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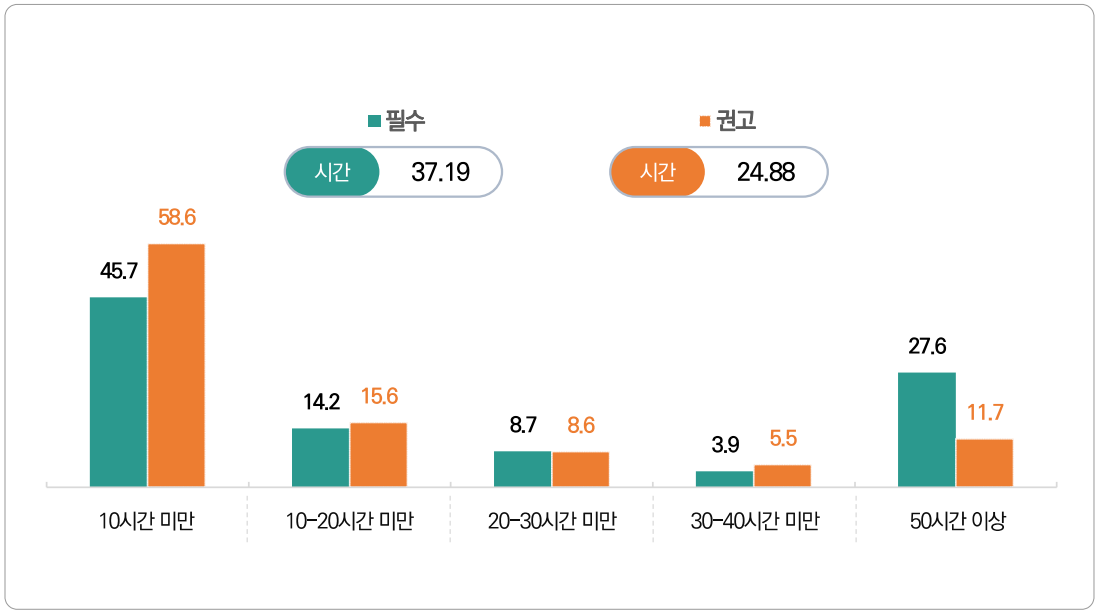
Base=전체 137명

(2) 참여 시간

2022년에 참여한 직무관련 교육 참여 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시간은 '필수 직무교육'이 37.19시간이였고 '권고 직무교육'이 24.88시간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필수 직무교육', '권고 직무교육' 모두 참여 시간이 '10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 45.7%, 58.6%로 가장 높았고, '필수 직무교육'에서 '50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52] 직무관련 교육 참여 시간

단위: 시간/%



Base=전체 137명

〈표 3-58〉 참여 시간 - 필수

단위: %/시간

구분		사례수	10시간 미만	10-20 시간 미만	20-30 시간 미만	30-40 시간 미만	50시간 이상	계	평균
전체		(137)	45.7	14.2	8.7	3.9	27.6	100.0	37.19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55.0	0.0	0.0	0.0	45.0	100.0	35.30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33.3	8.3	8.3	25.0	25.0	100.0	31.25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44.4	33.3	0.0	0.0	22.2	100.0	43.0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43.2	13.6	9.1	4.5	29.5	100.0	40.23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66.7	0.0	0.0	0.0	33.3	100.0	40.75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46.7	16.7	20.0	0.0	16.7	100.0	32.50

Base=전체 137명

〈표 3-59〉 참여 시간 - 권고

단위: %/시간

구분		사례수	10시간 미만	10-20 시간 미만	20-30 시간 미만	30-40 시간 미만	50시간 이상	계	평균
전체		(137)	58.6	15.6	8.6	5.5	11.7	100.0	24.88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75.0	10.0	0.0	0.0	15.0	100.0	14.83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66.7	8.3	16.7	0.0	8.3	100.0	10.08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61.1	27.8	0.0	0.0	11.1	100.0	38.33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47.7	13.6	9.1	15.9	13.6	100.0	27.21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75.0	0.0	25.0	0.0	0.0	100.0	7.25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56.7	20.0	13.3	0.0	10.0	100.0	28.81

Base=전체 137명

2) 전문성 향상을 위해 참여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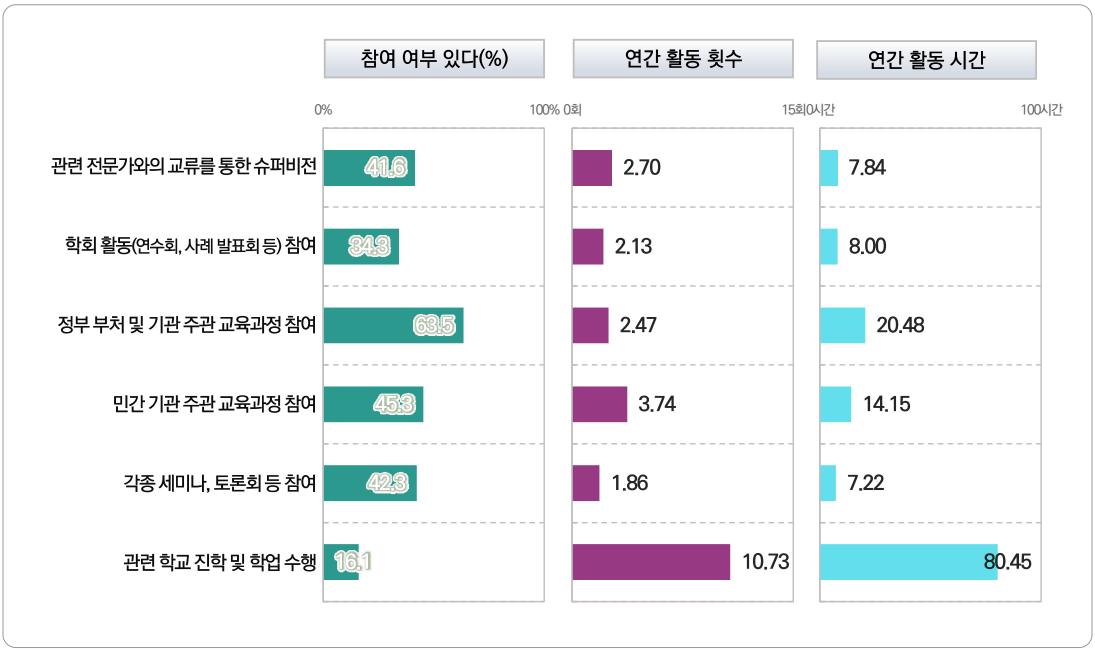
전문성 향상을 위해 참여한 활동을 조사한 결과, '정부 부처 및 기관 주관 교육과정 참여'가 63.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민간 기관 주관 교육과정 참여' 45.3%,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참여' 4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여한 활동 중 연간 활동 횟수에 대해서는 '관련 학교 진학 및 학업 수행'의 경우 10.73회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민간 기관 주관 교육과정 참여' 3.74회, '관련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한 슈퍼비전' 2.70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 활동 시간에 있어서는 '관련 학교 진학 및 학업 수행'이 80.45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이어서 '정부 부처 및 기관 주관 교육과정 참여' 20.48시간, '민간 기관 주관 교육과정 참여' 14.15시간 등의 순이었는데, '정부 부처 및 기관 주관 교육과정 참여'의 경우 연간 활동 횟수에 비해 연간 활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3] 전문성 향상을 위해 참여한 활동, 연간 활동 횟수 및 시간

단위: %/회/시간



Base=전체 137명/각 활동별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
*참여여부(%)는 '있다' 응답만 표시

〈표 3-60〉 전문성 향상을 위해 참여한 활동 - 참여 여부

단위: %

구분		사례 수	관련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한 슈퍼비전	학회 활동 (연수회, 사례발표회 등) 참여	정부 부처 및 기관 주관 교육과정 참여	민간 기관 주관 교육과정 참여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참여	관련 학교 진학 및 학업 수행
전체		(137)	41.6	34.3	63.5	45.3	42.3	16.1
대응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34.8	26.1	47.8	26.1	47.8	13.0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0.0	0.0	75.0	8.3	16.7	0.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0.0	11.1	44.4	0.0	16.7	5.6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77.1	56.3	70.8	72.9	58.3	20.8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50.0	50.0	75.0	75.0	50.0	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31.3	31.3	68.8	53.1	37.5	25.0

Base=전체 137명
*참여여부(%)는 '있다' 응답만 표시

〈표 3-61〉 전문성 향상을 위해 참여한 활동 - 연간 활동 횟수/시간

단위: 회/시간

구분		관련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한 슈퍼비전			학회 활동 (연수회, 사례발표회 등) 참여			정부 부처 및 기관 주관 교육과정 참여			민간 기관 주관 교육과정 참여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참여			관련 학교 진학 및 학업 수행		
		사례수	횟수	시간	사례수	횟수	시간	사례수	횟수	시간	사례수	횟수	시간	사례수	횟수	시간	사례수	횟수	시간
전체		(57)	2.70	7.84	(47)	2.13	8.00	(87)	2.47	20.48	(62)	3.74	14.15	(58)	1.86	7.22	(22)	10.73	80.45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8)	2.25	5.75	(6)	1.67	19.17	(11)	2.00	27.36	(6)	1.83	20.00	(11)	2.00	6.55	(3)	10.00	27.67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0)	-	-	(0)	-	-	(9)	2.11	34.56	(1)	30.00	1.00	(2)	1.50	4.00	(0)	-	-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0)	-	-	(2)	1.00	5.00	(8)	1.13	13.13	(0)	-	-	(3)	1.00	5.67	(1)	1.00	20.0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37)	3.05	8.73	(27)	2.52	6.52	(34)	3.03	23.12	(35)	4.29	15.37	(28)	2.04	5.89	(10)	1.80	32.20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2)	1.00	2.50	(2)	1.50	2.00	(3)	1.67	3.33	(3)	1.00	32.00	(2)	1.00	2.00	(0)	-	-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10)	2.10	7.30	(10)	1.70	7.10	(22)	2.59	12.23	(17)	2.24	7.18	(12)	1.75	12.75	(8)	23.38	168.13

Base=각 활동별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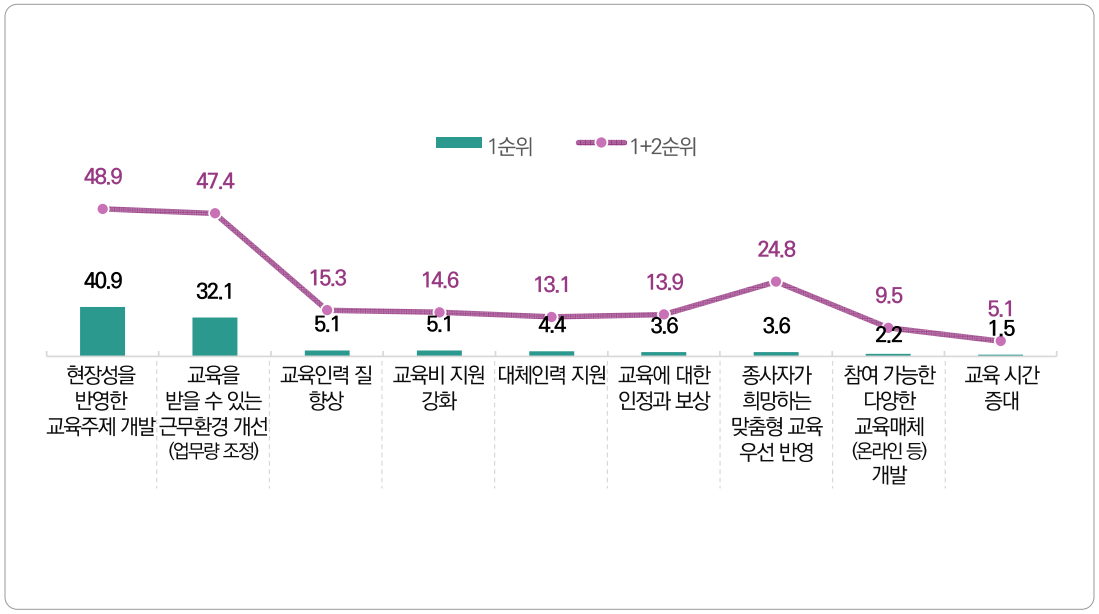
3) 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 활성화 방안을 조사한 결과, 1순위와 1+2순위에서 모두 '현장성을 반영한 교육주제 개발'이 각 40.9%,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1순위에서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업무량 조정)' 32.1%, '교육인력 질 향상'과 '교육비 지원 강화'가 각각 5.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1+2순위에서는 '현장성을 반영한 교육주제 개발'에 이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업무량 조정)' 47.4%, '종사자가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 우선 반영'이 2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54] 교육 활성화 방안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기타 미제시

〈표 3-62〉 교육 활성화 방안 - 1순위

단위: %

구분		사례수	현장성을 반영한 교육주제 개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 (업무량 조정)	교육인력 질 향상	교육비 지원 강화	대체인력 지원	교육에 대한 인정과 보상	종사자가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 우선 반영	참여 가능한 다양한 교육매체 (온라인 등) 개발	교육 시간 증대
전체		(137)	40.9	32.1	5.1	5.1	4.4	3.6	3.6	2.2	1.5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60.9	13.0	4.3	13.0	0.0	0.0	4.3	0.0	4.3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75.0	16.7	0.0	8.3	0.0	0.0	0.0	0.0	0.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33.3	38.9	0.0	5.6	11.1	5.6	0.0	0.0	0.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25.0	60.4	8.3	0.0	2.1	0.0	2.1	0.0	0.0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75.0	25.0	0.0	0.0	0.0	0.0	0.0	0.0	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37.5	6.3	6.3	6.3	9.4	12.5	9.4	9.4	3.1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기타 미제시

〈표 3-63〉 교육 활성화 방안 - 1+2순위

복수응답 / 단위: %

구분		사례수	현장성을 반영한 교육주제 개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업무량 조정)	종사자가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 우선 반영	교육인력 질 향상	교육비 지원 강화	교육에 대한 인정과 보상	대체인력 지원	참여 가능한 다양한 교육매체 (온라인 등) 개발	교육 시간 증대
전체		(137)	48.9	47.4	24.8	15.3	14.6	13.9	13.1	9.5	5.1
대응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65.2	39.1	30.4	26.1	17.4	0.0	0.0	13.0	8.7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75.0	16.7	16.7	16.7	33.3	0.0	8.3	16.7	8.3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33.3	50.0	27.8	11.1	5.6	16.7	33.3	0.0	5.6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33.3	79.2	25.0	14.6	10.4	16.7	10.4	0.0	2.1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100.0	50.0	0.0	50.0	0.0	0.0	0.0	0.0	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53.1	15.6	25.0	6.3	18.8	25.0	18.8	25.0	6.3

Base=전체 137명
주) 1순위 기준 1% 미만 기타 미제시

6. 대응체계 종사자 근무환경

1) 지난 3년간 업무상 질병, 사고, 폭력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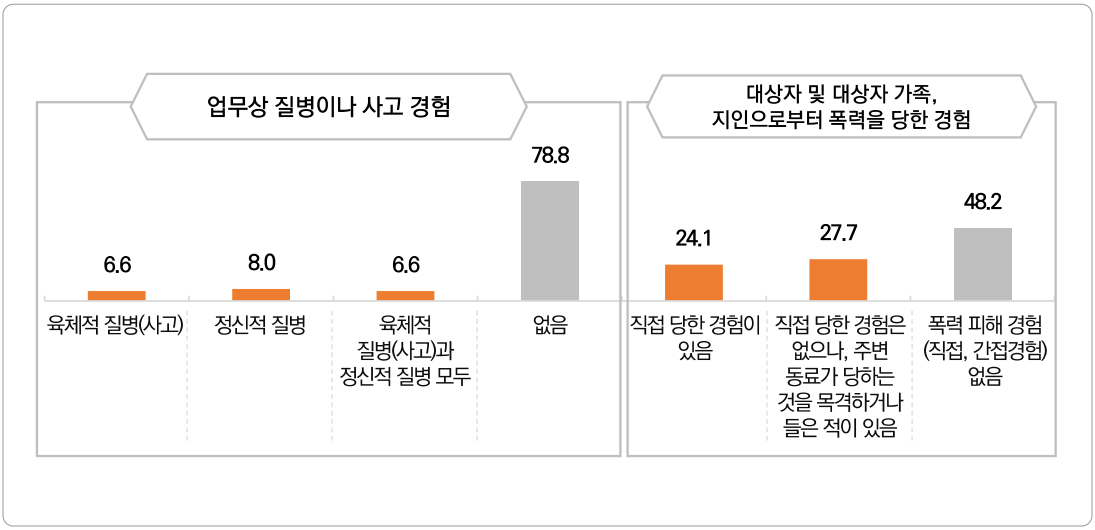
지난 3년간 업무상 질병, 사고 경험을 조사한 결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1.2%로 나타났다. 그 유형에 대해 '정신적 질병'이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육체적 질병(사고)'과 '육체적 질병(사고)과 정신적 질병 모두' 각 6.6%였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2022)와 비교해 보면, '정신적 질병'(6.5%)은 1.5% 높고 '육체적 질병'(10.4%)은 3.8% 낮았으며, '육체적 질병(사고)과 정신적 질병 모두'도 1.4% 낮았다.

한편, 지난 3년간 폭력 경험을 조사한 결과, 직·간접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1.8%로 나타났다. 그 유형에 대해 '직접 당한 경험은 없으나 주변 동료가 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7%였으며, '직접 당한 경험이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1%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2022)와 비교해 봤을 때, '직접 당한 경험이 있음'(18.9%)은 5.2% 더 높게 나타났다.

대응체계별로 살펴봤을 때, 직접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35.4%), 아동보호전담요원(33.3%), 아동학대전담공무원(26.1%),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12.5%),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11.1%) 순으로 높았다.

[그림 3-55] 지난 3년간 업무상 질병, 사고, 폭력 경험

단위: %



Base=전체 137명

〈표 3-64〉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 경험

단위 %

구분		사례 수	육체적 질병(사고)	정신적 질병	육체적 질병(사고)과 정신적 질병 모두	없음	계
전체		(137)	6.6	8.0	6.6	78.8	100.0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4.3	8.7	0.0	87.0	100.0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0.0	16.7	0.0	83.3	100.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5.6	11.1	5.6	77.8	100.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4.2	8.3	6.3	81.3	100.0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25.0	0.0	0.0	75.0	10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12.5	3.1	15.6	68.8	100.0

Base=전체 137명

〈표 3-65〉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 지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

단위 %

구분		사례 수	직접 당한 경험이 있음	직접 당한 경험은 없으나, 주변 동료가 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음	폭력 피해 경험(직접, 간접경험) 없음	계
전체		(137)	24.1	27.7	48.2	100.0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26.1	52.2	21.7	100.0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33.3	25.0	41.7	100.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11.1	11.1	77.8	100.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35.4	25.0	39.6	100.0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0.0	25.0	75.0	10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12.5	25.0	62.5	100.0

Base=전체 13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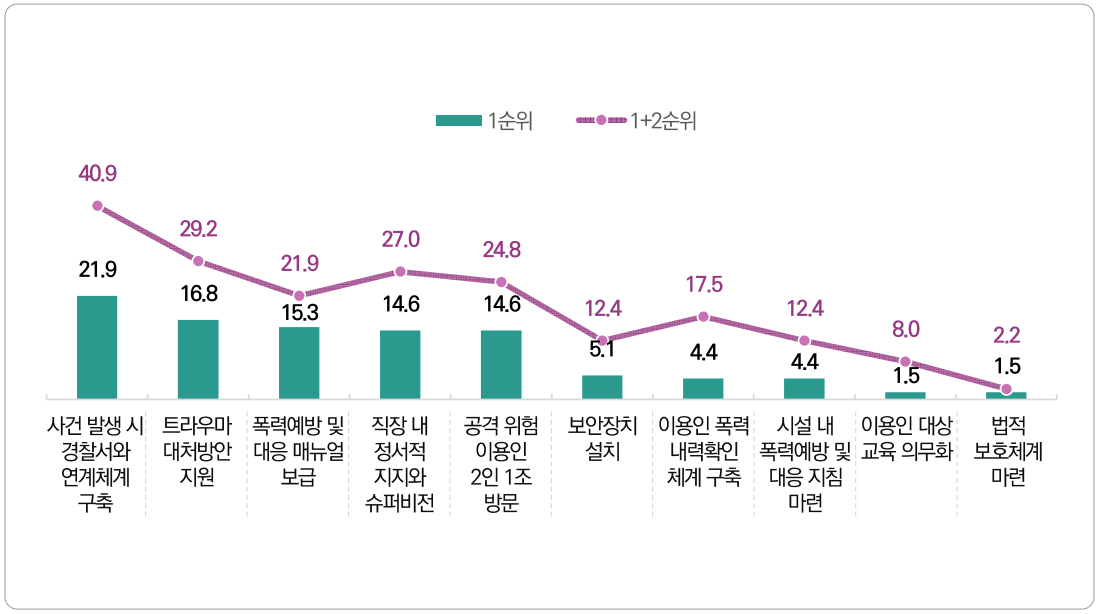
2) 종사자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종사자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조사한 결과 1순위와 1+2순위에서 모두 '사건 발생 시 경찰서와 연계체계 구축' 응답이 각 21.9%,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1순위에서는 '트라우마 대처방안 지원' 16.8%, '폭력예방 및 대응 매뉴얼 보급' 15.3% , '직장 내 정서적 지지와 슈퍼비전'과 '공격 위험 이용인 2인 1조 방문'이 각 14.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1+2순위에서는 '사건 발생 시 경찰서와 연계체계 구축'에 이어서 '트라우마 대처방안 지원'이 29.2%, '직장 내 정서적 지지와 슈퍼비전' 27.0%, '공격 위험 이용인 2인1조 방문' 24.8%, '폭력예방 및 대응 매뉴얼 보급'이 21.9%, '이용인 폭력 내력 확인 체계 구축' 17.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56] 종사자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미제시

〈표 3-66〉 종사자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1순위

단위: %

구분		사례수	사건 발생시 경찰서와 연계체계 구축	트라우마 대처방안 지원	폭력예방 및 대응 매뉴얼 보급	직장 내 정서적 지지와 슈퍼비전	공격 위험 이용인 2인 1조 방문	보안장치 설치	이용인 폭력내력 확인체계 구축	시설 내 폭력예방 및 대응 지침마련	이용인 대상 교육 의무화	법적 보호체계 마련
전체		(137)	21.9	16.8	15.3	14.6	14.6	5.1	4.4	4.4	1.5	1.5
대응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52.2	26.1	4.3	8.7	8.7	0.0	0.0	0.0	0.0	0.0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41.7	25.0	0.0	16.7	8.3	0.0	0.0	0.0	8.3	0.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0.0	16.7	16.7	11.1	38.9	5.6	5.6	5.6	0.0	0.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14.6	20.8	14.6	14.6	12.5	8.3	4.2	4.2	2.1	4.2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25.0	0.0	25.0	0.0	25.0	25.0	0.0	0.0	0.0	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15.6	3.1	28.1	21.9	9.4	3.1	9.4	9.4	0.0	0.0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미제시

〈표 3-67〉 종사자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1+2순위

복수응답 / 단위: %

구분		사례수	사건 발생시 경찰서와 연계체계 구축	트라우마 대처방안 지원	직장 내 정서적 지지와 슈퍼비전	공격 위험 이용인 2인 1조 방문	폭력예방 및 대응 매뉴얼 보급	이용인 폭력내력 확인체계 구축	보안 장치 설치	시설 내 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마련	이용인 대상 교육 의무화	법적 보호 체계 마련
전체		(137)	40.9	29.2	27.0	24.8	21.9	17.5	12.4	12.4	8.0	2.2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78.3	34.8	26.1	21.7	13.0	13.0	4.3	0.0	8.7	0.0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50.0	33.3	33.3	33.3	8.3	16.7	0.0	8.3	8.3	0.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16.7	22.2	22.2	50.0	22.2	27.8	5.6	22.2	5.6	5.6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43.8	37.5	22.9	18.8	22.9	14.6	14.6	10.4	6.3	4.2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25.0	25.0	0.0	25.0	25.0	0.0	50.0	25.0	0.0	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21.9	15.6	37.5	18.8	31.3	21.9	18.8	18.8	12.5	0.0

Base=전체 137명
주) 1% 미만 미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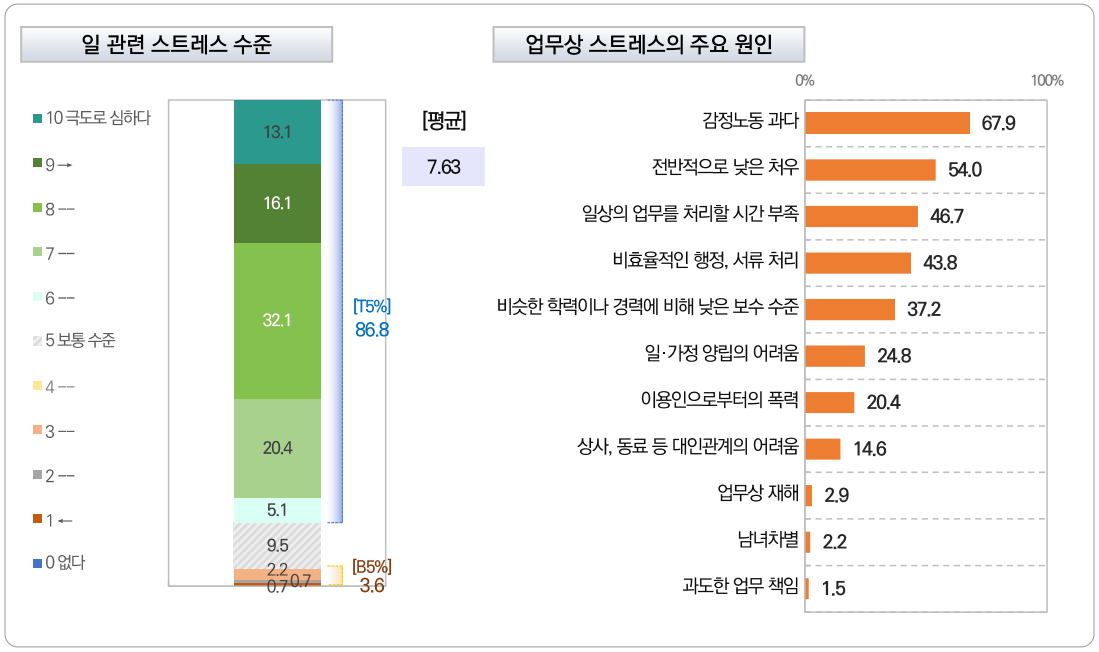
3) 업무 스트레스 수준 및 주요 원인

업무 스트레스에 대해 '없다'를 0점, '극도로 심하다'를 10점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일 관련 스트레스 수준은 10점 만점에 7.63점으로, '0~4점(심하지 않다)'으로 응답한 비율이 3.6%, '5점(보통)' 9.5%, '6~10점(심하다)' 86.8%로 나타났다. 대응체계별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8.23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아동보호전담요원 7.92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7.74점이었다.

한편, 업무상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는 '감정노동 과다'가 67.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전반적으로 낮은 처우' 54.0%, '일상의 업무를 처리할 시간 부족' 46.7%, '비효율적인 행정, 서류 처리' 43.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57] 업무 스트레스 수준 및 주요 원인

단위: 점/%



Base=전체 137명

〈표 3-68〉 업무 관련 스트레스 수준

단위: %/점

구분		사례수	0 없다	1	2	3	4	5 보통 수준	6	7	8	9	10 극도로 심하다	평균
전체		(137)	0.0	0.7	0.7	2.2	0.0	9.5	5.1	20.4	32.1	16.1	13.1	7.63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0.0	0.0	0.0	4.3	0.0	4.3	8.7	17.4	34.8	17.4	13.0	7.74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0.0	0.0	0.0	0.0	0.0	8.3	0.0	25.0	33.3	25.0	8.3	7.92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0.0	0.0	0.0	5.6	0.0	16.7	0.0	16.7	22.2	27.8	11.1	7.56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0.0	0.0	0.0	0.0	0.0	0.0	2.1	25.0	37.5	18.8	16.7	8.23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0.0	25.0	0.0	0.0	0.0	25.0	0.0	0.0	50.0	0.0	0.0	5.5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0.0	0.0	3.1	3.1	0.0	21.9	12.5	18.8	25.0	3.1	12.5	6.84

Base=전체 137명

〈표 3-69〉 업무상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단위: %

구분		사례 수	감정노동 과다	전반적으로 낮은 처우	일상의 업무를 처리할 시간 부족	비효율적인 행정, 서류처리	비슷한 학력이나 경력에 비해 낮은 보수수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이용인으로부터의 폭력	상사·동료 등 대인관계의 어려움	업무상 재해	남녀차별	과도한 업무 책임
전체		(137)	67.9	54.0	46.7	43.8	37.2	24.8	20.4	14.6	2.9	2.2	1.5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82.6	47.8	13.0	30.4	13.0	26.1	34.8	8.7	4.3	4.3	8.7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83.3	58.3	16.7	41.7	50.0	8.3	16.7	25.0	0.0	0.0	0.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50.0	50.0	55.6	61.1	33.3	11.1	16.7	11.1	0.0	0.0	0.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79.2	58.3	83.3	52.1	37.5	39.6	27.1	8.3	6.3	0.0	0.0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25.0	50.0	25.0	50.0	100.0	25.0	0.0	0.0	0.0	0.0	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50.0	53.1	25.0	31.3	43.8	15.6	6.3	28.1	0.0	6.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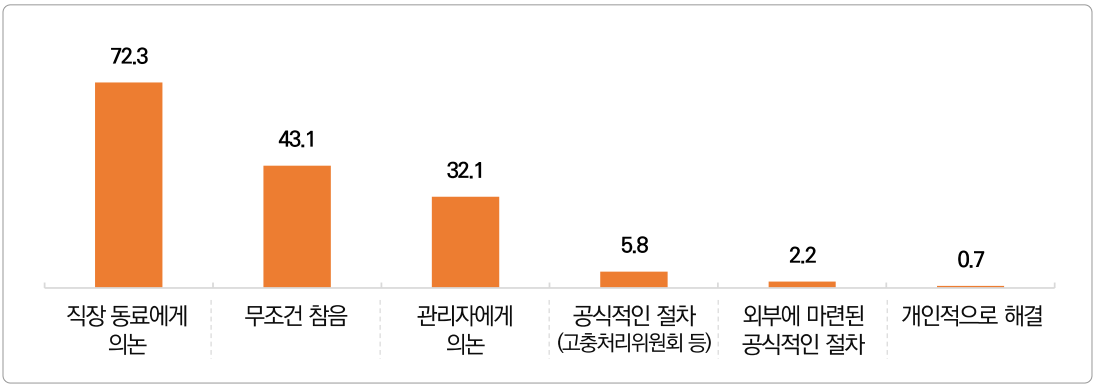
Base=전체 137명
주) 기타 미제시

4) 고충 또는 어려움 해결방식

고충 또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을 조사한 결과, '직장 동료에게 개인적으로 고충(어려움)을 의논하여 해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2.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고충(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참음' 43.1%, '관리자에게 개인적으로 고충(어려움)을 의논하여 해결함' 32.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58] 고충 또는 어려움 해결방식

단위: %



Base=전체 137명
주) 무응답 미제시

〈표 3-70〉 고충 또는 어려움 해결방식

단위: %

구분		사례수	직장 동료에게 의논	무조건 참음	관리자에게 의논	공식적인 절차 (고충처리 위원회 등)	외부에 마련된 공식적 절차	개인적으로 해결
전체		(137)	72.3	43.1	32.1	5.8	2.2	0.7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69.6	52.2	34.8	8.7	0.0	0.0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83.3	50.0	16.7	0.0	0.0	0.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50.0	50.0	33.3	11.1	0.0	0.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83.3	41.7	27.1	0.0	4.2	2.1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100.0	75.0	25.0	25.0	0.0	0.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62.5	28.1	43.8	9.4	3.1	0.0

Base=전체 137명
주) 무응답 미제시

5) 직장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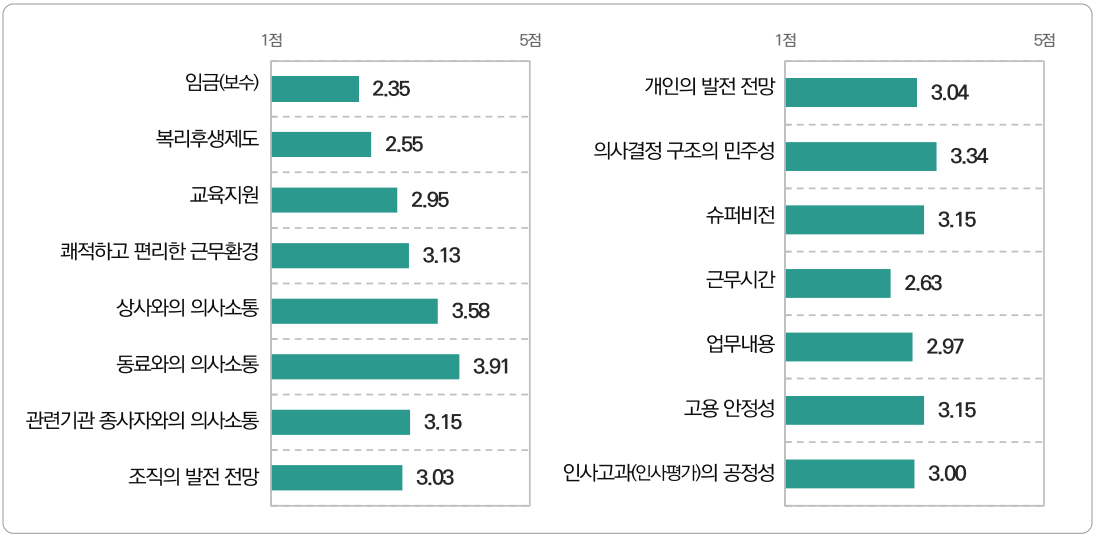
직장만족도에 대해 '매우 불만'을 1점, '매우 만족'을 5점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동료와의 의사소통'이 3.91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상사와의 의사소통' 3.58점,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3.34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임금(보수)'는 2.35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어서 '복리후생제도' 2.55점, '근무시간' 2.63점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응체계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상사와의 의사소통'이 3.96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임금(보수)'이 2.48점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만족도는 '상사와의 의사소통'과 '동료와의 의사소통'이 각 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고용 안정성'이 2.00점으로 가장 낮았다. 아동학대예방경찰관과 여성 · 청소년수사팀은 '동료와의 의사소통'이 3.67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금(보수)'가 1.94점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의 만족도는 '동료와의 의사소통'이 4.1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근무시간'이 2.29점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의료사회복지사는 '고용 안정성'이 4.50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임금(보수)'과 '복리후생제도'가 각 2.25점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마지막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보육사 등의 만족도는 '동료와의 의사소통'이 3.97점으로 가장 높았고 '임금(보수)'과 '복지후생제도'가 2.5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3-59] 직장만족도

단위: 점/5점 평균



Base=전체 137명

〈표 3-71〉 직장만족도(1/2)

단위 점/5점 평균

구분		사례 수	임금 (보수)		복리후생 제도		교육지원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상사와의 의사소통		동료와의 의사소통		관련기관 종사자와의 의사소통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37)	2.35	0.98	2.55	0.94	2.95	0.94	3.13	0.91	3.58	1.01	3.91	0.89	3.15	0.91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2.48	0.99	2.91	0.73	3.04	0.71	3.09	0.67	3.96	0.71	3.83	0.72	3.26	0.86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2.42	1.31	2.75	1.14	2.75	0.87	2.83	0.39	3.33	0.78	3.33	0.89	2.92	0.9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1.94	0.80	2.22	0.88	2.39	0.70	2.89	0.76	3.17	1.25	3.67	1.08	2.89	1.0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2.31	0.88	2.50	0.92	3.10	1.02	3.17	0.93	3.73	0.89	4.15	0.85	3.17	0.83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2.25	0.50	2.25	0.50	4.00	0.82	3.00	1.83	3.75	0.96	3.75	0.96	4.25	0.5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2.53	1.11	2.53	1.05	2.91	1.00	3.38	1.07	3.38	1.18	3.97	0.86	3.13	0.94

Base=전체 137명

〈표 3-72〉 직장만족도(2/2)

단위: 점/5점 평균

구분		사례수	조직의 발전 전망		개인의 발전 전망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슈퍼비전		근무시간		업무내용		고용 안정성		인사고과 (인사평가)의 공정성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37)	3.03	0.92	3.04	0.91	3.34	0.97	3.15	0.91	2.63	1.00	2.97	0.87	3.15	1.02	3.00	0.89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3.13	0.76	2.91	0.79	3.57	0.73	3.13	0.76	2.61	0.66	2.70	0.82	3.57	0.73	2.65	0.98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3.08	0.51	2.75	0.75	3.17	0.58	2.58	0.79	3.17	1.03	2.83	0.72	2.00	1.21	2.92	0.79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2.17	0.86	2.56	1.10	3.11	1.13	2.56	0.78	2.61	1.09	2.83	0.92	3.50	1.10	2.72	0.67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3.17	0.91	3.19	0.84	3.48	0.97	3.65	0.76	2.29	0.92	2.92	0.82	3.13	0.87	3.25	0.79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3.50	0.58	3.75	0.50	3.75	0.96	3.75	0.96	4.25	0.50	4.00	0.82	4.50	0.58	3.25	1.26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3.16	0.99	3.22	0.94	3.13	1.13	2.88	0.94	2.75	1.05	3.25	0.88	2.97	0.93	3.03	1.00

Base=전체 137명

제 4 장

초점집단면접

제4장 초점집단면접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 절차 및 내용

본 조사는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역할과 기능 및 단계별 개선점을 알아보고자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참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였다. 지난 2020년 10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의무화 및 조사 전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화라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는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의 아동보호라는 대전환이자 공공기관이 주축이 된 신속하고 공적인 대응체계의 마련이다. 현재 대응체계는 공공과 민간의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므로 각 기관 간의 상호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현장전문가들이 경험한 대응체계 이후 변화 및 단계별 현안, 개선점을 알아보았고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대응체계 모델 구축을 위한 제언을 알아보았다.

초점집단면접은 현재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 섭외를 위해 대전광역시의 협조를 받아 대응체계별 기관에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한 후, 초점집단면접 조사개요에 대해 설명하였다. 참여 의사를 밝힌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연구 참여 설명문과 동의서를 통해 참여 수락을 받은 후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하였다.

2. 조사참여자 선정 및 분석

초점집단면접은 관리자와 실무자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2023년 8월 16일, 23일 양일에 걸쳐 대면으로 진행하였다. 초점집단면접의 소요 시간은 120분~180분이었다. 연구자는 초점집단면접 시작 전 참여자들에게 조사에 대한 목적 및 내용을 소개하고 참여자들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인터뷰 내용에 대한 녹음 양해와 동의를 구한 후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초점집단면접 질문은 참여자의 대응체계 업무 경험에 관해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 변화된 점, 대응체계 단계별 역할과 기능, 대전형 모델 구축을 위한 제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Barun과 Clarke의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제 분석 방법은 질적 자료로부터 코드 및 주제를 생성하기 위한 단계적 방법을 갖춘 질적 자료 분석방법 중 하나이다(Barun&Clarke, 2006, 2017).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대응체계단계별 26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초점집단면접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총 19명으로, 나이는 최소 29세에서 최대 51세였으며, 평균 40.6세(SD 5.92)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 8명(42%), 여성 11명(58%)이었다. 직급은 시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3명, 경감 2명,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2명, 학대피해아동쉼터 원장 1명, 팀장 1명, 대학병원 팀장 1명, 파트장 1명, 교육복지사 2명이었다. 소지 자격증은 사회복지사가 17명(90%)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학교폭력상담사 1명(5%), 변호사 1명(5%)이었다. 사회복지사자격증과 함께 유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도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8명(47%)으로 나타났다. 관련자격증으로는 청소년지도사, 의료사회복지사, 교사, 심리상담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학사 11명(58%), 석사(8명(42%)이었다. 아동복지분야의 근무경력은 최단 11개월에서 최장 20년이었으며 평균 7년 6개월(SD 68.65개월)이었다. 아동학대분야의 근무경력도 11개월에서 최장 20년이었으며 평균은 6년 3개월(SD 73.65개월)로 나타났다.

〈표 4-1〉 조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그룹	ID	직급	성별	연령	학력	관련 소지자격	경력	
							아동복지분야	아동학대분야
FGI 1	참여자1	광역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여	40대	학사	사회복지사	2년1개월	2년1개월
	참여자2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남	30대	학사	사회복지사	1년10개월	1년10개월
	참여자3	아동보호전문요원	여	40대	학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	12년10개월	12년10개월
	참여자4	경감(아동학대예방경찰관. APO)	남	50대	학사	학교폭력상담사	11개월	11개월
	참여자5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여	40대	석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등	15년4개월	9년2개월
	참여자6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여	40대	석사	사회복지사, 정교사 등	7년10개월	4년9개월
	참여자7	대학병원 팀장	여	50대	석사	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20년	20년
	참여자8	학대피해아동쉼터 원장	여	30대	학사	사회복지사	16년	16년
	참여자9	교육복지사	남	40대	석사	사회복지사	14년	-
FGI 2	참여자10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여	40대	석사	사회복지사	5년1개월	1년7개월
	참여자11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남	30대	학사	사회복지사, 정교사 등	1년6개월	1년1개월
	참여자12	아동보호전문요원	여	40대	학사	사회복지사	9년	6년
	참여자13	경감	남	30대	석사	변호사	1년1개월	1년1개월
	참여자14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남	30대	학사	사회복지사	9년8개월	9년8개월
	참여자15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남	30대	학사	사회복지사	12년	5년
	참여자16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여	20대	학사	사회복지사	4년7개월	4년
	참여자17	대학병원 파트장	남	40대	석사	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16년3개월	16년3개월
	참여자18	학대피해아동쉼터 팀장	여	30대	학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12년	8년
	참여자19	교육복지사	여	40대	석사	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11년6개월	-

제2절 분석결과

분석결과 도출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단계별 26개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표 4-2〉 초점집단면접 주제 분석결과

구분	주제
1) 대응체계 이후의 변화	공공성의 강화
	안정적 기반 마련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체계
2) 아동학대 발굴	아동학대 신고의 부담감
	아동학대 대응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3) 신고접수	반항심에 의한 아동 신고율 증가
	재학대 신고의 반복
4) 사례판단	동일한 목적, 다른 판단 기준
	재판단 프로세스의 부재
	임시조치의 증가
5) 보호조치	아동권리적, 아동친화적 접근 부족
	보호조치에서 아동정보 공유와 상세한 지침 필요
	아동 특성에 맞는 보호 필요
6) 사례관리	원활하지 않은 사례 모니터링 협조
	상담교육 참여에 비자발적이고 거부적인 학대가정
	회복을 위한 가족 참여의 중요성
	심층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원 역량 강화 필요
7) 사례종결	공공연계회의를 통한 사례점검 및 종결
	원활한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노력과 시도
8) 대전형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위한 제언	대응방식의 일원화
	정기적이고 일원화된 소통체계 필요
	안정적 인력배치 및 전문성 강화
	재학대 개입 및 예방
	실효성 있는 학대 예방교육의 강화
	실질적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신고의무자 보호방안 강구

1. 대응체계 이후의 변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은 신고접수부터 사례종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들이 각각의 역할을 맡아 상호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한다는 업무적 특성이 있다. 현장대응에 참여하는 주요 기관으로는 경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쉼터, 아동보호전담요원 등이다. 이외에 아동학대 사건이 기소되면 검찰, 법원의 판단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병원과 학교는 학대 발굴과 모니터링에 중요 역할을 하는 기관이었다.

조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공공성이 강화되었고 이전보다 안정적 대응을 위한 인력지원과 피해아동쉼터 확충 등의 지원책이 마련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체계가 정착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종종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역할 및 기능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 공공성의 강화

참여자들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 변화된 점에 대하여 무엇보다 아동보호업무에 대한 국가 책임의 강화, 정당성 확보라고 하였다. 이는 정확한 지침 하에 신속한 대응과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했고, 역할이 세분화됨에 따라 맡은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실무자들은 새로운 체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공공 대응체계 수립에 대해 환영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화가 되니까 뭔가 정당성을 가지고 뭔가 정확하게 지침을 가지고 아이의 결정이라든지 그걸 체계적으로 좀 진행을 한다, 즉각적인 조치가 바로바로 대응이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참여자 5)

> “아동 학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이 훨씬 강화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논의 되어서 훨씬 활발하고, 이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역할이 세분화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 부분에 집중이 될 것 같아서 나아진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참여자 6)

2) 안정적 기반 마련

실무자들은 초기 대응체계 수립 단계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었다고 하였다. 유관기관이 많아져 어디에 소통을 해야 할지,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바뀌면서 이제 기관이 많아졌어요. 유관기관들이. 저희가 이제 연락을 하고 이렇게 조율해야 되는 기관들이 많아지고 저희가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논의 사항이 생겼을 때 구에다 전화를 하거나 이러면, 아보전에다가 상의를 해라. 아보전에 전화하면 구랑 이거는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게 좀 명확하지 않았던 게...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저희도 이제 기준을 잡고...지금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참여자 8)

실무자들은 공통적으로 안정적인 체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시의 인력지원이 주요하였다고 하였다. 대전광역시에서는 각 구청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추가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구별로 상담원 2명씩을 추가 지원하였으며, 실무자들은 이 점을 대전광역시의 장점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장점이라고 하면 아동학대 대응 인력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거죠. 아동학대 담당공무원이 구청별로 이제 4명에서 많게는 7명 정도 추가가 되고, 플러스해서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있어요. 적게는 두 분 많게는 네다섯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1)

"아보전 입장에서는 (시에서) 구마다 2명씩 지원을 해주셔서, 1인당 저희 3개 아보전에 조사를 했을 때, 30가정 맞춤형인. 모든 세 아보전이 맞춤형. 대전광역시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자 5)

"저희가 사례 수를 30건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시에서 구별 지원 인력을 2명씩 보충해 주기 때문에..." (참여자 16)

대전광역시의 또 다른 중요한 지원은 자치구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설치 지원이었다. 이에 맞추어 쉼터 자체적으로도 리모델링을 하여 아이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보호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에 따른 협력체계 구성, 인력 증원과 보호시설 확충의 인프라 구축은 대응체계의 안정화를 이끌었다. 실무자들과 유관기관들은 공공화 된 대응체계를 통해 신속한 대응과 빠른 조치, 보다 심도 있는 사례 접근 등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딱 체계화되면서, 갖춰질 게 추가로 갖춰지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남녀 하나씩 생기는 바람에 빠르게 조치할 수 있고...쉼터 자체에서도 리모델링을 꾸준히 시설보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이...아이들이 초반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아예 쉼터 개소한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참여자 3)

"좀 더 심도 있게 또 경찰에서 단독으로 전화하고 이렇게 알아보는 것보다는, 이제 구청하고 또 이렇게 쉼터라든지 아보전이랑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그런 콜백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참여자 4)

"체계들이 마련된 후에는 먼저 신속해졌다, 굉장히 빠르게 이제 반응을 해 주신다, 이제 저희가 발견하고 신고했을 때 신속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이 치료 과정을 훨씬 더 원활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7)

3)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체계

한편 대응체계에서 아직 완전한 정착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신고접수부터 사례관리까지 상시 역할을 하는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쉼터→아동보호전문기관은 비교적 바뀐 체계 속에 안정을 이뤄나가고 있었다. 반면 대응체계 내 활동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검찰이나 법원 등에서는 아직 바뀐 대응체계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는 학대피해 발굴, 피해아동 모니터링에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체계에서는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된 대응체계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내부적, 저희끼리는 이제 잘 아는데 거기에 자주 들어오지 않으시는 학대피해아동쉼터나 학교나 법원 이런 데서 이제 저희 역할을...양육 시설도 이제 이 대응 체계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잘 모르시기도 하더라고요. 아니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저희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바뀐 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모르신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네요." (참여자 1)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가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이런 대응 체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소통 체계는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학교가 느끼는 지금, 어떤 아동 학대의 어떤 대응 체계는 옛날하고 크게 달라진 건 솔직히 없다라고 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 9)

연구참여자들은 초점집단면접 동안 가장 빈번하게 이야기 한 것은 소통의 어려움 이었다. 또한 대응체계 단계별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대응체계 간에 서로 책임을 넘기거나 대화에 어려움이 생기는 원인이 되고 있어 보다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실무자들은 현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대응체계가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기관이 많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점..." (참여자 1)

"체계가 많이 서로서로 업무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소통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참여자 3)

"저희 상담원이 여기 기관에 전화해서 얘기하고, 또 저쪽 기관에 전화해서 얘기하고. 다시 들어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 이게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참여자 5)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하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세세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애매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대응체계가 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10)

"여러 기관들 수많은 기관들이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 업무 간에 어떤 서로 간의 책임 역할을 서로 이렇게 넘기는 과정도 있고. 또 대화가 안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좀 차차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자 2)

2. 아동학대 발굴

신고의무자는 민감성을 가지고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거나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아동과 밀접 접촉을 하는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의 신고의무자들은 누가 신고를 했는지 추측 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어, 신고를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때로는 신고를 한 후, 이후의 절차나 진행사항에 대한 알고 싶으면 어디에 궁금한 점을 알아볼 수 있는지,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답답함을 느낀다고도 하였다.

1) 아동학대 신고의 부담감

어린이집, 학교, 병원은 대표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 및 아동학대 징후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신고의무자의 적극적 대처가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나 어린이집, 병원 등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여전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아동을 치료한 의사, 아동과의 접촉 시간이 긴 어린이집과 학교 선생님들은 신고가 들어가면 신고자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로 인한 개인의 노출과 보복의 두려움이 커서 신고를 꺼린다고 하였다.

"학교, 그다음에 어린이집. 되게 저희가 예방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관인데도, 이게 누가 신고했는지 너무 잘 드러나서...병원의 자료가 너무 명확해서...너무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 누가 신고했는지 명확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움이 많으시고."(참여자 1)

"의료진들이 요즘 이제 신고를 꺼려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보복, 귀찮은 업무로 신고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고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발견을 못 해요." (참여자 17)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에 담임 선생님이 상담 기관이나 교육복지사 선생님이 아동 상담하시면서, 또 위클래스에서 발견을 한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신고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참여자 6)

2) 아동학대 대응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학교는 아동의 일상에서 중요하고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응체계에서 무척 긴밀할 수밖에 없는 유관기관이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와 교육청이 아동학대에 대해 미온적이고 대응절차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각 학교의 절차나 학교장의 성향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현재 학교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프로세스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학교 측에서도 대응체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 이후 처리 결과나 진행과정이 궁금해도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지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 "교육청에 요청을 드릴 때는 약간,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보다는 이렇게 나서지는 않으시거든요. 적극적이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학교의 특성상 이제 교육청이 이제 관할을 한다 라기 보다, 각 학교에 이제 뭔가 권한들이 있다 보니까..."(참여자 1)

> "학교장한테 보고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학교 내에서 신고하는 것 자체를 매우 이제 두려워하는 학교장님이 계시는 거죠. 그게 또 이제 지연되고..."(참여자 6)

> "학교에서는 어느 곳에 이제 신고를 하던 그거에 대한 이런, 쭉, 일련의 과정들이, 마무리되는 과정들이, 과연 어디하고 소통해야 되는지, 그런 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참여자 9)

> "학교에서 굉장히 큰 걱정을 하시면서, 이제 (아동이)퇴소하고 난 이후에도 저희한테 전화가 올 때도 있거든요. 학교 측에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저희한테 항상 얘기하시는 게 어디다 대체 연락을 해야 되냐...학교 측에서도 정보가 좀 소통이 좀 안 되니까 굉장히 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참여자 8)

3. 신고접수

연구참여자들은 최근 '아동 본인에 의한' 신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었다. 아동 신고율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되고 있어 아동의 자기보호 행동이 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연구참여자들은 반항심으로 신고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하고 있었다. 또한 재학대 신고도 꾸준하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무자로서의 회의와 고민도 깊다고 하였다.

1) 반항심에 의한 아동 신고율 증가

최근 아동 본인의 신고율이 부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 실무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중 상당수가 부모에 대한 반항심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로 사춘기에 부모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주된 이유였다. 아동들 사이에서는 친구들끼리 아동학대신고를 하여 부모에 대한 협박의 수단으로 삼으라고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신고는 막상 부모와의 분리조치에 대해 아동이 반발하고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였다. 실무자들은 아동 스스로 자기보호를 위해 신고할 수 있어야 하지만, 순간의 감정에 의한 신고는 그만큼 책임도 뒤따른다는 점과 아동학대 사안의 무거움을 알려 신고가 오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걱정하고 있었다.

> "보호체계와 상관없이 아동 본인에 의한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참여자 14)

> "우려되는 점은 이제 애들이 진짜 위험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부모님을 약간 협박하는 식으로도 많이 좀 쓰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도 상담을 하다 보면 걔가 뭐만 하면 신고한다고 한다...애매한 사례인데 사춘기 아이들이 반항심에 분리해달라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진짜 급박하게 분리할 정도의 그런 사례들은 없고 아이들이 이제 반항심이나 엄마한테 이제 화났으니까 보기 싫다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여자 15)

> "학교는 이미 소문이 돈대요. 너네 엄마가 용돈도 안 주고 너 스트레스 받게 하냐, 신고해. 그게 이제 아이들끼리 도는 하나의 루트라고 하더라고요. 악용되는 수단으로도 좀 쓰이는 것 같은 게 좀 요새 몇 건씩 있어요." (참여자 11)

> "아동들이 말 그대로 본인이 신고를 해놓고 (부모와의 분리를)본인이 거부하고 울고 있으니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이제 애매한 그런 케이스들은 아동들이 자기네들이 갑자기 완강히 거부를 하면 왜냐하면 사춘기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순간적인 감정에 신고를 해서..." (참여자 11)

2) 재학대 신고의 반복

반복되는 재학대 신고는 현장 실무자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 실무자들은 쳇바퀴 돌듯 신고가 반복되고 또다시 학대 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현실, 성심을 다해 사례관리를 했지만 또다시 재학대가 발생하는 현장을 목도하며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회의감과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실무자들은 원가정 복귀를 시킬 때도 재학대에 대해 불안한 마음이 있고, 재학대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려고 한다고 하였다. 재학대를 방지하려면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매뉴얼상으로는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는 종결 후 3개월 간 월1회 가정방문해서 확인하는 정도로 끝이 난다. 하지만 그 정도로 재학대의 위험을 낮추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사례를 연계한 건 중에서도 또다시 재학대 건이 발생하면 또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이클처럼 돌아요... 또 발생을 해서 다시 챗바퀴처럼 다시 신고가 들어와서 또다시 학대 판단을 하고 넘어가는 건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좀 그런 회의감이 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참여자 11)

"상담원들도 이제 직접 그 가정을 만나는 입장에서 재학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에 이제 본인의 책임은 아닌가, 내가 뭘 놓친 건 아닌가라는 이유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들 해요." (참여자 16)

"원가정 복귀할 때 재학대가 일어날 거라는 가능성을 저희는 다 안고 원가정 좀 복귀를 시켜요. 다시는 학대가 안 일어날 거야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사후 관리가 저희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매뉴얼에는 웃기게도 원가정 복귀 후 4회 가정 방문 후 종결이에요. (참여자 12)

4. 사례판단

연구참여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은 사례판단이었다. 아동학대 방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법원 등은 각각의 역할과 시각으로 사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고 있었다. 학대 판단이 애매한 경우 더욱 그러하였다. 어떤 담당자는 학대 판정을 내려야 사례관리가 되므로 복지적 측면에서 학대 판단을 하고, 어떤 담당자는 학대판단을 할 경우 학대가정이라는 낙인을 우려하여 일반사례로 판정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사례관리를 하면서 왜 학대사례일까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사례관리가 필요해서 자치구에 조치 변경을 요청했지만, 구청과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전담공무원의 판단과 이후 법원의 판단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이럴 경우 재학대 판단이 필요한데, 재학대 판단을 위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1) 동일한 목적, 다른 판단 기준

연구참여자들은 신고 사례에 대해 학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그에 따른 판단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계 간의 사례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경우는 주로 경미한 학대로 판정이 애매한 경우에 신고 된 가정을 학대로 판단하는 경우 고충이 있었는데, 개선과 재학대 예방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학대판단을 해서 오히려 학대가정이라는 낙인만 생기는 것은 아닌지의 딜레마로 고민이 깊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판단차이에는 일반사례, 학대사례 둘 중 하나로만 판단해야 하는 이원화된 판단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어느 정도, 현장 판단이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하라는... 좀 재량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참여자 1)

"법원에서 그냥 직권으로 추후에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는 학대 기록까지 남길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이제 판단의 입장에서는 학대로 무조건 잡기에는 항상 고민인 거죠. 이 가정은 어쨌건 행위자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일반으로 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학대 판단으로)이렇게 오는 경우가 대부분..." (참여자 2)

"대부분 이렇게 사례 관리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데 이제 이거를 조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담당 공무원과 사례관리자의 의견이 다를 때가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참여자 15)

"학대는 아니지만 사례 관리가 필요한 아동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동을 학대로 넘겨야만 사례관리가 또 되고, 심층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여자 10)

"이원화된 거, 일반이냐 학대냐 두 가지를 놓고, 이거는 뭐다 이건 뭐다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참여자 10)

2) 재판단 프로세스의 부재

현재 매뉴얼 상에는 필요시 재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재판단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재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전담공무원이 일반사례로 판단하였으나 추후 법원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보호처분명령에 의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가 넘어올 때 그러하다. 전담공무원이 최초 판단한 시점과 법원의 판단에는 상당한 시일의 차이가 있어 전담공무원은 이전 사례를 확인해 봐야만 알 수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일반사례였기 때문에 사건번호가 없어 전산에 입력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재판단이 필요한 사례를 상호 확인하고 처리하는 프로세스 또한 필요하다.

"저희가 다 학대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일반 사례로 했는데 추후에 임시 조치가 내려왔다든지 법원에서 직권으로 내려왔다든지 그런 경우..." (참여자 2)

"보호 처분이 시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담당이 바뀌거나 하면, 못 챙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일반 사례인데 보호처리 된 건지는 좀 찾아봐야죠. 저희도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니까." (참여자 2)

"그러면은 이게 행위자에 대한 DB(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건번호가 없으니까." (참여자 6)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았는데 임시 조치나 이미 수사가 넘어가서 법원에서 판단해서 내려오는 케이스가... 저희는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아동학대로 보시고 내려와서 저희는 상담을 진행해야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져서 저희가 서비스를 별도로 드릴 수가 없거든요.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에는 아동학대에 판단된 사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거기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대상자가 뜨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이제 페이퍼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예산 사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돼요. 이분들은 학대행위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수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참여자 5)

3) 임시조치의 증가

대응체계에서는 임시조치가 권장되고 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조치가 내려지면 개입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임시조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요즘 임시 조치가 무조건 일단 들어가는 추세로 바뀐 것 같아요."(참여자 2)

"임시조치를 많이 하라고, 일단 권장은 되고 있습니다." (참여자 4)

"저희도 요청을 드리는 상황이에요. 들어오면은, 저희도 개입이, 임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특히 가정 폭력 같은 것들은 개입이 어려우니까, 임시 조치를 적극 요청하고 있어요." (참여자 2)

"사실 얼마 전에도 임시 조치를 많이 때려주세요, 하는 이유는... 저희가 임시 조치로라도 행위자에게 떨어져야 행위자를 교육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는 저희가 설득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임시 조치를 계속 요청하는 거고..." (참여자 6)

5. 보호조치

아동의 보호조치는 아동에게는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원가족과의 분리라는 커다란 충격을 주는 사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리 보호조치를 할 때는 보다 아동의 입장에 서서 아동권리적이고 친화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호조치 시 아동의 건강이나 중요 특성에 대한 정보파악이 선행되고 보호시설에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도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아동 보호조치 시 아동응대 방법에 대해 담당자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관된 지침을 마련하여 아동 친화적인 접근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아동 보호에 있어서는 아동의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치료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 아동권리적, 아동친화적 접근 부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주로 야간이나 응급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분리조치부터 보호배치까지 많은 일들을 일일이 발로 뛰며 처리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입장에 서서 보다 권리적이고 친화적으로 아동을 안심시키고 보살피는 일은 쉽지 않다고 했다. 좀 더 아동권리적, 친화적 접근으로 아동을 대하려 마음먹지만, 현실에서는 최소한으로만 안내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였다. 한편, 아이들은 보호자와 분리된다는 너무나 낯선 상황 앞에, 보호조치에 대해 설명을 듣고 확인서에 서명을 했어도 그게 무얼 뜻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학대 아동의 분리·보호조치에 있어, 아이들을 위한 권리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지침이 필요하다.

"매뉴얼 상에 관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안내하도록 매뉴얼 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어... 그거를 다 이렇게 읽어가기에는 어렵죠. 상황이. 최소한의 것들은 다 고지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거는 민감하게 하는 편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은 사실 저희가 분리할 때 거의 응급성이고 밤이나 새벽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종이를 딱 주고 읽으라고 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에요. 이제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가면서 쉼터에서 내려주고 신병인수인계 받을 것 받고 그 시점에서. 분리 보호 동의서 받고 그러면서도 얘기는 하는데... 챙겨야 할 거 처리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특히 아동에 대한 그런 권리적인 측면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해야 되는 건데. 그건 또 그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지침이 어떻게 어떻게 해라 다 돼 있어도 최소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여자2)

"(아이들이) 진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자기가 사인도 했는데도 나 들어본 적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여자 16)

"옆에서 분명히 설명을 하세요. 설명하시고 서명도 받으시고. (그러나 아이들은) 올라와서는 못 들었다고..." (참여자 8)

2) 보호조치에서 아동 정보 공유와 상세한 지침 필요

담당자에 따라 보호조치 아동에 대한 응대 방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조치 되는 아동들은 자기를 도와주는 전담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높을 수밖에 없다. 보호조치 이후 전담공무원을 다시 만날 수는 있는 것인지, 보호기간은 얼마나 될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안내가 아이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현재는 담당자에 따라 아동 만남이나 안내가 각기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설명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 조치 시 아동에 대한 건강상태, 투약 여부, 특이사항 등의 정보 파악이 선행되고 보호아동 인계 시 이러한 정보도 함께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침도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를 했을 때 제일 처음 대면하는 선생님들이 공무원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아이들은 일단 있어요." (참여자 8)

"어떤 분은 아예 안 오시고 전화로만 아이 잘 지내나 이런 걸 확인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꼭 와서

아이를 직접 대면하고, 이런 뭔가 소통을 계속 와서 직접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뭔가 그런... 분리 조치한 공무원이, 그분들이 오시는데 어떤 구마다 좀 차등이 있어가지고..." (참여자 8)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어요. 그거는 아까 민감도라고 해야 되나, 담당의 어떤 성향에 좀 많이 좌우되는..." (참여자 2)

"이제 아이들이 보통 뭐, 3일 있으면 3일만 있다가 집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또는 이번 주말만 있으면 간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되게 짧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큰 생각은 말고 일단 너도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천천히 알아봐 줄 테니까 기다려 달라, 라고 말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참여자 8)

"쉼터도 정보 공유에 되게 문제점을 어려운 점을 겪고 있긴 하거든요. 아동이 왔는데 이 아동이 처음에 긴급하게 좀 왔어요. 얘는 약을 복용하는 아이인데 저희는 그런 정보를 잘 못 듣고 아동을 케어하다 보면 아동이 저혈당이 온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긴급하게 병원으로 가서 그제서야 아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참여자 18)

3) 아동 특성에 맞는 보호 필요

현재 자치구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마련되어 있어 이전보다 보호가 훨씬 용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성향과 처한 상황에 맞춰 자치구의 경계를 넘어서는 유연한 보호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시보호쉼터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구분, 아동의 연령을 고려한 쉼터 배치, 기존 쉼터에서 감당하기 힘든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아동이나 집중적으로 치료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서 치료보호시설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영유아가 많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36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왔을 때 일반 쉼터 같은 경우는 그 아이에 대한 물품도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애기 오기 전에 갑자기 기저귀 사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3)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일시 보호로 지금 계속 가다 보니까 주소 이전은 안 된 상태이고 아동이 그래서 본인의 집도 다 알고 부모님은 아동이 학교를 전학을 하지 않았으니 학교에도 언제든지 부모님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도 되거든요. 직원들도 이제 그 아동이 원래 다니고 있던 학교를 등하교를 계속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업무 부담이 더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쉼터가 아동의 심리를 치유하고 심리상담사가 있다는 점을 좀 더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18)

"너무 힘든 케이스 아이들이 있으면 오히려 탈락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저희 예를 들자면 저희가 지금 장애아동이 한 명이 있고 심한 ADHD 아동이 두 명 있어요. 그 두 아이가 맨날 싸워요. 정말 시끄럽게. 근데 고3 아이가 한 명 들어오겠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 TO는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이 두 아이가 굉장히 시끄러워서 이 아이가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근데 ** 자치구이기 때문에 **자치구에 넣겠다고 해서 일단

넣었어요. 3일 만에 이 아이가, 나 시끄럽고 얘들이랑 못 살겠다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탈락이 됐어요. 정말 안타까웠고...구별로 이렇게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8)

"폭력적이고 자해의 위험이 있고 동성애 문제가 있고 매일 비행을 하고 음주에 폭행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받아주실 시설이 있나요?... 없어요. 사실 누가 받아주겠어요...없어요...치료 시설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12)

6. 사례관리

대응체계가 공공화 되면서 현장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사례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사례관리 과정에서는 아동의 일상과 밀접한 어린이집이나 학교와 같은 상시등원기관을 통한 사례 아동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그러나 모니터링 협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교육 참여에 비자발적이고 거부적인 학대가정에 대한 개입의 어려움이 있었다.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심층사례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나 높은 이직률은 역량 축적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1) 원활하지 않은 사례 모니터링 협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교육과 상담시간 만으로는 사례관리 아동이 잘 지내는지, 재학대 징후는 없는지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시등원기관인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모니터링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시등원기관에서는 부모는 행위자라기보다 보호자이므로, 보호자 이외의 외부기관이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청하면 부모에게도 알려야 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부모에게 아동모니터링이 알려질 경우,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비밀 모니터링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학교에서는 절차에 따라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제도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피해아동이 거부한다거나 학대행위자가 아예 아동을 못 만나게 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거부하는 가정은 어쩔 수 없이 상시 등원 기관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참여자 6)

"상시 등원 기관에 모니터링을 요청할 때, 저희는 사전에 공문을 들고 직접 찾아뵙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요청드리는 이유와, 이 아동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 차원이나 상시

등원 기관은 그것마저도 좀 부담이다 보니 저희를 만나는 걸 거부하시거나, 혹은 저희가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행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여자 16)

"아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라든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학교에서 내 아이가 학대피해아동이라는 거를 노출시키는 거에 거부적인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럴 땐 저희가 학교에다가 비밀 보장을 요청하고 아이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좀 확인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문으로 보내드리고. 근데 이게 비밀 보장이 잘 안 되고, 다시 부모님이 오늘 학교에 전화했다는 걸 알게 돼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게 좀 많아서… 그 선생님도 잘못된 게 아니라…저희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냐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니까 알아야 된다고, 본인은. 교육체계에 보면 아동과 상담을, 외부인이 와서 상담했을 때 그걸 그 부모님한테 알리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여자 5)

2) 상담·교육 참여에 비자발적이고 거부적인 학대가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에 관한 고충은 거부적인 가정, 비자발적인 가정에 대한 참여 유도가 어렵고,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참여에 대한 강제적 권한이 없다보니, 깊이 있는 사례관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호조치나 임시조치에 따른 상담 위탁이 상담이 진행되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보이는 비율은 낮다고 하였다.

"아무래도 행위자분들이 자발성을 띄고 저희 사례관리에 참여하지는 않으시다 보니까 보호 처분이나 임시조치에 따른 상담 위탁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사실 그 상담 위탁으로 보통 보호 처분 15회기 진행이 되더라도, 거의 초반 3~4회기는 거의 분노만 표출하시다가 돌아가는 경우들도…실질적으로 정말 변화가 있는 가정은 정말 10가정 중에 한두 가정이 있을까 말까…" (참여자 14)

"거부적인 가정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들이 많이 없고 또 강제적으로 하면 그만큼 또 거부적이 돼요. 사례 관리를 해도, 깊이 들어갈 수가 없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참여자 15)

"아보전에서 사례관리를 해라라고 하면서 그 법적인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 가족 구성원이나 피해아동, 행위자는 성실히 임해야 한다 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냥 임해라라는 권고 사항이지 그것을 강제하거나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나 행위자임에도 보호자라는 이유로 아동을 만날 때 행위자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고 이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참여자 16)

3) 회복을 위한 가족 참여의 중요성

사례관리에 자발적 참여율이 낮고 효과성이 적더라도 아직 학대가정의 변화에 대한 희망은 있었다. 실무자들은 가족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경우 사례개입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대응체계의 관계자와 가족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개입에 관해 설명도 하고 가족들의 욕구도 듣는 가족 팀회의 형태가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가족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면서 스스로도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부모교육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아동들은 학원가기 바쁘고, 부모들은 생계를 위해 일을 우선시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이 같은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제 부모 교육할 때 같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이랑 같이 와서 어머님 이렇게 훈육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도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왜냐하면 자기도 건강한 훈육을 받는 게 당연히 좋은데. 그 훈육을 위해서 나도 이렇게 맞춰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부모님들이 대부분 일을 하고 아이들은 저녁에 학원을 가고, 이게 다 맞으려면, 방학에다가 어머니 아버님 일을 안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생계에 항상 치여서..." (참여자 15)

"가족 팀회의라고 해서, 이제 그, 피해아동 가족하고 그리고 저희 아보전 상담원하고, 이제 전담 공무원이 같이, 이제 한자리에 가정에 모여서, 이제 이러한 사유로 이제 신고가 돼서 학대로 판단이 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할거다 라는 부분들 설명하고, 가족들이랑 같이 좀 원하는 욕구나 가족들이 스스로 자기 의견들을 좀 표현하다 보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다툼이나 싸움도 발생하지만. 좀 그런 의견들을 좀 표현을 하니까 그나마 조금 본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14)

4) 심층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원 역량 강화 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만을 전담하게 되면서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에 애쓰고 있었다. 심층사례관리는 고난이도의 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서의 이직률이 높고 개인적인 역량의 차이도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다. 경험과 역량을 꾸준하게 쌓아올려 전문성을 갖춘 상담원 확보가 절실하다.

"아동보호기관이 한때 이제 이직률이 60%까지... 오래 근속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현장 조사도 엄청 중요한 초기 조치 기간이지만, 그 이후에 마무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마무리할 수 있는 상담원의 능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뛰어나야지, 아이들 안전을 마무리를 좀 안전하게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사례관리 내에서 이제 끌고 가는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좀 해보니까 고난이도긴 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어쨌든 역량 강화는 계속 꾸준히 필요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고요." (참여자 15)

"이제 상담원들이 직접 가정에 이제 심리 치료만큼의 전문성은 아니더라도 이제 직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오히려 좀 그런 업무량이나 교육들도 많아지면서 좀 약간 좀 상담원들의 소진이 좀 이전보다 더 빨라졌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참여자 14)

"심층 사례관리 기관으로 바뀌면서 일단은 중점으로 둔 게 상향평준화를 시키자는 거예요. 상담원마다 역량이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역량을 줄이는 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참여자 5)

7. 사례종결

실무자들은 사례 관련이나 종결 결정을 위해 공공연계회의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공공연계회의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자치구청 담당자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한다. 무엇보다 사례종결에는 성공적인 원가정복귀가 담보되어야 한다. 자치구마다 적용 방법은 달랐으나, 앞으로 사례관리를 맡을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참여시켜 대상 가정이 익숙해지도록 하는 등 원활한 종결 전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1) 공공연계회의를 통한 사례점검 및 종결

구청과 아동보호전담기관과의 사례 논의, 종결 논의 등은 주로 공공연계회의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늘 대면회의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서면자료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이랑은 한 달에 한 번씩 공공연계회의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사례 논의도 하고, 종결 논의도..." (참여자 15)

"종결회의 때는 이제 종결 보고서라는 서류를 작성을 해서 이제 그간에 이제 어떤 서비스 계획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대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됐고 몇 회에 제공됐다 그런 정량 정성적인 내용들을 작성해서 공유는 해드리는데 근데 어쨌든 그게 세세한 내용 하나하나까지는 기록이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추가로 요청하시는 경우들이 있지만 대부분 종결 회의 때는 어쨌든 그 자료 종결 보고서 자료로 갈음되는..." (참여자 14)

2) 원활한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노력과 시도

실무자들은 성공적인 원가정복귀를 위해서는 원가족프로그램에 대상자 가족을 모두 참여시키는 것과 가정복귀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 사례관리를 담당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참석하여 대상 가족과 친밀감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원활한 사후 모니터링이 되고 원가정 복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 노력은 모두 동일하지 않으며 자치구와 담당자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고 하였다.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돌리고 공공 연계 사례 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그 가정을 다 참여시켰어요. 참여를 시키고 똑같이 회의를 진행을 했고 발언을 시키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의 향후 계획과 의견까지 다 듣고...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아이가 이 시설 안에서 더 문제를 일으킬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가정이 개선이 되지 않았지만 좀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좀 한번 보여주고 가정 복귀를 시킨 적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공공 연계 사례 회의에 그 과정을 다 참여시켜서 이거에 좀 사안의 무거움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참여자 12)

"저희 구는 원가정 하고 프로그램을 할 때 저희아동보호전담요원이 같이 들어가서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부모님 만나고 아이 상담하고 이게 같이 하는데 타구 또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구마다 조금..." (참여자 12)

8. 대전형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위한 제언

1) 대응방식의 일원화

연구참여자들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원활한 정보 공유와 판단의 차이를 줄이고 유연한 자원 활용을 위해 대전광역시 차원의 컨트롤 타워 기능과 일관된 대응방식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대전광역시는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개의 자치구청과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자치구별로 절차, 서류 등이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두 자치구의 서류와 절차를 맞추는데 소요시간과 부담이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민원응대에서도 자치구나 담당자마다 대응이 달라 이 또한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단계별 진행에 따라 공공에서 민간으로 담당자가 바뀌고, 민원 응대도 이에 따라 담당자와 담당기관이 바뀌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은 담당자가 바뀌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민원을 전달 받아 처리하는 담당자 또한 앞에서 어떤 안내를 했는지 정보가 없어 안내나 대응에 혼란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민원이 심화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업무지침과 민원응대에 있어 일원화된 지침과 응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그리고 각 구청마다의, 이제 업무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다르기도 해서. 그거를 여러 구청과 상대하는 시설의 입장에서는 이 구청에서 이걸 요구했는데, 이 구청에서는 필요가 없고. 또 이 구청은 또 이거 다른 걸 또 요구하시고. 그리고 구청마다도 다르고 담당자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참여자 1)

"그래서 어느 기관과 소통할 때도...모든 것이 이렇게 통일성을 갖춰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절차라든지 필요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조금 간편하게 획일화돼서 서로 똑같이 정해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참여자 3)

"지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업무를 하는, 똑같은 업무를 하는 기관이지만, 사실 세 기관이 실제 수행하는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고. 구도 같은 업무를 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구마다의 성격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2개 구와 함께 일을 하는데, 이제 조금씩 차이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구 주도로 가다 보면 구만의 특색에 따라서 조금씩 지역마다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것들을 하나로 모집해서 좀,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16)

"사례 관리를 진행하다 보면서 계속해서 좀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민원 대응에 대한 부분도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게 이전에는 사실 조사와 사례 관리를 진행하다 보면 한 기관에서 민원을 감당하면 됐지만 지금 이제 조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민원들이 이제 사례 관리 과정에서까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이 분산돼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각 기관별로 이제 민원에 대해서 다르게 대응되는 경우가 있어서 대상자가 혼란을 겪게 되고 오히려 더 민원이 심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민원 대응 과정에 있어서도 좀 뭔가 체계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참여자 14)

"가능할 수만 있으면 광역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어,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돌리는 게 훨씬, 전문성도 있고, 그리고 여러 인력 낭비 안 하고. 예산 부분도 있고. 오히려 더 신속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또 한 기관의 같은, 이렇게 공유의 문제 소통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한 건물 안에 같이 있었을 때 훨씬 감소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10)

2) 정기적이고 일원화된 소통체계 필요

초점집단면접에서 실무자들이 가장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소통의 문제였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여러 유관기관들이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소속, 업무스타일. 각 단계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차원의 일원화된 소통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여러 협의체, 위원회, 간담회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모임의 활용, 새로운 모임 구축, 실무자협의회 신설 등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대응체계 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정기적이고 일원화된 소통체계 필요성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있었다.

"굉장히 많은 또 협의체, 위원회 간담회 회의들이 되게 많고 각 기관마다 주최를 다 하고 있거든요. 법원도 경찰도 저희도 구도, 아보전도, 이제 병원도 그렇게 하고 있으세요. 뭔가 통일하고 싶은데... 정기적으로 한꺼번에 확 모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기는 좋겠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다 기관마다 실적들이 다 있다 보니까 참 그것도 애매하고... 그리고 아보전이랑 자치구는 월 1회 이상은 만나실 거예요. 꼭 모이셔야 되는 그런 자리도 있고..." (참여자 1)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대로...공공 연계 사례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소통이, 면대면 소통에 대한 그런 좀 정기적인... 그런 회의들을 좀 많이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참여자 14)

"시스템적으로 공유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결국엔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정기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모임이) 있다면 있을 수 있겠죠. 뭐, 정보공개 협의체도 있고 뭐... 이런 자리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사실상 정확하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현 시스템에서." (참여자 2)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자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좀 뭔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참여자 14)

3) 안정적 인력배치 및 전문성 강화

연구참여자들은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전문성 구축을 위해서는 적정수의 인력 지원의 유지와 안정적인 인력배치를 바라고 있었다. 무엇보다 잦은 인사이동은 피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통해 전문성과 실천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안정적인 인력배치와 전문성 강화는 현장 실무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소진을 방지하며, 결과적으로 아동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동 학대를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담당자의 굉장히 많은 부분 역량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인사이동이 어쩔 수가 없게 1~2년 안에 인사 이동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에 권고는 하고 있지만, 자주 바뀌시거든요." (참여자 1)

"시에서 지원해 준 상태예요. 인력을, 2명씩. 이런 지원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그리고 근무 환경, 급여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안정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상담원들의 퇴사율이 낮아지고, 더 오래 근무하면서 좀 더 질적 사례 관리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참여자 15)

"지자체 전담 요원이 인력이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아동학대가 이제, 밤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작년에 지구대에 있었는데, 혼자서 나오시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좀 안 되고. 오히려 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경찰력이 더 투입돼야 되는..." (참여자 13)

"일을 해보니까 전문적인 지식과 법적인 지식과, 또 이런 처분에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이 전문성이 쌓이지 않고, 또한 민원 대하는 데 전문성이 쌓이지 않으면 정말 하기 어려운 법이고, 정말 소진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문관 제도나 그런 처우 개선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4시간... 밤낮없이 집도 못 가고 이렇게 근무해야 되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혼자 출동할 때가 사실은 많아요. 굉장히 위험 부담을 많이 안고 출동하는 거지만, 혼자 출동하지 않으면 6명이 돌아가면서 하면 정말 이틀에 한 번씩 집에 못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불가피한 방법을 쓰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컨트롤 타워 역할이 있다면...또한 우리 처우가 개선된다면, 그것 역시 우리 아동들의 권리나 서비스 보장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동의 바른 성장을 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자 10)

"학교에 있으면서 많이 신고도 하고 이제 선생님들(전담공무원 등) 모시고 했는데. 이게 너무 자주 바뀌세요...

너무 자주 바뀌는 게 저는 조금 좀... 이게 다 현장 경험이고, 그런, 실천지혜가 축적이 돼야 그만큼 현장의 대응력도 있고, 전문성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야 하니) 막 이렇게, 그게 조금 아쉽다. 그래서 선생님들 인력도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됐으면 좋겠다." (참여자 19)

4) 재학대 개입 및 예방

연구참여자들은 반복되는 재학대에 대한 개입 및 예방책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응체계 내에서 실무적인 개선책으로는 사례관리 중 발생하는 재학대 신고에 대한 통보 시스템, 일반사례였다가 법원의 학대판단으로 재판단이 필요할 때의 프로세스, 상시등원기관들과의 협력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궁극적인 재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반복되는 재학대 사례에 대한 처분이나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재신고가 돼서 분리된 상황이었을 때는 그 아보전에 또 통보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이미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저희가 이제 가정 방문하려고 전화했는데, 재신고돼서 애가 분리되잖아요.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연계되기 전에. 그래서 재신고 건으로 분리되는 상황에서는 좀 통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참여자 6)

"DB 안에서, 이제 이... 행위자에 대한 DB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건번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행위자가 또 한 번의 재행위를 했었을 때 이게 재신고임을 확인할 단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행위를 학대 행위를 해서 또다시 신고 접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건 재신고가 아니라 그냥 신고만 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죠." (참여자 6)

"재학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렇게 거부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매일같이 이들을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이니 더더욱 상시 등원 기관인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에게 모니터링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은 시 차원에서, 학교나 유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조금 이것(아동학대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참여자 16)

"한 번 재신고된 사례 사례가 계속해서 재신고가 되고 이게 만성적인 사례들은 사실 개선의 여지가 없다 보니까 근데 이런 사례들이 사법 처리가 돼서 처분을 받더라도 또 같은 처분을 반복해서 받는 사례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좀 더 법적으로 처벌이나 처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제도들이 필요할 것 같고." (참여자 14)

5) 실효성 있는 학대 예방교육의 강화

연구참여자들은 시민대상의 실효성 있는 학대예방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신고의무자의 경우는 부담감을 줄이고 책무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일반 부모를 대상으로는

올바른 양육방법과 학대 예방교육을, 아동들을 위해서는 아동학대로부터 자기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과 무분별한 신고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를 제안하였다.

"시 주도 차원으로 대전광역시에 있는 의사들이라도,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다면... 조금 더 의료 현장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 시 주도의 어떤 교육을 좀 강화한다면, 신고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참여자 17)

"아이 양육을 포기한, 그러니까 방치하는 경우도 간혹 생기더라고요. 그냥, 마음대로 해...근데 이게 아이한테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훈육이라는 게 아예 없어져버리니까." (참여자 15)

"아이들이 대부분 너가 그런 권리를 침해당할 때 신고해야 돼, 까지만 배우지, 신고 됐을 때 이후에 어떻게 될 거고 거기서의 너의 책임이 따른다 까지는 못 배우고 오다 보니까. 보호자의 가장 큰 불만 사항도, 학교에서 신고하라고만 가르치고...결국 책임은 다 내가 떠안고. 애는 만나기 싫다고 그러면 안 만나고 나한테만 계속 연락하고 결국 나만 괴롭히는 일 아니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럴 때 저희는 어떻게든 아이를 좀 참여시켜서, 아이에게 너가 엄마한테 가진 불만으로 신고했을 때, 너에게도 따르는 책임이 있어라는 걸 계속 교육하려고 하고..."(참여자 16)

6) 실질적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연구참여자들은 대응체계와 병원, 학교 등 유관 협력기관들 간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실무자들은 대전광역시와 협약을 맺어 협력체계가 구축되었으므로 기대를 가지고 도움을 요청해 보았지만, 실제로는 거절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들을 경험했다고 하였다. 때로는 협력기관 측에서 실적 위주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 씁쓸함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유명무실한 협약이 아닌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학교 및 교육청은 대응체계에서 누락되어 있지만 아동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기관이므로 향후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방안이 반드시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새싹지킴이 병원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기대를 안고 30곳이 넘는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아동학대피해아동이라는 이유로 다 거절당했거든요.....결국 동네 병원에 데려가서 학대피해아동이라고 안 하고 아이가 넘어졌다고 진료를 받게 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희를 거부했던 병원에서 실적 보고해야 되니까 아동 인적 사항 알려달라고.....저희가 의뢰할 때, 학대피해아동이라는 것에 대한 조금 더 민감도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더 수월하게 아이가 제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참여자 16)

"새싹병원...협약만 맺었을 뿐이지... 그게 공식적인 선언에만 있지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돌리시니까...그냥 다들 내세우기 위한 거지, 현장에서는 진짜 그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참여자 17)

"정보 공유에 대해서도 각 기관마다. 이렇게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런 정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비밀 보장이 되고, 이런 아동의 정보를 줘야 된다라고 한다든지." (참여자 5)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어떤 체계가 학교는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고, 좀 더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든 그렇지 않은 학교든 어떤 그런 역할을 어떻게 담보해낼 것이냐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아동학대 관련해서 좀 더 이렇게 연속성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참여자 9)

7) 신고의무자 보호방안 강구

연구참여자들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 고취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병원, 어린이집, 학교 등 신고자의 노출위험과 부담감이 높은 곳에서 신고의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개별 신고가 아닌 위원회나 협의체를 통한 신고가 유용하고 실제 적용하는 기관에서는 효과성이 있었다는 보고를 하였다. 위원회는 개별 기관 내에 설치할 수도 있고, 동종 기관끼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의료기관 내에서도, 그래서 이제 아동보호위원회 이런 거를 이제 구성하라고 하는 거고. 그 위원회 이름으로 신고 자체를 하라는 거죠.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참여자 7)

"신고를 했을 때 교사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학교 내에서 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교사가 개인적으로 신고하기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면대면으로 만나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면 그나마 책임이 분산되니까 그때 수사를 개시를 한다든지 그때 이제 경찰도 같이 껴서 수사를 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청에서 수사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교사의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좀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참여자 13)

제 5 장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 개발

제5장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 개발

2020년 10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시행은 그간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대응의 전 과정을 담당하던 체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는 국가책임의 강조 하에 시·군·구 단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전반적인 조사와 판단업무는 공공이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아동학대 대응의 이원화된 역할 분담 체계로 개편되었다. 이러한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 및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박송이 외, 2022). 특히 공공과 민간 간의 상호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명확한 역할 분담,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 등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의 아동학대사건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한편,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조는 다음과 같다. 대전광역시는 5개의 자치구에 3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구와 동구는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유성구와 대덕구는 대전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구는 대전서구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협력하고 있다.

〈표 5-1〉 대전광역시 아동수 및 아동학대 건수

단위: 건

구	2022년 아동수 (명,%)	2020년		2021년		2022년		비중
		신고	학대판단	신고	학대판단	신고	학대판단	
계	214,064 (100%)	1,645	1,372	1,710	1,148	1,178	637	100%
동구	28,380 (13.3%)	257	219	225	156	184	95	15.6%
중구	29,368 (13.7%)	227	174	377	264	261	118	19.1%
서구	72,032 (33.7%)	574	518	523	270	382	213	32.7%
유성구	62,493 (29.2%)	375	296	353	290	175	108	19.0%
대덕구	21,791 (10.2%)	212	165	232	168	176	103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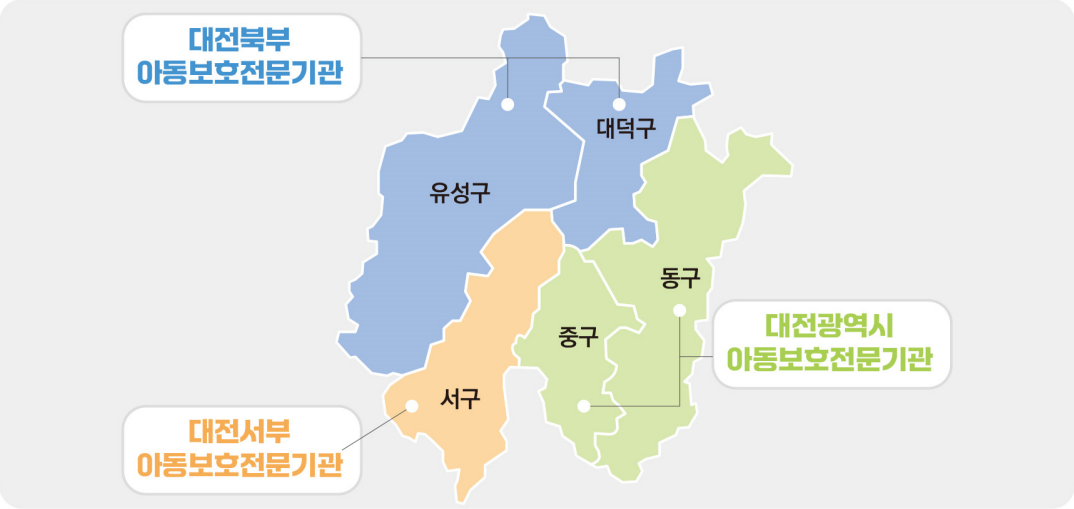
출처: 대전광역시(2023). 2023년 아동학대예방 추진계획.

[그림 5-1] 현행 아동학대 사건 처리 흐름도



출처: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홈페이지(2023). 아동학대 업무흐름도

[그림 5-2] 아동보호전문기관 배치 현황



이러한 구조는 자치구별 아동학대 사례판단 건수에 따른 배분으로, 업무의 효과적·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몇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불필요한 행정 소요시간과 업무량의 증가이다.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서도 자치구 및 담당자 별로 서식, 논의, 회의 형태 등이 차이가 있어 업무가 분절되고 효율성이 감소한다. 둘째,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과 역량의 축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는 자치구의 개별 담당자의 업무 의존도가 높아 공통 경험과 역량 축적에 한계가 있다. 이는 민원 응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현재 복지부 대응 순서도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바뀌면서 민원응대 담당자도 바뀌므로 일관성 있는 민원 응대가 어렵고, 담당자가 변경되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민원인 입장에서의 불만도 상당히 표출되고 있다. 이에 따른 실무자들의 민원 응대에 대한 피로도와 부담이 증폭되고 있었다. 민원응대 역시 경험과 역량 축적이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소통체계가 부재하다. 이에 따라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계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파악된 대전광역시의 개선 및 필요 점들을 종합하여, 대전광역시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구조에서 일관된 아동보호체계의 질적 향상, 효과성, 효율성이 담보되는 제도적 방안으로 광역시 차원의 컨트롤 타워 기능 도입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실무자들의 의견도 바람직한 대전광역시의 모델로 시 주도의 통합모델(43.8%)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책과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대전광역시 아동보호팀에서 지역 시책 개발, 통합지침 마련(12.4%),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9.5%),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8.0%)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이 같은 컨트롤 타워 기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동보호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소통과 업무분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성, 지방정부 차원의 권한 있는 서비스 조정 기구 설치를 통해 원활한 서비스 통합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민소영, 2019; 박송이 외, 2022). 이러한 결과는 모두 현재 대응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역시 차원에서 통합적이며 일관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타 시·도에서도 컨트롤 타워 기능을 도입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수원특례시 등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타 시도의 컨트롤 타워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가 총괄적인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직영체제의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가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주로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조정과 지원, 대응인력의 교육과 훈련, 유관 협력체계 구축, 자문단 지원, 필요 인력과 장비의 지원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 또한 거점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여 고난이도 사례의 상담을 지원 한다.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는 별도의 조례를 두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도 아동보호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는 민·관 거점 역할을 하는 공공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형태이다. 네트워크 구축과 교육, 홍보 등의 업무와 거점심리지원사업을 통해 고난이도 심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도 별도의 설치조례를 두어 운영 근거로 삼고 있다.

경기도는 컨트롤 타워로 경기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23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으며, 앞으로도 2~3개의 신규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컨트롤 타워의 주요 기능은 기존, 신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컨설팅,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 도내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길라잡이 지침서 제공,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연구 및 정책 수립 등이다. 또한 거점 심리치료센터를 함께 운영하여 고난이도 심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 컨트롤 타워는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므로 별도 조례가 없으며, 민간위탁운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 조사 지원 및 사례관리 업무를 하지 않는다.

수원특례시의 경우, 수원시를 대상으로 하는 거점 공동대응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공동대응센터는 아동학대 대응업무와 밀접한 시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거점

의료기관 등 6개 주요기관의 정보연계협의체에서 출발하였다. 공동대응센터의 주된 목적은 각 기관에 분산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종합하고 상황을 공유하여 개입하며,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이를 위해 공동 공간을 마련하여 함께 업무를 보고 있다. 또한 복지부 대응체계 흐름도에서 누락되어 있는 교육지원청을 공동대응센터에 참여시켜 교육청과 학교의 아동 안전망 기능을 높이고 아동 일상 모니터링을 지원 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

상기와 같이 본 연구내용, 선행연구, 타 시도의 사례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이 「대전광역시 대응체계 모델 – 컨트롤 타워 수립안」을 세 가지 방안으로 제시한다. 이 세 가지 안의 주요 차이점은 컨트롤 타워 형태에 있으며, 공통적으로 대전광역시 대응체계의 개선을 위한 특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특화 사업은 대전광역시 대응체계의 소통과 사례판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례판단회의 정례화, 지역협의체 신설 및 운영, 대전광역시 사례판단기준 세분화를 통한 예방기능 강화'의 세 가지 특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먼저 세 가지 방안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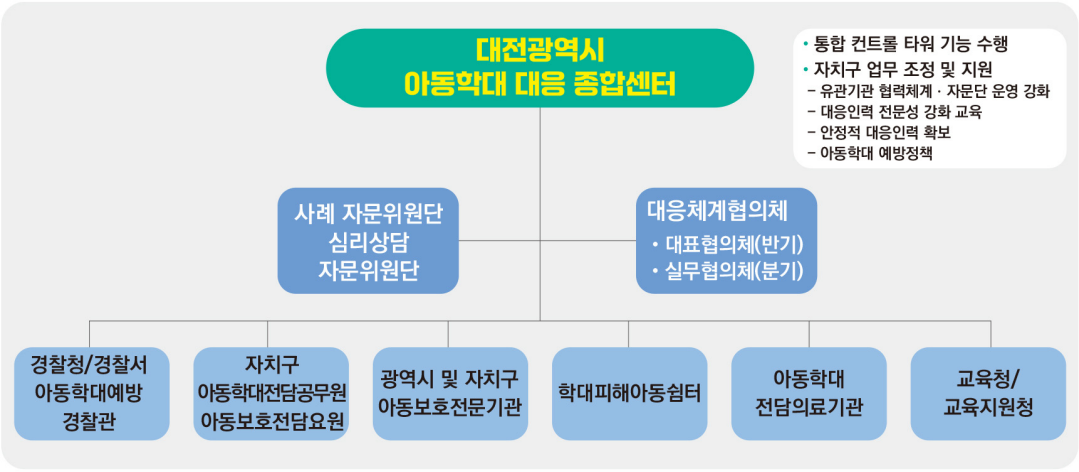
〈표 5-2〉 타시·도 컨트롤 타워 예시

지역 및 명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경기도 경기도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특례시 수원시 공동대응센터
기능(업무)	서울특별시 • 아동학대 대응정책 및 예방총괄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 및 조사지원 • 아동학대예방 홍보 및 협력체계 유지 •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공공형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만관 거점 역할 • 네트워크 구축 • 신고의무자 교육 등 • 홍보	경기도 아동보호정책 통합컨트롤 타워 • 기존, 신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지원 (컨설팅) •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 강화 및 사업 지원(길라잡이 지침서 편찬 등)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통합 컨트롤 타워) • 연구 정책 지원 • 심리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수원시 공동대응센터 설치 및 운영 (거점 역할) • 수원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 설립 (2022. 5.) • 6개 기관 참여 수원시청, 경찰서(남부,중부,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교육지원청, 수원병원, 화홍병원 • 역할: 아동보호전문기관-사례관리 / 수원교육지원청-아동 안전망, 모니터링 /전담병원-응급의료지원 • 센터 내 공무원, 경찰, 아보전 상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공동 근무로 소통 효율성 높임
	서울특별시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 고난도 사례 심리서비스 • 심리치료전문인력 역량 강화(교육, 컨설팅, 전문가사례회의) • 심리학, 의학 분야 등 전문가자문단 위촉, 사례논의 •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서비스 모니터링	심리치료팀 운영 • 학대피해아동 심리검사 및 치료 • 거점심리지원사업(고난도 사례 심리서비스, 심리서비스기관 컨설팅) • 전문가 사례회의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센터 지정 • 도내 고난이도사례 심리서비스 총괄 • 고난이도사례 심리서비스 • 도내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교육 및 컨설팅 • 도내 심리서비스 연계망 구축 • 도내 심리서비스 점검 및 감독	심리치료 기능 없음
아동보호 전문기관 유무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님	공공형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업무 구·군으로 이관	민간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관할 지역 없음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님
부대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아동상담소 운영	입양사업지원, 심리상담실 및 어린이집 운영		
운영주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굿네이버스 위탁운영	수원특례시
설치근거	아동복지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67조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조례제3501)호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20.9 '수원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에서 각 기관에 분산된 아동학대 관련 정보 조합, 상황 공유, 개입체계 구축 시작됨

제1절 제1안: 대전광역시 내에 아동학대 대응 종합센터 신설

제1안은 대전광역시의 특성과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이다. 광역시 차원의 통합적인 컨트롤 타워로 전체 대응 업무의 조정, 정리, 지원이 주된 역할이다. 조례에 의해 설립되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자치구 단위의 칸막이 행정을 해소하므로 대전광역시 전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아동의 특성에 맞춘 보호배치가 용이하다. 이를 통해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 차원의 정보, 지식, 경험 축적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대응 종합센터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센터 구축 및 제반 정비를 위해 시간, 인력, 예산 투입 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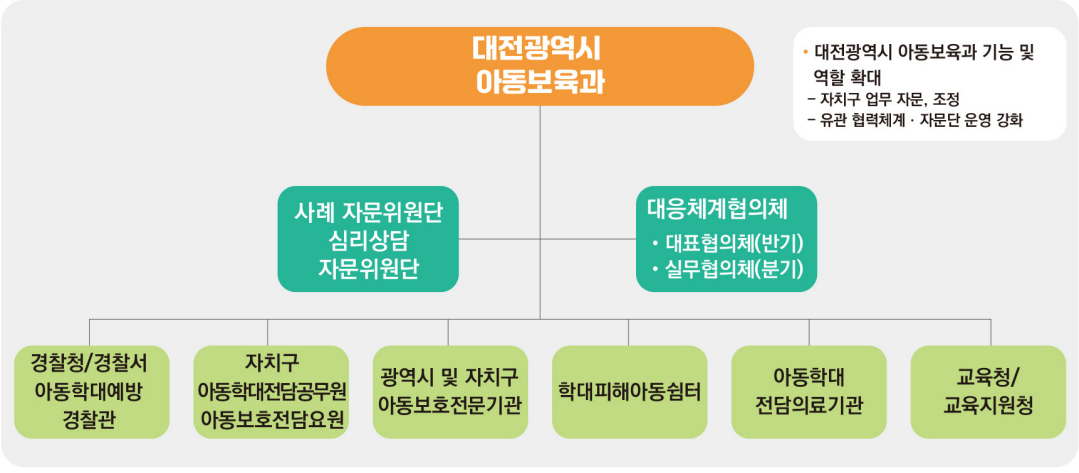
[그림 5-3] 제1안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 종합센터



제2절 제2안: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기능 확대

제2안은 현행 대전광역시의 아동보육과의 인력 보강을 통해 일정 부분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 1안 보다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는 제1안의 시행 이전에 과도기에 대한 컨트롤 타워 운영 방안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즉, 자치구별 운영체계는 유지하되, 아동보육과의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자문단 운영, 업무협의 및 일관된 지침 지원을 하고 유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순환보직과 같은 잦은 인력 변동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종합적 컨트롤 기능과 전문성 축적이 미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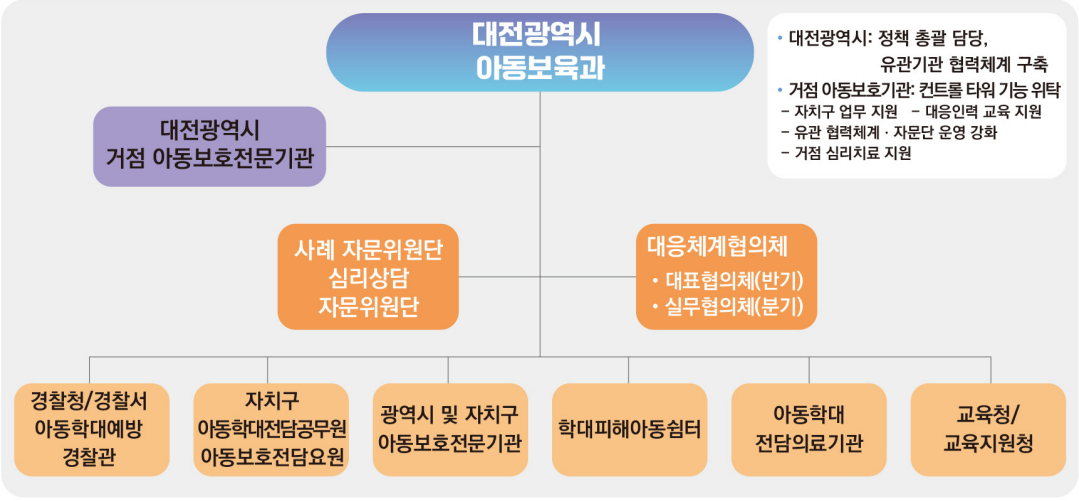
[그림 5-4] 제2안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기능 확대



제3절 제3안: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

마지막으로 제3안은 대전광역시 내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컨트롤 타워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대전광역시는 총괄적인 정책 방향 수립,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도·감독,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거점+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자치구별 대응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지원, 지역협의체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경우,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방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별도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실무현장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선정은 현행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선정을 하고 인력지원을 하는 방안도 있고, 새롭게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존의 거점 심리치료지원 기능을 겸하게 된다.

[그림 5-5] 제3안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



〈표 5-3〉 대전광역시 컨트롤 타워 수립안

유형	1안	2안	3안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 종합센터 신설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기능 확대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
기능	통합 컨트롤 타워 기능 수행 자치구 업무 조정 및 지원 • 유관 협력체계·자문단 운영 강화 • 대응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 안정적 대응인력 • 아동학대 예방 정책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기능과 역할 확대 • 자치구 업무 자문, 조정 • 유관 협력체계·자문단 운영 강화	대전광역시: 정책 총괄 담당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거점 아동보호기관: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거점 지정, 컨트롤 타워 기능 위탁 • 자치구 업무 지원 • 대응인력 교육 지원 • 유관 협력체계·자문단 운영 강화 • 거점심리치료 지원
대전 특화	• 대전광역시 사례판단회의 정례화 • 아동학대 대응체계협의체 운영 • 대전광역시 사례판단의 세분화 및 지역연계	• 대전광역시 사례판단회의 정례화 • 아동학대 대응체계협의체 운영 • 대전광역시 사례판단의 세분화 및 지역연계	• 대전광역시 사례판단회의 정례화 • 아동학대 대응체계협의체 운영 • 대전광역시 사례판단의 세분화 및 지역연계
장점	• 각 자치구 칸막이 행정 해소 • 광역시 전체의 자원과 기능의 효과적 활용 • 정보 및 경험 축적과 공유를 통한 전문적 역량 강화	• 일부 업무 조정 및 인력배치를 통해 빠른 시행 가능	• 컨트롤 타워 기능 위탁으로 운영 효율성 높임 • 비교적 빠른 준비와 시행 가능
약점	• 근거 지침 마련 필요 • 준비·시행에 상당 시간 소요	• 종합적 컨트롤기능 미비 • 순환보직 등 잦은 인력 변동으로 일관성 유지 한계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별도 기능 부여 • 인력지원 필요
조건	근거 조례 신설	-	-

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1. 아동학대 현황 및 대응체계

본 연구에서는 국내(정부,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국외(미국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독일, 일본)의 아동학대와 관련한 정책 및 아동보호를 위한 대응체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내의 각 지자체별, 해외의 각 국가별로 다양한 특성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대전광역시의 아동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아동학대 수사체계와 보호체계의 연계 강화를 위한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대전광역시는 아동학대 조사의 공공화를 추진하며 시(市)단위로 아동학대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하였으며, 자치구와는 별도로 대전광역시 소속의 전문관을 2명 배치하였다(대전광역시, 2023). 이 과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에 역할분담 및 업무 재분장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중점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가 현재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찰을 중심의 아동학대 수사체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가 단계별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전문성 강화, 공공 및 보육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 적극적인 추진 등 도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는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 내의 다양한 유관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이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며 신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지원 및 민·관 아동보호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지원하며 광역단위 아동보호 체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특징으로 여겨진다. 해외 사례 중에서는 독일의 경우행정

관청인 청소년청이 직접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아동보호 체계는 청소년청과 가정법원의 긴밀한 협력관계의 구축과 청소년청의 적극적인 개입과 권한의 부여가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수사단계에서 경찰, 검찰, 법원을 거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후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대응체계의 도식이 매우 복잡하지만 독일은 행정관청인 청소년청이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대피해아동에 관한 사후관리까지 직접 담당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대응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물론 개별 단계에서 다양한 기관들이 개입될 여지는 있으나,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혹은 의심 아동에 대한 가장 최선의 국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일본 역시 아동 정책과 관련하여 어린이 가정청을 창설하여 아동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 하기 위한 행정 컨트롤 타워를 마련하고 있어 아동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전광역시 역시 학대피해아동의 최상의 이익 고려를 우선시하기 위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다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및 대응구조의 컨트롤 타워를 마련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국내의 사례 중 서울특별시와 같이 기존의 기관의 업무 재분장 또는 경기도의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립과 같은 신규 기관의 설치 등 다양한 방법 중 대전광역시에 적합한 컨트롤 타워 모형을 고려하여 수사기관과 지자체 간 정보의 공유와 연계가 실질화되어야 하며, 초기대응 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의 인권을 가정 우선하기 위해 아동학대 발생맥락(또는 위험정도)따른 세분화된 대응체계 구축 및 사례관리 체계의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아동보호 체계의 모델이 되는 미국(이주연, 2016)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아동보호에 대한 책임을 갖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개입을 하고 있는데, 연방과 협력하여 지방(주 정부)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부모의 친권보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방정부가 민간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은 연방 법인 아동학대 예방 및 치유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이 제정되면서 전국적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와 조치들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되 각 주가 주체가 되어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제도, 조사 및 격리조치가 구체적으로 규율되게 되었다. 정부에서 현장조사를 민간에서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아동보호국에서 민간의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감독한다. 특히, 민간의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지침과 실천방법이 명확하게 구축되어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에 거부적인 클라이언트에게는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사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김아름, 박은영, 김재선, 2017). 한편

미국은 아동학대 신고, 조사 및 평가절차에서 부모 등 성인의 관점에서 친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의 아동에게 최선의 대응이 무엇인가(Best Interest of the Child)를 기준으로 최선책을 찾는다. 예컨대 아동학대 발견 이후, 학대의 정도,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을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논의하고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안(격리, 친인척 입양, 면접권 인정 등)을 모색한다. 특히 최근 여러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차등적 대응체계는 아동의 개별 구체적 이익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갖는다. 또한, 미국의 지방정부와 연계된 지역사회의 민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가정방문, 양육지원, 건강교육 등의 여러 영역에서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민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공공 서비스와 비교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규율되어 더욱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발생원인 중 가정폭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전광역시의 상황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아동의 이익을 가장 우선하는 미국의 아동학대 관련 차등적 대응체계는 아동의 인권이 더욱 집중한 대응모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학대로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도 사례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접수에 대한 사후관리로 아동학대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위기가정을 사례관리 서비스에 유입시켜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아동학대의 가능성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응방안은 효과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학대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며 부모와 가족들의 인식개선과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발생의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의 전문적 사례관리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바와 같이 부모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아동 양육교육 뿐만 아니라 고용지원, 생활지원 등) 및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의 출생 이전 단계를 포함한 가족 및 지역 공동체의 지지와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대전광역시는 아동수당 신청 시 부모교육을 수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아동의 인권과 아동 양육과 같은 정보를 부모가 된 이후에만 교육을 받기보다는, 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과 지역사회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 서울특별시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식개선을 위한 부모교육에 예비부모를 포함하여 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일본은 아동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 시정촌과 같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모자보건 포괄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임신기부터 취학 전 육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임신이나 육아로 인한 불안 및 고립감 등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유아의 학대치사

등 아동학대의 위험을 조기에 발견 감소시킬 수 있도록 아동을 위한 육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임산부나 영유아 모친을 평소에 접촉할 기회가 많은 의료기관이나 육아 지원시설, 학교 등에서는 그 정보를 기초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배상균, 2017). 이러한 접근은 시정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가장 가까이에서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인식 증진을 통해 아동학대의 위험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2.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대전형 대응체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종사자 137명을 대상으로, 대응체계 기능 및 역할, 대응체계 연계·협력,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대응체계 종사자 교육 및 훈련, 대응체계 종사자 근무환경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기능 및 역할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상담원이나 보육사들은 공통적으로 상담 관련 기능 및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수행도도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난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도-난이도 IPA 분석에서도 각 대응체계별 기능 및 역할에 있어 다른 체계와 구별되는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중요도는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난이도 역시 높게 나타나 큰 노력이 필요한 영역에 속해 있는 기능과 역할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응체계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사자들이 인식한 역할수행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역할과다, 역할불일치, 과업갈등, 역할모호성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역할모호성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높았고 역할과다, 역할불일치, 과업갈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높았다. 대응체계의 변화 이후에 점차 각 대응체계별 기능 및 역할이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역할이 모호하고 역할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사자들은 업무량은 많고 전문성은 비교적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체계 강화와 사회적 인정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연계·협력에 대해 살펴보면, 모든 대응체계가 전반적인 연계·

협력 수준을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였고 향후 연계·협력의 필요성에서도 5점 만점에 4점으로 연계·협력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들이 인식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 효과에 대해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 및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른 체계와의 연계·협력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상대기관에 대한 이해 부족을 뽑았고 원활한 협조 및 협력 활성화 방안으로는 상대직종 및 업무이해 증진 교육, 지침제공, 상호교류 기회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경우 다른 복지 분야와 다르게 다양한 특성을 지닌 체계들이 개입하고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 시너지 효과도 크다고 할 때 다양한 대응체계들의 연계·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의 특성을 알아본 결과, 종사자들은 가정폭력과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학대를 특성으로 지목하였다. 장점으로는 사례관리를, 단점으로는 처리과정이 오래 걸린다고 하였으며, 정보 공유는 장점과 단점 모두에서 보고되었다.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는 기관 간 협력 강화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조사와 사례관리 업무 분리 시에도 기관 간 협력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응답해 대응체계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광역시와 자치구 아동보호팀에 대한 요구사항에도 잘 반영되어 나타났다. 광역시 아동보호팀에는 지역시책개발, 통합지침 마련,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와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자치구 아동보호팀에도 정확한 정보 공유와 소통 강화, 연계 및 협력 강화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종사들은 바람직한 아동학대 대응 모델로 광역시 주도의 통합모델을 선호하였다.

넷째, 대응체계 종사자 교육 및 훈련에서는 필수 직무교육과 권고 직무교육의 참여 횟수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응급 상황에 노출될 확률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높아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교육 참여율을 보이고 있었다.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현장성을 반영한 교육 주제 개발과 업무량 조정을 지목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의 제공과 근무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응체계 종사자 근무환경에서는 지난 3년 간 직접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는 24.1%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2022)와 비교해 봤을 때, 5.2%나 높은 수치였다. 업무 스트레스 수준도 10점 만점에 7.63점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종사자의 86.8%가 6~10점 사이에 분포하였다.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는 감정

노동 과다가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낮은 처우라고 응답하였다. 고충 또는 어려움 해결방식도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보다 대다수가 직장 동료에게 의논하여 해결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대응체계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스트레스를 낮춰줄 수 있는 심리·정서적 지원 또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고충이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방안도 고려되어져야 한다.

직장만족도와 관련해서는 동료, 상사와의 의사소통이 높은 편이었고 임금(보수)과 복리후생제도, 근무시간 등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응체계 종사자들의 이직률과도 관련이 있다. 잦은 이직은 경험이나 노하우를 축적하여 전문가로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처우를 비롯해 근로환경 개선 등 직장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실행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초점집단면접

초점집단 면접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과 대응체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 현장실무자들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이후 가장 큰 변화로 아동보호업무에 대한 국가책임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시행 초기에는 여러 가지 혼란을 겪었으나 지금은 안정이 되고 있었다. 안정화의 기반에는 대전광역시의 인력 지원과 자치구별 피학대아동쉼터 배치 등의 노력과 주요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의 가장 크게 개선이 필요한 것은 유관기관 간의 소통의 문제였다. 이는 공공화 이전에는 민간이 조사부터 사례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데 비해,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이후 공공과 민간의 이원화된 담당체계로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파악이 되었다. 아직까지 상호 경험과 역량이 다르고, 상호 이해가 부족한데 비해 적절한 소통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각 단계별로 개선이 필요한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발굴단계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부담감 완화 및 신고 후의 정보공유와 소통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징후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신고의무자들이 개인 노출과 보복의 두려움으로 여전히 신고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었고 또한 막상 신고를 해도 이후 문의가 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할지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고접수 단계에서는 최근 아동 본인 신고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반항심으로 신고하는 사례 증가와 재학대 신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아동 스스로

자기보호를 위해 신고할 수 있어야 하지만 순간적인 감정에 따른 신고에는 책임이 뒤따르며 아동학대 사안의 무거움을 알려 신고가 오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복되는 재학대 신고는 실무자들을 소진시킬 뿐 아니라 회의감과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실무자들은 원가정 복귀를 결정할 때 늘 재학대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재학대 신고를 줄일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법원 간에 사례판단에 대한 이견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주로 학대로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사례들의 경우였다. 한쪽에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학대판정을 내려 사례관리를 받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른 쪽에서는 경미한 사례인데 학대판단이 되면 학대가정이라는 낙인이 생긴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이 사례 판단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사례로 판단되었으나 추후 법원에서 학대 판단으로 보호처분 명령이 될 경우, 매뉴얼 상으로는 재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다.

넷째, 아동 보호조치 단계에서는 아동에 대한 권리적이고 친화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아동의 성향, 연령, 특성 등에 맞춘 보호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조치 되는 아동은 보호자와 분리된다는 너무나 낯선 상황 앞에, 보호조치에 대해 설명을 듣고 확인서에 서명을 해도 그게 무얼 뜻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아동의 입장을 살펴 아동 눈높이에 맞는 권리적이고 친화적인 아동 응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호조치 시 아동 건강상태나 주요 특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정보파악이 선행되고 보호시설에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도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아동 보호에 있어서는 아동 성향과 연령에 맞춰 자치구의 경계를 넘어서는 유연한 보호배치, 일시보호쉼터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구분, 기존 쉼터에서 감당하기 힘든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아동이나 집중적으로 치료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서 치료보호시설의 설립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다섯째, 사례관리 단계에서는 심층적 사례관리를 위한 어린이집, 학교 등의 상시등원기관의 모니터링 협조체계 구축, 비자발적 학대가정의 상담 및 교육 참여 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고난이도 사례개입을 위한 전문적 역량을 갖춘 상담원 확보가 관건이나, 이직률이 높고 개인적 역량 차이도 있어 이러한 문제 해결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사례종결 단계에서는 주로 공공연계회의를 통한 사례점검을 하고 종결을 논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늘 대면회의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서면자료로 갈음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가정 복귀를 위해서는 가족참여가 중요하고 이후 사례관리를 담당할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원가족 프로그램에 참석시키는 것도 대상 가족의 친밀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들이 모두 동일하지 않고 자치구와 담당자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효과성이 높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경험을 나누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응단계별로 도출된 개선 필요 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전광역시 차원의 일관된 아동학대 대응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원활한 정보공유와 판단의 차이를 줄이고 유연한 자원 활용을 위해 대전광역시 차원의 컨트롤 타워 기능과 일관된 대응방식이 필요하다. 둘째, 대응체계 내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소통체계가 필요하다. 기존의 각종 협의체나 회의를 정리하여 정기적이고 일원화된 소통협의체 마련이 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문성 구축을 위해 적정한 인력 지원과 배치가 필요하다. 공공과 민간 기관 모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근무환경 속에 경험과 역량을 쌓아 전문성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반복되는 재학대에 대한 개입 및 실질적 예방책과 처벌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시민대상의 실효성 있는 학대 예방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부모들을 위해서는 올바른 양육방법과 학대예방교육, 아동을 위해서는 자기보호 방법과 무분별한 신고에 따른 책임성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대응체계와 병원, 학교 등 유관 협력기관들 간의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의 일상과 밀접한 교육청, 학교가 대응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일곱째, 신고의무자 신고율 고취를 위한 신고의무자 보호방안이 필요하다. 병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는 기관 내에 위원회나 협의체를 통한 신고 등 개별신고에 따른 노출위험과 부담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4.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 개발

선행연구 및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파악된 대전광역시의 특성과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개선점과 실무자들의 제언을 종합하여 대전형 모델을 도출하였다. 먼저, 대전광역시의 특성과 주요 개선점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의 주요 변화는 조사와 사례판단은 공공에서, 사례관리는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이원화된 역할 분담 체계가 도입되었다. 또한 전체 대응체계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여러 기관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협업해야 하며, 각 단계에서 공공과 민간 간의 신속한 역할 전환, 상호 이해, 명확한 역할분담, 원활한 소통체계가 필수적이다.

한편, 대전광역시는 5개 자치구에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립되어있다. 중구와 동구는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유성구와 대덕구는 대전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구는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주로 2개 자치구와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고 자치구별 상황에 맞춰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몇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개 자치구에 대응하면서 개별 행정 맞춤에 따른 소요시간과 업무량 부담이 증가된다는 점, 개별 자치구 담당자의 업무 의존도가 높고 민원 응대도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대전광역시 차원의 소통이 부족하여 전체적으로 공통경험과 역량 축적에 한계가 있다는 점,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이다.

종합해보면, 현재의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체계는 분절적이고 개별적인 요소가 있으며 상호간의 특성 이해 부족, 모호한 역할 분담이 발생, 전문성과 역량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통의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를 개선하거나 정리하는 지원기능이 부재하며, 정기적인 소통체계가 미흡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전광역시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수립하여 상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컨트롤 타워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수원특례시 등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조례에 의한 직영센터를 설치하여 컨트롤 타워로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는 민간위탁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을 컨트롤 타워로 운영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 시청,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 지원청, 거점병원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대응센터를 설치하고 공동 근무로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와 본 연구 결과, 타 시도의 사례 검토를 종합하여 세 가지 방안의 「대전광역시 대응체계 모델 – 컨트롤 타워 수립안」을 제시하였다. 세 가지 안의 주요 차이점은 컨트롤 타워 형태에 있다.

제1안은 대전광역시 내에 아동학대 대응 종합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대전광역시의 특성과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 장점을 결합한 형태이다. 광역시 차원의 통합적인 컨트롤 타워로 조례에 의해 설립되므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조정, 정리, 지원의 기능이 원활하며 자치구 단위의 운영이 아닌 대전광역시 전체 차원의 효율적 자원활용이 가능하고 아동의 특성에 맞춘 보호배치가 용이하다. 그러나 아동학대 대응 종합센터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센터 구축 및 제반 정비를 위해 시간, 인력, 예산 투입 등이 필요하다.

제2안은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기능 확대 방안이다. 아동보육과의 인력 보강을 통해 일정 부분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별도 조례 제정 없이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순환보직과 같은 잦은 인력 변동에 따른 일관성 유지 한계, 종합적 컨트롤 기능, 전문성 축적이 미비할 수 있다.

제3안은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방안이다. 대전광역시는 정책과 지도 감독 총괄을 담당하고, 선정된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거점+컨트롤 타워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행 3개 기관 중 선정을 하고 인력지원을 하는 방안도 있고, 새롭게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다.

제2절 제언

1.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 추진방향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는 정부의 아동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4월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의 아동정책 과제와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아동정책의 추진방안은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취약계층 아동 복지체계 강화 분야 중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만2세 이하의 위기아동을 촘촘히 발굴하고 조기개입체계를 강화하며, 대응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과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3b).

대전광역시는 2020년 아동학대예방 선도도시를 선포하였으며, 올해 「2023년도 아동학대예방 추진계획」에서 '아동학대 없는 세상, 아동이 행복한 대전'이라는 비전 아래 아동학대 인식개선, 올바른 양육법 공유로 학대예방, 시민 모두 아동지킴이, 위기가구 조기 발굴,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그리고 민·관 협력으로 아동학대 공동대응 체계구축을 목표로 세부방안들을 추진하였다(대전광역시, 2023a). 정부와 발맞춰 대전광역시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힘쓰고 있다.

앞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을 세 가지 안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안은 대전광역시 내 아동학대 대응 종합센터 신설이고 두 번째 안은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이고 마지막 안은 대전광역시 내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었다. 이러한 대전형 모델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의 추진방향과 운영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권리적 및 친화적 대응을 강화한다.**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에 있어 아동친화적이고 아동권리가 존중되는 접근이 되어야 한다. 아동보호에 대한 아동권리 기반의 접근은 아동을 '피해자'가 아닌 '권리를 가진 개인'으로 인식하고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신체적, 심리적 온전성을 존중하고 증진하는 것이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3). 아동보호의 전 과정은 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의 발달수준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아동학대라는 응급한 상황일지라도 아동에 대한 권리적·친화적 대응을 해야 한다.

둘째,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가 시행 된지 3년이 되어가고 지난 10월부터는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사례관리가 완전히 분리되는 시점에서, 이제는 대응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 다른 복지 분야와는 다르게 민·관을 비롯해 다양한 전문체계들이 함께 일하는 현장에서 아동학대의 일관된 대응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한 체계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응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을 통해 아동 중심의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고 대응주체별로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면 아동학대에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아동학대를 조사·판단하고 분리조치를 시행하며 상담개입, 사례관리 및 종결 판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도입과 전담공무원 배치에 급급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 나아가 대응체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공공을 중심으로 전담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전문체계들과 아동학대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체계별 명확한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대응체계별로 업무를 고도화·집중화시켜 각각의 노하우와 역량을 축적해 나아가야 한다.

2.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지원을 위한 방안

1)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실화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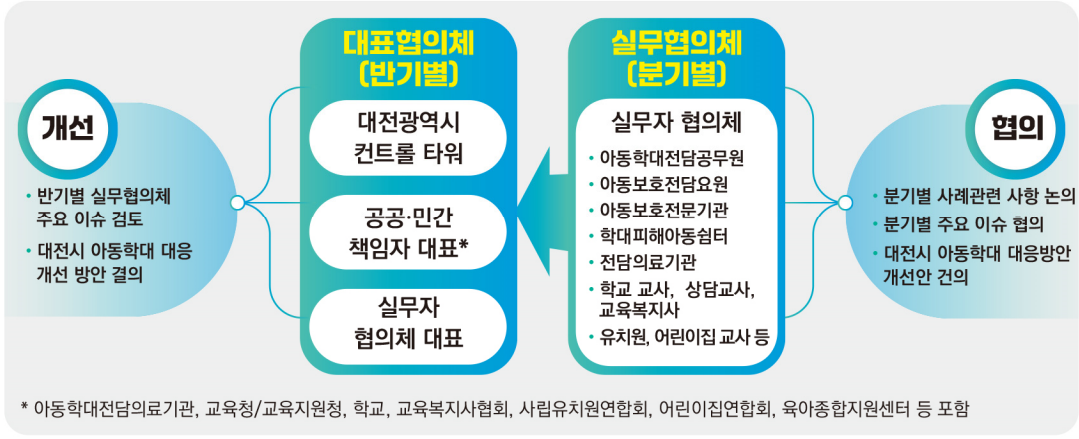
(1) 정기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 협의체 구축 및 운영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은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강력한 연계 및 협력에 기반 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대전광역시 내에 다양한 협의체, 위원회, 간담회, 회의 등이 존재하나, 실질적인

협의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부분 실적 중심의 회의로 운영되고 있다. 종사자들은 이러한 한계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현재의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대응 흐름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연계·협력체계에서 제외되어 있고 아동의 상시 이용기관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의 공식적 연계가 누락되어 있어, 이로 인해 해당기관들은 아동학대 대응에 대해 정보 부족을 호소하고 대응체계 협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신고나 협조에 부담을 느끼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다수의 협의체를 정리하고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응체계 협의체는 크게 실무자 협의체와 대표자 협의체로 나뉘며, 실무협의체는 분기별 1회씩 아동학대 관련 사례 공유, 분기별 주요 이슈 협의,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방안의 개선안 건의 등을 중심으로 협의한다. 반면 대표협의체는 대전광역시 컨트롤 타워, 공공·민간의 책임자 대표, 그리고 실무자 협의체의 대표가 참석하여 반기별 1회씩 개최된다. 대표협의체는 실무협의체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와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대응 개선방안에 대한 결의를 담당하며, 이 결과는 대전광역시 컨트롤 타워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방안에 반영된다.

[그림 6-1] 아동학대 대응체계협의체 구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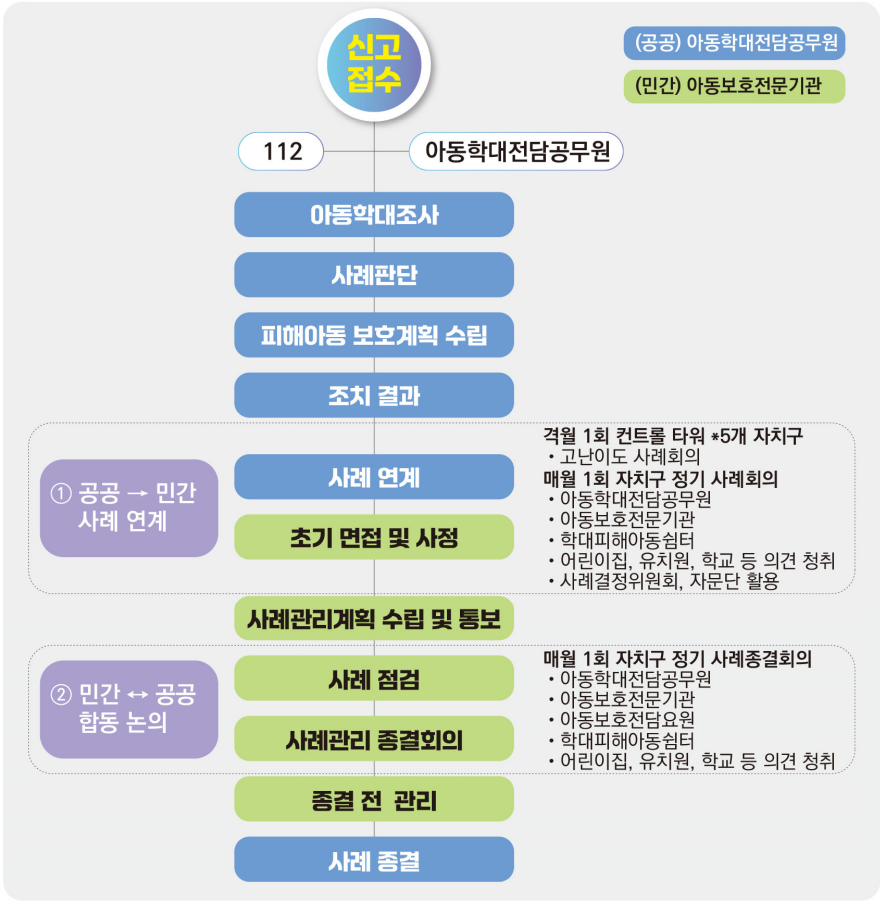
(2) 사례회의 정례화: 공공↔민간 사례연계, 사례종결논의 시점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공공과 민간이 번갈아가며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로, 공공과 민간은 공통적으로 피해아동과 학대가정을 돕고자 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매뉴얼의 모호한 학대 판단기준으로 인해 사례를 평가하는 관점과 판단의 근거, 사례관리의 방향성 등이 달라 종종 사례판단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판단에 대해 일차적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일반사례로 판단했지만 이후 법원에서 학대로 판결되어 자치구에서 재판단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 경우 현행 매뉴얼에는 각 주체들의 판단 이견이 발생할 시 재판단을 하라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이나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박송이 외, 2022; 민소영, 한은희, 2023) 현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업무진행 속도가 늦어지고 업무량이 과중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먼저, 사례판단의 기준이 명확하게 매뉴얼에 제시되어야 하고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공공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담당자 및 역할 변화 시점에 따라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사례판단회의, 고난이도 사례회의, 사례종결회의를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회의는 공공↔민간의 역할 분담 및 사례종결회의와 같은 합동 점검과 논의 시점에 맞춰 일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회의 결과는 대전광역시 컨트롤 타워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회의 진행 시점과 운영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공공→민간 사례 연계 시점에 매월 1회 자치구 정기적인 사례판단회의와 격월 1회 컨트롤 타워와 5개 자치구 연합 고난이도 사례회의를 실시하고 ② 공공↔민간의 합동 사례종결 논의를 위한 매월 1회 자치구 정기 사례종결회의를 실시한다. 또한 사례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확충하고, 정기적인 자문회의 개최 및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사례판단의 이견 차이를 줄이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사례 자문위원단의 주요 역할은 사례판단에 이견이 있거나 고난이도 사례에 대한 자문을 주는 역할이며, 가정법원의 아동학대 사건에도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사례회의 시 피해아동이 쉼터에 있을 경우,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참석시키고 피해아동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그림 6-2] 아동학대 대응 정기 사례회의



(3) 사례판단기준 세분화를 통한 예방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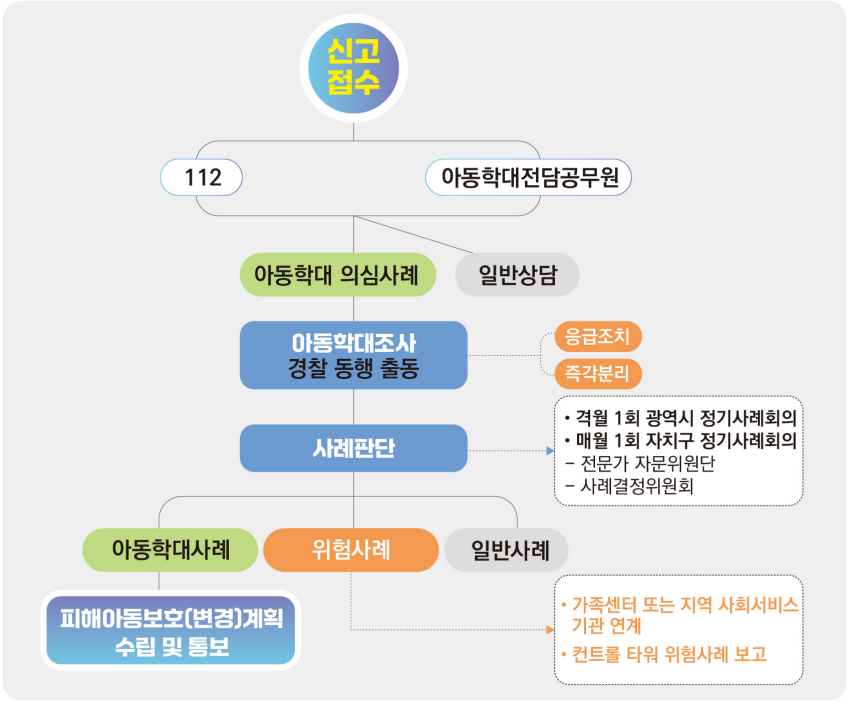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에는 학대신고에 대한 사례판단 기준이 학대사례와 일반사례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러한 이원화된 판단구조는 신고 된 사례가 명백하게 학대나 일반으로 분류될 때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 사례에 가까우나 학대 위험성이 높게 느껴질 경우 판단 갈등과 딜레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뚜렷한 학대 판단이 어려울 경우, 판단결정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성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민원 최소화를 위해 소극적 범위의 아동학대 판단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사례관리를 통해 미연에 학대를 방지하고 재신고를 예방하고자 적극적으로 학대로 판단하기도 한다. 소극적 학대판단은 재신고 시 반복적인 조사로 인한 행정부담과 재조사에 대한 반발로 인한 민원 제기가 발생하게 된다. 적극적 학대판단은 미연에 아동학대를 방지한다는 기능이 있지만, 이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업무 부담이 증가

하고 학대 가정이라는 낙인에 반발로 인한 민원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개편 이전에는 위험성이 높은 가정의 경우 조기조치를 통해 예방적인 사례관리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그러한 기능이 없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아동학대 정도가 낮거나 중위험 사례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Differential Response; CDSS, 2023).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사례판단 기준의 세분화를 통한 예방기능 강화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의 이원화된 일반사례와 학대사례를 위험사례를 포함한 세 가지 범주로 나누고, 이 중 위험사례에 대해서는 가족센터나 사회서비스기관 등에 연계조치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가족 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연계조치 결과는 컨트롤 타워에 보고하여 컨트롤 타워에서도 고위험 가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방안은 대전광역시 컨트롤 타워 주도의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례판단기준을 세분화할 경우, 기존 사례 판단기준 이원화 체계에서 발생하는 모호한 사례에 대한 실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담당자 간 판단 격차를 줄여 조사와 판단의 엄밀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6-3] 사례판단 세분화 및 지역연계 방안 예시



⑷ 피해아동의 욕구 및 의사 확인 절차 추가

아동학대 대응이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대응과정에서의 아동의 의사나 참여는 제한되어 있다. 초점집단면접에 참여한 전담공무원들은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 친화적으로 접근하려고 해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안내를 하게 되기도 하고 안내를 해도 아동이 종종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였다. 이승현 외(2022)의 연구에 의하면, 특히 피해아동의 조치결정이나 보호단계에서 아동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설명하거나 의사를 묻는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입장에서는 낯설고 불안한 상황에서 전담공무원에게 보호조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서명을 했더라도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아동권리적 관점에서 아동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대응단계마다 아동의 욕구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아동의 의사표현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부칙에 아동보호 및 지원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들을 기회 및 스스로 말할 기회의 확보,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스템 구축과 그 밖의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선의 이익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복지법 규정에 보호조치 또는 일시보호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피해아동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절차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떠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동친화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아동의 욕구와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아동의 분리가 필요할 때나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시, 그리고 보호조치 시에는 특히 더 이러한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아동보호 절차를 변경하거나 아동이 이의를 제기할 때에도 아동 권리적이면서 친화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

전담공무원의 개인적 역량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대응체계 과정 속에서 그러한 확인절차가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고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친화적 설명을 돕기 위해서는 아동 발달단계를 고려한 상세한 설명방식과 더불어 그림 등을 활용해 이해를 돕는 소책자나 리플릿을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 사료된다. 이러한 아동 권리적이고 친화적 접근은 아동으로 하여금 대응체계를 신뢰하게 하고 이후 개입에 대한 거부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아동특성에 맞는 보호배치

학대피해아동은 영유아를 비롯해 연령도 다양하고 신체 및 정신 장애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학대피해아동은 이렇게 다양한 특성을 가졌지만 정작 피해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배치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5개 자치구에 학대피해아동쉼터 6개소(남아 3개소, 여아 3개소)가 운영 중이다. 자치구마다 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학대피해아동 발생 건수에 비해 아동정원이 각 7명밖에 되지 않으며, 피해아동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모두 갖추고 있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주요 역할인 학대후유증 치료보다는 주로 일시보호를 수행하는데 급급해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다.

현장전문가 초점집단면접에서도 연령대가 다양해 프로그램 운영이 쉽지 않음을 토로하였고 또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피해아동들과 함께 지내기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특성에 적합한 전문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특성에 맞는 보호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대피해아동 중 경계선 지능이나 장애 등의 전문적이고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을 위탁하여 양육하는 '전문가정위탁'이 시행되고 있지만 많지가 않아 가정형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문가정위탁을 원하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경계성 지능이나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 등에 대한 이해교육 강화를 통해 아동의 특성에 맞게 배치될 수 있도록 전문위탁가정들을 확보해야 한다. 더 나아가 특화된 학대피해쉼터(예, 영유아 전용 학대피해쉼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와 치료보호시설의 설립 또한 시급히 요구된다. 한편 아동특성에 맞는 보호배치는 자치구 차원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광역시 차원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있다면 아동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보호배치가 가능할 것이다.

(6) 재학대 감소를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

종사자들이 인식한 타지역과 구분되는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특성 중 하나는 재학대가 많은 편(38.0%)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대의 경우 정의나 시점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학대 재발생 비율은 5~10% 정도로 보고 있으며, 최초 아동학대 판정 이후 처음 1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세원 외, 2022; 장희선, 김기현, 김경희, 2016; DePanfilis & Zuravin, 1999).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그리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보호서비스의 개입이 아동학대 재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일관되지는 않지만 최근 분석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지원서비스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김세원 외(2022)의 연구에 의하면, 학대피해아동과 비학대행위 부모를 대상으로 제공된 서비스 기간이 길수록, 비학대행위 부모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의 제공과 사례 개입이 진행 중일 때 학대 재발생 승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개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개입이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학대를 하지 않은 부모와 가족 기능 등 가족 수준에서의 개입이 강화되어야 하며, 사후관리 또한 좀 더 촘촘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된다. 김경희 외(2022)도 가족중심실천과 강점관점에 근거한 보다 전문적인 사례관리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후관리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28조에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때 보호자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국가법령센터, 2023) 초점집단면접에서 종사자들은 학대상황이 종료된 이후엔 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황종료 이후에도 보호자가 협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만드는 것도 요구된다.

(7) 대전광역시 특성이 적용된 대응체계 매뉴얼 개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간 서로의 기능과 역할이 다소 모호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역할모호성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가장 높았고 역할과다, 역할불일치, 과업갈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높았다. 지난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 업무가 완전히 분리된 이후 점차 각 대응체계별 기능 및 역할이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역할이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역할 분담과 연계·협력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매뉴얼이 있으나 다시 대응체계별로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이나 경찰청 아동학대 업무 매뉴얼 등 아동학대에 대한 공동 대응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매뉴얼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하나의 매뉴얼로 정리가 된다면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고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대전광역시 차원에서는 공동업무수행지침 매뉴얼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대전광역시의 특성이나 문제점들을 적용하여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보다 일관되고 상세히 제시하거나 연계·협력 절차, 재판단 프로세스, 위에서 제안한 단계별 아동권리적·친화적 설명 내용을 담는 등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대응 매뉴얼을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매뉴얼의 개선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개정한다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으로 아동학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⑻ 대응체계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평가 실시

아동학대 대응의 경우 민·관이 함께 일하다보니 시스템도 다르고 정보 공유가 쉽지 않지만 아동학대라는 사안을 봤을 때는 무엇보다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 경찰은 경찰 전산망을 이용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경우 이마저도 제한되어 있고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제한된 정보만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보가 제한되어있다 보니 초점집단면접에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가 개입을 위해 아동에게 피해사실을 다시 질문을 하게 되어 피해아동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한 상담원은 일반사례로 판단했다가 재신고가 되었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사례관리 과정에서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보육사는 신생아나 영유아의 경우 발달상의 특성이 더욱 중요한데, 바로 알 수가 없어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보가 제한되고 이마저도 유관기관과 공유가 되지 않아 전화나 공문으로 아동학대 정보를 파악하다보니 행정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여러 연구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의 차이는 서로 정보 공유가 되지 않고 소통에 한계가 있어 정보 누락이나 지체로 서비스가 지연되는 등 서비스의 연속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경희, 2023; 박선권, 2020).

따라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시스템의 운영이 요구된다. 신고접수부터 사례관리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상시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수사 등의 경우 모든 정보의 공유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례판단이나 개입을 위한 제한된 정보라도 공유해야 한다.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해 이해하고 통합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적절한 자료 열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시스템의 구축은 피해아동 및 가족의 회복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행정시간을 줄이고 아동학대

관련 기록의 축적과 대응체계에 대한 운영평가에도 도움이 될 거라 사료된다.

한편,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응체계에 대한 운영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분야 지자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응체계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평가가 주이지 전반적인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민·관을 비롯해 다양한 체계가 참여하는 만큼 대응체계의 전반적인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평가를 바탕으로 대응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 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운영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9) 안정적인 인력배치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력과 예산의 확보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현재 대응체계는 2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고 교대근무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야간과 휴일 근무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에서의 아동학대 업무분야 기피 현상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머니투데이, 2023. 1. 9.), 전담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인력변동 또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담이, 오세현, 박성희, 2022; 박송이 외, 2022; 민소영, 한은희, 2023).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경우는 공적 지위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불안정한 신분은 보호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박송이 외, 202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역시 인력이 불안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상담원 1인당 평균 담당 사례 수는 64건으로, 업무량이 매우 높은 수준이고(김세원 외, 2022), 이직률 또한 평균 34.4%로 3명 중 1명꼴로 나타나고 있다(뉴스엔티, 2022. 5. 24.). 아동학대예방경찰관(APO)도 총 7명으로, 유성서에서 2명이 근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5개 경찰서에서 각 1명씩만 배치되어 있어 지난해 학대예방경찰관(APO) 1인당 1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였다(중도일보, 2023. 2. 20.).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도 보육사들이 쉼터별로 5명이 있지만 3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주하는 보육사는 보통 2명뿐이었으며, 업무 부담이 커 장기근속이 낮다고 하였다(충남일보, 2022. 8. 25.).

본 조사에서도 종사자들이 인식한 업무량은 10점 만점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청수사대는 8점 이상이었고 다른 대응체계도 7점이 넘었다. 또한 업무의 주된 어려움으로 인력 수부족을 1순위나 2순위로 지목하였다.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별 종사자들은 인력 수의 부족을 호소하였고 사례 수를 살펴보았을 때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불안정한 인력은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나 전문성 축적 측면에서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순환보직에서 제외시키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안정적인 신분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도 공통적으로 인력 확충을 통한 사례 수 조정이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2)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강화 차원

(1) '위원회'를 통한 신고로 신고의무자 보호 강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신고전화 112와 전화·문자 상담 182 등을 통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더불어 신고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신고의무자 25개 직군을 설정하고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020년 10,973건(28.2%), 2021년 23,372건(44.9%), 2022년은 16,149건(36.3%)으로 나타났으며, 신고의무자 유형을 살펴보면 2021년을 제외하고는 초·중·고교 직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미국(67.3%, 2018년 기준)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강미정, 2022).

아동학대 대응체계 인식조사(2022)에 의하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본 적이 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84.7%였고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알고 지내는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을 우려해서'(19.4%),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것 같아서'(10.4%) 등 신원 노출 관련 사유가 29.8%를 차지하였다(세이브더칠드런, 2022). 아동학대 신고자는 언론보도나 임시보호 명령 결정문, 수사의뢰 과정 등에서 다양한 경로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미정, 2022). 초점집단면접에서도 학교와 병원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도 있지만 학대행위자 협박이나 민원 발생으로 신고하기가 쉽지 않음을 토로하며 '위원회'나 '협회'를 통한 신고를 제안하였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광역 전담의료기관인 충남대학교병원의 경우,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의료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아동보호위원회를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신속한 신고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즉시 진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자문회의에서는 신고의무자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조사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직접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또는 증언, 자료제출행위를 한 자도 신고자 '등'으로서 보호하지만 실제로는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만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데 비협조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신수경, 2022).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포함한 신고자와 조사참여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적으로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신고의무자가 있는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는 '위원회' 등을 통한 신고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아동학대예방 인식 개선 강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대전시민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21년 「민법」에서 자녀징계권이 폐지됨에 따라 자녀체벌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훈육과 체벌에 대한 논쟁이 남아있다. 또한 아동학대 중 성학대나 신체학대에 비해 정서학대나 방임은 학대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광선, 김소현, 임주원, 2022).

따라서 더 이상 아동학대가 절대 용인되지 않는 아동존중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포함한 일반시민 대상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도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종사자들은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를 뽑았으며,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으로는 'TV/라디오 공익광고',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학교/사회교육 기관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아동학대예방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사업으로는 아동수당과 부모교육 연계, 부모교육, 아동권리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활성화, 그리고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 및 올바른 양육 홍보물 제작·배포에서는 관내 기업체 대상으로 생산제품에 인식개선 문구 표기, 각종 고지서에 홍보문구, 홍보물 배포 및 언론 홍보,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으로는 시구 유관기관 합동 릴레이 캠페인, 작품전시회, 영화제,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고 있다(대전광역시, 2023a).

종사자들이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으로 TV/라디오의 공익광고를 추천한 만큼 시민들을 대상으로 TV/라디오를 통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부모교육의 경우, 아동수당 신청은 1회성이므로, 매해 영유아검진 시 형식적이 아닌 온라인 부모교육을 필수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적어도 초등학교까지는 매년 학년 초에 부모교육을 온라인 동영상이나 줌(Zoom)을 활용

해 제공하고 필수로 듣게 하는 등의 강화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용의 경우 초점집단면접에서 교육 대상에 따라 실효성 있는 교육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고의무자는 부담감을 줄이고 책무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교육을 하고 부모 대상으로는 올바른 양육방법과 학대 예방교육을 제공하며, 아동은 부모에 대한 반항심으로 신고를 오용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로부터 자기보호를 위한 예방교육과 무분별한 신고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교육 강화를 제안하였다.

3) 종사자 역량 강화 및 근로환경 차원

(1) 종사자 교육훈련 강화

대응체계 종사자의 전문성 문제는 여러 연구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담이, 오세현, 박성희, 2022; 민소영, 한은희, 2023; 박송이 외, 2022; 배태상, 이희영, 2022). 아동학대를 판단하고 분리조치를 시행하며, 사례관리 및 종결 판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전문성의 확보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2020)도 아동학대 초기 조사 및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공원 신규자 입문교육은 4주(160시간)간 실시하고 현장 체험형 실습교육 등 필수 업무내용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보수교육의 경우도 매년 40시간과정으로 업무 숙련 단계별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본 설문조사에 의하면 종사자들은 업무량 대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2022년 참여한 직무관련 교육(필수/권고) 참여횟수 모두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태상과 이희영(2022)은 전담공무원의 극한 스트레스의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하였으며, 민소영과 한은희(2023)는 모호하고 분절적인 아동보호체계뿐만 아니라 수행인력의 불안한 위치와 미흡한 전문성, 부족한 인력 투입은 재학대 등의 치명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도 심층사례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부담감을 나타내었다. 전담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업무량 대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초점집단면접에서도 심층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교육활성화 방안으로는 현장성을 반영한 교육주제 개발과 업무량 조절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였다. 여러 연구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아동학대 조사 기술부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배태상, 이희연, 2022), 담당자 별로 조사와 사례기록의 편차가 크고 상이해 특히 전문화된 사례기술 기록에 대한 훈련과 지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김담이, 오세현, 박성희, 2022). 또한 전담

공무원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에 대한 슈퍼비전 체계가 없어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업무에 대한 슈퍼비전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아동 행동문제에 대한 이해, 아동상담기술, 가족중심실천, 욕구에 근거한 사례관리계획, 민원 대처기술, 그리고 종결 여부 판단능력 등에 관한 교육 욕구가 있었다(정선욱, 정해린, 선우진희, 2022).

본 설문조사에서는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공통적으로 상담 관련 기능 및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수행도도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난이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IPA분석에서 대응체계별로 높은 중요도에 비해 낮은 수행도를 보인 자원과 노력을 집중해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영역과 중요도와 난이도가 모두 높아, 역량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개선이 되어야 할 영역의 업무들에 대해서도 고려해 대응체계별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한편,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같이 교육 확대를 통한 역량 강화 외에도 교육 이수를 정례화 하여 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다(임수경, 송이은, 정도영, 202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6조에는 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와 교육과정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교육과정을 규정하여 신규상담원은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총 100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 수료 시 상담원의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대전광역시도 이러한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참여를 위해 업무량 조정 등 근로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대응체계 종사자들의 과도한 업무량은 앞서 인력배치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처우나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그리고 종사자 보호를 요구하였다. 먼저, 안전과 관련해 지난 3년 간 직접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는 24.1%로, 이는 대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2022)와 비교해 봤을 때, 5.2%나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종사자들은 사건 발생 시 경찰서와 연계체계 구축을 가장 많이 원했고 그 다음으로는 트라우마 대처방안 지원, 폭력예방 및 대응 매뉴얼 보급 순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동학대의 특성상 대응체계마다 모든 종사자들은 민원에 시달리고 학대행위자로부터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 따른 폭력예방 및 대응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제작·보급되어야 하고 안전을 위한 경찰서와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피해 시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상담기관과 정신건강 의료기관의 연계 및 상담비 지원 등 상담·치료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겠다.

한편 업무 스트레스 수준도 10점 만점에 7.63점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그 주요 원인은 감정노동 과다와 낮은 처우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도 이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고충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방식도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보다 대다수가 직장 동료에게 의논하여 해결한다고 하였다. 고충이나 어려움의 유형에 따라, 또 소속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무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할 때 고충이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고 지원 또한 이루어져야 하겠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에서도 폭력 피해 시 지원뿐만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스를 낮춰줄 수 있는 심리상담,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심리·정서적 지원과 고충이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 등과 관련된 충분한 예산과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미정(2022). “아동학대 신고자 노출 사례 현황”.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서울: 국회의원 신현영 의원실·세이브더칠드런.

관계부처 합동(2023a). 2023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세종: 관계부처 합동.

관계부처 합동(2023b).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세종: 관계부처 합동.

광주광역시(2021). “광주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한다”. 2021. 2. 23. 보도자료. 광주: 광주광역시.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archSn=8131

광주광역시(2022). “광주시, 올해 공공 아동보호체계 강화한다”. 2022. 1. 11. 보도자료. 광주: 광주광역시.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pageId=www789&boardId=BD_0000000027&seq=11506&movePage=1&searchTy=TM

구혜경(2022). 일본의 아동 행정 컨트롤 타워로서 ‘어린이 가정청’의 출범. 현안, 외국에선?, 15(41), 1-8.

김경희(2023). 아동학대 사례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례관리연구, 14(2), 141-165.

김경희, 김유나, 심의선, 이태인(2022). 한국아동학대의 유형파악을 위한 잠재프로파일 분석-학대위험요인들을 활용하여. 한국가족복지학, 69(4), 181-207.

김경희, 김유나, 이태인(2023).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활동의 중요도-수행도(IPA)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5(1), 131-156.

김나영, 유해미, 박은정, 김자연, 송신영(2021).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김담이, 오세현, 박성희(2022).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정책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근무 경험에 대한 현상학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4(4). 153-187.

김미숙, 배화옥, 정익중, 조성호, 박명숙, 김지민(2016).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주(2004). 보건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간의 지역사회보건·복지 협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세원, 이봉주, 김현수, Yoo Joan Paek, 이상균, 장화정(2020). 아동보호서비스 특성이 아동학대 재발생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24(3), 463-488.

김소향(2019). 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전문직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아름, 박은영, 김재선(201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과 법제 개선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김진수(2006). 호텔종사원의 역할 스트레스와 긴장・소진 간의 관계.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혜정, 김유나, 윤민화, 이민영(2022).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4(1), 1-30.

대전광역시(2022).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대책. 대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2023a). 2023년도 아동학대예방 추진계획. 대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2023b). 2023년 아동학대대응 자치구 간담회 자료. 대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2023c). 아동학대 예방 및 추진 현황 등 내부자료. 대전: 대전광역시.

류임량(2023).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아동인권전문가 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 서울: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류정희(2019).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체계의 개편”. 월간복지동향.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642627 2019.7.10.

류주연, 권소일, 정희수, 김기수(2022).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대전: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민소영(2019). 공공부문 사례관리 서비스 통합을 위한 전달체계 탐색. 사회복지 정책, 46(2), 143-173.

민소영, 한은희(2023). 업무매뉴얼과 지자체 공무원 경험으로 살펴본 아동학대 대응강화를 위한 공공전달체계 개선방향 탐색. 한국지역사회복지학, 86, 221-257.

박명숙, 김기현, 정선욱, 송사리(2021).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기반 조성연구. 강원: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상식, 김두상(2017). 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과제. 법학논총, 34(3), 165-190.

박선권(2020).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박송이, 이봉주, 이재윤, 조예상, 이상균, 김세원, 김현수, 유조안(2022).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정책 이후 지역 아동보호상담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 경험. 사례관리연구, 13(1), 35-72.

배상균(2017). 일본의 데이트 폭력 문제와 예방에 관한 검토. 법과 정책연구, 17(3), 1-29.

박언하(2018). 한국의 아동학대예방 정책의 개선방안: 외국의 아동학대예방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연구, 7(1), 331-354.

배태상, 이희영(2022),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경찰학연구, 22(1), 135-158.

백승흠(2015). 아동학대처벌법과 피해아동의 보호. 한국경찰학회보, 50, 87-109.

보건복지부(2020).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 강화, 대응인력 협업으로 전문성 제고 계획". 2020. 12. 15. 보도자료. 세종: 보건복지부. https://mohw.go.kr/board.es?mid=a10504000000&bid=0030&act=view&list_no=361779

보건복지부(2021).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22).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2). 2022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세종: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2022). "서울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2년…아동학대 예방 공동대응 포럼 개최". 2022. 11. 16. 보도자료.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 374802?tr_code=snews

성윤희, 양승미(2021). 아동기본법의 입법 방향 소고. 사회복지법제연구, 12(2), 185-214.

신수경(2022).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서울: 국회의원 신현영 의원실·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2022). "아동학대 대응체계 인식조사". 세이브더칠드런 보도자료. 2022. 8. 24 https://www.sc.or.kr/news/noticeView.do?NO=71460

안혜경 (2022). 조직 내 갈등발생 요인과 조절요인에 관한 연구 -역할갈등, 과업갈등, 관계갈등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양수진, 김빛여울, 심혜선(2021). 인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상담소 기능 및 역할 강화 방안 연구. 인천: 인천여성가족재단.

울산광역시(2022). "2022년 제2차 울산시 아동보호전담기구' 회의 개최". 2022. 12. 21. 보도자료. 울산: 울산광역시. https://www.ulsan.go.kr/u/rep/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27&mId=0010040030010000000&dataId=151493

울산광역시(2023). "2023년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시행". 2023. 3. 16. 보도자료. 울산: 울산광역시. https://www.ulsan.go.kr/u/rep/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27&mId=0010040030010000000&dataId=153375

원성구(2011).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연계서비스 효과성 영향요인 연구 : 노인요양시설·병원의 공급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야마 아쓰시(2020). 일본의 급증하는 아동학대와 정책 대응. 국제사회보장리뷰, 12, 115-123.

유정원(2021).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제도 연구: 다양한 문화 안에서의 법과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 3(2), 1-21.

이세화, 장미경, 손금옥, 이여름(2020). 국내외 아동학대 관련법과 처리절차에 반영된 아동 정서학대 및 방임의 정의. 아동복지연구, 18(1), 57-78.

이승현, 탁희성, 류정희, 이주연, 소라미, 손여옥, 김예원(2022). 아동학대 초기대응 강화방안 연구. 서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영우, 장수연. (2022). 아동학대 현황 및 대응체계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7(7), 109-114.

이을지, 이호신(2016). 교육청 소속 기록연구사의 직무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3), 16(3), 131-156.

이주연(2016). 미국의 학대아동보호를 위한 차등적 대응체계와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6(11), 96-109.

이윤정(2021). 울산광역시 아동학태 실태 및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 울산: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임수경, 송이은, 정도영(2022).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 서울: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장희선, 김기현, 김경희(2016). 아동보호서비스 개입사례의 재학대 특성 연구: 생존 분석의 적용. 한국가족복지학, 54, 225-262.

전민경, 임예슬(2022). 경기도 아동학대 사례관리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경기: 경기여성가족재단.

정선욱, 김은영(2020).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가족중심실천 중요도 및 실행도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69(2), 1-29.

정선욱, 정해린, 선우진희(2022).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의 사례관리 역량 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53(3), 37-69.

조범근, 김준영, 배귀희, 문명재(2017).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0(4), 269-298.

조성심, 홍순혜, 방진희, 엄경남, 안정선(2016). 교육복지현장 실무자의 직무에 관한 중요도-실행도 분석(IPA). 학교사회복지, 33, 53-73.

조수연(2007). 팀 내 갈등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태준, 권용수, 최성주, 김상우, 김필, 황민섭, 이상정(202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강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인사행정학회.

주린, 조환기, 조선배(2015). IPA 기법을 활용한 호텔 웹사이트 품질 연구: 중국 중저가호텔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24(6), 217-229.

최가영(2000). 소진의 매개역할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경일, 노혜련(2008). 학교사회복지사와 교사의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사회복지사와 부장교사의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8(가을), 217-244.

최광선, 김소현, 임주원(2022). "아동학대 인식과 예방행동 조사". 여론속의 여론,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170-1). 서울: 한국리서치.

Beehr, T. A., Walsh, J. T., & Taber, T. D. (1976). Relationships of stress to individually and organizationally valued states: Higher order needs as a moderato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1(1), 41-47.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 77-101.

Braun, V., & Clarke, V. (2017). Thematic Analysis.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2(3), 297-298.

Bronstein, L. (2002). Index of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Social Work Research, 26, 113-123.

Bundesministerin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4). Kinder- und Jugendhilfe. retrieved from https://www. bmfsfj.de/blob/94106/ae9940d8c20b019959a5d9fb511de02b/kinder—und-jugendhilfegesetz---sgb-viii-data.pdf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23). Kinder- und Jugendschutz. retrieved from https://www.bmfsfj.de/bmfsfj/themen/kinder-und-jugend/kinder-und-jugendschutz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3). Child Welfare Protection. retrieved from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child-welfare-protection/differential-response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3a). About us. retrieved from www.childwelfare.gov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3b). Determin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retrieved from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systemwide/laws-policies/statutes/best-interes

Churchill Jr, G. A., Ford, N. M., Hartley, S. W., & Walker Jr, O. C. (1985). The determinants of salesperson performance: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2(2), 103-118.

DePanfilis, D., & Zuravin, S. J. (1999). Predicting child maltreatment recurrences during 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23(8), 729-743.

Etgar, M. (1979). Sources and types of intra-channel conflict. Journal of Retailing, 55(1), 61-78.

Jalongo, M. R. (2006). The story of Mary Ellen Wilson: Tracing the origins of child protection in America.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4, 1-4.

Jehn, K. A., & Mannix, E. A. (2001). The dynamic nature of conflict: A longitudinal study of intragroup conflict and group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2), 238-251.

Martilla, J. A., & James, J. C. (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77-79

NYC Children. (2023). Cares. retrieved from https://www.nyc.gov/site/acs/child-welfare/cares.pag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2023). Definitions of Child Abuse and Maltreatment. retrieved from https://ocfs.ny.gov/programs/cps/definition.php (OCFS,2023)

Oliver, R. L., & Brief, A. P. (1978).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role-conflict and ambiguity among retail sales managers. Journal of Retailing, 53(4), 47-58.

Rand. (2023). Social and behavioral policy projects. retrieved from http://www.promisingpractices.net

Rosenberg, L. J., & Stern, L. W. (1971). Conflict measurement in the distribution channel.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8(4), 437-442.

Rizzo, J., House, R., & Lirtzman, S. (1970). Role conflict and ambiguity in complex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5, 150-163.

Woerkom, M., & Sanders. K. (2010). The romance of learning from disagreement: The effect of cohesiveness and disagreement on knowledge sharing behavior and individual performance within teams.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25, 139-149.

Yi, H., Lee, J., & Dubinsky, A. J. (2010).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relational conflicts in co-marketing alliances. Journal of Business-to-Business Marketing, 17(3), 249-278.

下山憲治(2017). 児童福祉法等の改正について. 自治総研通巻463号, 地方自治関連立法動 向研究14.

厚生労働省. (2022a). 子ども虐待による死亡事例等の検証結果等について(第15次報告) 平成30年度の児童相談所での児童虐待相談対応件数及び「通告受理後 48時間以内の安全確認ルール」の実施状況の緊急点検の結果 平成30年度 児童相談所での児童虐待相談対応件数<速報値>. retrieved from https://www.mhlw.go.jp/content/11901000/000533886. pdf

厚生労働省. (2022b). 児童福祉法 (昭和二十二年法律第百六十四号. retrieved from https://elaws.e-gov. go.jp/document?lawid=322AC0000000164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2023). https://gccpa.co.kr

국가법령정보센터(2023). https://www.law.go.kr

노원복지샘(2023). https://www.nowonbokjisaem.co.kr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2023). https://www.busan.go.kr

서울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2023). http://www.nowoncps.kr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2023). https://child.seoul.go.kr

아동권리보장원(2023). https://www.ncrc.or.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3). https://www.elis.go.kr

경인종합일보(2023). “수원특례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가 수원의 아이를 지킨다!”. 2023. 12. 6. 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743 2023. 8. 30. 인출

내손안에서울(2021). “제 2의 정인이 없도록…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2021. 5. 12.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1591 2023. 9. 15. 인출

뉴스엔티(2022). “아동보호전문기관 3명 중 1명 퇴사… 아동학대 최일선이 무너지고 있다”. 2022. 5. 24. https://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630 2023. 11. 30. 인출

동아일보(2023). “아동학대 예방, 체계적 관리나선 경기도”. 2023. 5. 1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511/113333921/1 2023. 7. 15. 인출

머니투데이(2023). “24시간 대기에 연차 '언감생심'…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근로 실태”. 2023. 1. 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0811111372446 2023. 11. 1. 인출

복지타임즈(2023). “‘어린이가정청’의 출범 의미와 과제”. 2023. 7. 20. 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45 2023. 8. 1. 인출

시정일보(2023). “노원구, 학대 피해아동 보살핌 더 촘촘히!”. 2023. 1. 13. http://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1551 2023. 8. 30. 인출

중도일보(2023). “아동학대 늘어나는데 경찰 인력은 그대로”. 2023. 2. 20.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0220010005611 2023. 11. 1. 인출

지역연합신문(2018).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근절 나선다”. 2018. 3. 13. http://yonhap21.com/detail.php?number=13155&thread=22r07r02 2023. 9. 15. 인출

충남일보(2022). “학대피해아동 ‘과밀수용’ 문제 떠올라… 대전 내 쉼터 단 5곳뿐”. 2022. 8. 25.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6094 2023. 11. 1. 인출

THE SANKEI(2022. 12. 20). こども家庭庁、430人体制で始動へ「成育局」「支援局」「を設置」, THE SANKEI SHINBUN, https://www.sankei.com/article/20221220-HQXJ3IUCQ5O5JJ2RWZGHI6AWNM/ 2023. 11. 30. 인출

부 록

- 부록 1. 항목별 역할 수행 및 협력수준
- 부록 2. 설문지

[부록1] 항목별 역할 수행 및 협력수준

〈표 부록-1〉 역할 수행 - 항목별(1/4)

단위: 점/4점 평균

구분		사례수	업무 요구 불명확		업무 과제 및 목표 불명확		업무 시간의 적절한 사용 범위 모름		권한 범위 불명확		책임 범위 불명확		일에 대한 상사 설명 불명확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37)	2.18	0.88	2.05	0.81	1.80	0.77	2.40	0.95	2.34	0.95	2.06	0.90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2.48	1.12	2.35	1.03	1.96	0.93	2.61	0.99	2.74	0.86	2.13	0.81
	자치구아동보호전담요원	(12)	2.08	0.79	2.00	0.85	1.67	0.65	2.58	1.00	2.58	1.00	2.25	0.97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18)	2.28	1.07	2.11	1.08	1.89	1.02	2.33	1.19	2.28	1.18	2.06	1.2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2.02	0.67	1.98	0.64	1.79	0.68	2.25	0.84	2.19	0.87	1.88	0.70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1.75	0.96	1.75	0.96	1.50	0.58	2.00	1.15	1.75	0.96	1.75	0.96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2.25	0.84	1.97	0.65	1.75	0.67	2.50	0.92	2.31	0.93	2.25	0.98

Base=전체 137명

〈표 부록-2〉 역할 수행 - 항목별(2/4)

단위 점/4점 평균

구분		사례수	업무 책임 축소 희망		업무량 과다		업무 수행 시 시간에 쫓김		성과 책정 기준이 높음		업무 수행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 필요		내게 없는 능력 발휘 요구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37)	2.66	1.00	2.86	0.95	2.83	0.94	2.43	0.91	3.07	0.82	2.75	0.85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2.83	0.83	2.70	0.88	2.52	0.73	2.48	0.95	2.74	0.86	2.74	0.75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2.67	1.07	2.75	0.87	2.67	0.98	2.50	1.00	2.75	0.75	2.67	1.07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18)	2.50	1.29	2.89	1.08	2.72	1.07	2.56	1.10	3.28	0.89	2.72	1.07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2.98	0.89	3.17	0.86	3.25	0.84	2.63	0.82	3.38	0.64	2.94	0.73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1.75	0.96	2.50	1.00	2.25	0.96	2.00	0.82	2.50	1.00	2.25	0.96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2.25	0.88	2.59	1.01	2.63	0.98	2.06	0.80	2.94	0.84	2.59	0.84

Base=전체 137명

〈표 부록-3〉 역할 수행 - 항목별(3/4)

단위 점/4점 평균

구분		사례수	역할로 인한 의견 충돌		대응체계에서 역할 수행을 잘 못할 시 나에게만 책임 전가		역할로 인한 목표 불일치		대응체계 내 나의 역할이 중요함		업무 구분의 불명확		역할 불분명으로 서로 넘기거나 차지할 때가 있음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37)	2.54	0.92	2.37	0.94	2.72	0.79	3.35	0.67	2.53	0.86	2.71	0.90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2.65	0.88	2.30	0.76	2.74	0.69	3.09	0.73	2.65	0.83	2.74	0.92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2.83	0.94	2.00	0.74	2.50	0.67	3.33	0.65	2.58	1.00	2.75	0.97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18)	2.39	1.14	2.50	1.29	2.50	1.04	3.67	0.59	2.28	1.02	2.83	0.99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2.67	0.91	2.58	0.99	2.96	0.71	3.38	0.53	2.67	0.75	2.88	0.82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2.00	0.82	2.25	0.96	2.00	0.82	4.00	0.00	2.00	0.82	2.50	1.29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2.31	0.82	2.19	0.78	2.63	0.75	3.25	0.80	2.44	0.88	2.38	0.87

Base=전체 137명

〈표 부록-4〉 역할 수행 - 항목별(4/4)

단위: 점/4점 평균

구분		사례수	진행 중인 업무 관련, 잦은 의견 충돌		업무 관점의 차이로 인한 잦은 논쟁		업무 완수 방법에 대해 의견 차이 많음		업무에 관한 생각 차이로 인한 갈등 경험 여부		업무 분장에 대한 잦은 생각 차이		업무 수행방식에 대한 다른 의견 여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37)	2.18	0.81	2.12	0.74	2.26	0.82	2.51	0.85	2.24	0.77	2.58	0.70
대응 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2.30	0.82	2.13	0.76	2.22	0.74	2.57	0.84	2.43	0.90	2.70	0.70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1.83	0.72	1.92	0.67	2.00	0.95	2.42	1.00	1.83	0.58	2.42	0.90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18)	2.17	0.86	2.17	1.04	2.28	1.02	2.44	0.92	2.28	0.83	2.44	0.7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2.35	0.86	2.29	0.74	2.40	0.84	2.75	0.76	2.42	0.79	2.69	0.62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1.75	0.50	1.75	0.50	2.00	0.82	2.00	0.82	1.75	0.50	2.25	0.96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2.03	0.69	1.97	0.54	2.19	0.69	2.25	0.84	2.03	0.59	2.50	0.67

Base=전체 137명

〈표 부록-5〉 협력 수준 - 항목별(1/8)

단위 점/4점 평균

구분		사례수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의 고유 전문성 활용 여부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에게 나의 전문적 의견 지속적 제공 여부		다양한 업무 수행을 위한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의 도움 요청 여부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과 팀을 이뤄서 일하는 것이 대상자를 돕는데 중요하지 않음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과 업무협의를 하지 않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7)	3.07	0.59	2.94	0.63	2.97	0.66	1.72	0.73	1.80	0.71
대응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2.91	0.60	2.78	0.67	3.04	0.56	2.09	0.85	2.09	0.67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3.08	0.51	2.83	0.39	2.92	0.29	1.58	0.51	1.83	0.58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18)	3.11	0.90	2.94	0.87	3.11	0.96	1.67	0.77	1.83	0.79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3.19	0.45	3.08	0.50	2.98	0.53	1.60	0.71	1.63	0.73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3.25	0.50	3.25	0.96	3.50	0.58	1.25	0.50	1.25	0.5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2.97	0.59	2.84	0.63	2.78	0.79	1.75	0.67	1.91	0.64

Base=전체 137명

〈표 부록-6〉 협력 수준 - 항목별(2/8)

단위: 점/4점 평균

구분		사례수	대응체계 종사자들의 서로 간 역할 차이 이해 여부		구두로 나눈 정보를 문서로 다시 확인하는지 여부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의 내가 개입하기 부적절한 사항 의뢰 여부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과의 업무 차이 정의 가능 여부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의 역할 발휘 지지도 나의 역할 중 일부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7)	2.93	0.64	2.90	0.67	2.69	0.71	2.91	0.60	2.97	0.61
대응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3.00	0.52	2.74	0.62	2.74	0.62	2.70	0.63	2.96	0.47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3.00	0.85	2.92	0.51	2.67	0.78	3.00	0.60	2.83	0.72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18)	2.94	0.73	2.89	0.76	2.89	0.83	2.89	0.76	3.06	0.8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2.96	0.54	2.94	0.60	2.77	0.63	3.00	0.51	2.90	0.56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3.00	0.82	3.00	0.82	2.25	0.96	3.00	0.82	3.50	0.58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2.81	0.74	2.94	0.80	2.50	0.76	2.88	0.61	3.03	0.59

Base=전체 137명

〈표 부록-7〉 협력 수준 - 항목별(3/8)

단위 점/4점 평균

구분		사례수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의 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도움 요청 여부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과의 협력은 내 직무가 아님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비공식적 방법 활용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나를 동등하게 대하지 않음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내 도움이 없으면 자신들의 업무를 잘 할 수 없다고 생각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7)	2.94	0.55	1.95	0.80	2.10	0.85	2.26	0.78	2.31	0.80
대응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2.78	0.52	2.17	0.72	1.96	0.88	2.09	0.79	2.22	0.67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2.92	0.29	2.00	0.95	2.17	0.72	2.25	0.62	2.00	0.74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18)	3.17	0.79	1.89	0.76	1.94	0.94	1.89	0.68	2.50	0.99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2.92	0.45	1.85	0.85	2.13	0.87	2.54	0.71	2.29	0.71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3.50	0.58	1.50	0.58	2.00	0.82	1.75	0.50	3.00	0.82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2.91	0.59	2.00	0.76	2.25	0.84	2.25	0.88	2.31	0.90

Base=전체 137명

〈표 부록-8〉 협력 수준 - 항목별(4/8)

단위: 점/4점 평균

구분		사례수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의 의견수용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됨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과 협력 시 더 나은 방법 모색 가능		우리 기관에는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 간 협력에 관한 업무지침이 있음		우리 기관에는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 간 대화 촉진을 위한 공식적 절차나 과정이 존재함		우리 기관에는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과 함께 운영하는 회의나 위원회가 있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7)	3.26	0.53	3.05	0.66	3.15	0.53	2.83	0.66	3.04	0.57
대응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3.00	0.43	2.91	0.60	3.09	0.51	2.91	0.60	3.00	0.43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3.33	0.65	3.25	0.45	2.92	0.51	2.25	0.75	2.75	0.62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18)	3.33	0.59	2.89	1.02	3.44	0.51	2.61	0.85	2.78	0.8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3.29	0.50	3.04	0.50	3.23	0.42	2.94	0.52	3.23	0.42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3.50	0.58	3.50	0.58	3.25	0.50	2.75	0.96	2.75	0.96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3.28	0.52	3.13	0.71	3.00	0.62	2.97	0.59	3.06	0.56

Base=전체 137명

〈표 부록-9〉 협력 수준 - 항목별(5/8)

단위 점/4점 평균

구분		사례수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과 협력 시 달성하기 어려운 결과도 얻을 수 있음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과 협력 시 창의적 결과 도출 가능		타 전문직들은 서비스 과정에 대상자와 그 가족의 참여를 권장함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나와 협력하는 것에 노력하지 않음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나와 협력 시 생기는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7)	3.20	0.53	3.08	0.56	2.82	0.66	2.23	0.69	2.82	0.70
대응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2.96	0.47	2.74	0.45	2.74	0.45	2.30	0.63	2.78	0.52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3.17	0.39	3.17	0.39	2.92	0.51	2.42	0.67	2.50	0.67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18)	3.33	0.59	3.33	0.59	2.89	0.58	2.06	0.80	3.00	0.9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3.25	0.48	3.00	0.58	2.96	0.65	2.27	0.68	2.83	0.60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3.50	0.58	3.50	0.58	2.75	0.96	2.00	0.82	3.25	0.5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3.19	0.59	3.22	0.49	2.59	0.80	2.16	0.68	2.81	0.82

Base=전체 137명

〈표 부록-10〉 협력 수준 - 항목별(6/8)

단위: 점/4점 평균

구분		사례수	나와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대안 평가 과정을 거침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 간 협력 시 서로 다른 의견 수용 분위기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과 함께 제공 서비스 계획 수립 시 관련 대상자 의견 반영 여부		나와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에게 대상자에게 제공할 서비스 계획 마련 책임 있음		대상자들을 위한 서비스 계획 실행 시 나와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참여하지 않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7)	2.82	0.62	2.91	0.60	2.97	0.54	3.19	0.54	2.23	0.73
대응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2.70	0.47	2.78	0.42	2.87	0.34	2.87	0.55	2.22	0.60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2.75	0.45	2.92	0.51	2.75	0.62	3.25	0.45	2.17	0.72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18)	2.78	0.94	3.00	0.77	3.06	0.54	3.33	0.59	1.94	0.64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2.90	0.52	2.92	0.58	3.04	0.50	3.25	0.53	2.42	0.79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2.75	0.96	3.00	0.82	3.00	0.82	3.25	0.50	1.75	0.5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2.88	0.66	2.91	0.69	2.97	0.65	3.22	0.49	2.22	0.75

Base=전체 137명

〈표 부록-11〉 협력 수준 - 항목별(7/8)

단위: 점/4점 평균

구분		사례수	나와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솔직하게 제공함		나와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업무관계 향상을 위한 전략 논의를 함		나와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또 다른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해 논의함		대응체계 간 긍정적 분위기 조성 노력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대응체계 간 긍정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7)	3.11	0.51	2.89	0.63	2.80	0.65	3.14	0.53	2.19	0.72
대응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3.09	0.29	2.91	0.60	2.78	0.60	3.00	0.52	2.35	0.65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3.08	0.51	2.58	0.67	2.58	0.67	3.08	0.29	2.33	0.65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 여성청소년수사팀	(18)	3.17	0.62	2.94	0.80	2.78	0.81	3.39	0.50	2.00	0.77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3.04	0.50	2.94	0.48	2.88	0.53	3.15	0.46	2.27	0.71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3.25	0.50	3.00	0.82	3.25	0.96	3.25	0.50	1.25	0.50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3.19	0.59	2.88	0.71	2.72	0.73	3.09	0.69	2.13	0.75

Base=전체 137명

〈표 부록-12〉 협력 수준 - 항목별(8/8)

단위: 점/4점 평균

구분		사례수	대상자 문제해결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음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과 우리 기관의 다른 직원 간 갈등 해결을 도움		성공적인 협력을 위한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의 노력 여부		각자의 역할, 능력, 고정관념 등에 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이야기함		업무성과 평가는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과 각각 이루어짐		사례별 참여 정도에 대한 타 대응체계 종사자들과의 논의 여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7)	3.08	0.52	2.97	0.54	2.82	0.65	2.71	0.64	3.03	0.45	2.78	0.65
대응체계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3)	2.87	0.55	3.04	0.37	2.74	0.54	2.74	0.54	2.96	0.56	2.83	0.49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12)	3.08	0.51	2.75	0.45	2.75	0.62	2.58	0.67	3.08	0.29	2.42	0.79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18)	3.11	0.76	3.11	0.68	2.94	0.87	2.72	0.89	3.11	0.58	2.61	0.7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8)	3.13	0.49	2.88	0.53	2.75	0.67	2.69	0.59	3.06	0.32	2.90	0.52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4)	3.50	0.58	3.25	0.50	3.25	0.96	3.00	0.82	3.00	0.82	3.25	0.96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32)	3.09	0.30	3.03	0.59	2.91	0.53	2.72	0.63	2.97	0.47	2.75	0.72

Base=전체 137명

[부록2] 설문지

기관 ID			

응답자 ID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 개발 연구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 개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보다 효과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의 특성이 반영된 대전형 모델을 개발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의 내용은 대응체계별 기능 및 역할, 연계·협력, 근무환경 등이며, 약 15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는 자발적인 참여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조사 중 더 이상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 중단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및 제60조(비밀유지 등)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설문조사 관리 및 통계 작성, 답례 제공〉 ▸ 개인정보 수집항목: 이름, 성별, 휴대폰 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조사종료 후 2개월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조사주관기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심혜선 선임연구원

▪ 조사수행기관 HankookResearch
오미혜 팀장(☎ 02-3014-1030)

면접원 기록사항			
근무기관명		근무기관 구분	①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②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③ 경찰청/경찰서 아동학대예방경찰관/여성청소년수사팀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 치료사 등) ⑤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⑥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⑦ 기타( )
면접원 이름			
면접일자	2023년 _____월 _____일		

Ⅰ.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별 기능 및 역할

문1. 다음은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별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난이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모든 문항은 5점 척도로 중요도와 수행도는 5점일수록 중요하거나 빈번히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난이도는 5점일수록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1-1.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주요 기능 및 역할 (2023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 대응체계 등)	문1-1-1. 중요도					문1-1-2. 수행도					문1-1-3. 난이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중요하다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매우 자주 수행한다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어렵다
1) 위기아동가정 발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아동학대 신고접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현장조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 조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한 상담 · 조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 조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아동학대 사례판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응급보호(즉각분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지도 · 감독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피해아동, 가족, 및 학대행위자 사례관리 종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예방사업 정보 처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4) 행정 관련 (실적관리, 재무회계관리, 인력관리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5) 기타(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1-2.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주요 기능 및 역할 (2023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 대응체계 등)	문1-2-1. 중요도					문1-2-2. 수행도					문1-2-3. 난이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중요하다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매우 자주 수행한다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어렵다
1) 아동상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양육상황 점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주기적인 사례점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사후 모니터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행정 관련 (실적관리, 재무회계관리, 인력관리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기타(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1-3. 자치구 경찰청/경찰서(학대예방경찰관, 여성 · 청소년수사팀)

주요 기능 및 역할 (2023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 대응체계 등)	문1-3-1. 중요도					문1-3-2. 수행도					문1-3-3. 난이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중요하다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매우 자주 수행한다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어렵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112)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지자체에 관련사실 통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즉각분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임시조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동행출동 및 현장조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아동학대 신고사건 전수합동 조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피해자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행정 관련 (실적관리, 재무회계관리, 인력관리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기타(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1-4.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 치료사 등)

주요 기능 및 역할 (2023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 대응체계 등)	문1-4-1. 중요도					문1-4-2. 수행도					문1-4-3. 난이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중요하다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매우 자주 수행한다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어렵다
1)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 치료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한 상담 · 치료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 치료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법원의 상담위탁 명령 수행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아동학대예방 · 피해아동보호 관련 기관 연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피해아동 및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치료 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관련 사업(서포터즈사업, 방문똑똑마음톡톡사업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공공연계회의, 통합사례회의, 자문회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 가정복귀절차 실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종결 전 관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종결 후 관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아동학대예방사업(교육 및 홍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4) 아동정보시스템 정보입력에 필요한 자료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5) 행정 관련 (실적관리, 재무회계관리, 인력관리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6) 기타(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1-5.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의료사회복지사

주요 기능 및 역할 (2023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 대응체계 등)	문1-5-1. 중요도					문1-5-2. 수행도					문1-5-3. 난이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중요하다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매우 자주 수행한다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어렵다
1) 피해아동 발견 및 신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피해아동 진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수사 협조 및 의학적 자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의료기관 연계 협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행정 관련(실적관리, 재무회계관리, 인력관리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1-6. 학대피해아동쉼터 보육사 등

주요 기능 및 역할 (2023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 대응체계 등)	1-6-1. 중요도					1-6-2. 수행도					1-6-3. 난이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중요하다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매우 자주 수행한다	전혀 어렵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어렵다
1) 피해아동 일시보호(숙식 및 생활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심리안정지원(상담 및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생활지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적응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행정 관련(실적관리, 재무회계관리, 인력관리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2. 다음은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별 종사자로서 역할 수행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업무상 나에게 요구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2) 나의 업무과제와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업무시간을 적절히 쓰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	①	②	③	④
4) 나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5) 업무상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6) 내가 할 일에 대한 상사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업무 책임이 과다하여 일부분을 줄이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한 사람이 수행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늘 시간에 쫓기는 기분이 든다	①	②	③	④
10)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성과의 수준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2) 내게 없는 능력의 발휘도 요구 받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역할로 인해 다른 보호체계 종사자와 의견 충돌을 겪는다	①	②	③	④
14) 대응체계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나에게만 책임을 돌린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와 역할로 인한 목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대응체계 안에서 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7) 대응체계에서 나에게 부여한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18) 대응체계 종사자 간에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때로는 업무를 서로 넘기려 하거나 때로는 서로 차지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나는 진행 중인 업무와 관련되어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과 의견 충돌을 자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업무와 관련된 관점의 차이로 인해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 사이에 논쟁을 자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1) 나는 어떻게 업무를 완수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많이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2) 나는 업무에 관련된 생각의 차이로 인해 대응체계 종사자들 간에 갈등을 어느 정도 경험한다	①	②	③	④
23) 나는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 간의 업무분장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4) 나는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의 업무 수행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문3. 귀하의 현재 업무량과 전문성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매우 낮음 ← 보통 수준 → 매우높음										
1) 업무량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전문성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4.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의 주된 어려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부터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인력 수 부족
② 인력의 전문성 미흡
③ 근무형태(당직근무, 교대근무 등)
④ 대상자의 비협조
⑤ 민원 응대
⑥ 활용자원 부족
⑦ 담당자 간 업무 이해 미흡
⑧ 협업 경험의 부족
⑨ 지자체 유관부서 협조 미흡
⑩ 지역 민간기관의 협조 미흡
⑪ 유관 공공기관의 협조 미흡
⑫ 기타( )

문5. 귀하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교육체계(보수교육 등) 강화
② 자격제도 강화
③ 채용기준 강화
④ 경력 우대
⑤ 사회적 인정 체계 강화
⑥ 전문가 단체 역량 강화
⑦ 전문직 윤리강령 강화
⑧ 기타( )



II.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별 연계·협력

문6. 지금 현재 대응체계의 연계여부, 전반적인 연계·협력 정도, 향후 연계·협력 강화의 필요성, 그리고 연계 시 애로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6-1.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구분	문6-1-1. 연계여부		(연계하고 있는 경우만 평가) 문6-1-2. 전반적인 연계·협력					문6-1-3. 향후 연계·협력 강화 필요성					문6-1-4. 연계 시, 애로사항
	있다	없다	전혀 안되고 있다	—	보통이다	—	매우 잘되고 있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1) 경찰청/경찰서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아동보호전문기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학대피해아동쉼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시교육청/교육지원청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6-2. 자치구 아동보호전담요원

구분	문6-2-1. 연계여부		(연계하고 있는 경우만 평가) 문6-2-2. 전반적인 연계·협력					문6-2-3. 향후 연계·협력 강화 필요성					문6-2-4. 연계 시, 애로사항
	있다	없다	전혀 안되고 있다	—	보통이다	—	매우 잘되고 있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1) 경찰청/경찰서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아동보호전문기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학대피해아동쉼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시교육청/교육지원청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6-3. 경찰청/경찰서

구분	문6-3-1. 연계여부		(연계하고 있는 경우만 평가) 문6-3-2. 전반적인 연계 · 협력					문6-3-3. 향후 연계 · 협력 강화 필요성					문6-3-4. 연계 시, 애로사항
	있다	없다	전혀 안되고 있다	—	보통이다	—	매우 잘되고 있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1) 시 · 구 아동보호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아동보호전문기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학대피해아동쉼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시교육청/교육지원청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6-4.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분	문6-4-1. 연계여부		(연계하고 있는 경우만 평가) 문6-4-2. 전반적인 연계 · 협력					문6-4-3. 향후 연계 · 협력 강화 필요성					문6-4-4. 연계 시, 애로사항
	있다	없다	전혀 안되고 있다	—	보통이다	—	매우 잘되고 있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1) 시 · 구 아동보호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경찰청/경찰서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아동보호전문기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시교육청/교육지원청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지역 사회서비스기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6-5.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구분	문6-5-1. 연계여부		(연계하고 있는 경우만 평가) 문6-5-2. 전반적인 연계 · 협력					문6-5-3. 향후 연계 · 협력 강화 필요성					문6-5-4. 연계 시, 애로사항
	있다	없다	전혀 안되고 있다	—	보통 이다	—	매우 잘되고 있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필요 하다	
1) 시 · 구 아동보호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경찰청/경찰서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아동보호전문기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학대피해아동쉼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시교육청/교육지원청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6-6. 학대피해아동쉼터

구분	문6-6-1. 연계여부		(연계하고 있는 경우만 평가) 문6-6-2. 전반적인 연계 · 협력					문6-6-3. 향후 연계 · 협력 강화 필요성					문6-6-4. 연계 시, 애로사항
	있다	없다	전혀 안되고 있다	—	보통 이다	—	매우 잘되고 있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	보통 이다	—	매우 필요 하다	
1) 시 · 구 아동보호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경찰청/경찰서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아동보호전문기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시교육청/교육지원청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지역 사회서비스기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7. 다음 문항들은 귀 기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별 종사자 간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귀하의 의견에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전문성을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에게 나의 전문적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3)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자신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4) 내가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과 팀을 이뤄서 일하는 것은 대상자를 돕는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과 업무협의를 거의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나와 함께 일하는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서로 간의 역할 차이를 분명히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과 구두로 나눈 정보에 대해서 문서로 다시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8)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내가 개입하기에 부적절한 대상자나 문제를 의뢰하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과의 업무 차이를 분명히 정의 내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의 역할 중 일부분은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이 역할을 잘 발휘하도록 지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1)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나를 믿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12)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과 협력하는 것은 내 직무의 일부분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과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비공식적 방법(예, 회식, 사적인 모임 등)도 활용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14)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자신들과 나를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5)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나의 도움이 없으면 자신들의 업무를 지금만큼 잘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6) 대상자를 더욱 잘 돕기 위해서 나도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된다	①	②	③	④
17) 내가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과 협력해서 일을 하면 더 나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모색되곤 한다	①	②	③	④
18) 우리 기관의 업무지침에는 서로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 간에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②	③	④
19) 우리 기관에는 서로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 간의 대화를 촉진시키는 공식적인 절차나 과정(예, 회의, 미팅, 연수 등)이 존재한다	①	②	③	④
20) 우리 기관에는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나 위원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과 함께 일하면 혼자서 달성하기 어려운 결과도 얻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22)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과 함께 일하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창의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	①	②	③	④
23) 나와 함께 일하는 타 전문직들은 서비스 과정에 대상자와 그 가족의 참여를 권장한다	①	②	③	④
24)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나와 함께 일하는 것에 그다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5)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나와 함께 일하면서 생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26) 나와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함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①	②	③	④
27) 나와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 간의 협력과정과 평가는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28) 나와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이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는 관련 대상자의 의견도 반영된다.	①	②	③	④
29) 나와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대상자에게 제공할 서비스 계획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①	②	③	④
30) 대상자들을 위한 서비스 계획을 실행할 때 나와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1) 나와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솔직하게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32) 나와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서로 간의 업무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에 대해 종종 논의 한다	①	②	③	④
33) 나와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함께 일하는 과정에 또 다른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①	②	③	④
34) 나는 대응체계 간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35)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대응체계 간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36) 나는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이 대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37) 나는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과 우리 기관의 다른 직원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38)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나와의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만큼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39) 나와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각자의 역할, 능력, 고정관념 등에 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40) 나와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는 각각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41) 나와 다른 대응체계 종사자들은 각각의 사례들에 대해서 서로가 어느 정도까지 참여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한다	①	②	③	④

문8. 다음 문항들은 아동학대 대응체계별 종사자 간의 협력효과를 묻는 질문들입니다. 귀하의 의견에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이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3)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으로 전달체계가 간소화·능률화 되었다	①	②	③	④
4)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5)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은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 및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6)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이 서비스 중복을 막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이 서비스 비용의 효율화에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8)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이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9)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은 기관의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①	②	③	④
10) 아동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은 기관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①	②	③	④

문9. 귀하의 기관과 아동학대 대응관련 다른 체계(기관)와의 연계 및 협력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상대기관에 대한 이해 부족
② 상대기관의 조직간 협력에 대한 인식 부족
③ 협력을 담당할 인력 부족
④ 서비스 내용과 지원미비
⑤ 기관별 업무일정의 차이
⑥ 접근성과 공간 등의 부족
⑦ 예산 부족
⑧ 귀 기관의 조직간 협력에 대한 인식 부족
⑨ 어떤 기관에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지 정보부족
⑩ 대상자의 서비스 참여 동의여부 확인
⑪ 기타(　　)

문10. 귀하의 기관과 아동학대 대응관련 다른 체계(기관)와의 원활한 협조 및 협력을 활성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상대직종과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 실시
②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실시
③ 지역단위 단체간 상호교류 기회 확대
④ 현장에서의 개인간 상호교류 기회 확대
⑤ 상호협력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 제공
⑥ 기타(　　)

III.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문11. 타지역과 구분되는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 특성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① 저소득층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는 편이다
② 한부모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는 편이다
③ 가정폭력과 관련된 아동학대가 많은 편이다
④ 집단시설(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아동학대가 많은 편이다
⑤ 영유아에 대한 학대가 많은 편이다
⑥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많은 편이다
⑦ 아동학대 유형 중 재학대가 많은 편이다
⑧ 기타(　　)

문12-1.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조기 발견
② 빠른 처리과정
③ 정보 공유
④ 통합사례회의
⑤ 사례관리
⑥ 기관 간 연계 및 협력
⑦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
⑧ 기타(　　)

문12-2.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조기 발견이 되지 않음
② 처리과정이 오래 걸림
③ 정보 공유가 잘되지 않음
④ 통합사례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⑤ 사례관리가 잘되지 않음
⑥ 기관 간 연계 및 협력이 미흡함
⑦ 피해아동,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이 미흡
⑧ 기타(　　)

문12-3.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문13. 귀하는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대응 업무진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번이나 ②번 선택 시, 적절하지 못한 이유
1) 아동학대 발굴	①	②	③	④	
2) 신고접수	①	②	③	④	
3) 현장조사	①	②	③	④	
4) 사례판단	①	②	③	④	
5) 보호조치	①	②	③	④	
6) 즉각분리	①	②	③	④	
7) 사례관리	①	②	③	④	
8) 사례점검	①	②	③	④	
9) 종결 전 관리	①	②	③	④	
10) 종결 후 관리	①	②	③	④	
11) 기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업무( )					

문14. 2023년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조사업무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심층사례관리업무(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와 사례관리업무가 분리되었을 때 장·단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15-1. 장점	문15-2. 단점	문15-3. 개선방안

문15. 대전광역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감소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② 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강화
③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문 서비스 강화 및 기반 확충
④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⑤ 시민들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⑥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사회문화의 개선 (자녀 소유물 인식, 체벌 등)
⑦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⑧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 및 관리
⑨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긴급지원 시스템의 체계화
⑩ 아동학대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공권력 강화
⑪ 기타( )

문16. 대전광역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홍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TV/라디오 공익광고
② 인터넷 배너 광고
③ 버스/지하철 광고
④ 신문/잡지
⑤ 관련기관 홈페이지
⑥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⑦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SNS DM, 디스코드 등)
⑧ 가족/친구/직장동료/이웃
⑨ 반상회/구청 소식지
⑩ 학교/사회교육기관 교육
⑪ 사회복지기관/상담기관 발행자료, 소식지
⑫ 기타( )

문17. 대전광역시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바람직한 대응 모델은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현행 유지
② 시·구 통합하되, 각 기관(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분리 체제
③ 시 주도 통합모델(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④ 구 주도 통합모델(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⑤ 기타( )

문18. 대전광역시 아동학대 정책 수립 및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바라는 점을 적어주세요.

대응 주체	요구사항
문18-1. 보건복지부	
문18-2. 아동권리보장원	
문18-3. 시 아동보호팀	
문18-4. 구 아동보호팀	

Ⅳ. 대응체계 종사자 교육 및 훈련

문19. 2022년 귀하의 직무관련 교육 참여 현황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문19-1. 참여 횟수	문19-2. 참여 시간
1) 필수	총 ( )회	총 ( )시간
2) 권고	총 ( )회	총 ( )시간

문20. 귀하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최근 1년간 다음의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항목	문22-1. 활동 여부		(활동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평가) 문22-2. 연간 활동 횟수	(활동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평가) 문22-3. 연간 활동 시간
	없다	있다	연간 활동 횟수	연간 활동 시간
1) 관련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한 슈퍼비전	①	②	연 회	연 시간
2) 학회 활동(연수회, 사례 발표회 등) 참여	①	②	연 회	연 시간
3) 정부 부처 및 기관 주관 교육과정 참여	①	②	연 회	연 시간
4) 민·관 기관 주관 교육과정 참여	①	②	연 회	연 시간
5)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참여	①	②	연 회	연 시간
6) 관련 학교 진학 및 학업 수행	①	②	연 회	연 시간
7) 기타( )	①	②	연 회	연 시간

문21.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현장성을 반영한 교육주제 개발
② 교육 시간 증대
③ 교육인력 질 향상
④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업무량 조정)
⑤ 교육비 지원 강화
⑥ 교육에 대한 인정과 보상
⑦ 교육에 대한 홍보 강화(정보 접근성 확대)
⑧ 참여 가능한 다양한 교육시간 개발
⑨ 참여 가능한 다양한 교육매체(온라인 등) 개발
⑩ 종사자가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 우선 반영
⑪ 대체인력지원
⑫ 기타( )

V. 대응체계 종사자 근무환경 관련

문22. 귀하는 지난 3년간(2020년에서 현재까지)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육체적 질병(사고)
② 정신적 질병
③ 육체적 질병(사고)과 정신적 질병 모두
④ 없음

문23. 귀하는 지난 3년간(2020년에서 현재까지) 대상자(이용인), 대상자의 가족, 대상자의 지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폭력: 폭행(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폭언, 오물질을 던지는 행위 등), 협박, 위력 등

① 직접 당한 경험이 있음
② 직접 당한 경험은 없으나, 주변 동료가 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음
③ 폭력 피해 경험(직접, 간접경험) 없음

문24.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폭력예방 및 대응 매뉴얼 보급
② 트라우마 대처방안 지원
③ 폭력에 대응하는 직장 내 정서적 지지와 슈퍼비전
④ 사건 발생 시 경찰서와 연계체계 구축
⑤ 공격 위험 이용인 2인 1조 방문
⑥ 보안(경비) 장치의 설치(CCTV, 비상벨, 잠금장치 등)
⑦ 이용인의 폭력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 구축
⑧ 폭력예방위원회 설치 및 활동
⑨ 시설 내 폭력예방 및 대응 지침(규정) 마련
⑩ 이용인 대상 교육 의무화
⑪ 폭력예방 포스터 배포(법률 등 명시)
⑫ 기타(　　)

문25. 귀하는 일과 관련한 스트레스 수준이 어떠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없다 ←										→ 극도로 심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26. 귀하가 받는 업무상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일상의 업무를 처리할 시간 부족
② 비효율적인 행정, 서류 처리
③ 비슷한 학력이나 경력에 비해 낮은 보수 수준
④ 전반적으로 낮은 처우
⑤ 감정노동 과다
⑥ 남녀차별
⑦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⑧ 업무상 재해
⑨ 이용인으로부터의 폭력
⑩ 상사, 동료 등 대인관계의 어려움
⑪ 기타(　　)

문27. 귀하는 업무 중에 경험하는 고충 또는 어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셨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공식적인 절차(고충처리위원회 등)를 통해 해결함
② 관리자에게 개인적으로 고충(어려움)을 의논하여 해결함
③ 직장 동료에게 개인적으로 고충(어려움)을 의논하여 해결함
④ 외부에 마련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함
⑤ 고충(어려움)을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참음
⑥ 기타(　　)

문28. 귀하의 직장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임금(보수)	①	②	③	④	⑤
2) 복리후생제도	①	②	③	④	⑤
3) 교육지원	①	②	③	④	⑤
4)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①	②	③	④	⑤
5) 상사와의 의사소통	①	②	③	④	⑤
6) 동료와의 의사소통	①	②	③	④	⑤
7) 관련기관 종사자와의 의사소통	①	②	③	④	⑤
8) 조직의 발전 전망	①	②	③	④	⑤
9) 개인의 발전 전망	①	②	③	④	⑤
10)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①	②	③	④	⑤
11) 슈퍼비전	①	②	③	④	⑤
12) 근무시간	①	②	③	④	⑤
13) 업무내용	①	②	③	④	⑤
14) 고용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15) 인사고과(인사평가)의 공정성	①	②	③	④	⑤

Ⅵ. 일반적 사항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빠짐없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colspan="2">문29. 성별</td><td>① 남성 ② 여성</td></tr>
<tr><td colspan="2">문30. 연령</td><td>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td></tr>
<tr><td colspan="2">문31. 최종 학력</td><td>① 고등학교 졸업 ② 2~3년제 대학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석사 졸업 ⑤ 대학원 박사 졸업 ⑥ 기타( )</td></tr>
<tr><td colspan="2">문32. 전공 분야
(복수응답 가능)</td><td>① 사회복지(관련)학 ② 상담(심리)학 ③ 교육학 ④ 보육/아동학
⑤ 경찰행정학 ⑥ 법학 ⑦ 간호학 ⑧ 사회학
⑨ 가족학 ⑩ 신학 ⑪ 기타( )</td></tr>
<tr><td colspan="2">문33. 소지 자격
(복수응답 가능)</td><td>① 사회복지사 ② 아동상담사 ③ 아동지도사 ④ 교사 자격증
⑤ 건강가정사 ⑥ 간호조무사 ⑦ 보육교사 ⑧ 정교사
⑨ 의료사회복지사 ⑩ 그 외 민간 자격증( )</td></tr>
<tr><td rowspan="6">문34.
현 소속
(직책)</td><td colspan="2">자치구 아동보호팀</td><td>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② 아동보호전담요원 ③ 기타( )</td></tr>
<tr><td rowspan="2">경찰청 및 경찰서</td><td>학대예방 경찰관(APO)</td><td>① 경감(팀장) ② 경위 ③ 경사 ④ 경장 ⑤ 순경 ⑥ 기타( )</td></tr>
<tr><td>여성청소년수사팀</td><td>① 경감(팀장) ② 경위 ③ 경사 ④ 경장 ⑤ 순경 ⑥ 기타( )</td></tr>
<tr><td colspan="2" rowspan="2">아동보호전문기관</td><td>① 관장 ② 팀장 ③ 상담원 ④ 치료사 ⑤ 정신건강임상심리사</td></tr>
<tr><td>⑥ 기타( )</td></tr>
<tr><td colspan="2">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td><td>① 팀장 ② 의료사회복지사 ③ 기타( )</td></tr>
<tr><td colspan="2">학대피해아동쉼터</td><td>① 원장 ② 보육사 ③ 치료사 ④ 기타( )</td></tr>
<tr><td rowspan="3">문35.
경력</td><td colspan="2">1) 현 직장 근무 경력</td><td>약 ( )년 ( )개월</td></tr>
<tr><td colspan="2">2) 아동복지 분야 업무 총 경력</td><td>약 ( )년 ( )개월</td></tr>
<tr><td colspan="2">3) 아동학대 분야 업무 총 경력</td><td>약 ( )년 ( )개월</td></tr>
</table>

설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 2023-7]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 개발 연구

발 행 일: 2023년 12월
발 행 인: 김 인 식
발 행 처: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0층(우: 34917)
전　　화: 042-331-5068
팩　　스: 042-331-8924
홈페이지: http://daejeon.pass.or.kr

ISBN 979-11-92238-40-1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있습니다.

대전형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모델 개발 연구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Daejeon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10층(대흥동)
Tel. 042)331-5068 Fax. 042)331-8924
https://daejeon.pass.or.kr/

비매품/무료
93330
ISBN 979-11-92238-40-1